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2012 소모성자재 산업현황 및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목 차

제1부 총론

제1장 소모성자재 산업 이해

1. 소모성자재 정의 3
2. 소모성자재 특징 10

제2장 산업발전 및 법률개정 과정

1. 소모성자재 산업발전 과정 12
2. 소모성자재 법률개정 과정 17

제3장 실태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개요 20
2. 조사 근거 26
3. 조사 방안 27
4. 모집단 분석 35
5.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38

제4장 소모성자재 현황조사 결과요약

1. 실태조사 방법 41
2. 실태조사 결과 요약 43
3. 해외 소모성자재 산업 지원정책 현황 50
4. 소모성자재 산업 발전과제와 전략 52

제2부 소모성자재 산업 현황

제1장 소모성자재 산업 현황 요약	59
제2장 소모성자재 시장구조	
1. 소모성자재 유통구조	62
2. 소모성자재 관련업체 정의 및 특징	64
제3장 소모성자재 시장규모	
1. 소모성자재 시장규모 종합	76
2. 부문별 시장규모 추정	76
3. 기업 규모별 시장규모 추정	84
제4장 소모성자재 시장현황	
1. 중소납품업체 시장	85
2.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 시장	123
3.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 시장	131
4. 공공 소비 시장	141
5. 민간 소비 시장	157

제3부 소모성자재 관련법률 및 지원정책

제1장 관련법률 및 지원정책 요약	169
제2장 국내 소모성자재 관련 법률현황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172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77
제3장 주요 지원기관 현황	
1. 중앙 부처	180
2. 지방자치단체	184
3. 주요 지원기관	185

제4장 주요 지원정책 현황	
1. 직접 지원정책 및 제도	193
2. 간접 지원정책 및 제도	194

제5장 해외 지원정책 현황	
1.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226
2.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236
3. 프랑스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243
4. 독일의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정책 현황	255

제4부 소모성자재 산업 문제점

제1장 소모성자재 산업 문제 요약	269
--------------------------	-----

제2장 소모성자재 산업에 내재된 문제	
1. 대기업 사업 확장에 따른 문제점	271
2. 소모성자재 산업 성장과정에 따른 문제	274

제3장 법률 및 지원정책 개선 요인	
1. 판로지원법 개정 관련	281
2. 지원정책 개선 요인	285

제5부 소모성자재 발전과제와 전략

제1장 소모성자재 발전과제와 전략 요약	295
-----------------------------	-----

제2장 소모성자재 산업 발전과제	
1. 실효성 있는 보호·육성 정책 마련	298
2. 발전과제와 전략방향	299

제3장 중소기업육성

- 1. 영업·마케팅 역량 지원 302
- 2. 판로개척 지원 확대 317
- 3. 수출 역량 강화지원 325

제4장 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확대

- 1. 지역 연고 우선구매 추진 330
- 2. 쿼터제 시행 334
- 3.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337

제5장 소모성자재 산업 인프라 발전 전략

- 1.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발전 방안 343
- 2. 소모성자재 통합 구매·관리 시스템 운영 349
- 3. 소모성자재 공제조합 설립 352

별첨

- 제1장 동반성장위원회 조사결과 361
- 제2장 관련법률 374
- 제3장 독일 조달입찰법에 관한 규정 478

그림목차 495

표목차 501

설문지 505

제1부

총론

제1장 소모성자재 산업 이해

1. 소모성자재 정의
2. 소모성자재 특징

제2장 산업발전 및 법률개정 과정

1. 소모성자재 산업발전 과정
2. 소모성자재 법률개정 과정

제3장 실태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개요
2. 조사 근거
3. 조사 방안
4. 모집단 분석
5.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제4장 소모성자재 현황조사 결과요약

1. 실태조사 방법
2. 실태조사 결과 요약
3. 해외 소모성자재 산업 지원정책 현황
4. 소모성자재 산업 발전과제와 전략

제 1 장

소모성자재 산업 이해

1. 소모성자재 정의

가. 국내의 소모성자재 정의

소모성자재(MRO)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함

소모성자재(MRO)란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간접자재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통용되는 소모성자재에 대한 개념은 기업이 생산활동을 위해 투입하는 간접자재를 뜻하며,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운영(Operation)에 필요한 자재를 말한다.

유지(Maintenance)용품은 정기적인 교체작업이나 일정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품목으로 대표적으로는 기계부품, 밸브, 윤활유 등이 있으며, 보수(Repair)용품은 기계나 설비의 고장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하는 품목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들이며 공구, 기계, 배관자재, 볼트/너트류 등이 있다. 운영(Operation)용품은 기업의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으로 사무용품, 사무기기, 컴퓨터 장비 등이 있다.

[기업 소모성자재(MRO) 정의]

① Maintenance Material

- 정기적인 교체 작업이나 일정계획에 따라 구매되는 품목
- 기계부품, 페인트, 밸브류, 전기자재, 청소용품 등

② Repair Material

- 기계고장 등으로 발생한 계획되지 않은 혹은 긴급하게 필요한 품목
- 공구, 기계, 배관자재, 볼트/너트류 등

③ Operation Material

- 기업의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사무용품 및 기기 등

*자료: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활용과 MRO e-Marketplace의 성공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MRO 중개기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

소모성자재 시장확대 초기인 1990년대에는 사무용품 등 업무상 사용되는 일반적인 소모품에 한정된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개념이 확대되어 일반 소모품에서 시설관리, 운영 등 일반 용역으로 넓어졌다.

민간기업과 학계에서도 소모성자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개념과의 차이로 인해 실제적 이해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의된 것 이외에 소모성자재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나. 해외의 소모성자재 정의

1) 변천 과정

주요 선진국에서의 소모성자재란 개념은 항공분야에서 먼저 사용되었다. 이의 기원은 2차 세계 대전 등으로 인해 군수 산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이었던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전쟁을 위한 체계적 부품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던 작업들이 현재의 항공분야 소모성자재의 정의의 기초가 되었다. 따라서 미국이나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소모성자재 개념은 항공분야에서 먼저 사용되었다.

[항공분야에서의 소모성자재(MRO) 정의]

- ① Maintenance
 - 기체나 엔진을 점검하여 부품을 교체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
- ② Repair
 - 구성품을 상태에 따라 기계가공을 거쳐 사용가능한 부품 상태로 만드는 것
- ③ Overhaul
 - 완전분해 후 재 조립과정을 거쳐 수명이 다한 부품 교체

* 자료: 우리나라에서 항공기 정비사업(MRO)의 경쟁력 실태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2010

이후 전쟁이 종식되고 산업의 기초가 군수산업에서 일반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민간기업으로 이전되면서 소모성자재에 대한 개념도 항공분야에서 기업 소모성자재 개념으로 급격히 변하였다. 또한 IT의 발전은 기업 소모성자재 시장을 e-procurement 마켓플레이스로 확대되게하여 새로운 관심을 받게 하였다.

2) 주요 국가별 소모성자재 산업에 대한 입장

현재, 기업 소모성자재 약어인 MRO의 정의는 전세계 어디나 동일하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은 소모성자재에 대한 용어적 정의 외에 세부적인 규정이 없으며, 국내처럼 소모성자재를 별도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관이나 협회 등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독과점이 발생하거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위협을 받을 때만 시장에 개입한다. 따라서 국내와 같이 소모성자재 산업에 대한 특혜적 정책의 개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약자를 구제하는 사회정책형 시책을 갖고 있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았으나 최근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경쟁촉진형 시책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현재는 소모성자재와 같은 중소납품업체를 위한 특별한 지원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유럽의 경우 산업의 발전 토대가 중소기업이어서 대·중소기업 구분이 국내처럼 명확하지 않고,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은 미미한 편이며, 소모성자재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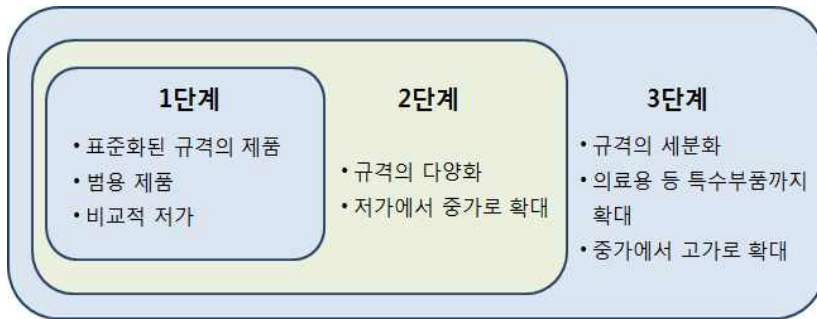
다. 본 백서에서의 소모성자재 범위

앞서 소모성자재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국내는 해외와 달리 소모성자재란 용어가 항공분야보다 사무용

분야에서 우선 사용되어왔고, 일반적으로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인 대기업계열 MRO사를 통해 기업 소모성자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본 백서에서는 4페이지에서 언급한 기업 소모성자재의 일반적 정의에 기초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만으로는 소모성자재의 명확한 범주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소모성자재의 개념은 산업발전 형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확대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그 개념이 사회적 이슈와 산업의 발전 방향에 따라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모성자재의 개념이 태동된 초기에는 사무용품 등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모품에 한정·이해되었으나, 점차 개념이 확대되면서 기업운영에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에 소모되는 간접자재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림 1-1] 소모성자재 범위 발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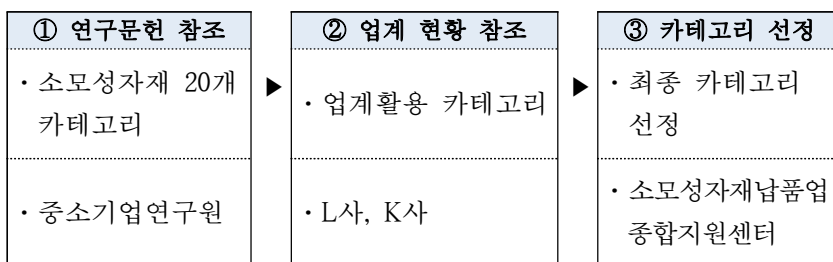


따라서 본 백서에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소모성자재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여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고자 소모성자재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1) 소모성자재 범위 규정 과정

앞서 기업에서 소모성자재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생산활동을 위해 투입하는 간접자재를 일컫는 것으로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운영(Operation) 활동으로 세분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어떠한 것이 소모성자재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개념적인 정의 외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카테고리가 소모성자재에 포함되는가를 규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소모성자재의 범주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 하고자 한다.

[그림 1-2] 소모성자재 표본구성 프로세스



우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자료에서 정의 소모성자재 20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구분·사용하고 있는 카테고리와의 매칭을 실시한 결과 원자재, 의학용품, 기타 등 3개 카테고리는 제외하였다. 일반적으로 원자재는 소모성자재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의학용품은 대부분 수입 및 전문성에 의존하고 있고, 기타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2) 확정 카테고리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소모성자재에 해당되는 카테고리 17개를 확정하였고, 본 조사에서는 17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만을 소모성자재로 한정하였다.

[그림 1-3] 최종 카테고리 선정 과정



2. 소모성자재 특징

소모성자재는 구매하는 기업의 성격, 사용되는 물품의 특징에 따라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구매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소모성자재는 물품 구매사가 사업 운영을 위해 구매하는 전체 구매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다품종 소량구매로 인해 구매와 관련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소모성자재 제품 대다수가 규격이 통일되어 있어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물품 구매사는 납품업체를 변경하는데 따른 위험이 매우 낮아 납품가격, 제공 서비스 등의 불만족 이유로 납품업체를 교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림 1-4] 소모성자재 특징

상품유형	내용	주요품목	생산용자재 MRO자재		
Maintenance Material	정기적인 교체 작업이나 일정계획에 따라 구매되는 Item	기계부품, 페인트, 밸브, 전기스위치, 청소용품, 윤활유 등	공급원	특정업체	많다
Repair Material	기계고장 등으로 발생한 계획되지 않은 혹은 긴급하게 필요한 Item	기계부품, 가스켓, 유공압기기, 스프링, 베어링, 공구 등	납품업체 의존도	높다	대체가능
Operation Material	정기적으로 구매되는 사무에 필요한 Item	사무용품, 사무가구, 사무기계, 컴퓨터관련 및 전산 소모품 등	구매액	크다	작다
			구매 Cost	구매액 대비 작음	구매액 대비 큼
			구매주기	정기적	부정기적
			관리포인트	Quality and Cost	Delivery & 업무프로세스 효율화

소모성자재는 거래건수에 비해 총 구매 비용과 거래량이 적어 실질적인 구매비용 외에 행정 관리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물품 구매사들은 구매업무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비정기적인 구매주기로 인해 수요예측이 어려워 구매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재고 유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Aberdeen Group¹⁾의 보고서에 의하면 비계획적인 긴급 구매가 전체 소모성자재 구매의 40~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소모성자재 관리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Life Cycle이 매우 짧은 것도 큰 특징이다. 소모성자재의 경우 품목수가 많지만 그 수명은 매우 짧다. 따라서 소량의 다발적인 구매를 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소모성자재 구매 시 행정비용 증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IT산업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 확장으로 기존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 소모성자재 구매 기업들은 구매업무 효율성 및 비용절감 극대화를 위해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기업들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구매업무를 대행하는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품목과 주문 등의 단순·비효율 업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구매방식을 채택하였고, 이는 자재구매대행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매개체로 하여 물품 구매사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품목을 중소납품 업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1) Aberdeen Group은 프로세스 혁신, 방법론, 기술 배포, 비즈니스 공학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1988년에 설립되었고, 비즈니스 관련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업체

산업발전 및 법률개정 과정

1. 소모성자재 산업발전 과정

국내 소모성자재 산업의 발전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소모성자재에 대한 초기 개념이 정립된 시기, 둘째, 자재 구매대행업이란 신규 업종의 출현으로 시장이 급성장한 시기, 셋째, 자재구매대행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대기업 중심의 문제점이 도출된 시기, 마지막으로 정부와 자재구매대행업자의 자구적 노력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시기이다.

[그림 1-5] 소모성자재 산업 발전과정

	1	2	3	4
	개념 정립	시장 성장	문제 발생	사업 조정
내용	소모성자재에 대한 개념 정립	자재구매대행업자 중심으로 시장확대	자재구매대행업자 중심으로 유통구조 왜곡	자재구매대행업자 사업범위 조정

개념 정립기 이전에는 소모성자재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조차도 자신들이 취급하는 상품이 소모성자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대기업들이 「구매대행」이란 비즈니스 모델로 소모성자재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 개념이 인식되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자재구매대행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90년대 후반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상품의 주문과 결제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자재구매대행업자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물품구매가 가능하고, 표준화된 구매절차로 효율적인 원가관리와 원가절감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e-business 산업 육성정책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도 소모성자재 납품시장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1년 기준 소모성자재 시장규모는 약 22~23조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모성자재 납품시장 내 자재구매대행업으로 진출한 대기업은 서브윈, 아이마켓코리아, 엔투비, KeP, 엠알오코리아 등이 있다. 5대 대규모 구매대행업자가 자재구매대행업 시장 매출의 8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재구매대행업 내에서도 업체별 시장점유율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는 거대 자본 및 인력, 마케팅역량, 자체 보유 시스템, 영업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시장의 유통구조를 재편하였다. 하지만,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지나친 시장 확대에 의해 중소납품업체와의 갈등이 유발 및 증폭되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는 소속그룹 계열사 및 협력사의 물량을 독점하거나 몰아주기식으로 부당 지원하고 있으며, 대기업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경우에는 수익배분 및 세금부과에 있어서 편법 상속·증여, 부정 자산 증대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가 공공기관과 비계열사로 고객을 확대함에 따라 중소납품업체와 중소유통업체의 사업영역이 축소되고 중소납품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경상남도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에서 경남도 내 81개 중소소모성자재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1%인 60개사가 경영악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기업의 43.6%가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납품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소 납품업체가 물품 구매기업에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유통경로가 차단되어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는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 및 과도한 수수료 청구 등과 같은 부당요구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들이 발생되면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정부기관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들과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축소에 대한 모범적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며, 대·중소기업간 상호양보를 통한 갈등해소 및 상호공생관계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아이마켓코리아 및 (주)엔투비와의 합의내용]

- ① 신규영업은 MRO대기업 계열사 및 그 계열사의 1차협력사로 한정한다. 다만, 1차협력사가 아닌 기존거래 중인 중소기업과의 거래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로 한다.
(주)엔투비는 포스코, 한진, KCC그룹을 칭한다.)
- ② MRO 사업조정의 범위는 공구, 베어링으로 한정한다.
(품목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 ③ 피신청인은 산업용재 중소공구(공구·베어링)의 적정 이익을 위해 신청인과 상호 협의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며, 이를 위해 매년초(1월중) 신청인측에서는 적정이익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제시한 근거자료에 의해 양측은 상호 이익 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 지속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 주관 하에 협의해 나간다.
- ④ 신청인은 회원사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제공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우수 회원사 추천 시 판로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자료 : 중소기업청, MRO분야 대·중소기업간 사업영역 조정안 합의 보도자료, 2011

[코리아e플랫폼(주)와의 합의내용]

① 대기업의 신규 영업확장은 대기업 및 계열사와 그 계열사의 1차협력사로 한정하며(일반 대기업의 1차협력사는 제외하되, 1차협력사가 대기업일 경우 포함한다.), 향후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에는 진출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거래중인 중소기업과의 거래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로 하며, 향후 대기업 신규진출 축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②, ③, ④는 (주)아이마켓코리아 및 (주)엔투비와의 합의내용과 같다.

*자료 : 중소기업청, MRO분야 대·중소기업간 사업영역 조정안 합의 보도자료, 2011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국내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업 매각, 사회적 기업화, 흡수 합병, 지속보유 등 각 기업의 상황과 입장에 따른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아이마켓코리아는 삼성그룹 9개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37%를 2011년 말 인터파크에 매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모성자재구매사업에서 철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은 계열사인 MRO코리아를 (주)행복나래로 변경하고, 국내 사회적 기업들을 우선구매대상 협력사로 선정하여 중점 지원육성하고, 상생의 기틀을 마련함과 더불어 수익금 60% 이상을 사회로 환원함으로써 대기업으로는 최초로 사회적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동양그룹 계열사인 미러스는 정보기술기업인 동양시스템즈에 흡수 합병되어 동양네트웍스로 재출범 하면서 소모성자재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 LG그룹 계열사인 서브윈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독점적 납품을 자제하는 사업조정안을 발표하였지만 기존의 방식과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엔투비는 중소기업품목에 한해 중소기업 미취급 품목만 취급하며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²⁾.

2. 소모성자재 법률개정 과정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 중소납품업체는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기존 거래관행에 없었던 수수료 부과, 납품단가 인하 압박 등 중소 납품업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중소납품업체 보호·육성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림 1-6] 개정 법률안 제안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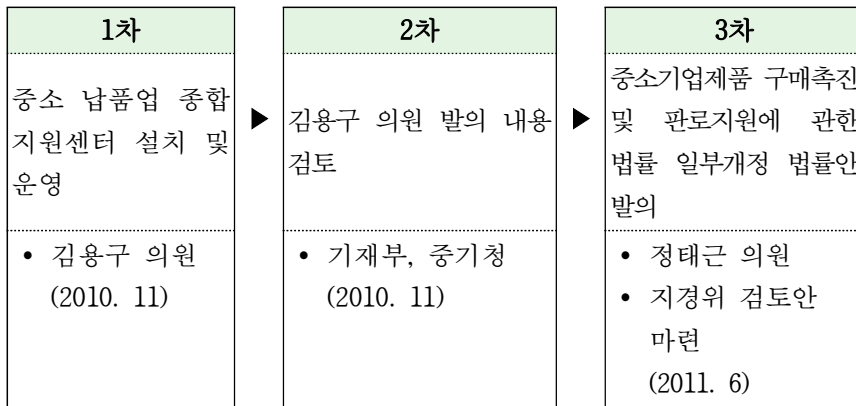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사업영역 확장 및 영업강화	중소납품업체 경영난 가중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보호 필요성 증대
--------------------------------	------------------	--------------------------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용구 의원은 2010년 11월 「중소 유통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2) ‘LG계열 MRO 서브윈, 中企상대 사업확장 중단’, 매일경제, 2011.6.13

및 운영 제반 비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자 보호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정태근 의원의 3차 발의를 후 지경위에서 검토안을 마련하여 「법인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가결되었다.

[그림 1-7] 개정 법률안 발의 과정



* 2011. 7. 25 판로지원법 개정 공포

개정된 판로지원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우선계약과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소모성자재 산업의 정기적 실태조사 등이 있다.

[판로지원법 개정 주요 내용]

- ① 제31조의 2(공공기관의 책무)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중소소모성자재 납품업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 중소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
- ② 제31조의 3(중소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중소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상담 및 그 밖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 ③ 제31조의 4(실태조사)
중소납품업자를 체계적 육성키 위한 중소기업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실태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개요

가. 조사배경 및 목적

최근 10년간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을 중심으로 국내 소모성 자재산업이 크게 성장·발전하였다. 국내 소모성자재산업의 성장에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이 기여한 역할에는 이의가 없으나 거대한 자본력과 그룹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통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왜곡된 시장지배 현상들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는 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 그간 중소기업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영역까지 시장을 확대하였다. 또한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특수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특수 관계사의 납품업체로 등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유도하였다. 또한 비교 견적 요구 등을 통한 납품단가 인하 압박으로 영세 납품업체의 수익은 계속 감소하였고, 이를 거부할 경우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의 거래에 불이익이 발생되거나, 납품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소모성자재 시장 현황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계조사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가 소모성자재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제조업체, 도소매업체 기준으로만 진행되어져 왔기 때문이며, 선행 조사 자료로는 소모성 자재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시장파악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소모성자재 유통에 관련된 물품 구매사, 자재구매대행업자, 중소납품업체를 중심으로 운영실태, 애로사항, 현재의 추진정책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선진국가의 소모성자재산업과 관련된 각종 지원정책과 사업운영 프로세스 등을 파악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학계의 연구 활동 등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방안, 영세 납품업체의 특화·육성방안과 같은 전략적인 정책을 탐색하고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나. 기대 효과

과거, 시장규모를 추정하거나 시장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언론정보를 활용하거나, 특정 기업의 의견·입장이 반영된 인터뷰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본 조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정보들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현실적인 정부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조사결과는 각종 연구기관, 대학, 협회 등의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발전되어 소모성자재 납품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조사 대상 및 정의

앞서 제기한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소모성 자재 산업에 관련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대규모 자재구매 대행업자,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민간 구매사, 공공 구매사 등 총5개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표 1-1] 소모성자재 관련업체 정의

구분		정의 및 내용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
자재구매 대행업자	대규모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
	중소규모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를 제외한 소모성자재 구매대행 사업자
구매사	민간	소모성자재를 소비하는 민간 기업이나 단체
	공공	소모성자재를 소비하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 대상별 특성과 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상이하여 대상별로 조사샘플 수, 조사방법 등에 차이를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2] 조사 대상 구분

구분	대상유형	모집단 규모	조사표본수	비고
구매사	공공기관	495개	495개	2012년 공공구매 목표비율 의무기관
	민간업체	3,293,558개	1,326,214개	매출액 50억~1천억원, 50억~500억원, 50억원 이하로 구분
자재구매 대행업자	대규모	18개	18개	-
	중소규모	17개	17개	
납품업자	소모성자재 납품	293,768개	800개	

1) 구매사

구매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였다. 공공기관 대상은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 495개 기관을 조사표본으로 선정하였고, 전수조사를 목표로 1:1방문조사, 전자설문, 이메일, 팩스, 우편조사 등을 병행 실시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495개 중 91%인 450개의 공공기관이 설문에 응하였다.

약 30여개 기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1 대면인터뷰를 실시하였고, 해당 기관의 구매 프로세스, 구매 관련 인력 운영현황, 애로사항, 정부지원 정책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청취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반영하였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총 사업체 수는 3,293,558개이며, 아래 표와 같이 소모성자재를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산업의 1,967,344개 업체를 제외하면 1,326,214개의 표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3] 제외 표본 산업

제외 표본 산업	사업체 수(개)
농업, 임업 및 어업	2,302
광업	1,840
식품품 제조업	53,749
음료 제조업	1,187
담배 제조업	13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3,761
도소매(일부)	861,736
운수업	344,071
숙박 및 음식점업	628,07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5,804
사업지원 서비스업	28,095
합계	1,967,344

자료: 통계청

민간 구매사의 조사표본은 「한국기업데이터」와 「매경SMT2012」를 통해 수집하였고, 민간기업의 다양한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매출액 구간별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매출액 구간은 1천억원 이상, 500억~1천억원, 50억원~500억원, 50억원 이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 자재구매대행업자

자재구매대행업자는 민간기업으로서 설문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경우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에 비해 구매 담당자와의 접촉이 쉽지 않았고,

담당자의 인터뷰 거부로 직접 방문조사의 효과가 적었다. 따라서 대규모 자재구매대행 업자는 소모성자재 시장에서 빅4라 불리는 아이마켓코리아, 서브윈, 엔투비, KeP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도 대규모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조사표본의 50%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3) 납품업체

납품업체는 800개를 목표로 조사하였다. 하지만 설문결과를 왜곡시킬 소지가 있는 데이터 제거를 위해 80개를 추가로 조사하여 총 880개의 결과 값을 얻었다. 이중 매출액 대비 소모성자재 판매·구매 비중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업체, 설문 답변률³⁾이 하위 5% 이하인 50개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830개를 대상으로 결과분석을 하였다.

3) 응답한 문항 개수 비중

2. 조사 근거

본 조사는 2011년 7월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제5장의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법률 제31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 및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의 제2항에서는 실태조사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의 요청과 함께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의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제31조의4(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조사 방안

가. 조사표본 설계

1) 모집단 구성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정의에 따라 도소매업체를 기반으로 소모성자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세 업종을 선별

모집단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도소매 중에서 소모성자재를 대변할 수 있는 업종을 선별하였다. 표준산업분류 체계에 근거한 2009년 기준 도소매 업체는 총 861,739개이며, 17개 카테고리에 따른 소모성자재 유통업체는 290,681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8] 모집단 구성 프로세스

도소매 업체 (861,739)	17개 카테고리 매칭 (290,68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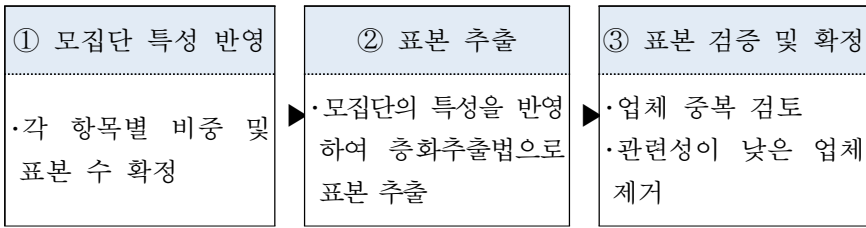
2) 표본 구성

표본은 할당표본추출법⁴⁾을 실시하여 모집단의 특성이 표본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층화추출법⁵⁾을 이용하여 통계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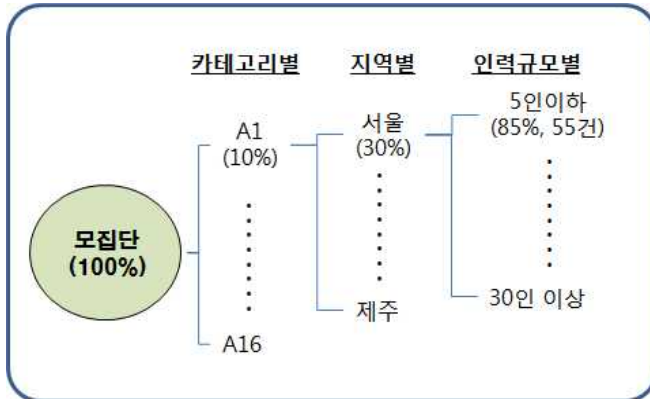
4) 할당표본추출법 : 조사대상자의 연령이나 성별 구분에 따라 모집단을 부분집단으로 나누고 각 부분집단별 모집단 구성비율과 표본의 구성비율이 유사하도록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

5) 층화추출법 : 모집단을 미리 임의수의 동질적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층에서 공평하게 표본을 임의추출하는 방법

[그림 1-9] 표본구성 프로세스



[그림 1-10] 모집단 특성 반영 예



나. 조사 방법

조사대상의 특성에 따라 조사기간을 달리하였다. 자재구매대행업자는 약 35일, 구매사 및 납품업체는 약 40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1-4] 조사 대상별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자재구매대행업자(대·중소규모)	2012년 5월 21일 ~ 6월 27일
구매사(공공, 민간), 납품업체	2012년 5월 21일 ~ 7월 3일

대상의 특성에 따라 설문 회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이메일, 팩스, 우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고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1:1방문 면접조사도 병행하여 구매 프로세스, 인력운영, 애로사항, 요구 정책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5] 조사 대상별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조사 방법
구매사(공공, 민간)	온라인, 팩스, 이메일, 우편 조사
자재구매대행업자 (대·중소규모), 납품업자	1:1방문면접조사 (Face-to-Face Interview) - 응답자의 편의 고려 및 응답률 제고를 위해 온라인, 팩스, 이메일 조사를 병행함

다. 조사 내용

조사 대상별 특성과 목적을 반영하여 설문방향에 차이를 두고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설문항목은 설문 목적의 부합 여부와 설문 응답자 이해도 및 편리성 증대를 위해 프리테스트(Pre-Test)를 수행한 후 최종 설문내용을 보완하였다.

1) 구매사 조사 내용

[표 1-6] 구매사(공공기관) 설문 구성 및 내용

설문 구성	설문 내용
구매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도 구매액 및 2012년도 구매목표액 - 총 구매액, 물품 구매액(용역, 공사 등 제외), 소모성 자재 구매액 • 구매 유형별 구매액, 구매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 비중이 높은 유형을 이용하는 사유 • 구매 유형중 이용이 가장 편리한 방법 • 자재구매대행업자 이용시 주요 거래처 및 구매액
운영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에 투입된 인력 및 현 적정 구매인력 • 충원계획
시스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를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 여부 • 시스템 구축 이유 및 외부 시스템 이용 이유
애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모성자재 구매와 관련한 애로사항 • 자재구매대행업자, 조달청, 직접구매 시 애로사항 및 장점
판로지원법 개정 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판로지원법 인지여부 •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구매업무 변화 방식 •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구매인력에 대한 변동사항 • 중소기업 MRO물 이용의사 • 이용의사 없을 시 사유 • 공공기관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표 1-7] 구매사(민간업체) 설문 구성 및 내용

설문 구성	설문 내용
구매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도 구매액 및 2012년도 구매목표액 - 총 구매액, 물품 구매액(용역, 공사 등 제외), 소모성 자재 구매액 • 자재구매대행업자 계열사 보유 현황 • 소모성자재 구입 유형별 구매액 또는 비중
운영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에 투입된 인력 및 현 적정 구매인력 • 충원계획
애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구매대행업자, 직접구매 시 애로사항 및 장점
중소기업 상생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판로지원법 인지여부 및 알고 있는 중소납품 업체 보호정책 • 소모성자재 납품 중소기업과의 상생의사 및 상생방법 •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구매인력에 대한 변동사항 • 중소기업 MRO물 이용 의사 • 이용의사가 없을 시 사유

2) 자재구매대행업자 조사 내용

[표 1-8] 자재구매대행업자(대규모) 설문 구성 및 내용

설문 구성	설문 내용
기업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력, 종업원 수, 2011년 기준 매출액
납품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구매처 수 및 물품 판매처 수 • 물품 구매처 선정기준 및 선정 사유
시스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를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 여부 및 비용 • 시스템이 없는 이유 및 구매대행 사업진행 방식
판매/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처 확보방법 및 판매처 유형별 거래업체 수 • 2011년 기준 판매처 유형별 기준과 마진 • 소모성자재 품목별 판매 순위(5순위) • 물류창고 보유여부 및 보유현황 • 거래처 대금결제 방식 및 비중, 판매대금 및 매입대금 회수 기간
거래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판매처 및 매입처와 거래 시 애로사항 • 공공기관 납품현황
중소기업 상생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판로지원법 인지 여부 및 필요한 정부 지원 분야 • 소모성자재 납품 중소기업과의 상생의사 및 상생방법

[표 1-9] 자재구매대행업자(중소규모) 설문 구성 및 내용

설문 구성	설문 내용
기업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력, 종업원 수, 2011년 기준 매출액
납품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구매처 수 및 물품 판매처 수 • 물품 구매처 선정기준 및 선정 사유
시스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를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여부 및 구축비용 • 시스템이 없는 이유 및 구매대행 사업진행 방식
판매/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처 확보방법 및 판매처 유형별 거래업체 수 • 2011년 기준 판매처 유형별 기준과 마진 • 소모성자재 품목별 판매 순위(5순위) • 물류창고 보유여부 및 보유현황 • 거래처 대금결제 방식 및 비중, 판매대금 및 매입대금 회수 기간
거래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판매처 및 매입처와 거래 시 애로사항 • 공공기관 납품현황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사업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경험 및 사례 • 피해를 막기 위해 개발해야 할 정부지원 정책 •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구매업무 변화 방식
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판로지원법 인지 여부 및 필요한 정부 지원 분야 •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인지여부 및 지원 받고 싶은 분야 • 중소기업 MRO물 이용 의사

3) 납품업체 조사 내용

[표 1-10] 납품업체 설문 구성 및 내용

설문 구성	설문 내용
기업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하는 소모성자재 품목 • 업체, 월평균 종사자 수, 2011년 기준 매출액, 매출 유형별 비중 등
구매/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 상품의 매입처 및 구성비 • 기업형태, 원부자재 조달방식, 제품 생산 방식 • 취급 상품의 물품 판매처 유형별 현황 • 판매처 확보 방법, 주된 영업 활동, 판로개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판매/매입 대금 결제방식, 대금 회수 기간 • 물류창고 보유여부 및 현황, 정부가 공동 물류창고 구축 시 이용 여부 • 납품 방법 및 주 배송지역
거래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가격 산정 시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 비율 및 사유 • 자재구매대행업자, 조달청, 공공기관 납품, 민간 직납 시 애로사항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사업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시장 확대에 따른 애로 • 피해 경험 및 사례 • 피해를 막기위해 개발해야 할 정부지원 정책 •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구매업무 변화 방식
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판로지원법 인지 여부 및 필요한 정부 지원 분야 • 소모성자재 관련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 가격 중심의 과잉경쟁 탈피를 위한 새로운 납품 기준 •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인지도 및 지원받고 싶은 분야 • 중소기업 공동 MRO물 인지도 및 이용 여부

라. 실사 진행 및 통계 분석

1) 실사 진행

본 조사는 TF팀 구성 및 준비 회의, 조사대상 선정, 면접원 선발 및 교육, 본조사 진행 및 면접원 통제, 자료입력 및 점검, 검증 등 총 6단계의 과정으로 추진하였다.

[표 1-11] 실사 진행 절차

단 계	활동 사항
TFT 구성 및 준비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연구원, 실사담당자, 전산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회의 개최 • 조사목적, 표본추출법, 설문지, 조사대상 선정 등 전반적인 실사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실사지침을 공유
↓	
조사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표본을 추출함 • 전체 기업체 DB에서 표본설계에 의해 카테고리별/지역별/인력규모별 기업리스트를 작성 후 설정된 표본크기의 5배수를 각 층별로 추출한 다음, 층화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표본대상 기업을 선정함 • 선정된 기업의 리스트를 확보(사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리스트 정리팀을 운영해 조사대상 사업체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한 후 본 표본과 대체표본으로 구분 정리
↓	
면접원 선발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 조사경력 5년 이상의 전문 면접원 중 평가가 A 등급 이상인 우수 면접원 우선 선발 • 실무연구원이 참관하여 Orientation을 진행하고, Role-play 식의 사전교육을 실시 • 조사 자료의 20% 회수 시점에 전체 데이터의 확인 및 중간점검 교육 실시

가. 산업별 분포

2012년 소모성자재 납품업 현황과약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조사되는 품목군은 피복, 통신/보안, 청소/생활, 철강재류, 전산용품, 전기/조명, 운송/포장/저장, 연료/화학, 실험측정, 생산/기계, 산업/안전, 사무용품, 사무가구, 기계부품/배관, 공구류, 건설자재, 가전류의 17개의 분류로 나누어진다.

[표 1-12] MRO 취급품목군별 기업체 수

구분	N	구성비 (%)
피복	14,534	5.0%
통신/보안	3,197	1.1%
청소/생활	19,766	6.8%
철강재류	4,942	1.7%
전산용품	19,766	6.8%
전기/조명	3,488	1.2%
운송/포장/저장	9,883	3.4%
연료/화학	19,476	6.7%
실험측정	15,987	5.5%
생산/기계	13,662	4.7%
산업/안전	79,647	27.4%
사무용품	10,465	3.5%
사무가구	21,510	7.4%
기계부품/배관	4,070	1.4%
공구류	5,232	1.8%
건설자재	33,719	11.6%
가전류	11,337	3.9%
합 계	290,681	100.0%

나. 지역별 분포

소모성자재 품목군의 기업체 수를 지역별로 구분한 결과 지역 간 분포차가 크므로(특히 서울, 경기도 전체의 45%가 집중되어 있음) 이를 고려하여 표본설계를 실시하였다.

[표 1-13] 지역별 소모성자재 품목군의 기업체 수

구분	N	구성비 (%)
서울특별시	79,937	27.5%
부산광역시	23,836	8.2%
대구광역시	16,859	5.8%
인천광역시	12,209	4.2%
광주광역시	8,720	3.0%
대전광역시	8,139	2.8%
울산광역시	5,814	2.0%
경기도	52,032	17.9%
강원도	8,430	2.9%
충청북도	8,430	2.9%
충청남도	10,465	3.6%
전라북도	10,465	3.6%
전라남도	10,174	3.5%
경상북도	14,243	4.9%
경상남도	17,732	6.0%
제주도	3,197	1.1%
합 계	290,681	100.0%

5.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가. 표본설계

1단계 : 품목군별 기업체 수에 비례하여 뽑는 확률비례추출법⁶⁾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 PPS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셀별로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

[표 1-14] 1단계 표본할당 결과

품목군별	모집단 구성	구성비	표본 구성	표본 구성비
전체	290,681	100.0%	830	100.0%
피복	14,534	5.0%	42	5.0%
통신/보안	3,197	1.1%	9	1.1%
청소/생활	19,766	6.8%	56	6.8%
철강재류	4,942	1.7%	14	1.7%
전산용품	19,766	6.8%	56	6.8%
전기/조명	3,488	1.2%	10	1.2%
운송/포장/저장	9,883	3.4%	28	3.4%
연료/화학	19,476	6.7%	56	6.7%
실험측정	15,987	5.5%	46	5.5%
생산/기계	13,662	4.7%	39	4.7%
산업/안전	79,647	27.4%	227	27.4%
사무용품	10,465	3.5%	29	3.5%
사무가구	21,510	7.4%	62	7.4%
기계/배관	4,070	1.4%	12	1.4%
공구류	5,232	1.8%	15	1.8%
건설자재	33,719	11.6%	96	11.6%
가전류	11,337	3.9%	32	3.9%

6) 모집단의 규모에 비례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2단계 : 1단계 표본구성에서 할당 값이 너무 적어 신뢰수준을 유지하기 힘든 셀에 대해서는 30표본을 강제할당 하고, 강제 할당으로 인해 초과한 표본수는 1단계 표본 구성비가 15.0% 이상인 품목의 표본수를 보정하여 최종 표본을 구성하였다.

[표 1-15] 최종 표본할당 결과

품목군별	1단계 표본 구성	1단계 표본 구성비	최종 표본 구성	최종 표본 구성비
전체	830	100.0%	830	100.0%
피복	42	5.0%	42	5.0%
통신/보안	9	1.1%	30	3.8%
청소/생활	56	6.8%	56	6.8%
철강재류	14	1.7%	30	3.8%
전산용품	56	6.8%	52	6.8%
전기/조명	10	1.2%	30	3.8%
운송/포장/저장	28	3.4%	30	3.8%
연료/화학	56	6.7%	56	6.7%
실험측정	46	5.5%	46	5.5%
생산/기계	39	4.7%	39	4.7%
산업/안전	227	27.4%	139	15.5%
사무용품	29	3.5%	30	3.8%
사무가구	62	7.4%	62	7.4%
기계부품/배관	12	1.4%	30	3.8%
공구류	15	1.8%	30	3.8%
건설자재	96	11.6%	96	11.6%
가전류	32	3.9%	32	3.9%

나. 표본추출

조사 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소모성자재를 공급, 납품, 구매하는 업체를 추출하였다.

※ 830개 샘플의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46%를 갖는다.

$$\text{표본오차} = 1.96 * \sqrt{\frac{\hat{p}(1-\hat{p})}{n}}$$

여기에서,

\hat{p} = 모집단 비율추정치 = 0.5

n = 표본 수 = 800

1.96 = 95% 신뢰구간

제 4 장

소모성자재 현황조사 결과요약

1. 실태조사 방법

가. 조사 개요

「2012년 소모성자재 산업현황 및 실태조사」란 제목으로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 물품 구매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소모성자재 시장환경 및 현황, 공공기관내 소모성자재 구매 실태,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불공정 거래 현황, 중소기업의 실태 및 애로사항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체계적 육성 방안 수립 등의 발전과제를 도출하였다.

[표 1-16] 조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조사명	2012년 소모성자재 산업현황 및 실태조사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1:1대면조사 등
기간	2012년 3월 ~ 2012년 7월
대상	중소 납품업체, 자재구매대행업자, 물품 구매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모성자재 시장환경 및 현황 · 공공기관내 소모성자재 구매현황 ·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불공정 사례현황 · 중소기업 실태 및 애로사항 ·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체계적 육성 방안 수립 등

나. 조사 방법

[표 1-17] 조사 대상별 설문 구성

조사대상		설문구성방향
중소납품업체		· 피해사례 조사 및 애로사항 파악 · 중소기업 Needs파악을 통한 효율적 정책방안 설정
자재구매 대행업자	중소규모	
	대규모	· 내부거래, 불공정거래 사례 등 파악
구매사	공공	· 중소기업업체 구매현황 및 대기업 거래여부 등
	민간	· 소모성자재 구매실태 및 중소기업업체 거래현황 등

설문방법은 1:1 대면조사, 팩스, 이메일, 우편, 전자설문 등 응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고, 설문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류수정 및 검증작업을 실시하였다.

[표 1-18] 조사대상별 표본추출

구분		모집단	표본		최종 표본수
				%	
중소납품업체		290,681	3,000	1	830
자재구매 대행업자	중소규모	17	17	100	9
	대규모	20	20	100	6
구매사	공공	890	495	56	450
	민간	3,002,840	1,326,214	40	45
총계		3,294,448	1,329,746	40	1,340

*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 오차범위 ±3.46%

2. 실태조사 결과 요약

가. 국내 소모성자재 시장현황 ('11년 기준)

- 국내 소모성자재 시장규모는 22조 6,500억원
- 민간시장이 93%로 21조 900억원
 - 공공시장이 7%로 1조 5,600억원

민간 시장이 21조 900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93.2%를 차지하였고, 공공 시장이 1조 5,600억원으로 6.8%에 불과하였다.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시장이 11조 2,900억원으로 49.8%를, 대기업이 11조 3,600억원으로 50.2%를 차지하였다.

[표 1-19] 유형별 시장 규모 및 비중

구분		시장규모(억원)	비중(%)
시장별	민간	210,900	93.2
	공공	15,600	6.8
규모별	중소기업	112,900	49.8
	대기업	113,600	50.2

나. 소모성자재 납품업 실태

1) 일반현황

국내 소모성자재 납품업 사업체 수는 약 29만개이며, 종사자 수는 약 78만명으로 조사되었다.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별 평균 매출액은 3억 800만원이나 도소매업 연평균 매출액이 7억 4,000만원으로 약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 다수의 납품업체가 수도권과 영남 등 특정 지역에 편중
 - 중소 납품업체는 인력 및 전문성 등의 영업 경쟁력이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에 비해 열악

전체 조사업체의 78%가 수도권(47.6%)과 영남(30.2%)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기업체, 공공기관 등 소모성 자재 수요처가 많은 인근 지역에 납품업체가 집중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소납품업체는 전문인력 부족에 따라 영업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납품업체의 평균 영업 전담인력은 2.2명에 불과하였다.

2) 생산·판매 현황

다수의 중소납품업체가 물류창고를 보유하지 않음

중소납품업체의 경우 64%가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상가 내 창고수준인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취급물품이 다양하지 못해 물류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중소 납품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는 응답자의 83%가 평균 3개의 물류 센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16명의 물류관리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는 자체 보유 물류센터를 통해 다양한 물품의 효율적 배송체계를 구축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물류센터를 통해 물품의 매입단가 인하와 물류비 절감을 통해 사업운영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수의 중소납품업체는 매입가 인상분을 판매가에 반영 못함

대다수의 중소 납품업체는 매입가격 인상에 따라 발생된 비용증가 부분을 판매가에 적극 반영하지 못해 수익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중소납품업체의 55.1%가 매입가 인상분의 50% 정도만을 반영하고 있었다.

3) 결제 현황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에서 중소납품업체로 내려갈수록 평균 회수기간이 악화(1.66개월 → 1.91개월)되고 있으며, 현금결제 비율도 최대 2배(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66%, 중소규모 자재 구매대행업자 34%)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음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는 현금카드 결제비중이 83%이며, 1개월 이내 전체 금액의 33%가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는 현금결제비중이 34%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중소기업체는 회수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28%에 달하고 있다.

[표 1-20] 조사 대상별 결제현황

조사대상		매출대금관련	
		주요 결제방법	평균 회수기간
중소납품업체		현금(53%), 어음(27%)	1.91개월
자재구매 대행업자	중소규모	현금(34%), 어음(22%)	1.78개월
	대규모	현금(66%), 카드(17%)	1.66개월

* (중소납품업체) 1개월(24%), 2개월(35%), 3개월(28%) 등
 (중소규모 자재구매업자) 1개월(33%), 2개월(56%), 3개월(11%) 등
 (대규모 자재구매업자) 1개월(33%), 2개월(66%) 등

4) 전자상거래 시스템 보유 현황

다수의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평균 11명의 전산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는 기 구축한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사에 구매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의 경우 55%만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었고, 시스템도 쇼핑물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수준의 서비스 제공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유하고 있는 전산인력도 1.5명 수준으로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11명에 비교하여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애로사항

1) 중소 납품업체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선정

중소 납품업체는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또는 공공기관과 거래 시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기타 애로사항으로는 대금지급 지연(19%),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17%), 갑작스런 거래중단(7%) 등이 있었다. 민간기업 거래 시에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공공기관 거래 시에는 최저가 입찰에 따른 저마진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선정

중소납품업체가 공공기관과 거래 할 경우 최저가에 대한 애로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준비절차 복잡과 조달요건 충족 등의 어려움도 컸으며, 신용도 및 까다로운 품질요구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파악되었다.

2)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납품단가 인하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선정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주요 애로사항은 물품 구매사의 납품단가 인하요구가 가장 컸으며, 갑작스런 거래중단, 납품대금 지급지연 등이 있었다.

공공기관과 거래 시에는 중소납품업체와 마찬가지로 최저가 입찰에 따른 수익 저조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으며, 까다로운 품질 요구수준도 큰 어려움으로 조사되었다.

3) 공공기관

납품력이 검증된 우수 중소 납품업체 발굴이 어려움

공공기관이 소모성자재를 구매할 경우 납품력이 검증된 우수 중소 납품업체의 발굴이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조달청을 통한 구매 시에는 입찰등록 및 구매시간 지연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선정되었고, 유찰 등 납기지연, 통계작성의 어려움, 다양하지 못한 품목 등이 있었다.

직접 구매 할 경우 건별로 납품업체를 선정해야하는 불편함과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 주된 애로로 조사되었다.

라. 정부정책관련

다수의 업체가 개정된 판로지원법에 대해 모르고 있음

소모성자재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82%,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의 67%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공기관도 23%가 소모성자재 구매와 관련된 법률개정여부를 모르고 있었으며, 개정여부를 알고 있어도 업무에 적용하는 경우는 60% 수준에 불과하였다.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69%, 중소기업 자재구매 대행업자의 78%가 모르고 있었다.

마. 시사점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지원과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불공정 거래요인 제거가 중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불공정 거래요인 제거를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거래비중 확대 및 입찰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내부거래 감시 강화 및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관리감독을 통한 공정 거래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또한, 기존 정책의 인지도가 낮음에 따라 효율적 정책개발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의 병행추진 필요하다.

3. 해외 소모성자재 산업 지원정책 현황

가. 해외사례요약

해외는 소모성자재에 대한 개념은 있으나 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음

경제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발달한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국가 산업이 발전하였다. 소모성자재 산업 역시 다양한 민간 협회 및 단체들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소모성자재 지원사업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해외 소모성자재 시장현황

[표 1-21] 주요 국가별 소모성자재 시장규모

국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시장규모	3,520억 달러	620억 달러	279억 유로	197억 유로
출처	미국센서스	일본경제산업성	Mediametrie	EITO

다. 주요국가별 세부정책현황

1) 미국

시장 자유경쟁 논리에 따라 시장 내 정부간섭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독과점 피해방지 등 공정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정책만을 실행하고 있다. 주로 민간기관·협회 등이 주체가 되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중소기업의 산업비중이 높아 국내와 같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산업이 발전되었으나 최근에는 정책의 기조가 변경되어 기업 간 자유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3) 프랑스

1950년대부터 대기업 독과점 철폐 및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운영하였고, 주요 제도로는 신경제조정법, 창업촉진법, 중소기업진흥법 등이 있으나 소모성자재를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은 없다.

4) 독일

소모성자재 산업은 민간 협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성장 및 발전하였고, 정부보다는 민간차원의 다양한 지원활동(규격 제정, 공동구매, 마케팅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소모성자재 산업 발전과제와 전략

가. 발전과제 도출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소모성자재 산업에 내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안을 제시하였다.

- ① 중소납품업체 육성전략
- ② 중소납품업체 입찰참여 확대전략
- ③ 소모성자재 산업 인프라 발전전략

소모성자재 산업 특히, 납품업에 내재된 문제점이 일반 도소매 분야의 납품업과 상이함이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해외 선진국은 국내와 달리 중소기업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지배체제에 종속되지 않고 자생적 생존이 가능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중소기업이 우수기술, 우수제품 조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서 독자적인 생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생존에 필요한 안정적 판매망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지원 해주고, 자생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나. 중소기업 육성 전략

- ① 영업·마케팅 교육 내실화 및 홍보강화
- ② 판로개척 지원확대
- ③ 수출역량 강화지원

1) 영업·마케팅 교육 내실화 및 홍보강화

영세한 중소기업에 가장 중요한 지원 요소 중 하나는 자금 지원이다. 하지만 자금지원은 더 이상 중소기업의 자생적 생존력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 더구나 판로개척을 위한 필요지원 사항으로 영업·마케팅 교육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방향성은 교육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선회되어야 한다.

2) 판로개척 지원확대

소모성자재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영업력이 낮아 매출확대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판로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장·단기 지원방법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영업·마케팅 교육은 장기적 지원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 지원방법으로는 소모성자재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중심의 유통구조 속에서 중소기업만의 실질적인 거래가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MRO몰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공동MRO몰의 물품 구매사를 공공영역에서 민간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거나 감면하는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상생차원으로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연계한 판로지원 사업도 시행하여 대기업의 사회공헌 이미지도 제고하고, 실질적인 판로 지원도 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3) 수출 역량 강화지원

해외 유명 박람회 참가지원, 해외 전략지역 토탈(Total) 마케팅 지원 등 소모성자재 물품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수출 역량을 위한 다수의 박람회 참가지원 제도가 일회성으로 끝나 실질적인 매출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최소 3년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하고자 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 산업의 특성, 관행, 제도, 바이어 특징 등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해 현지화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 중소납품업체 참여업체 수 확대

- ① 납품 쿠퍼제 시행
- ② 지역연고 우선납품
- ③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일부 중소기업업체로 지원혜택이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납품 쿠틀제, 지역연고 우선납품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업체당 납품 상한선을 두어 일부 중소기업업체로 납품기회가 집중화 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해당 지역의 고객사는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업체 물건을 우선 구매토록하여 지역 납품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소모성자재 산업 인프라 발전 전략

- ①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발전 방안
- ② 소모성자재 통합 구매·관리 시스템 운영
- ③ 소모성자재 공제조합 설립 운영

1)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발전 방안

「중소 소모성자재 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중소기업업체 지원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소모성자재 구매실적을 통합관리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정보취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독립적인 기구로 분리·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소모성자재 산업에 대한 정의 체계화와 소모성자재 산업에 대한 정책연구, 산업정보 제공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인식하고 있는 중소기업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센터를 위한 별도의 홍보계획도 필요하다.

2) 소모성자재 통합 구매·관리 시스템 운영

소모성자재 구매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담당자의 업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

다수의 공공기관이 소모성자재 구매관리를 체계적으로 못하고 있음이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구매실적 관리 시스템(SMPP)과 같은 공공기관의 소모성자재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3) 소모성자재 공제조합 설립 운영

중소 소모성자재 관련업체들의 경우 담보력이 취약하여 기존의 금융제도 하에서는 자금이나 보증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소모성자재 관련업체의 상호협동과 자율적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모성자재 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시행하는 제도적인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마.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

법률상의 중소기업업체와 중소기업의 범위가 상이함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업체 여부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업체임을 인증하여 보다 손쉽게 공공시장에 진입토록 지원해야 한다.

제2부

소모성자재 산업 현황

제1장 소모성자재 산업 현황 요약

제2장 소모성자재 시장구조

1. 소모성자재 유통구조
2. 소모성자재 관련업체 정의 및 특징

제3장 소모성자재 시장규모

1. 소모성자재 시장규모 종합
2. 부문별 시장규모 추정
3. 기업 규모별 시장규모 추정

제4장 소모성자재 시장 현황

1. 중소납품업체 시장
2.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 시장
3.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 시장
4. 공공 소비 시장
5. 민간 소비 시장

제 1 장

소모성자재 산업 현황 요약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모성자재와 관련된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약 29만개 정도로 추정되며, 2007~2009년 기준으로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종사자는 약 70~80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자재구매대행업자는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와 그룹계열사 보유 여부에 따라 대규모와 중소규모로 구분하였다.
 -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로 조사된 업체는 약 18개가 있으나 사업의 철수 등으로 최종 확인된 업체는 약 15개 정도이다.
 -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로 조사된 업체는 약 17개 정도이다.

-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국내 소모성자재 시장은 약 22조 6,500 억원으로 추정된다.
 - 민간이 21조 900억원(86.2%), 공공이 1조 5,600억원(13.8%)
 - 대기업이 11조 3,600억원(50.2%), 중소기업이 11조 2,900억원(49.8%)

- 중소납품업체는 개인사업체 위주의 조직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이 단순 유통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를 겸하는 중소납품업체는 5대 의무구매품목과 같은 정부 우선 구매 인증 등을 보유한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중소기업 납품업체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며, 3인 이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평균 매출액이 일반 도소매업 평균 매출액보다 낮아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의 경영상태가 좋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류창고는 다수의 업체가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물류창고도 대부분이 상가 내 창고수준이었다. 공동물류창고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성 문제로 이용의사가 높지 않았다.
 - 영업전담 인력도 적고, 판매를 견인할 동인이 적어 매출 증대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관계 형성이 영업의 주요 활동이었다. 판매대금 대부분은 2~3개월 이내 현금으로 회수되나 물품 매입대금은 구매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는 관행으로 인해 자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사업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요청이었으며, 공공기관은 거래절차의 복잡, 낮은 마진률로 인한 애로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는 그룹 계열사의 지원이 가능한 업체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충분한 자금력과 인력을 활용하여 판로처를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 물류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금의 지급은 늦고, 판매대금의 회수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과는 최저가 입찰에 따른 저마진과 까다로운 입찰절차로 거래의사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는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달리 구매대행 사업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자체 인력을 통해 영업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다. 대부분 물류창고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며 지역에 기반한 제한된 영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마찬가지로 납품업체에게 다소 불리한 형태로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고 있었다.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는 공공기관과의 거래의사는 있으나 최저가 입찰에 따른 마진저하, 입찰요건 획득의 어려움 등으로 거래를 꺼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공기관은 나라장터를 통한 물품구매보다 직접거래에 의한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장터는 의무구매품목, 중소기업 제품을 선별적으로 구매할 때만 이용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는 구매에 있어 신속성, 편의성,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매 인력은 평균 1명 이하였으며, 대부분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다. 주된 애로사항은 납품력이 검증된 중소납품업체를 발굴하는 것이었으며 현재 이용하는 시스템은 소량구매 및 분리발주가 어렵다는 기타 의견이 있었다.
- 민간시장에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소모성자재의 소비량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간기업은 자재구매대행업자를 편의성과 효율성 증대의 이유로 선호하였으며, 직접구매 이용은 비용절감 때문에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자재구매대행업자 이용 시 빈번한 납품지연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으며, 직접구매 이용은 부가 업무과다를 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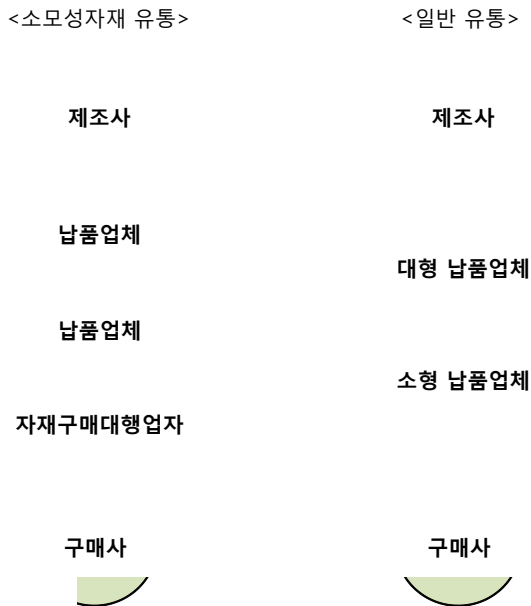
소모성자재 시장구조

1. 소모성자재 유통구조

가. 소모성자재 유통구조 특이성

일반적인 유통구조와 소모성자재 유통구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재를 구매대행해주는 대규모 중간 유통상의 존재여부와 역할이다.

[그림 2-1] 납품업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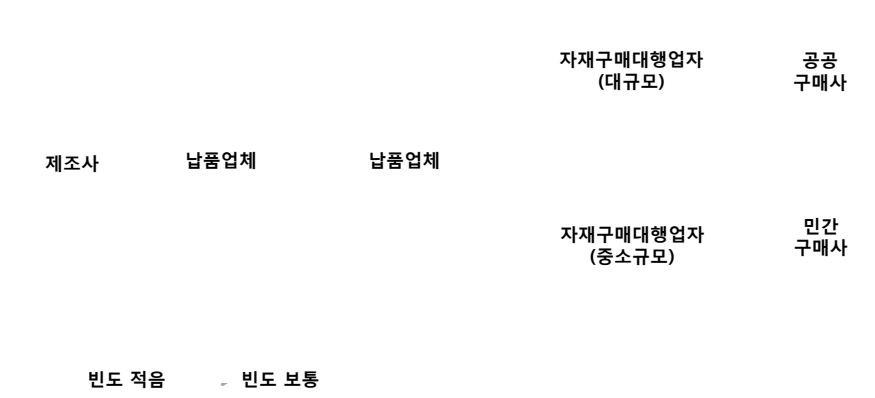


일반 유통구조는 제조사가 물품 구매사에 직접납품을 하거나, 단계별 유통업체를 거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소모성자재는 단계별 유통업체 외에도 자재구매대행업자란 특수한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나. 소모성자재 유통범위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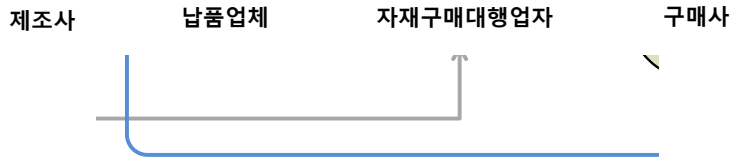
소모성자재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납품된다. 첫째, 제조사가 물품 구매사에 직접 납품하거나 둘째, 유통업체를 통해 납품하거나 셋째, 자재구매대행업자를 통해 납품하는 경우이다.

[그림 2-2] 소모성자재 유통구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모성자재 유통의 범위를 납품업에 제조를 포함하지 않는 도소매로만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모성자재의 유통은 중간 납품업체와 자재구매대행업자를 통한 거래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한다.

[그림 2-3] 제한된 소모성자재 유통구조



2. 소모성자재 관련업체 정의 및 특징

소모성자재 관련 중사업체는 중소 납품업체, 자재구매대행업자, 구매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재구매대행업자는 기업규모에 따라 대규모와 중소규모로 구분되며, 구매사는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된다.

[표 2-1] 소모성자재 관련업체 정의

구분		정의 및 내용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 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
자재구매 대행업자	대규모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
	중소규모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를 제외한 소모성자재 구매대행 사업자
구매사	민간	소모성자재를 소비하는 민간 기업이나 단체
	공공	소모성자재를 소비하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

1) 소모성자재 종사업체 현황

소모성자재 정의에 따른 관련업체 수는 2009년 기준 약 28만6천개로 추정된다. 소모성자재 관련업체는 2007년 291,796개에서 2009년 285,891개로 5,905개 감소되었다. 연평균 성장률(CAGR⁷⁾, 2007~2009년)을 보면 -1%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연도별 업체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09년 기준 비중	CAGR
가전류	10,066	9,793	9,767	3.4	-1.5%
건설자재	36,024	34,223	33,458	11.7	-3.6%
공구류	7,974	8,238	8,610	3.0	3.9%
기계부품/배관/유공압	14,179	14,032	14,109	4.9	-0.2%
사무가구	11,482	11,234	10,939	3.8	-2.4%
사무용품	27,718	26,773	26,042	9.1	-3.1%
생산/기계장비	23,896	24,627	24,840	8.7	2.0%
실험/측정	1,030	1,038	1,048	0.4	0.9%
연료/화학	38,661	36,968	37,155	13.0	-2.0%
운송/포장/저장	2,383	2,593	2,860	1.0	9.6%
전기/조명	7,436	7,187	7,106	2.5	-2.2%
전산용품	12,883	11,493	11,039	3.9	-7.4%
철강재류	15,818	15,624	15,059	5.3	-2.4%
청소/생활	39,294	38,030	37,673	13.2	-2.1%
통신/보안	18,081	19,830	22,408	7.8	11.3%
피복	24,871	23,794	23,778	8.3	-2.2%
총합계	291,796	285,477	285,891	100.0	-1.0%

* 자료: 통계청(2009, 시도/사업/종사자규모별 현황) 가공

카테고리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전산용품이 -7.4%, 건설자재가 -3.6%, 사무용품이 -3.1%로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였다. 반면

7)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s): 연평균복합성장률로 특정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을 말함. 산술평균 대신 기하평균으로 계산

통신/보안은 11.3%, 운송/포장/저장이 9.6%, 공구류가 3.9%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07~2009년 3개년 중 업체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해는 2008년도이다.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여 소모성자재 관련 납품업체의 폐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모성자재는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경기불황, 경영상태 악화 등 긴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선 감축 대상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림 2-4] 연도별 업체 현황

(단위:개)



소모성자재 관련 종사자 수는 약 82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2007년 78만7천명에서 2009년 819,576명으로 31,709명이 증가되었다. 연평균 성장률(CAGR, 2007~2009년)을 보면 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3] 연도별 종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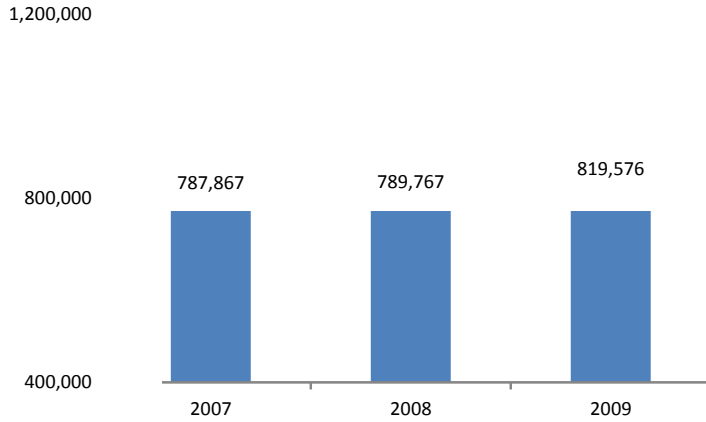
구분	2007	2008	2009	2009년 기준 비중	CAGR
가전류	41,964	43,163	44,753	5.5%	3.3%
건설자재	87,792	83,360	85,555	10.4%	-1.3%
공구류	19,738	20,857	22,086	2.7%	5.8%
기계부품/배관/유공압	40,519	40,506	42,428	5.2%	2.3%
사무가구	25,175	24,174	23,769	2.9%	-2.8%
사무용품	62,548	61,336	61,596	7.5%	-0.8%
생산/기계장비	90,418	95,936	101,049	12.3%	5.7%
실험/측정	5,521	6,394	6,859	0.8%	11.5%
연료/화학	104,591	105,425	112,924	13.8%	3.9%
운송/포장/저장	3,536	4,097	4,941	0.6%	18.2%
전기/조명	14,934	14,907	15,428	1.9%	1.6%
전산용품	50,586	43,104	43,474	5.3%	-7.3%
철강재류	25,514	24,745	24,092	2.9%	-2.8%
청소/생활	86,629	84,568	85,582	10.4%	-0.6%
통신/보안	56,278	62,639	66,489	8.1%	8.7%
피복	72,124	74,556	78,551	9.6%	4.4%
총합계	787,867	789,767	819,576		2.0%

* 자료: 통계청(2009, 시도/사업/종사자규모별 현황) 가공

카테고리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전산용품이 -7.3%, 사무가구가 -2.8%, 철강재류가 -2.8%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반면 운송/포장/저장이 18.2%, 실험/측정이 11.5%, 통신/보안이 8.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림 2-5] 연도별 종사자 현황

(단위:명)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를 보면 2007년 이후 0.1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연도별 평균 종사자 수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평균 종사자 수(B/A)	2.7명	2.8명	2.9명
업체 수(A)	291,796	285,477	285,891
종사자 수(B)	787,867	789,767	819,576

나. 자재구매대행업자

자재구매대행업자란 소모성자재를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에게 납품 받아 수요기관에 납품 대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매출액과 그룹계열사 보유 여부에 따라 대규모와 중소기업으로 구분한다.

1)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로 정의되어 있다⁸⁾. 대기업이란 상시종업원 수가 200명 이상이며, 연매출액이 200억 이상인 기업을 말하며, 2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정의한다⁹⁾.

정의에 따라 해당 업체를 조사한 결과 약 18개 업체가 해당되었으나 조사결과 BATTZ, 현대H&S, SK이비드는 내부 사정으로 사업에서 철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최종 대상은 15개로 감소하였다.

[표 2-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조사대상

번호	조사 표본	그룹사명	주요 품목
1	서브윈	LG	산업자재, 문구, 전기
2	아이마켓코리아	삼성	산업자재
3	엔투비	포스코	공구, 전기전자, 문구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중소기업법, 제2조, 도소매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개념

4	KeP	코오롱	소방안전, 청소, 공구
5	행복나래	SK	건설, 기계, 전자
6	HIMS	현대중공업	원부자재, 기계, 문구
7	KT커머스	KT	산업자재
8	포스아이	STX	원부자재, 산업자재
9	신세계I&C	신세계	문구, 공구, 전기전자
10	웅진해피올	웅진	가구, 가전, 문구
11	동양네트웍스	동양	기계, 공구, 문구
12	제일기프트	LG텔레콤	문구, 공구
13	대평코퍼레이션	대명그룹	건설자재, 레저
14	오피스디포코리아	베스트오피스	사무
15	오피스웨이	무림오피스웨이	문구, 사무
16	BATTZ	현대차그룹	자동차 부품
17	현대H&S	현대백화점	원부자재
18	SK이비드	SK	기계, 전기, 배관

* 기업 소속(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구분이 확정되지 않고, 법률적인 해석상에 모호함이 있는 일부 기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2)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서 정의한 중소납품업체 중 구매대행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정의에 따른 해당 업체는 약 17개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업체는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를 우선 조사하였고, 온라인으로 검색된 업체와 직접 통화를 통해 해당여부를 파악하였다.

[표 2-6]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

번호	조사 표본	주요 품목
1	다산엠알오	전기, 공구
2	동아엠알오	사무, 전기, 생활용품
3	매크로21	사무, 생활용품
4	비즈셀프	사무, 잡자재
5	비즈엠알오	사무, 생활, 산업용품
6	사비엠알오	산업자재, 사무
7	산유	산업자재, 사무
8	세준산업	사무, 전기
9	신성글로벌비즈	부자재류, OA, 사무용품
10	아이엠알오(원일엠로텍)	공구, 전기
11	엠알오마켓	공구, 전기, 배관
12	엠알오커머스	사무, 가전
13	엠알오프라자	공장용품, 사무기기
14	이지엠알오	산업소모품
15	인터엠알오	사무용품, 전기, 공구
16	한빛트레이드	전기, 사무
17	플러스엠알오	공구, 사무, 잡자재

다. 구매사

소모성자재 구매사는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된다. 공공 구매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구매실적 제출의무기관으로 제한한다. 민간 구매사는 일반 사기업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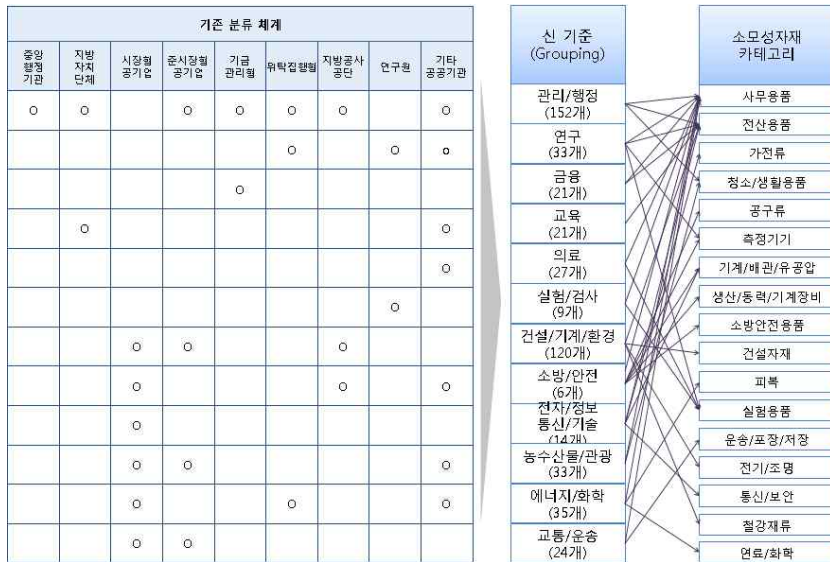
1) 공공

[표 2-7] 공공기관 유형별 구분

번호	유형 구분	기관 수
1	관리/행정	152
2	연구	33
3	금융	21
4	교육	21
5	의료	27
6	실험/검사	9
7	건설/기계/환경	120
8	소방/안전	6
9	전자/정보통신/기술	14
10	농수산물/관광	33
11	에너지/화학	35
12	교통/운송	24
	합계	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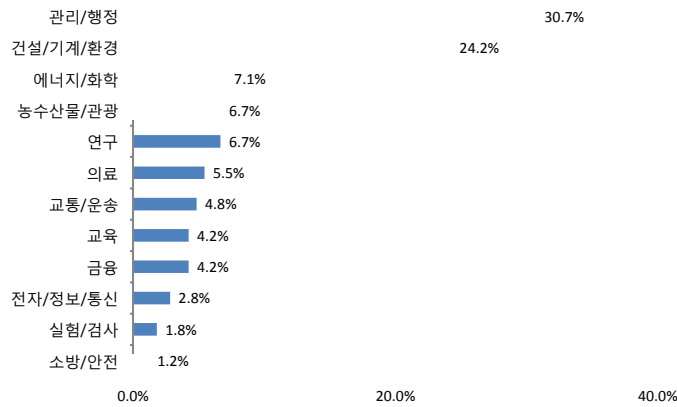
공공기관을 총 12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2개 유형 구분 기준은 공공기관의 성격과 특징, 앞서 정의된 17개 카테고리와의 매칭 (Matching) 개연성 등을 고려하였다.

[그림 2-6] 공공기관 그룹핑(Grouping) 과정



관리/행정과 관련된 기관이 152개(30.7%)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기계/환경과 관련된 기관이 120개(24.2%)로 뒤를 이었다. 에너지/화학은 35개(7.1%), 농수산물/관광은 33개(6.7%), 연구는 33개(6.7%), 의료는 27개(5.5%), 교통/운송은 24개(4.8%), 교육 및 금융은 각 21개(4.2%), 전자/정보/통신은 14개(2.8%), 실험/검사는 9개(1.8%), 소방/안전과 관련된 기관은 6개(1/2%)로 구분되었다.

[그림 2-7] 기관별 비중



2) 민간

민간 구매사의 모집단 수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도출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 총 사업체 수가 3,293,558개로 조사 되었다.

이 중 소모성자재를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산업 1,967,344개를 제외한 후 총 1,326,214개의 표본을 도출하였다.

[표 2-8] 제외 표본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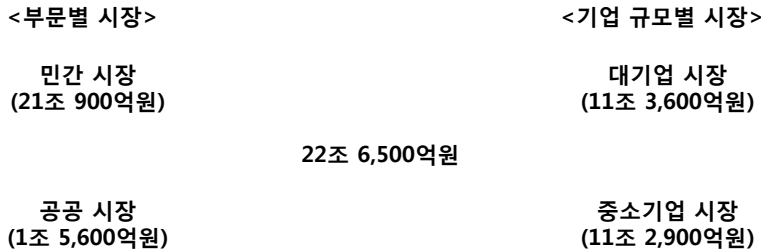
제외 표본 산업	사업체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2,302
광업	1,840
식료품 제조업	53,749
음료 제조업	1,187
담배 제조업	13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3,761
도소매(일부)	861,736
운수업	344,071
숙박 및 음식점업	628,07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5,804
사업지원 서비스업	28,095
합계	1,967,344

소모성자재 시장규모

1. 소모성자재 시장규모 종합

국내 소모성자재 시장규모는 22조 6,500억원으로 추정된다. 부문별 시장을 보면 민간이 21조 900억원, 공공이 1조 5,6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업 규모별 시장을 보면 대기업 시장이 11조 3,600억원, 중소기업 시장이 11조 2,9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림 2-8] 소모성자재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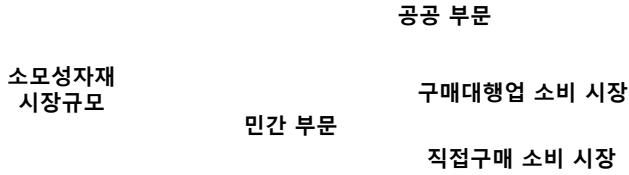


2. 부문별 시장규모 추정

부문별 소모성자재 시장규모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공공부문은 기관의 연간 소모성자재 구매량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고, 민간부문은 자재구매대행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시장과 자재구매대행업자를 통하지 않는 시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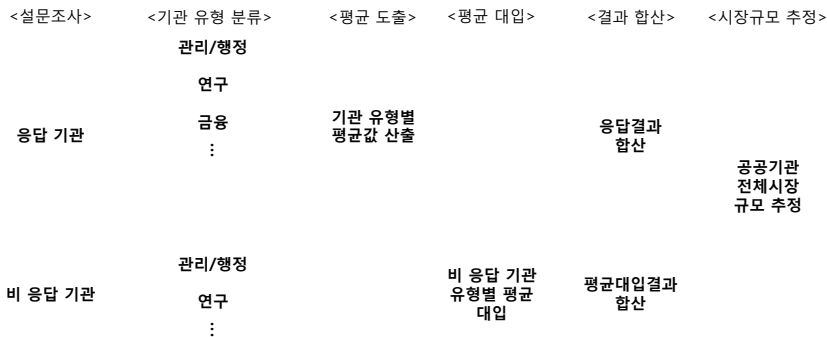
[그림 2-9] 부문별 소모성자재 시장구분



가. 공공

공공시장은 조사에 응한 공공기관의 소모성자재 구매액을 기초로하여 추정하였다. 먼저, 충실히 응답한 기관의 구매액을 합산하고, 기관 유형별 평균 구매액을 도출한 후 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관의 유형에 따라 평균 구매액을 대입하여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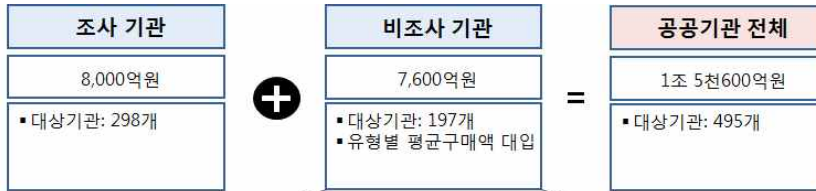
[그림 2-10] 공공기관 시장규모 추정과정



공공기관 시장은 약 1조 5,600억원으로 추정

설문에 응한 450개 공공기관 중 소모성자재 구매액 질문에 응답한 298개 기관의 구매액 합계는 8천억원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소모성자재 구매액은 7,6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림 2-11] 공공기관 시장규모



<비조사 기관 유형별 평균 구매액 도출>

기관 유형	표본 수	응답 수	평균 구매액	미응답 수	평균 구매액 대입	
국가기관	41	18	1,143	23	26,289	
공공기관	공기업	28	18	4,803	10	48,030
	준정부	82	45	4,951	37	183,187
	기타	175	108	2,283	67	152,961
지방공기업	130	88	729	42	30,618	
지방자치단체	16	5	17,496	11	192,456	
교육행정기관	17	13	2,111	4	8,444	
특별법인	6	3	40,580	3	121,740	
소계	495	298		197		

(단위: 백만원)

나. 민간

민간시장은 물품 구매사 또는 납품업체의 거래정보를 입수하여 야만 추정이 가능하다. 물품 구매사의 거래정보는 기업 보안사항으로 입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납품정보를 입수하여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납품정보는 자재구매대행업자 시장과 직접구매자 시장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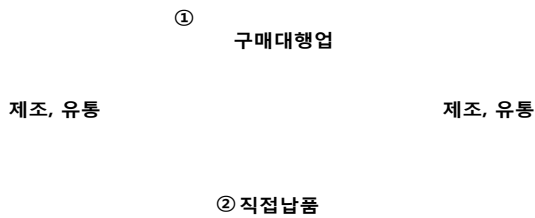
자재구매대행업자 시장정보는 전자공시, 코참비즈 등 신뢰할 수 있는 공인 기관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사하였고, 직접구매자 시장은 현재 국내에 조사 가능한 자료가 없어 대규모 자재구매 대행업자가 시장 추정을 위해 분석한 자료를 입수하여 조사하였다. 추정된 시장규모 검증을 위해 신문 등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자료와 비교하였다.

민간 시장은 약 21조 900억원으로 추정

- 구매대행업 소비 시장 : 8조 2,000억원
- 직접구매 소비 시장 : 12조 8,900억원

민간시장은 자재구매대행업자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과 자재 구매대행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시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2-12] 민간시장 추정방법



1) 구매대행업 소비 시장규모

구매대행업 시장은 전자공시, 코참비즈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자재구매대행업자의 매출 정보를 입수하거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하였다.

[표 2-9] 구매대행업 소비 시장규모

구분	개수	업체명	매출액
전자공시 활용	11	서브원, IMK, 엔투비, 행복나래, KeP 등	7조8천억원
설문결과 활용	10	엠알오마켓, 엠알오커머스 등	3천억원
추정	13	엠알오 프라자, 인터 엠알오 등	1천억원
합계	34		8조2천억원

2) 직접납품 소비 시장규모

현재 직접납품 소비 시장을 규명할 수 있는 선행 연구문헌이나 객관적인 시장조사 자료는 전무하다. 따라서 직접구매 시장규모 추정 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가 내부 고객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인용하였다.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실거래 데이터 분석 결과]

- 연매출 1,500억원 이상 기업집단의 25%가 구매대행 이용 안함
- 500~1,500억원 기업집단은 90%가 구매대행 이용 안함
- 500억원 미만 기업집단 대부분이 구매대행 이용 안함
- * 구매사는 매출액의 0.5%를 소모성자재 구매에 사용

1,500억원 이상 기업집단의 25%가 직접구매자를 통해 소모성자재를 납품받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2조9천억원이다. 500~1,500억원 기업집단의 90%가 직접구매자를 통해 소모성자재를 납품받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1조1천6백억원이다. 500억원 미만 기업집단은

거의 대부분 직접구매자를 통해 소모성자재를 납품받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8조9천억원이다. 따라서 직접구매 전체 시장규모는 13조원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표 2-10] 직접구매 시장규모

(단위: 조원)

매출액 규모	업체 수	매출액 합계	소모성자재 구매액*	직접납품 비중	직접납품 구매액
1,500 억원 이상	1,747	2,335	11.7	25%	2.83
500~1,500 억원	3,097	258	1.3	90%	1.16
500억원 미만	2,234,481	1,780	8.9	100%	8.90
합계	2,239,325	4,373	22	-	12.89

* 매경SMT2012, 통계청(농어업, 부동산 임대,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등 소모성자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업체 수는 제외)

* 소모성자재 구매액은 매출액에 0.5%를 곱하여 산출

3) 시장규모 검증

통계청, 언론 등의 소모성자재 시장규모 추정결과는 20~40조원 정도이며, 본 조사의 결과는 21조 9천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표 2-11] 직접구매 시장규모 언론보도 자료

구분	시장규모	비고	
통계청	43조 8천억원	'10년 기준	
언 론	SBS CNSBC	30조원	'11년 기준
	매일경제	27조원	'11년 기준
	한국경제	23조원	'11년 기준
	서울신문	20조원	'11년 기준
조사결과	21조9천억원	'12년 기준	

17개 카테고리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매칭 결과

[표 2-12] 표준산업분류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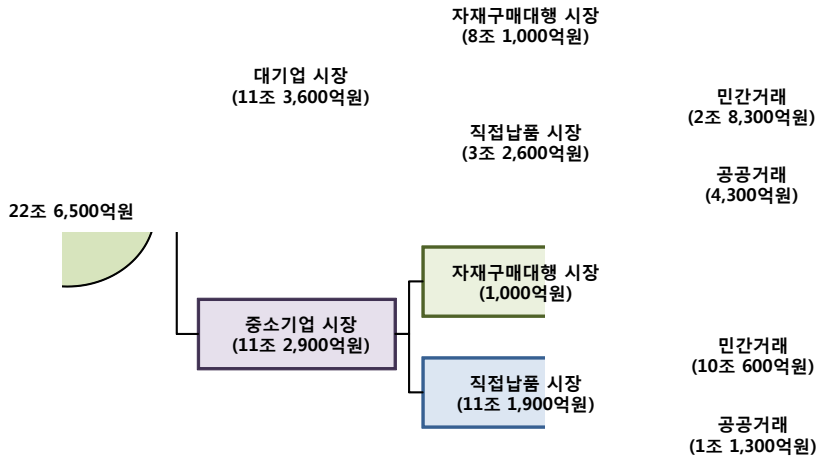
카테고리	산업명
가전류	가전제품 소매업
가전류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가전류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건설자재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건설자재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건설자재	유리 및 창호 도매업
건설자재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건설자재	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건설자재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건설자재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공구류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공구류	기계공구 소매업
기계부품/배관/유공압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기계부품/배관/유공압	기타 자동차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기계부품/배관/유공압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사무가구	가구 소매업
사무용품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사무용품	종이제품 도매업
사무용품	문구용품 도매업
사무용품	문구용품 소매업
사무용품	사무용 기기 소매업
생산/기계장비	기계장비 중개업
생산/기계장비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생산/기계장비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생산/기계장비	공작기계 도매업
생산/기계장비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생산/기계장비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생산/기계장비	그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실험/측정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실험/측정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연료/화학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연료/화학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연료/화학	도료 도매업

연료/화학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연료/화학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연료/화학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연료/화학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연료/화학	비료 및 농약 도매업
연료/화학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
연료/화학	가정용 고체연료 소매업
연료/화학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연료/화학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연료/화학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운송/포장/저장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운송/포장/저장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전기/조명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전기/조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전산용품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전산용품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철강재류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청소/생활	가정용요업제품 비전기식 주방용품 및 날붙이 도매업
청소/생활	기타 비전기식 가정용 기기 및 기구 도매업
청소/생활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청소/생활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청소/생활	그외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청소/생활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업
청소/생활	그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청소/생활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청소/생활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청소/생활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통신/보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통신/보안	통신기기 소매업
피복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증개업
피복	가정용섬유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도매업

3. 기업 규모별 시장규모 추정

기업 규모별 시장규모는 앞서 조사된 자료를 조합하여 추정하였다.

[그림 2-13] 기업 규모별 시장규모 추정



[기업 규모별 시장규모 추정 방법]

- 자재구매대행 시장
 - 대기업 8조 1,000억원, 중소기업 1,000억원으로 조사됨
- 직접납품 시장
 - 민간거래
 - *대기업: 매출액 1,500억원 이상 구간
 - *중소기업: 매출액 1,500억원 미만 구간의 합
 - 공공거래 -> 1조 5,600억원 시장 중 SMPP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 참조
 - *대기업: 5개년(2007~2011년) 평균 27% 구매
 - *중소기업: 5개년(2007~2011년) 평균 73% 구매

제 4 장

소모성자재 시장현황

1. 중소납품업체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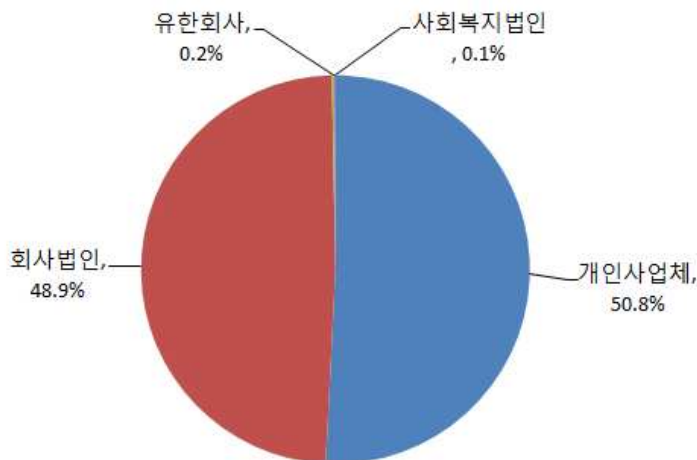
가. 중소납품업체 일반 현황

1) 개인사업체 위주의 조직 형태

2012년 소모성자재 납품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납품업체 조직형태는 개인사업체가 50.8%, 법인이 48.9%를 차지하였다. 사회복지법인 및 유한회사는 각각 0.1%, 0.2%에 불과했다.

[그림 2-14] 중소납품업체 조직형태

(단위 : %, N = 830)



매출액에 대한 분석은 8억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8억원은 국내 도소매 업체들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균 매출액 8억원에 미달한 영세 기업과 평균 매출액을 상회하는 업체 간에는 인증 보유 여부, 보유 영업전담자 수, 사업장 보유 형태, 물류창고 보유 형태 등에서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에서였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8억원 미만의 납품업체들 중 56.6%가 개인사업체, 43.0% 업체가 회사법인이었다. 8억원 이상의 납품업체는 43.6%가 개인사업체였으며, 56.2% 업체가 법인이었다.

[표 2-13] 중소납품업체 조직형태

구 분	전 체		권 역 별					매 출 액	
	개	%	서울/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830	100	395	72	252	79	32	465	365
개인사업체	422	50.8	39	62.5	58.7	67.1	68.8	56.6	43.6
회사법인	405	48.9	61	37.5	40.9	30.4	31.3	43	56.2
사회복지법인	1	0.1	0	0	0.4	0	0	0.2	0
유한회사	2	0.2	0	0	0	2.5	0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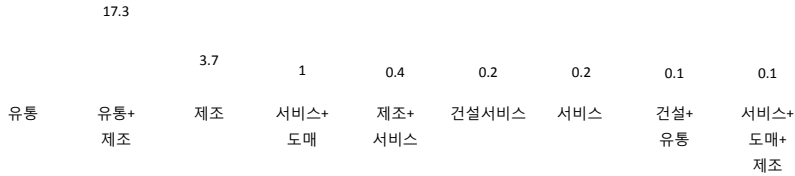
2) 대부분 유통업에 종사

소모성자재 중소납품업체의 업체유형별 특징을 보면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전체 응답자의 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 및 유통을 겸하는 업체는 17.3%,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3.7%에 불과했다.

[그림 2-15] 중소납품업체 업태 유형

(단위 : %, N = 830)

76.9



권역별로 보면, 서울·수도권이 73.9%, 충청이 87.5%, 영남이 73.4%, 호남이 87.3%, 강원·제주는 90.6%가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8억원 미만의 납품업체들 중 83.4% 업체가 단순유통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8억원 이상의 납품업체에서는 68.5%의 업체만이 단순유통을 하고 있어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업체들은 제조를 겸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투입 자금이 부족한 납품업체들은 단순 유통에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4] 중소기업업체 업태 유형

구 분	전 체		권역별					매출액	
	개	%	서울/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830	100	395	72	252	79	32	465	365
유통	638	76.9	73.9	87.5	73.4	87.3	90.6	83.4	68.5
유통+제조	144	17.3	19	11.1	19.8	10.1	9.4	12.7	23.3
제조	31	3.7	4.1	0	5.2	2.5	0	2.4	5.5
서비스+도매	8	1	1.3	1.4	0.8	0	0	0.9	1.1
제조+서비스	3	0.4	0.8	0	0	0	0	0.2	0.5
건설서비스	2	0.2	0.5	0	0	0	0	0.2	0.3
서비스	2	0.2	0.5	0	0.0	0	0	0.2	0.3
건설+유통	1	0.1	0	0	0.4	0	0	0	0.3
서비스+도매 +제조	1	0.1	0	0	0.4	0	0	0	0.3

3) 정부 인증 보유 부족

유통과 제조를 겸하는 중소납품업체는 공공기관 납품에 유리한 정부 인증을 대부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직접적인 혜택을 못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를 겸하는 납품업체 중 5대 의무구매 품목 자격을 획득한 업체는 전체의 13.1%에 불과하였다. 친환경기업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4.6%, 여성기업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2.9% 였으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1.7%, 장애인기업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1.7%, 신제품·신기술(NEP, NET)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2.3%로 나타났다. 반면 아무런 인증이 없어 정부의 직접적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전체의 84.0%나 되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8억원 미만의 납품업체 중 83.0%가 아무런 인증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8억원 이상의 업체는 73.0%가 아무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중으로 보면 연평균 8억원 미만의 영세한 납품업체가 오히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품판매에 상대적 불이익이 예상된다.

[그림 2-16] 제조업체(겸업 포함)의 인증 형태

(단위 : %, N = 175)

NEP/NET	2.3
장애인기업	1.7
사회적기업	1.7
여성기업	2.9
친환경기업	4.6
벤처기업	2.9
해당사항없음	84

[표 2-15] 제조업체(겸업 포함)의 인증 형태

구 분	전 체		권역별					매출액	
	개	%	서울/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175	100	90	9	64	10	3	68	107
해당 없음	147	84.0	83.9	83.3	72.7	57.1	0	83	73
벤처기업	5	2.9	3.2	0	4.5	0	50	6.4	2.7
친환경기업	8	4.6	6.5	16.7	4.5	14.3	0	4.3	8.1
여성기업	5	2.9	0	0	9.1	0	50	2.1	5.4
사회적기업	3	1.7	1.6	0	2.3	14.3	0	0	4.1
장애인기업	3	1.7	1.6	0	2.3	14.3	0	4.3	1.4
NEP/NET	4	2.3	3.2	0	4.5	0	0	0	5.4

4) 5인 미만의 영세기업

소모성자재 중소납품업체들은 5인 미만의 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중소납품업체 평균 종사자수는 3.9명으로 일반 도소매업체 평균 2.9¹⁰⁾명 보다는 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가 2~3명인 납품업체의 비중이 30.0%로 가장 높았고, 종사자 수가 4~5명인 업체는 25.4%, 6~10명인 곳은 27.8%, 11명 이상인 곳은 16.8%로 조사되었다. 종사자 수가 5명 이하인 납품업체 비중의 합은 55.4%로 절반을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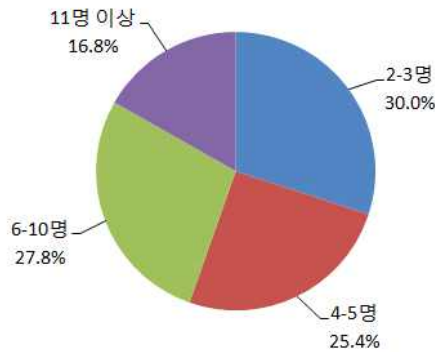
서울·수도권에서는 종업원 수가 6~10명인 업체 비중이 2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충청권에서는 종업원 수가 2~3명인 업체 비중이 3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영남권에서는 종업원 수가 2~3명인 업체 비중이 32.1%로 가장 높은

10) 통계청, 2010 도소매업 총조사

비중을 차지하였고, 호남권에서는 종업원 수가 2~3명인 업체 비중이 4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강원·제주에서는 종업원 수가 2~3명인 업체 비중이 34.4%로 종업원 수 4~5명 업체와 함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8억원 미만 업체에서도 종업원 수 2~3명 업체 비중이 42.5%로 가장 높은 반면 8억원 이상 업체는 종업원 수 2~3명 업체 비중이 17.3%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그림 2-17] 종사자 규모별 비중

(단위 : %, N = 830)



[표 2-16] 종사자 규모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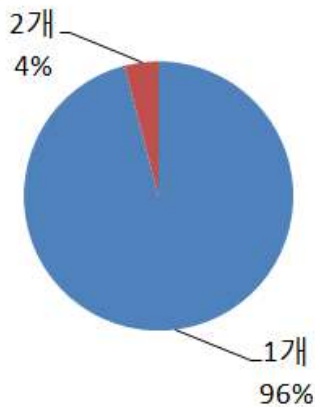
구 분	전 체		권 역 별					매 출 액	
	개	%	서울/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830	100	395	72	252	79	32	465	365
2~3명	249	30.0	24.8	37.5	32.1	40.5	34.4	42.5	17.3
4~5명	211	25.4	21.0	33.3	25.8	35.4	34.4	29.6	21.2
6~10명	231	27.8	29.9	23.6	29.4	17.7	25.0	19.3	36.5
11명 이상	139	16.8	24.3	5.6	12.7	6.3	6.3	8.6	25.1

5) 단일 사업장 운영

중소납품업체들 대부분은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1개 사업장만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어 영업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1개 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업체가 95.9%에 달하였으며, 반면 2개의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는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지역을 거점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내 경제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림 2-18] 보유사업장 개수

(단위 : %, N = 830)



[표 2-17] 보유사업장 개수

구 분	전 체		권 역 별					매 출 액	
	개	%	서울/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830	100	395	72	252	79	32	465	365
1개	796	95.9	93.7	100.0	96.8	98.7	100.0	98.3	92.9
2개	34	4.1	6.3	0	3.2	1.3	0	1.7	7.1

6) 임대 사업장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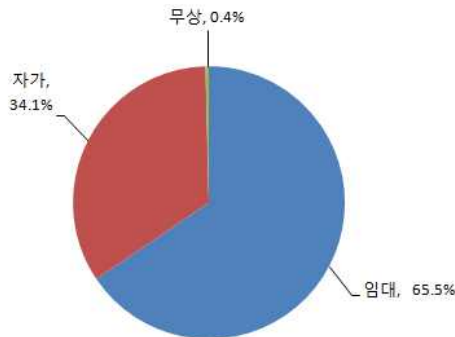
중소납품업체 대부분이 월세 등 임대방식으로 사업장을 이용하고 있어 사업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을 임대형식으로 빌려 쓰는 업체는 65.5%, 자가 건물을 사무실로 이용하는 업체는 34.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가 비중은 부동산 및 임대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으로 갈수록 높았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자가 비중은 25.8%였으며, 충청은 54.2%, 영남은 40.1%, 호남은 39.2%, 강원·제주는 34.4%가 자가 건물을 사무실 또는 판매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8억원 미만 업체의 경우 71.2%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8억원 이상 업체의 경우 58.6%만이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8억원 이상 업체가 약 12.6%p 더 임대 비중이 낮았다. 반면 8억원 이상 업체의 자가 비중은 41.4%로 8억원 미만 업체의 28.6%에 비해 약 12.8%p 더 높게 나타나 매출액에 따른 보유사업장 소유형태에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2-19] 보유사업장 소유형태

(단위 : %, N = 830)



[표 2-18] 보유사업장 소유형태

구 분	전 체		권 역 별					매 출 액	
	개	%	서울/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830	100	395	72	252	79	32	465	365
임대	544	65.5	74.4	45.8	59.5	59.5	65.6	71.2	58.6
자가	283	34.1	25.8	54.2	40.1	39.2	34.4	28.6	41.4
무상	3	0.4	0.3	0.0	0.4	1.3	0.0	0.2	0.5

나. 경영 성과

1) 일반 도소매업 평균보다 낮은 매출규모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의 연평균 매출액은 3억4백만원으로 전체 도소매 평균 매출액인 7억3천5백만원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20] 매출액 비교

(단위 : 억원)

7.35

3.04

일반 도소매업 평균 매출

소모성자재 납품업 평균 매출

/ 통계청, 2010 도소매업 총조사

2) 공공시장보다 민간시장에 편중

중소납품업체들은 공공기관보다 업체수도 많고, 상대적 판매 마진도 좋은 민간기업에 물품판매를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물품 판매처별 평균 판매비중을 보면 공공기관이 9%에 불과하며, 민간기업이 84%, 자재구매대행업자 이용이 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마진¹¹⁾은 민간 기업이 1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이 12%, 자재구매대행업자가 1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2-21] 물품 판매처 유형별 현황

(단위 : %, N = 830)



11) 평균마진은 매출이익 개념으로 납품업체가 매입한 판매상품에 얼마의 이윤을 더하는가로 질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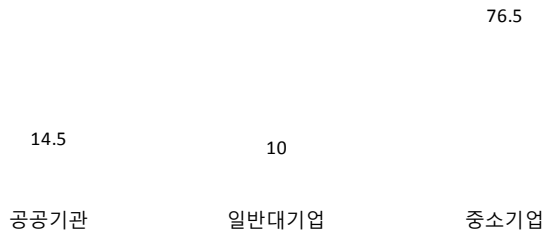
[표 2-19] 물품 판매처 유형별 현황

물품 판매처		평균 비중(%)	평균 마진(%)
공공	공공기관에 직접 판매	8	11.9
	조달청을 통한 판매	1	12.0
자재구매대행업자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판매	2	11.5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판매	4	11.0
민간기업	실수요처(기업)에 직접 판매	56	12.7
	도매업자 및 자사 유통점 판매	10	11.1
	소규모 단위의 소매 판매	18	14.3
해외 수출	해외 수출 등 기타	1	12.2
합 계		100	

평균 거래처 업체 수 조사 결과 중소납품업체 1곳은 중소기업 76.5개, 대기업 10개, 공공기관 14.5개와 거래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중소 납품업자의 경우 공공기관에 비해 민간기업과 거래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2] 평균 거래업체 수

(단위 : %, N = 830)



다. 조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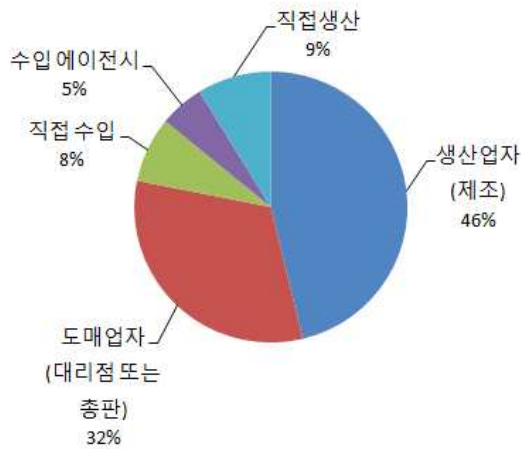
1) 원가절감을 위한 생산자 직거래

매입원가 절감을 위해 중간 도매상과 거래하기보다 생산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산업자를 통한 직접조달 비중이 46%, 도매업자를 통한 조달 비중이 32%, 해외수입(수입에이전시, 직접수입)을 통한 조달 비중이 13%, 직접생산을 통한 조달 비중이 9%로 나타났다. 해외 수입을 통한 조달 비중도 13%로 국산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해외 제품을 직접 소싱(Sourcing)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23] 판매상품 조달방식 (중복 응답)

(단위 : %, N = 1,298)



라. 물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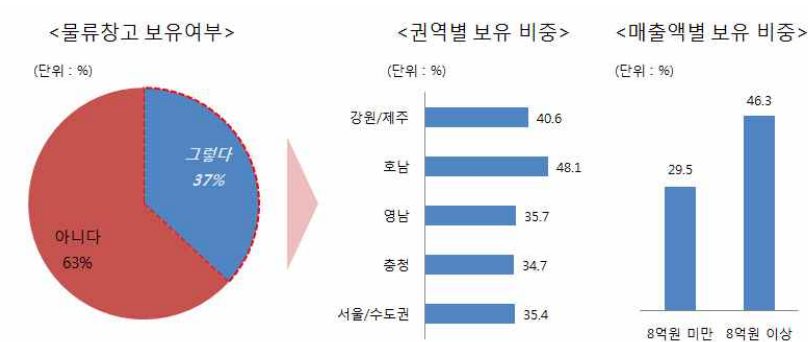
1) 물류창고 미보유 업체 다수

대부분의 중소기업업체들은 소모성자재 공급에 필요한 별도의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1% 업체가 별도의 물류창고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매출이 영세한 업체일수록 물류창고 보유율은 낮게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8억원 미만 업체는 70.5%가 물류창고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8억원 이상 업체는 53.7%가 물류창고를 보유하지 않았다. 8억원 미만의 업체는 8억원 이상 업체에 비해 약 16.8%p 낮게 물류창고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24] 물류창고 보유여부

(단위 : %, N = 830)



[표 2-20] 물류창고 보유여부

구 분	전 체		권역 별					매 출 액	
	개	%	서울/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830	100	395	72	252	79	32	465	365
그렇다	306	36.9	35.4	34.7	35.7	48.1	40.6	29.5	46.3
아니다	524	63.1	64.6	65.3	64.3	51.9	59.4	70.5	53.7

2) 상가 내 창고수준의 물류창고

별도의 물류창고를 보유한 일부 업체 대부분이 상가 내 창고 수준의 물류창고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물류창고를 보유한 306개 업체의 54.9%인 168개 업체가 상가 내 창고 수준의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중규모 이상의 별도 물류창고를 보유한 업체는 90개로 전체의 29.6%에 해당되었다. 제3자 물류센터를 이용하거나 공단 내 창고를 이용하는 업체는 38개로 12.3%에 해당되었다.

[그림 2-25] 보유 물류 창고형태 (복수응답)

(단위 : 업체수, N = 306)

상가내 창고수준의 물류창고	168
중규모 이상의 별도 물류창고	90
제3자 물류센터 임대 이용	25
공장내 창고	13
사무실내 물류창고	6
소규모의 별도 분류창고	4

[표 2-21] 보유 물류 창고형태 (복수응답)

구분	전체		권역별					매출액	
	개	%	서울/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306	100	140	25	90	38	13	137	169
상가 내 창고 수준의 물류창고	168	54.9	51.4	60.0	54.4	57.9	76.9	64.2	47.3
중규모 이상의 별도 물류창고	90	29.6	30.7	24.0	31.1	31.6	15.4	24.8	33.7
제3자 물류센터 입대 이용	25	8.1	10.0	12.0	4.4	7.9	7.7	4.4	11.2
공장 내 창고	13	4.1	5.0	0	5.6	2.6	0	2.9	5.3
사무실 내 물류창고	6	2.0	1.4	4.0	3.3	0	0	2.2	1.8
소규모의 별도 분류창고	4	1.3	1.4	0	2.2	0	0	1.5	1.2

3) 별도의 창고 관리인력 부재

중소납품업체들은 별도의 창고관리인력을 두고 있지 않았다. 실태조사 결과 물류창고 관리인력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150개로 48.7%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1명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25개로 41.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서울·수도권과 호남은 관리인력 1명 보유 비중이 관리인력이 전혀 없는 비중보다 높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히려 관리인력이 전혀 없는 비중이 1명 있는 비중보다 높았다. 8억원 미만 업체는 관리인력이 전혀 없는 비중이 56.2%로 77개 업체가 이에 해당되며, 8억원 이상 업체는 41.4%로 8억원 미만 업체에 비해 14.8%p 낮게 나타났다. 반면 관리인력 1명 보유 비중은 8억 미만 업체가 39.4%, 8억원 이상 업체는 41.4%로 8억원 이상 업체가 2.0%p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6] 자체 물류 창고 관리 인력

(단위 : %, N = 306)



[표 2-22] 자체 물류 창고 관리 인력

구 분	전 체		권 역 별					매 출 액	
	개	%	서울/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306	100	140	25	90	38	13	137	169
0명	150	48.7	40.0	52.0	57.8	47.4	61.5	56.2	41.4
1명	125	41.5	43.6	32.0	34.4	50.0	38.5	39.4	41.4
2명	21	6.5	10.0	8.0	3.3	2.6	0	2.9	9.5
3명	8	2.6	4.3	0	2.2	0	0	0.7	4.1
5명	2	0.7	0.7	4.0	0	0	0	0.7	0.6

4) 물류창고가 필요 없는 수준의 재고 보유

물류창고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 중 77.5%가 필요성의 문제로 물류창고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류창고 필요성에 대한 심층 인터뷰 실시 결과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거래빈도가 적어 많은 재고물량을 보유할 필요성이 적고, 당일 발송이 필요한 주문 건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27] 물류 창고 미보유 이유

(단위 : 업체수, N = 306)

필요성의 문제(없어도 큰 지장 없음) 406

투자자금의 문제 94

부지의 문제(상가인근에 적합한 부지 없음) 23

재고 물량이 없어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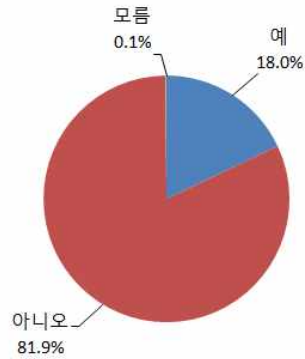
[표 2-23] 물류 창고 미보유 이유

구 분	전 체		권 역 별					매 출 액	
	개	%	서울/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524	100	255	47	162	41	19	328	196
필요성의 문제 (없어도 큰 지장 없음)	406	77.5	76.5	83.0	75.9	82.9	78.9	79.0	75.0
투자자금의 문제	94	17.9	18.4	12.8	19.8	12.2	21.1	15.9	21.4
부지의 문제 (상가 인근에 적합한 부지 없음)	23	4.4	5.1	4.3	3.7	4.9	0	5.2	3.1
재고 물량이 없어서	1	0.2	0	0	0.6	0	0	0	0.5

5) 낮은 공동 물류창고 이용 의사

만약 정부가 공동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이용하겠냐는 설문에 이용 의사를 밝힌 업체는 전체의 18.0%인 149개 업체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1.9%인 680개 업체가 이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림 2-28] 정부가 중소기업 공동 물류 창고 설치 시 이용 여부
(단위 : %, N = 306)



[표 2-24] 정부가 중소기업 공동 물류 창고 설치 시 이용 여부

구 분	전 체		권역 별					매 출 액	
	개	%	서울/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830	100	395	72	252	79	32	465	365
예	149	18.0	20.3	16.7	14.7	17.7	18.8	17.0	19.2
아니오	680	81.9	79.7	83.3	84.9	82.3	81.3	82.8	80.8
모름	1	0.1	0	0	0.4	0	0	0.2	0

6) 이용 편리성을 갖춘 공동 물류창고 필요

공동 물류창고 이용의 주된 거부 사유는 불편할 것 같다 라는 편리성 측면의 우려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정 위치에 설치된 공동 물류창고이기 때문에 일부 원거리에 있는 업체들의 이용이 불편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 물류창고를 구축할 경우 이용 상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많았던 응답은 불필요이며, 32.8%인 222개 업체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추가 발생될 보관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림 2-29] 공동 물류창고 미사용 이유

(단위 : 업체수, N = 680)

공동물류창고까지거리가멀어이용이불편할것같다		279
필요성이없다		222
보관료가비쌀것같다	100	
공동보관으로도난등의문제가발생할것같다	26	
물류창고를보유하고있어서	24	
제품특성상	12	
공동물류창고의상황을잘몰라서	5	
회사에서직접배송하므로	5	
생산업체물류창고를이용하면되어서	3	
복잡하다	3	
제품특성상필요가없음	1	

[표 2-25] 공동 물류창고 미사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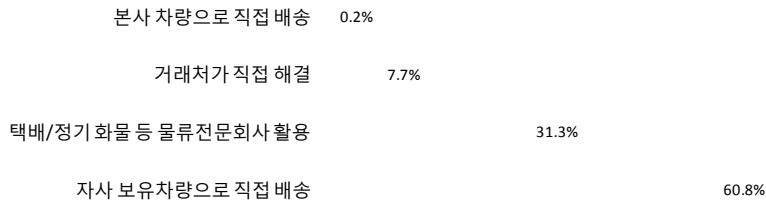
구 분	전 체		권 역 별					매 출 액	
	개	%	서울/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680	100	315	60	214	65	26	385	295
공동 물류창고까지 거리가 멀어 이용이 불편할 것 같다	279	40.9	35.9	38.3	46.7	40	61.5	39.5	42.7
필요성이 없다	222	32.8	38.4	31.7	24.8	33.8	26.9	34.8	29.8
보관료가 비쌀 것 같다	100	14.9	13.7	18.3	15.9	18.5	3.8	16.4	12.9
공동 보관으로 도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26	3.8	3.5	6.7	3.7	3.1	3.8	3.6	4.1
물류 창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24	3.5	4.8	1.7	2.8	3.1	0	3.1	4.1
제품특성상	12	1.8	1.9	0	2.3	0	3.8	0.5	3.4
회사에서 직접 배송하므로	5	0.7	0.6	1.7	0.9	0	0	0.5	1
공동 물류창고의 상황을 잘 몰라서	5	0.7	0.6	1.7	0.5	1.5	0	0.8	0.7
복잡하다	3	0.4	0.3	0	0.9	0	0	0.3	0.7
생산업체 물류창고를 이용하면 되어서	3	0.4	0.3	0	0.9	0	0	0.5	0.3
제품 특성상 필요가 없음	1	0.1	0	0	0.5	0	0	0	0.3

7) 자사 보유차량에 의한 직접 배송 방식

주문품 납품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배송방법으로는 자사 보유 차량에 의한 직접 배송으로 조사되었고, 응답률은 60.8%였다. 다음으로 택배/정기화물 등 물류전문회사 활용이 31.3%, 거래처가 직접 해결하는 비중은 7.7%였다. 자사 보유차량에 의한 직접배송 비중이 높은 이유는 주 거래 고객이 대부분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30] 주문품 납품 시 배송 방법

(단위 : %, N = 830)



[표 2-26] 주문품 납품 시 배송 방법

구 분	전 체		권역 별					매 출 액	
	개	%	서울/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830	100	395	72	252	79	32	465	365
자사 보유차량으로 직접 배송	505	60.8	54.7	62.5	67.1	68.4	65.6	61.3	60.3
택배/정기 화물 등 물류전문회사 활용	260	31.3	40	25	23.8	21.5	21.9	28.8	34.5
거래처가 직접 해결	63	7.7	5.3	12.5	8.3	10.1	12.5	9.5	5.2
본사 차량으로 직접 배송	2	0.2	0	0	0.8	0	0	0.4	0

8) 대부분이 인근지역으로 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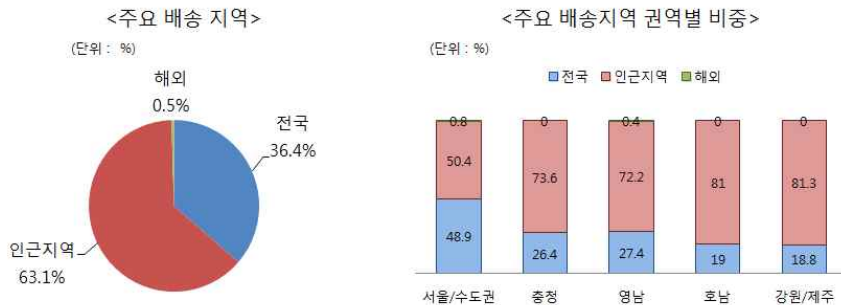
중소납품업체의 경우 거래업체 대부분이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배송도 지역 중심으로 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배송되는 건수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어 영업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배송지역이 인근지역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63.1% 였으며, 전국 단위를 주 판매지역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36.4% 정도에 불과하였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수도권의 경우 배송지역 편차가 거의 없었으나 지방으로 갈수록 지역을 연고로 한 판매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8억원 미만 업체의 경우 인근지역에 납품하는 비중이 8억원 이상 업체에 비해 약 21.7%p나 높았다. 이는 8억원 미만 영세업체의 매출기반이 인근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타 지역으로의 판로확대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림 2-31] 주요 배송 지역

(단위 : %, N = 830)



[표 2-27] 주요 배송 지역

구 분	전 체		권 역 별					매 출 액	
	개	%	서울/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830	100	395	72	252	79	32	465	365
전국	302	36.4	48.9	26.4	27.4	19	18.8	26.9	48.5
인근지역	524	63.1	50.4	73.6	72.2	81	81.3	72.7	51
해외	4	0.5	0.8	0	0.4	0	0	0.4	0.5

마. 영업 현황

1) 판로확대 방안 부족

중소납품업체는 판매처 확보를 위해 자체 영업조직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기존 거래처의 구매 의뢰에 의존하는 판매방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체는 전반적으로 판로개척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입찰 등 공개경쟁을 통한 판로개척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의 56.1% 업체가 자체 영업조직을 통해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확대가 어려워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유지만을 하고 있는 업체가 18.0%, 반대로 구매의뢰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매처를 확보하는 수동적인 대응 비중이 12.7%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판매대리점 또는 총판 등의 유통상을 통해 매출처를 확보한다는 비중이 7.7%로 나타났으며, 공공입찰, 공개경쟁을 통해 매출처를 확보한다는 비중은 5.1%에 불과하였다.

[그림 2-32] 판매처 확보 방법

(단위 : %, N = 830)

온라인	0.2
지인의 소개	0.2
공공입찰, 공개경쟁을 통해	5.1
판매대리점 또는 총판 등의 유통상을 통해	7.7
판매처의 구매의뢰를 통해	12.7
기존거래처만유지(신규확대어려움)	18.0
자체영업조직을 통해	56.1

[표 2-28] 판매처 확보 방법

구 분	전 체		권 역 별					매 출 액	
	개	%	서울/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830	100	395	72	252	79	32	465	365
자체영업조직을 통해	466	56.1	59.2	54.2	56.3	43.0	53.1	54.0	58.9
기존거래처만유지(신규확대어려움)	149	18.0	16.2	18.1	19.0	22.8	18.8	18.3	17.5
판매처의 구매의뢰를 통해	105	12.7	10.4	13.9	11.9	22.8	18.8	13.8	11.2
판매대리점 또는 총판 등을 통해	64	7.7	7.6	8.3	8.3	6.3	6.3	9.2	5.8
공공입찰, 공개경쟁을 통해	42	5.1	6.1	4.2	4.0	5.1	3.1	4.3	6.0
지인의 소개	2	0.2	0.3	0	0.4	0	0	0.2	0.3
온라인	2	0.2	0.3	1.4	0	0	0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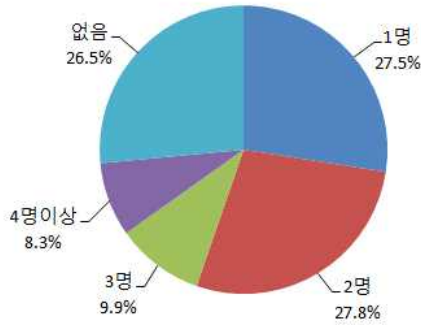
2) 영업 전담인력 부족

대표자 이외의 영업인력이 없거나 1명 이하인 업체가 절반을 넘어 영업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자 외의 영업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전체의 26.5%, 1명의 영업인력을 보유한 업체가 27.5%를 차지하였고, 2명을 보유한 업체가 27.8%를 차지하였으며, 3명을 보유한 업체는 9.9%를 차지하였다. 4명 이상의 영업 인력을 보유한 업체는 8.3%에 불과하였다.

[그림 2-33] 대표자 외 영업전담 보유 인력

(단위 : %, N = 830)



[표 2-29] 대표자 외 영업전담 보유 인력

구분	전체		권역별					대출액	
	개	%	서울/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830	100	395	72	252	79	32	465	365
1명	228	27.5	22.0	30.6	34.1	34.2	18.8	29.9	24.4
2명	231	27.8	33.9	25.0	21.0	19.0	34.4	29.2	26.0
3명	82	9.9	13.4	6.9	7.5	3.8	6.3	6.5	14.2
4명 이상	69	8.3	11.6	1.4	7.9	1.3	3.1	4.7	12.9
없음	220	26.5	19.0	36.1	29.4	41.8	37.5	29.7	22.5

3) 효과적인 영업 활동 부재

판로개척을 위한 주된 활동은 구매담당자와 수시연락·미팅을 실시하는 것이 82.4%로 조사되어 아직까지 국내 영업은 구매담당자와의 친분 정도가 판로개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영업활동도 구매담당자와 수시연락·미팅이 전 지역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으로도 판로개척을 위한 주된 영업활동은 구매담당자와 수시연락·미팅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34] 판로개척을 위한 영업활동

(단위 : %, N = 830)

구매담당자와 수시 연락/미팅	82.4
온라인홍보	7.7
없다	4.3
홍보 전단지 및 사은품 발송	3.9
DB발송(문자발송)	0.6
정부주관 박람회 참석	0.5
지인에게 소개부탁	0.4
신문홍보	0.1
기존거래처의 입소문	0.1

[표 2-30] 판로개척을 위한 영업활동

구분	전체		권역별					매출액	
	개	%	서울/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830	100	395	72	252	79	32	465	365
구매담당자와 수시 연락/미팅	684	82.4	81.5	73.6	86.5	81.0	84.4	79.8	85.8
온라인홍보	64	7.7	11.6	5.6	4.4	1.3	6.3	8.6	6.6
홍보 전단지 및 사은품 발송	32	3.9	2.8	4.2	3.6	8.9	6.3	4.5	3.0
DB발송 (문자발송)	5	0.6	0.3	0	1.2	1.3	0	0.9	0.3
정부주관 박람회 참석	4	0.5	0.8	0	0.4	0	0	0.4	0.5
지인에게 소개부탁	3	0.4	0	1.4	0	2.5	0	0.6	0
기존거래처의 입소문	1	0.1	0	0	0.4	0	0	0.2	0
신문 홍보	1	0.1	0.3	0	0	0	0	0	0.3
없다	36	4.3	2.8	15.3	3.6	5.1	3.1	4.9	3.6

4) 자생적 생존을 위한 교육 필요성 증대

중소납품업체들은 판로개척을 위해 영업자금 지원 외에도 장기적이며, 자생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마케팅/영업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판로개척을 위한 영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39.2%를 차지하였고, 마케팅/영업력 증대 교육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35.5%를 차지하였다.

유사 설문결과에 의하면 판로개척을 위한 필요지원 정책은 자금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는 자금 지원의 필요성만큼 교육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금지원은 단기적인 처방 밖에 될 수 없으나 교육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8억원 미만 업체의 39.9%가 영업자금 지원을 원하고 있고, 163개 업체인 35.1%가 마케팅/영업력증대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억원 이상 업체의 경우 140개 업체인 38.4%가 영업자금 지원을 원하고 있었으며, 131개 업체인 36.0%가 교육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35] 판로개척 확대에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 N = 830)

영업자금지원	39.2
마케팅/영업력증대교육	35.5
물류인프라개선	10.5
전산인프라개선	9
없다	4.3
모름/무응답	0.9
인력충원	0.1
제품의 우수성	0.1
홈페이지구축	0.1
신제품개발	0.1
대기업중심의 시장상황개선	0.1
대기업계열사 내부거래근절	0.1

[표 2-31] 관로개척 확대에 가장 필요한 것

구분	전체		권역별					매출액	
	개	%	서울/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830	100	395	72	252	79	32	465	365
영업자금 지원	326	39.2	39.7	33.3	40.9	44.3	18.8	39.9	38.4
마케팅/영업력 증대교육	295	35.5	34.7	40.3	34.9	27.8	59.4	35.1	36.0
물류인프라개선	88	10.5	9.4	11.1	11.9	11.4	9.4	9.5	11.4
전산인프라 개선	75	9.0	10.6	4.2	7.1	11.4	9.4	8.4	9.7
대기업계열사 내부거래근절	1	0.1	0.3	0	0	0	0	0	0.2
대기업중심의 시장상황개선	1	0.1	0.3	0	0	0	0	0	0.2
신제품개발	1	0.1	0.3	0	0	0	0	0	0.2
홈페이지구축	1	0.1	0.3	0	0	0	0	0.2	0
제품의 우수성	1	0.1	0	0	0.4	0	0	0.2	0
인력충원	1	0.1	0	0	0	1.3	0	0	0.2
없다	34	4.3	3.5	8.3	4.4	3.8	3.1	5.7	2.7
모름/무응답	6	0.9	1.0	2.8	0.4	0	0	1.0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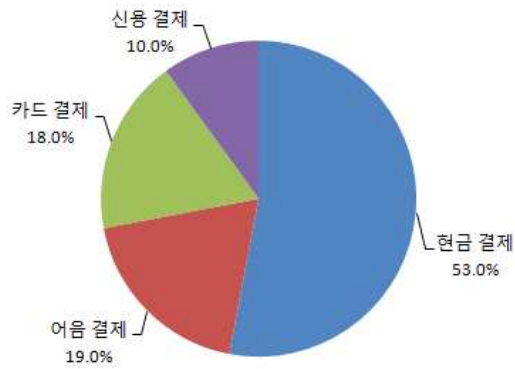
바. 결제 현황

1) 현금 위주의 판매대금 결제

실태조사 전 대금결제 대부분이 어음으로 처리되어 납품업체들의 자금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현금결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납품업체들의 판매대금 결제방법은 현금결제가 평균 53%, 어음결제가 평균 19%, 카드결제가 평균 18%, 신용(외상)결제가 평균 10%로 조사되었다.

[그림 2-36] 판매대금 결제유형별 비중 (단위 : %, N = 830)



하지만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수도권 및 영남지역은 타 지역 대비 어음 결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현금 결제 비중과 어음 결제 비중이 각각 21.6%, 26.6%로 어음 결제 비중이 5.0%p 더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은 현금 결제 비중과 어음 결제 비중이 각각 19.3%, 25.6%로 어음 결제 비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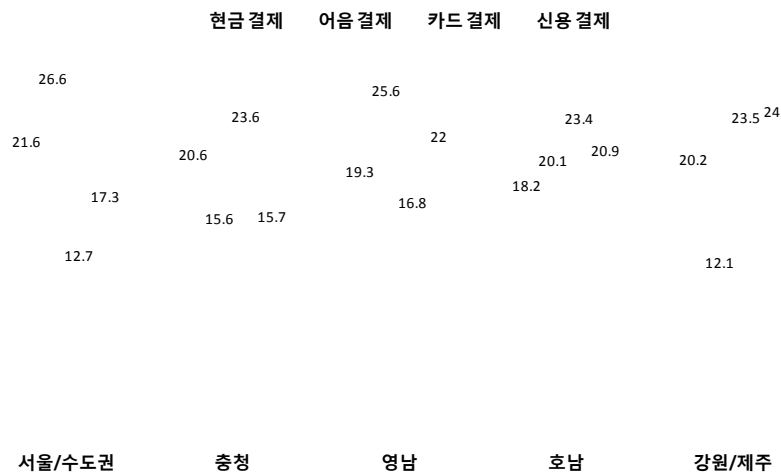
6.3%p 더 높게 나타났다. 호남의 경우 현금 결제 비중과 어음 결제 비중이 각각 18.2%, 20.1%로 어음 결제 비중이 1.9%p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충청의 경우 현금 결제 비중과 어음 결제 비중이 각각 20.6%, 15.6%로 현금 결제 비중이 5.0%p 더 높게 나타났다. 강원·제주의 경우 현금 결제 비중과 어음 결제 비중이 각각 20.2%, 12.1%로 현금 결제 비중이 8.1%p 더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8억원 미만업체의 현금 결제와 어음 결제 비중이 8억원 이상 업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림 2-37] 판매대금 결제비중

(단위 : %, N = 830)



[표 2-32] 판매대금 결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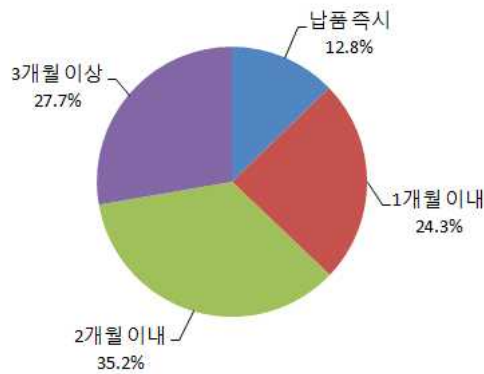
구분	전체 (%)	권역별					매출액	
		서울/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현금 결제	53	21.6	20.6	19.3	18.2	20.2	48.1	51.9
어음 결제	19	26.6	15.6	25.6	20.1	12.1	39.8	60.2
카드 결제	18	12.7	23.6	16.8	23.4	23.5	67.4	32.6
신용 결제	10	17.3	15.7	22.0	20.9	24.0	50.7	49.3

2) 양호한 판매대금 회수기간

중소납품업체들의 판매대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2개월 이내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판매대금 회수기간은 2개월 이내가 35.2%로 가장 높았으며, 1개월 이내가 24.4%, 납품 즉시가 12.8%로 조사되어 비교적 원활한 판매대금 회수 형태를 보였다. 3개월 이상의 회수기간에 대한 응답은 27.6%로 나타났다.

[그림 2-38] 판매대금 회수기간

(단위 : %, N = 830)



[표 2-33] 판매대금 회수기간

구분	전체		권역별					매출액	
	개	%	서울/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830	100	395	72	252	79	32	465	365
납품 즉시	106	12.8	11.1	16.7	11.5	17.7	21.9	16.6	7.9
1개월 이내	202	24.4	27.6	19.4	20.2	27.8	18.8	30.1	17.0
2개월 이내	292	35.2	36.5	38.9	34.5	22.8	43.8	29.7	41.9
3개월 이상	230	27.6	24.6	25.0	33.7	31.6	12.5	23.2	33.2

3) 현금 위주의 매입대금 결제

실태조사 결과 중소납품업체의 매입대금 결제방식은 현금직거래 방식이 36.8%로 가장 높았고, 익월 현금 결제가 34.1%, 매출대금 결제방식 그대로 적용이 22.1%, 어음이 6.5% 순이었다.

[그림 2-39] 매입대금 결제방식 (복수응답)

(단위 : %, N = 830)

2개월 후 현금

사. 경영 애로

1) 거래처의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 압력

자재구매대행업자와 거래하는 업체 중 54.9%가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를 최고의 거래애로로 선정하였다. 대금지급 지연이 18.5%로 30개 업체가 응답하였고,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16.7%로 뒤를 이었다.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는 자재구매대행업자내 직원이 친인척의 명의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설립 및 등록하고 해당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향응 등을 제공한 업체를 우선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8억원 미만 영세업체의 51.4%와 8억원 이상 업체의 57.8%가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2-40] 자재 구매 대행업 납품 시 애로사항

(단위 : %, N = 162)

향응/금품요구	0.6
직접 전달이 안되어서 에러시 제조업체가 부담	0.6
검수과정에서 거절반품불가	1.9
갑작스런 거래중단	6.8
특정업체일감몰아주기	16.7
대금지급 지연	18.5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	54.9

[표 2-34] 자재 구매 대행업 납품 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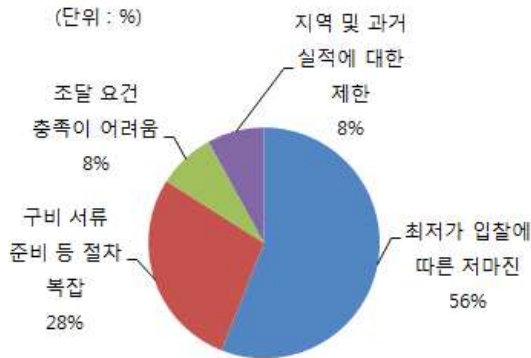
구 분	전 체		권 역 별					매 출 액	
	개	%	서울/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162	100	84	13	54	8	3	72	90
지속적인납품단가 인하	89	54.9	48.8	61.5	61.1	62.5	66.7	51.4	57.8
대금지급 지연	30	18.5	23.8	0	18.5	0	0	25	13.3
특정업체일감몰아 주기	27	16.7	13.1	38.5	16.7	25	0	16.7	16.7
갑작스런 거래 중단	11	6.8	9.5	0	3.7	0	33.3	5.6	7.8
검수과정에서 거절 반품불가	3	1.9	2.4	0	0	12.5	0	1.4	2.2
직접 전달이 안 되서 에러 시 제조업체가 부담	1	0.6	1.2	0	0	0	0	0	1.1
향응/금품요구	1	0.6	1.2	0	0	0	0	0	1.1

2) 조달청 공공입찰의 낮은 마진율

공공기관 납품 확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낮은 마진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6.0%에 해당되는 업체가 최저가 입찰에 따른 저마진을 최고의 거래애로로 선정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구비서류 준비 등 절차복잡이 28.0%로 뒤를 이었다. 조달 요건 충족의 어려움과 지역이나 과거 실적에 대한 제한이 각각 8.0%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2-41] 조달청 이용 시 애로사항

(단위 : %, N = 25)



[표 2-35] 조달청 이용 시 애로사항

구 분	전 체		권 역 별					매 출 액	
	개	%	서울/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25	100	14	2	8	1	12	13	90
최저가 입찰에 따른 저마진	14	56	57.1	50	62.5	0	41.7	69.2	57.8
구비 서류 준비 등 절차 복잡	7	28	14.3	50	37.5	100	41.7	15.4	13.3
조달 요건 충족이 어려움	2	8	14.3	0	0	0	8.3	7.7	16.7
지역이나 과거 실적에 대한 제한	2	8	14.3	0	0	0	8.3	7.7	7.8

3) 공공기관 납품시 절차 간소화 필요

공공기관 납품 확대를 저해하는 두 번째 요인은 구비서류 준비 및 까다로운 납품절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42.2%에 해당되는 업체가 구비서류 준비 등 절차복잡을 최고의 거래애로로 선정하였고, 조달요건 충족의 어려움이 27.7%, 담당자 미팅·영업의 어려움이 27.0%로 응답되었다.

[그림 2-42] 공공 기관 직접 납품 시 애로사항

(단위 : %, N = 256)

구비서류준비 등 절차 복잡	42.2
조달요건충족이 어려움	27.7
담당자미팅/영업이 어려움	27
단가를 낮게 책정	1.5
없다	0.8
결재가 어려움	0.4
상품개척의 어려움	0.4

[표 2-36] 공공 기관 직접 납품 시 애로사항

구 분	전 체		권역별					매 출 액	
	개	%	서울/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강원/제주	8억원 미만	8억원 이상
총계	256	100	118	20	79	31	8	131	125
구비 서류 준비 등 절차 복잡	108	42.2	41.5	35	39.2	54.8	50	45	39.2
조달 요건 충족이 어려움	71	27.7	30.5	25	29.1	19.4	12.5	26.7	28.8
담당자 미팅/영업이 어려움	69	27	24.6	40	29.1	19.4	37.5	24.4	29.6
단가를 낮게 책정	4	1.5	0.8	0	2.5	3.2	0	2.3	0.8
상품 개척의 어려움	1	0.4	0.8	0	0	0	0	0	0.8
결재가 어려움	1	0.4	0.8	0	0	0	0	0.8	0
없다	2	0.8	0.8	0	0	3.2	0	0.8	0.8

2.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 시장

가. 경영 성과

1) 그룹 계열사 지원이 가능한 업체 중심으로 성장

응답 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은 평균 8년 6개월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240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총 매출액 합계는 8조1천억원, 평균 매출액은 약 9천억원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각 업체 간 매출액 편차가 매우 심하였는데,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업체와 가장 작은 업체의 차이가 무려 12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 시장이 그룹 계열사의 지원이 가능한 일부 소수 업체 중심으로 확대·발전되었기 때문이다.

[표 2-37] 사업기간, 종업원수,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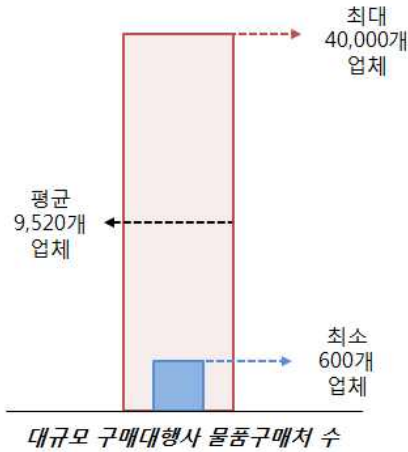
구 분	평 균	최 대	최 소
사업 영위기간(년)	8.5	12	3.5
종업원 수(명)	241.4	600	20
2011년 매출액(백만원)	898,835	3,000,000	251,077

나. 조달 현황

1) 최대 4만여곳의 납품업체를 통해 물품 구매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의 판매 상품은 주로 중소납품업체로부터 공급되고 있었으며, 업체당 최소 600여 곳에서 최대 4만여 곳의 납품업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9,520개의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대행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3] 물품 납품업체 보유 현황



[표 2-38] 물품 납품업체 보유 현황

구 분	평 균	최 대	최 소
물품 구매처 수(개)	9,520	40,000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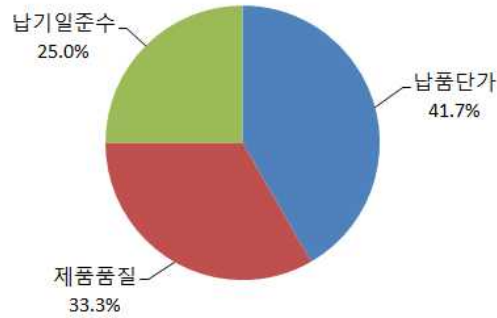
2) 납품단가 위주로 구매처 선정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은 구매처 선정 시 납품단가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었다. 전체 기업의 41.7%가 물품 구매처 선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납품단가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33.3%가 제품품질, 25.0%가 납기일 준수라고 응답하였다.

물품 구매처 선정 시 자재구매대행업자가 납품단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이유는 자재구매대행업자의 고객사가 최저가 납품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4] 물품 구매처 선정 기준(중복응답)

(단위 : %, N = 12)



다. 판매 현황

1) 자체 영업조직을 통한 판매처 확보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영업조직을 통해 판매처 개척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계열사 및 공공입찰, 공개경쟁, 매출처의 구매의뢰를 통해 물품 판매처를 확보하는 경우가 각각 16.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는 충분한 영업인력과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판매처 확보가 용이하다. 더구나 브랜드가 주는 신뢰성으로 인해 고객 확보가 보다 용이하다.

[그림 2-45] 물품 판매처 확보 방법

(단위 : %, N = 6)

매출처의 구매의뢰를 통하여	16.7	
공공입찰, 공개경쟁을 통하여	16.7	
자사 계열사를 통하여	16.7	
자체 영업조직을 통하여		50.0

2) 대규모 물류 인프라 보유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은 원활한 배송을 위한 대규모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기업의 83.0%가 물류창고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물류창고를 1개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40%, 2개 또는 3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각각 20%, 10개의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20%로 나타났다.

[표 2-39] 물류창고 보유 현황

보유여부	응답자 수(개)	응답 비율(%)	보유 수(개)	응답 비율(%)
보 유	5	83.0	1	40.0
			2	20.0
			3	20.0
			10	20.0
미보유	1	17.0	-	-
합 계	6	100.0	-	-

한편 평균 물류창고 보유수는 3.2개, 평균 규모는 약 1천㎡, 평균 관리인력은 16명, 평균 유지관리비용은 연간 1억 3,7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40] 물류창고 운영 현황

구 분	응답자 수(개)	평 균
물류창고 수(개)	5	3.2개
물류창고 규모(㎡)	2	1,073㎡
물류창고 관리인력(명)	3	16.3명
연간 유지 관리 비용(백만원)	2	1억3,700만원

라. 결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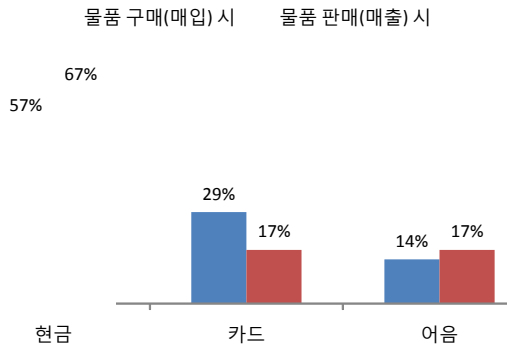
1) 영세 납품업체에게 불리한 결제 방식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은 영세 납품업체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결제를 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매물품의 대금지급, 판매물품의 대금회수 시 현금결제 비중이 가장 높아 소모성자재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매대금의 현금회수 비중보다 중소납품업체에 지급할 현금비중이 약 10%p 낮았다. 판매대금도 1개월 이내에 회수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구매대금은 1개월 이내 지급하는 비중이 낮았다.

[그림 2-46] 대금 결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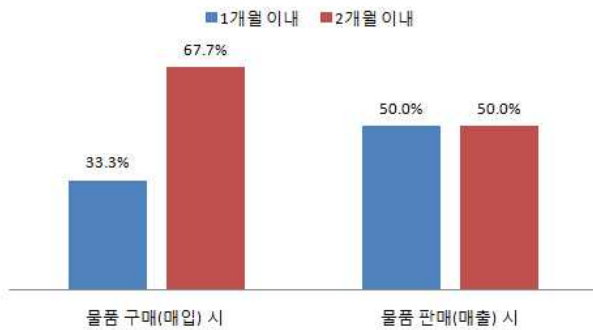
130(단위 : %, N = 6)



판매한 대금은 1개월 이내 50%, 2개월 이내 50%를 회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매입한 대금은 1개월 이내 33.3%만 지급하고 2개월 이내 67.7%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7] 대금 회수 기간

(단위 : %, N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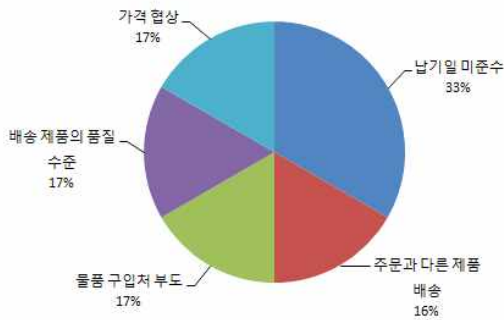
마. 애로사항

1) 납품업체의 낮은 납품수준

물품 매입 시 애로사항으로는 납기일 미준수가 3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배송제품의 품질수준 미흡, 구입처의 부도, 주문과 다른 제품 배송 등의 응답결과가 비슷하였다.

[그림 2-48] 물품 매입 시 애로사항

(단위 : %, N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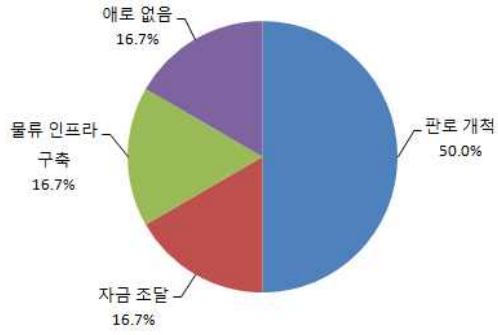


2) 업체 간 경쟁심화

전체 대규모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자의 50.0%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계열사와 같은 기존의 안정적인 거래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로개척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자재구매대행업 주 구매사인 대기업 시장이 점차 포화상태에 근접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2-49] 사업운영 시 애로사항

(단위 : %, N = 6)



3.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 시장

가. 일반 현황

1) 평균 매출 28억원

전체 응답기업의 평균 사업 영위기간은 10년 7개월이었으며, 평균 13.7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매출액은 약 1천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평균 매출액 규모는 2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평균 매출인 9천억원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규모이다. 업체 간 매출액 편차는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41] 기업 일반 현황

구 분	평 균	최 대	최 소
사업 영위기간(년)	10.7	23	3
종업원 수(명)	13.7	40	2
2011년 매출액(백만원)	2,800	16,000	200

2) 평균 219개 납품업체를 통해 물품 조달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는 평균 219개 업체로부터 판매물품을 납품받고 있었다. 가장 많은 납품업체를 보유한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는 약 680여개 정도였으며 이 역시 대규모 구매대행업자의 4만여 업체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표 2-42] 물품 구매처 보유 현황

구 분	평 균	최 대	최 소
물품 구매처 수(개)	219	680	20
물품 판매처 수(개)	29	5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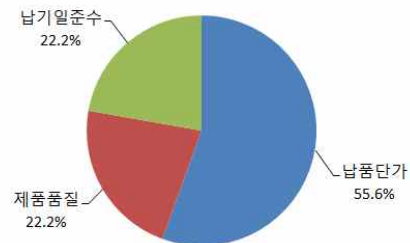
3) 납품단가 위주로 구매처 선정

전체 기업의 55.6%가 물품 구매처 선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납품단가라고 응답하였다. 제품품질, 납기일 준수 모두 22.2%로 동일한 응답률을 보였다.

물품 구매처 선정 시 자재구매대행업자가 납품단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물품 판매처가 최저가 납품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이는 대규모 구매대행업체의 응답과 비슷한 맥락으로 분석된다.

[그림 2-50] 물품 구매처 선정기준 (중복 응답)

(단위 : %, N = 9)



나. 운영 시스템

1) 낮은 시스템 보유율

전체 응답자의 55.6%가 구매대행 사업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구축비용은 4천5백만원이며, 평균 1.5명의 전산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43] 별도 시스템 구축 여부

구분	합계	미구축	구축	구축비용	전산인력
응답 수(개)	9	4	5	4천5백만원	1.5명
응답 비율(%)	100.0	44.0	55.6	-	-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사유는 구매대행 건수가 적기 때문이며, 온라인 쇼핑주문, 전화 등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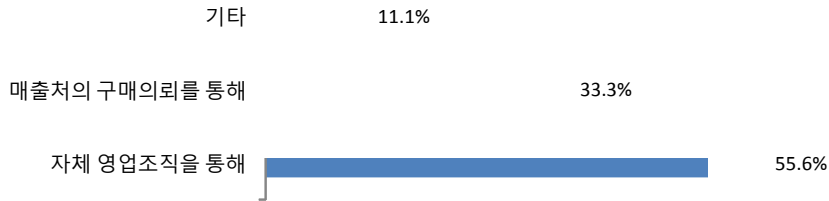
다. 판매/물류 현황

1) 자체 영업조직을 통한 판매처 확보

물품 판매처는 전체 응답기업의 55.6%가 자체 영업조직을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33.3%는 매출처의 구매의뢰를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도 판매처 확보에 있어선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2-51] 물품 판매처 확보 방법

(단위 : %, N = 9)



2) 낮은 공공기관 마진율

중소규모 구매대행업자는 낮은 판매마진으로 인해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매처별 매출 비중은 공공기관이 21.3%, 대기업이 13.1% 중소기업이 65.6%로 조사되었고, 평균 마진은 공공기관이 9.5%로 가장 낮았으며, 대기업이 10.5%, 중소기업이 13.3%로 나타났다.

[그림 2-52] 매출 비중 및 마진

(단위 : %, N = 9)



3) 물류창고 미보유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다수가 물류창고를 보유하지 않았다.

물류창고를 보유한 업체는 11.1%에 불과하였으며, 보유한 물류창고 형태도 자사 물류창고가 아닌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류창고를 보유하지 않은 이유는 투자자금의 부족과 필요성이 낮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표 2-44] 물류창고 보유현황

구 분	응답자 수(개)	응답 비율(%)	보유형태	미보유 사유
그렇다	1	11.1	제3자 물류센터	-
아니다	8	88.9	-	대규모 자금 투자 필요성 없음
합 계	9	100.0	-	-

4) 보유 차량에 의한 직배송 / 지역에 기반한 제한된 영업

주문품에 대한 배송은 주로 자사 보유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주 거래처 대부분이 자사 차량으로 배송이 가능한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사 보유 차량에 의한 직접배송이 44.4%, 택배 및 정기화물 등 물류 전문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22.2%, 물품구매처가 직접 배송하는 방법이 22.2%를 차지하였다. 공급사가 자체적으로 배송하는 방법도 11.2%로 조사되었다.

[그림 2-53] 납품 배송 방법

(단위 : %, N = 9)

공급사 자체물류	11.2	
물품구매처 직접 배송	22.2	
택배/정기화물 등 물류 전문회사 활용	22.2	
자사 보유 차량으로 직접 배송		44.4

라. 결제 현황

1) 중소기업에 불리한 현금결제 비중

거래대금 상당수가 현금으로 결제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게 다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되고 있다.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는 판매 대금의 53.9%를 현금으로 받고 있으나 중소기업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34.4%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그림 2-54] 대금 결제 방식

(단위 : %, N = 9)

		물품 구매(매입) 시	물품 판매(매출) 시	
53.9				
34.4			33.9	
		22.2	23.3	
	8.9 10.0	12.2		
			0.6 0.6	
현금 결제	카드 결제	어음 결제	신용 결제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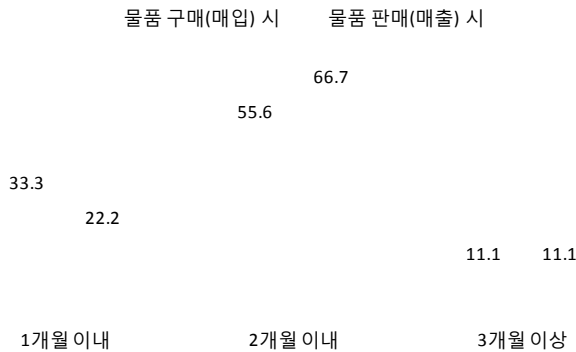
2) 운영자금 적기 회수 애로

구매물품 대금은 구매 즉시 또는 1~2개월 이내 결제되는 반면, 판매대금은 2~3개월 후에 결제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의 단기 자금 운영 애로가 우려되고 있다.

특정 품목이나 거래 관행 상 구매 즉시 매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로 1개월 이내 매입대금 지급이 33.3%로 판매대금 회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개월 이내 매입대금 지급비중을 보면 55.6%로 판매대금 회수 비중보다 66.7% 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55] 대금 회수 기간

(단위 : %, N = 9)



마. 애로 사항

1) 납품단가 인하 압박

중소납품업체들은 물품 판매처의 납품단가 인하요구와 관련한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 판매처와 거래 시 33.3%가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으며, 20.0%가 갑작스런 거래중단, 13.3%가 납품대금지급 지연, 무리한 납기단축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2-56] 물품 판매처와 거래 시 애로사항 (중복응답)

(단위 : %, N = 9)

납품품목 임의조정	6.7		
불합리한 물품반품	6.7		
항응, 접대요구	6.7		
무리한 납기단축	13.3		
납품대금 지급지연	13.3		
갑작스런 거래중단		20.0	
납품단가 인하요구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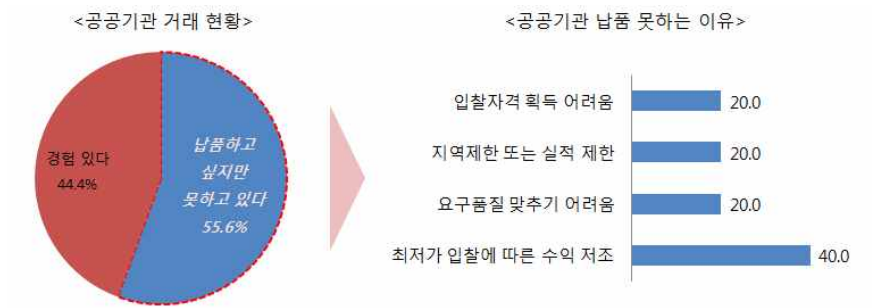
2) 공공기관과의 높은 거래 의지

다수의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는 공공기관과 거래를 원하고 있지만 조달절차 및 자격요건 획득의 어려움으로 거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기관과 거래를 원하고 있지만 못하는 비중이 55.6%로 조사되었다. 공공기관에 납품을 못하는 이유는 40.0%가 최저가 입찰에 따른 수익 저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요구품질에 대한 애로, 지역제한 또는 실적 제한, 입찰자격 획득 어려움 등의 이유가 각각 20%로 조사되었다.

[그림 2-57] 공공기관과의 거래 현황

(단위 :%, N = 9)



3)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대비 낮은 경쟁력

중소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의 경쟁력은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대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대비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경쟁력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판매단가 경쟁력(3.3점)을 제외하고 취급품목의 다양성 2.6점, 시스템 완성도 및 용이성 2.1점, 물류 인프라 수준 2.1점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보통 이하의 경쟁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58]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대비 경쟁력 수준

(단위 :5점 척도, N = 9)



※ 각 항목별 5점척도(매우 낮다, 조금 낮다, 보통, 조금 높다, 매우 높다)로 측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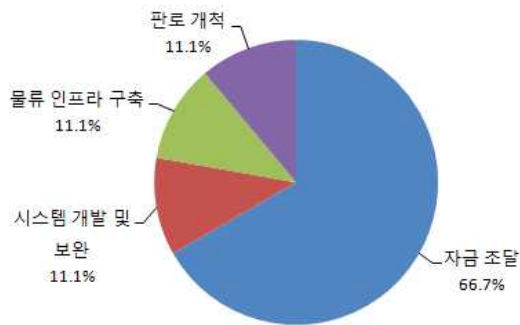
4) 경영자금 조달 애로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은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달리 경영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의 66.7%가 자금조달을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시스템 개발 및 보완, 물류 인프라 구축, 판로 개척 등의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59] 사업운영 시 애로요인

(단위 : %, N = 9)



4. 공공 소비 시장

가. 공공기관 소모성자재 소비 규모

1) 연간 1조 5,600억원 구매

국내 공공기관은 연간 약 1조 5,600억원 규모의 소모성자재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공공기관의 소모성자재 구매액 합계는 8천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구매액은 7,60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해 353개 기관이 응답 하였으며 48.5조원으로 조사되었다. 물품 구매액¹²⁾은 347개 기관이 응답하였으며 17.6조원으로 조사되었고, 소모성자재 구매액은 298개 기관이 응답하였으며 8천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모성자재 비중은 전체 구매액 대비 1.65%, 물품 구매액 대비 4.55%를 차지하였으며, 기관 평균 연간 29억원 규모의 소모성자재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5] 공공기관 구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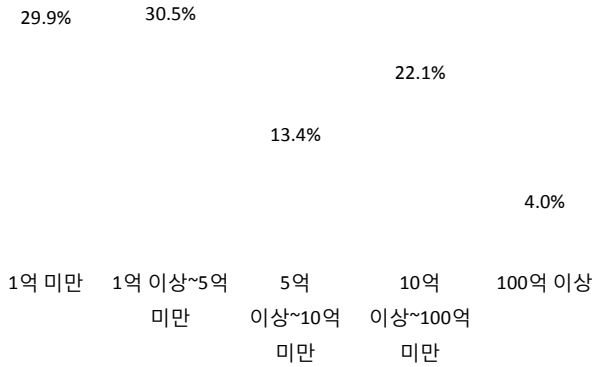
(단위: 억원, 개)

구 분	조사결과		
	전체 구매액	기관별 평균 구매액	미응답 관수
총계	485,000	1,375	142
물품	176,000	51	142
소모성자재	8,000	29	197

12) 전체 구매액 중 용역·공사 등을 제외한 금액

소모성자재 구매액 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1억~5억 구매 기관이 91개로 30.5%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억원 미만 구매 기관이 89개로 29.9%, 10억 이상 구매 기관이 66개로 22.1%, 5억 이상 10억 미만 구매 기관이 40개로 13.4%, 100억 이상 구매 기관이 12개로 4.0%를 차지하였다.

[그림 2-60] 소모성자재 구매액 구간별 기관 수
(단위 : %, N = 298)



나. 소모성자재 구매 유형

1) 나라장터 이용률 저조

공공기관은 소모성자재 구매 시 나라장터 보다 직접구매¹³⁾에 의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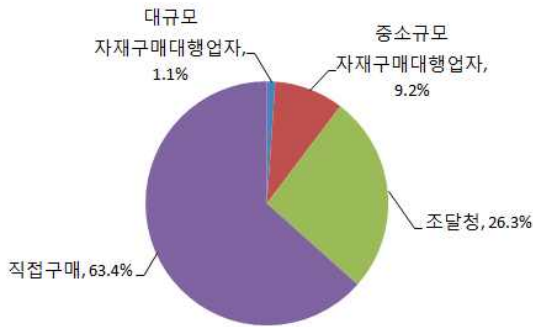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거래하는 공공기관은 전체 응답기관 중에서 1.1%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거래하는 공공기관은 9.2%, 조달청과 거래하는 공공기관은

13)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업체를 직접 선별·계약하여 구매를 실시하거나, 인근 사무용품 판매점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함

26.3%, 직접 구매하는 공공기관은 6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61] 구매유형별 이용비중 (중복 응답)

(단위 : %, N = 442)



2) 신속, 편의, 공정성 요구

공공기관에서 소모성자재 구매 방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신속성, 편의성, 업체선정의 공정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의무구매품목 관리, 정기 감사 자료 정리 등 정부를 상대로한 부가적인 사항도 고려대상이 되어 각 구매유형별 주된 이용 사유의 차이가 명확하였다.

자재구매대행업자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용 및 자료처리의 편의성 때문이며, 조달청을 이용하는 이유는 의무구매품목 구매 용이성 및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직접 구매 방식을 이용하는 이유는 업체비교 용이성과 구매의 신속성, 소량구매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6] 구매유형별 주 이용 사유

구 분		주요 이용 사유
자재구매 대행업자	대규모	이용이 편리하고, 자료 관리 및 처리가 편리
	중소규모	
조달청		투명하고, 의무구매품목 구매가 용이 단가계약이 되었고, 조달청 이용이 제도화 되어 있음 가격검토가 되어 공정성 확보
직접 구매		다양한 업체 비교 및 가장 신속한 구매처리 가능 필요시 소량으로 구매 가능, 지역사회 경제성장 견인

자재구매대행업자 이용 기관 중 80.6%가 물품 주문의 편리성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7.9%가 구매비용 및 구매시간의 절감, 1.5%가 각종 통계자료 처리의 편리성 등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2-62] 자재구매대행업자 이용 시의 장점

(단위 : %, N = 67)

각종 통계자료 처리의 편리성	1.5
구매비용 및 구매시간 절감	17.9
물품 주문의 편리성	80.6

조달청 이용 시 가장 큰 장점은 39.1%가 업체선정 및 계약의 편리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5.5%가 이용 상의 편의성, 19.1%가 의무구매품목에 대한 구매의 용이성, 5.0%가 구매비용 및 구매시간의 절감이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장점으로 품질 및 가격이

적정하고, 감사를 피할 수 있고, 계약이 투명하고, 선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응답하였다.

[그림 2-63] 조달청 이용 시 장점

(단위 : %, N = 361)

기타	1.4
구매비용 및 구매시간 절감	5
의무구매 품목 구매가 용이	19.1
이용 편의	35.5
업체선정/계약의 편리성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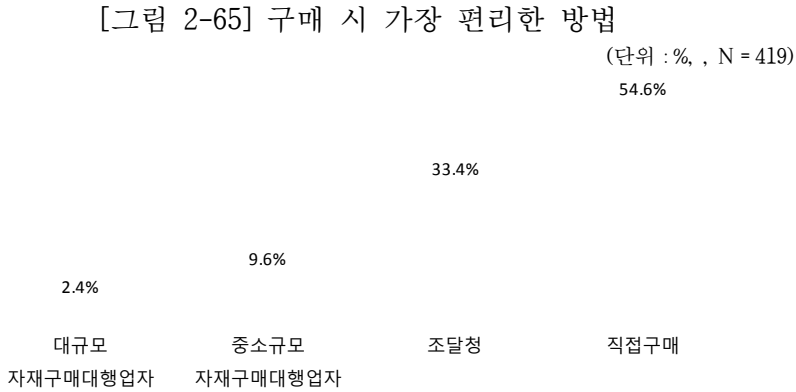
직접구매의 가장 큰 장점은 36.5%가 신속한 입고처리 라고 응답하였으며, 원하는 업체를 직접 선정 가능성이 31.7%, 지역 납품업체와의 거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19.3%, 구매절차의 간소화가 12.2%로 응답되었다. 기타 장점으로 품질 및 가격이 적정, 감사를 피할 수 있음, 계약의 투명성, 선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등으로 응답되었다.

[그림 2-64] 직접 구매 시 장점

(단위 : %, N = 394)

기타(우선구매 품목 구입용이)	0.3
구매절차 간소	12.2
지역 납품업체 중심으로 거래가능	19.3
원하는 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음	31.7
신속한 입고처리가 가능	36.5

가장 편리한 자재구매 방식에 대해 전체의 54.6%인 227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 방식이라고 응답하였다. 조달청은 33.4%인 139개 공공기관이 응답하였고,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는 9.6%인 40개 공공기관이 응답하였다.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는 2.4%인 10개 공공기관만이 구매가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다. 구매인력

1) 평균 1명 이하 구매 인력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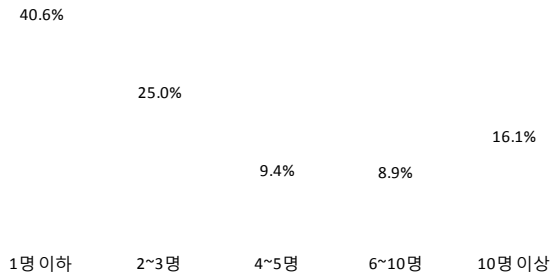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경우 구매를 전담하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기관 중에서 40.6%인 182개 공공기관이 1명 이하의 구매담당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5.0%인 112개 공공기관에서는 2~3명을 보유, 16.1%인 72개 공공기관에서는 10명 이상을 보유, 9.4%인 42개 공공기관에서는 4~5명을 보유, 8.9%인 40개 공공기관에서는 6~10명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명 이상의 구매담당인력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결과를 재확인한 결과 각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구매 인력을 합산한 결과이거나 산하 기관에 1명 정도의 구매전담인력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태조사 전 각 기관을 대표하여 구매를 총괄하는 전담 인력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와 달리 조사결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구매전담자가 아닌 직원이 구매업무를 병행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림 2-66] 구매업무 투입인력의 수

(단위 : %, N = 448)



2) 필요 총원 규모

구매전담인력 부족으로 총원이 필요한 기관의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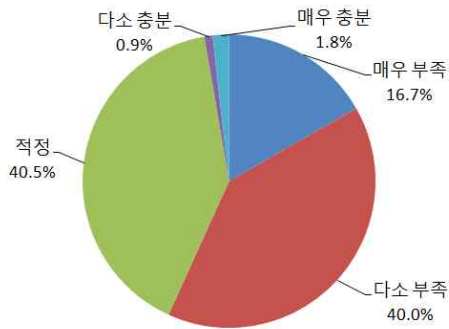
실태조사 결과 구매인력의 적정성에 있어서 전체 응답기관의 40.5%인 179개 공공기관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40.0%인 177개 공공기관은 다소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16.7%인 74개 공공기관에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1.8%인 8개 공공기관이 매우 충분, 0.9%인 4개 공공기관이 다소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관의 56.7%가 구매업무에 투입된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중도 16.7%로 공공기관의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67] 구매업무 투입인력의 적정성

(단위 : %, N = 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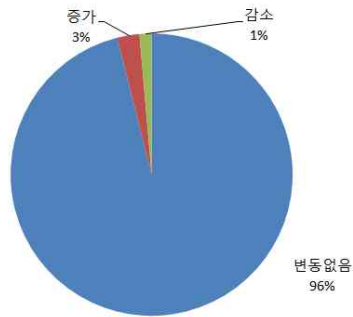
3) 구매 인력 충원 계획 저조

판로지원법 개정에 따른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의 거래제한으로 구매 업무가 증대된 것으로 추정되나 구매 인력은 큰 변화가 없으며, 향후 충원계획 또한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구매인력의 변동사항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기관의 96%인 416개 공공기관에서 구매인력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매인력이 증가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3%인 11개 기관에 불과하였고 오히려 감소한 기관도 1% 조사되었다.

[그림 2-68]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구매인력 변동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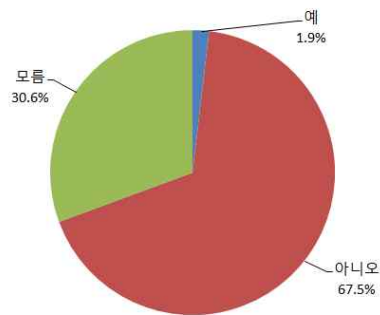
(단위 : %, N = 433)



또한, 전체 응답기관의 67.5%인 291개 공공기관이 충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1.9%인 8개의 공공기관만이 충원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30.6%인 132개 공공기관은 충원계획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구매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에도 98%는 기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69] 구매인력 충원계획

(단위 : %, N = 433)



라. 시스템 운영

1) 구매업무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보급 확대 필요

구매시스템 구축의 주된 이유는 구매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9.3%인 73개 공공기관이 구매업무의 효율화(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5.2%인 31개 공공기관은 구매담당인력의 효율화(적은 인력으로 구매업무를 처리하는 개념)를 위해 구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3%인 4개 공공기관은 구매대행사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유로는 타 공공기관과의 시스템 공유, ERP구축,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구매, 구매실적관리의 효율화, 발주·지출까지의 과정 일원화, 예산통제 및 절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활성화 등과 같은 사유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0] 시스템 구축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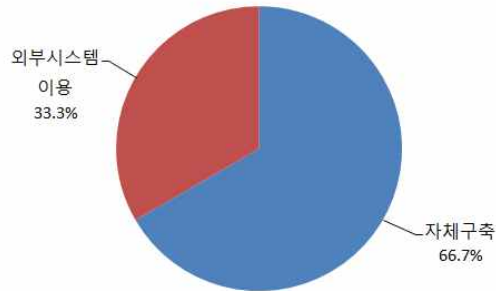
(단위 : 개, N = 123)

기타	15
자재구매대행사 이용 시 꼭 필요해서	4
구매담당 인력의 효율화를 위해	31
구매업무 효율화를 위해	73

구매시스템 귀속여부에 대해서는 66.7%인 82개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5.3%인 41개 공공기관은 외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1] 시스템 귀속여부

(단위 : %, N = 123)



외부시스템은 53.7%인 22개 공공기관이 저렴한 비용 때문에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4.4%인 10개 공공기관은 충분한 기능보유, 22.0%인 9개 공공기관은 이용의 편리성 등의 사유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2] 외부 시스템 이용 사유

(단위 : %, N = 41)

이용이 편리	22.0%
필요기능 보유	24.4%
비용이 저렴	53.7%

마. 애로사항

1) 납품력이 검증된 중소기업업체 발굴 애로

공공기관들은 소모성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대기업 수준의 중소기업업체를 발굴하는 것에 대한 애로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기관이 원하는 서비스 수준]

- 배송된 제품의 규격이 정확
- 적정 가격
- 요청 납품일 준수
- 교환, 반품 가능 등

관로지원법 개정이후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공공기관간 거래가 중단되면서 구매담당자의 구매업무가 증가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기업 수준의 중소기업업체 발굴을 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소모성자재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2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실태조사」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도되었던 조사로 구매담당자가 소모성자재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자료만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소모성자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국가계약 법률에 따른 복잡한 입찰절차도 23.9%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그림 2-73] 소모성자재 구매 관련 애로사항
(단위 : %, N = 427)

기타	16.9%
관련 법률에 따른 입찰절차 복잡	23.9%
대기업 수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 발굴 애로	29.5%
소모성자재 개념이해의 어려움	29.7%

[기타 세부 애로사항]

- 소량구매 시 전산이용 불편
- 다수의 소액계약으로 인한 시간 및 인력 낭비
- 의무구매물품의 구입이 어려움
- 물품가격 및 품질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
- 녹색제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업체난립, 미인가 업체 많음
- 분리발주 어려움 등

2) 자재구매대행업자 이용 시: 특정 납품업체에 편중

자재구매대행업자를 이용할 경우 특정 업체 제품이 지속 납품되어 다양한 제품의 사용기회가 부족하거나,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1.8%가 특정 업체 제품의 지속적인 납품이 가장 문제라고 응답하였으며, 31.3%가 연간계약에 의한 구매대행사 변경의 어려움, 19.4%가 구매품의 품질수준 미흡, 7.5%가 납품기간의 지연 등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2-74] 자재구매대행업자 이용 시의 애로사항
(단위 : %, N = 67)

납품기간 지연	7.5
구매품 품질 수준 미흡	19.4
연간계약에 의한 구매대행사 변경의 어려움	31.3
특정업체 제품 지속납품	41.8

3) 조달청 이용 시: 구매절차 간소화 필요

조달청 이용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는 구매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구매시간 지연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공공기관의 58.2%가 구매의 건별 입찰등록 및 계약 등 구매 관련 시간 지연 때문에 조달청 이용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8%가 유찰 및 재입찰 등 납기지연, 15.8%가 각종 통계작성의 어려움, 2.5%는 다양하지 않은 물품종류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애로사항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의무구매품목의 부족 등이 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2-75] 조달청 이용 시 애로사항

(단위 : %, N = 361)

기타	2.8	
물품조유가 다양하지 않음	2.5	
각종 통계작성 어려움	15.8	
유찰/재입찰 등 납기지연	20.8	
건별 입찰등록 및 계약 등 구매 관련 시간지연		58.2

[기타 세부 내용]

- 복잡한 절차
-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 의무구매품목 종류의 부족 등

4) 직접 구매 시: 납품업체 선정 및 관리 애로

공공기관은 직접구매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직접구매 방식에는 납품 품질이 검증된 적합업체를 선정하는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직접 구매 방식의 경우 납품업체를 건별로 선정·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시간이 적지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조달청 이외의 직접 구매는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사준비 등의 부가적인 업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31.5%가 구매건별 납품업체 선정을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3.1%가 감사에 따른 후속 대응절차, 20.6%는 납품업체 신뢰도 측정의 어려움, 19.3%는 구매 건별 많은 소요 시간을 주요 애로로 응답하였다. 기타로는 판매사의 개별택배 발송에 따른 주문품 취합의 불편사항으로 나타났다.

[그림 2-76] 직접 구매 시 애로사항

(단위 : %, N = 394)

기타(물류효율화 어려움(개별택배 발송)	5.6
건별 대응으로 많은 시간 소요	19.3
납품업체의 신뢰도 측정이 어려움	20.6
감사대상이 됨	23.1
납품업체를 건별로 선정해야 함	31.5

5. 민간 소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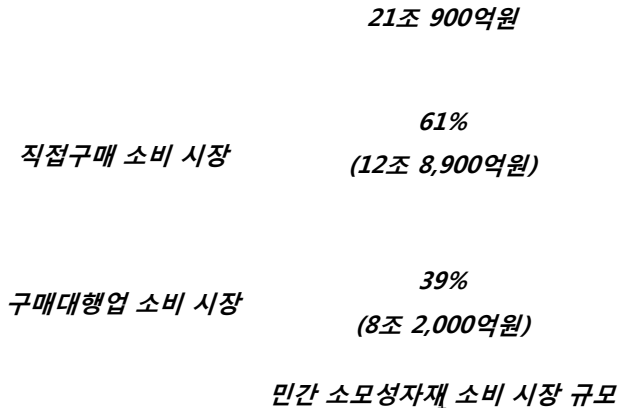
가. 민간 소모성자재 소비 규모

1) 연간 약 21조 900억원 구매

소모성자재 민간 소비 시장은 크게 자재구매대행업을 통한 소비 시장과 직접구매를 통한 소비시장으로 나뉘며, 이를 포함한 전체 민간 소모성자재 소비 시장은 약 21조 900억원으로 추정되었다¹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매대행업을 통한 소비시장은 전체의 39%를 차지하는 약 8조 2,000억원 이었으며, 직접구매를 통한 소비시장은 전체시장의 61%를 차지하는 12조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림 2-77] 민간 소모성자재 소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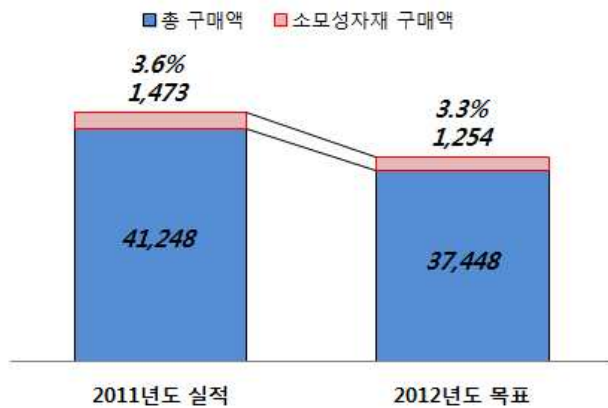
14) 제2장 시장규모 추정, 민간 소비시장 규모추정 참조

2) 민간 소모성자재 소비시장 위축 우려

민간 기업들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물품 구매를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특히, 소모성자재의 비중을 작년대비 3%p 낮추도록 설정하고 있어 민간 소모성자재 소비시장의 위축이 예상된다.

구매실적 및 구매목표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45개 민간기업의 2011년 평균 구매액은 412억원 이었으며, 소모성자재의 평균 구매액은 평균 구매액의 3.6%인 14.7억원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2년도 평균 구매목표액은 375억원, 소모성자재 구매목표액은 3.3%인 12.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8] 2011년도 구매실적 및 2012년도 구매목표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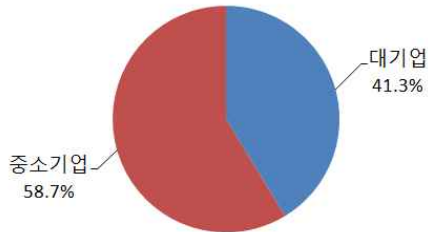
나. 구매 유형 및 특성

1) 대기업 제품보다 중소기업 제품 선호

민간 기업들은 대기업 소모성자재보다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모성자재 제품유형별 구매비중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58.7%가 중소기업 소모성자재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1.3%는 대기업 소모성자재를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79] 소모성자재 제품유형별 구매 비중
(단위 : %, N = 36)



소모성자재 구입 시 대기업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로 취급·거래하는 품목이 대기업 제품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대기업 제품은 품질 보장 및 품목 선택이 다양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구매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 서비스의 신속성 및 만족도, 거래의 용이성 및 기존 거래업체 등의 이유로 대기업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자가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용상의 편의성과 신속성, 그리고 대량 구매에 따른 저렴한 가격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80] 대기업 구매 이용 이유

(단위 : %, N = 10)

기타	11.1	
거래용이(근거리) 및 기존거래처	11.1	
서비스의 신속성 및 만족	11.1	
비용 절감(가격 절충)	22.3	
품질보장 및 다양성	22.3	
주 취급 품목이 대기업 제품		33.3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거래의 용이성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그리고 주요 취급품목이 대기업제품(대기업 제품을 중소기업이 유통), 납품사가 대부분 중소기업, 서비스의 신속성 및 높은 만족도, 비용 절감 가능 등의 의견도 있었다.

[그림 2-81] 중소기업 구매 이용 이유

(단위 : %, N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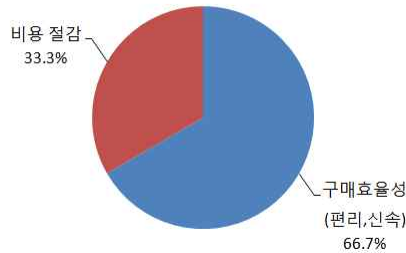
빠른 납기	4.3	
품질보장 및 다양성	4.3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	4.3	
비용 절감(가격 절충)	13	
서비스의 신속성 및 만족	13	
납품사 대부분이 중소기업	13	
주 취급 품목이 대기업 제품	17.4	
거래용이(근거리) 및 기존거래처		30.4

2) 자재구매대행업자 이용 시: 편의성과 효율성이 중요

구매사가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신속하고 편리한 구매의 효율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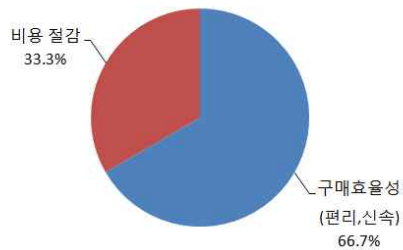
실태조사 결과 구매효율성 때문에 자재구매대행업자를 이용한다는 의견은 총 6건으로 전체의 66.7%로 나타났으며, 비용절감 때문이 3건으로 33.3%로 조사되었다.

[그림 2-82]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선호 이유 (단위 : %, N = 9)



한편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를 선호하는 이유도 대규모 자재 구매대행업자 이용 의견과 동일하였다. 구매효율성이 4건으로 66.7%, 비용절감이 2건으로 33.3%로 조사되었다.

[그림 2-83]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 선호 이유 (단위 : %, N = 6)



구매대행업자 이용 시 장점으로는 시스템을 이용한 구매가 가능한 점과 구매비용 및 구매시간의 절감으로 나타났다.

[그림 2-84] 자재구매대행업자 이용 시 장점

(단위 : %, N = 9)

각종 통계자료 처리의 편리성	11.2	
구매비용 및 구매시간 절감		44.4
시스템을 이용한 구매가 가능		44.4

3) 직접 구매 시: 비용절감이 가장 중요

직접구매방식을 선호하는 구매사는 비용 절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익숙한 구매방식이기 때문에 선호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소량의 물품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란 의견도 소수 나타났다.

[그림 2-85] 직접구매의 선호 이유

(단위 : %, N = 29)

기타 및 무응답	6.9	
기존 거래처 선호	6.9	
업체 규모가 작아 구매 물품이 적어서	13.8	
기존의 구매방식이기 때문에		31
비용 절감		41.4

직접구매 시 장점으로서는 원하는 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50.0%로 18개 업체가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인근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거래 가능이 38.9%로 14개 업체가 응답하였다.

[그림 2-86] 직접 구매 시 장점

(단위 : 개, N = 36)

신속한 입고처리가 가능	4
지역 구매업체를 중심으로 거래가 가능 (지역 경제 활성화)	14
원하는 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음	18

다. 운영인력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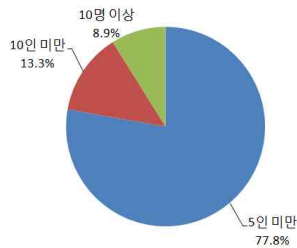
1) 업체 평균 4.4명의 구매인력 보유

민간구매사들은 구매업무에 평균 4.4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공공기관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기업 중에서 구매업무 투입인력이 5인 미만인 업체가 77.8%인 35개사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인 미만이 13.3%인 6개사, 10인 이상이 8.9%인 4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7] 구매업무 투입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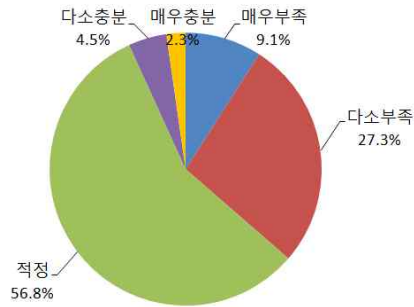
(단위 : %, N = 45)



구매인력의 적정성에 대해선 전체 응답기업의 56.8%인 25개 기업이 현재 구매인력 규모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6.8%인 3개 기업만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6.4%인 16개 기업은 구매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88] 구매인력규모의 적절성

(단위 : %, N = 44)



라. 애로 사항

1) 자재구매대행업자 이용 시: 빈번한 납품 지연

자재구매대행업자를 이용하는 민간업체들은 납품 지연에 따른 문제점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재구매대행업자 이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납품기간 지연을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44.5%로 나타났으며, 특정업체 제품의 지속적인 납품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22.2%로 조사되었다.

[그림 2-89] 자재구매대행업자 이용 시 애로사항
(단위 : %, N = 9)

기타	11.1	
대금 지급 지연	11.1	
연간 계약에 의한 구매대행사 변경의 어려움	11.1	
특정업체 지속 납품	22.2	
납품 기간 지연		44.5

2) 직접구매 시: 부가 업무 과다

민간업체들은 품목별로 납품업체를 선정해야하는 불편함을 직접 구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선정하였다.

납품업체를 건별로 직접 선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55.6%로 나타났다으며, 선정된 납품업체의 신뢰도 측정이 어렵다는 점이 22.2%, 건별 대응으로 인한 많은 시간의 소요가 16.7%로 조사되었다.

[그림 2-90] 직접 구매 시 애로사항
(단위 : %, N = 36)

물류의 효율화 어려움(개별 택배 발송)	5.5	
건별 대응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	16.7	
구매업체의 신뢰도 측정이 어려움	22.2	
구매업체를 건별로 선정해야 함		55.6

제3부

소모성자재 관련법률 및 지원정책

제1장 관련법률 및 지원정책 요약

제2장 국내 소모성자재 관련 법률현황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장 주요 지원기관 현황

1. 중앙 부처
2. 지방자치단체
3. 주요 지원기관

제4장 주요 지원정책 현황

1. 직접 지원정책 및 제도
2. 간접 지원정책 및 제도

제5장 해외 지원정책 현황

1. 미국의 중소납품업체 지원정책 현황
2. 일본의 중소납품업체 지원정책 현황
3. 프랑스의 중소납품업체 지원정책 현황
4. 독일의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지원정책 현황

제 1 장

관련법률 및 지원정책 요약

소모성자재 관련 법률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제정

하지만 해외 선진국의 경우 소모성자재를 별도의 산업으로 인식하지 않아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민간 협회·단체 등이 자생적으로 발전하여 관련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소모성자재 관련 법률은 2011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소모성자재에 관한 특별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대기업에 편향된 왜곡된 시장 구조가 시장의 자구적 노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적고,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기존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할 경우 그 효과가 적다는 판단에서이다.

■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이 소모성자재 구입 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 우선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소모성자재 산업을 지원하는 중앙부처로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조달청 등이 있으며, 주요 지원기관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전국 6대 광역시 및 9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표 3-1] 서울특별시 조례안 핵심사항

주요 지원정책 방향
·시장은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4조)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안 제6조)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유통 및 판매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서울특별시와 산하기관 등은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 우선구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8조)

■ 소모성자재를 지원하는 형태로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이 있는데 직접 지원방식으로는 「소모성자재 납품업 실태조사 실시」,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공동MRO물 운영」 등이 있고, 간접 지원방식으로는 「공공조달계약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 국내처럼 소모성자재 관련업체를 일반 기업과 구분한 별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원정책을 마련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각 국가마다 산업발전 양태가 서로 상이하여 소모성자재 산업 지원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미국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일본의 산업은 국내처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 되었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대기업에 유리한 일방적인 조건 때문에 중소 납품업체의 기업경영이 악화된다거나, 대기업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형태로 중소 납품업체의 기술을 유출하는 등의 행위가 없어 대기업과 자연스럽게 상생하며 발전하였다.

- 프랑스는 1950년대 후반 대기업 독과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주요 제도로는 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되는 상행위의 명확화 등을 위한 신경제조정법¹⁵⁾이 있고, 기업설립 시 수속 간소화와 세제우대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투자 촉진을 조성하는 창업촉진법이 있고, 기존 중소기업 및 신규 설립된 기업의 발전을 확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진흥법 등이 있다.

- 독일의 소모성자재 산업은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성장·발전 하였다. 독일도 소모성자재만을 위한 지원제도나 전담 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규격 제정, 공동구매, 서비스 지원 등 활발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15) 프랑스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특히, 유통업자가 갖고 있는 힘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들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

국내 소모성자재 관련 법률현황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가. 입법 배경과 취지

국내 경제는 대기업 주도로 성장·발전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정해놓은 틀에 종속되어 시장을 선도하거나, 획기적인 마진을 확보할 구조적인 체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정책 추진을 위하여 「중소 기업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을 기반으로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은행법」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중소기업시책들을 보완하였다. 하지만,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에도 불구하고 1980년 이후 중소기업은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등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은 정부,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물품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것을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및 경영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1994년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었다.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거대자본 및 인지도를 기반으로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 중소기업은 존립기반을 잃고 경영난이 가중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대기업들이 소모성자재 납품업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소 유통업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사업영역 침해, 납품업체와의 불공정거래 등의 갈등과 문제점을 일으켰으며, 나아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 증가

■ 공정위, 46개 그룹 현황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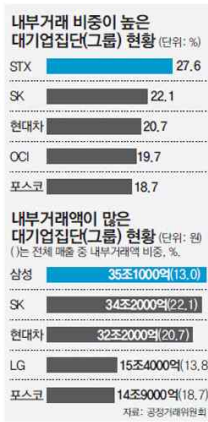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전년보다 약 42조 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 중에선 삼성을 제외한 9개 그룹의 내부거래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보다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의 내부거래가 여전히 일부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오너의 재산을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46개 대기업집단 매출(1407조 원) 가운데 내부거래인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186조3000억 원)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3.2%로 2010년보다 1.2%포인트(41조6000억 원) 높아졌다.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24.5%로 상장사(8.6%)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비중으로는 STX(27.6%) SK(22.1%) 현대자동차(20.7%) 등의 내부거래가 많았고 금액으로는 삼성(35조 원) SK(34조 원) 현대차(32조 원) 등이 높았다.

공정위는 비상장사나 총수 지분이 많은 계열사일수록

자료: 동아일보(2012. 8.31)



이에 따라 2011년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¹⁶⁾

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총 7장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부터 제2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제4장 구매 효율성의 제고 및 이행력 확보,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제5장의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지원,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과 용어들의 정의,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공공기관에서 제품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에게 수주 기회를 증대시키고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이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서 경쟁제품의 지정 및 계약방법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자격 및 제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체결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 확인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16) 2011년 7월 25일 법률 개정(안) 공포

제3장은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과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 사유 등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제품구매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능보험사업의 실시 및 자격요건과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4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과 이들의 임무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제품납품 계약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자는 제품품질을 보장해야 하며, 중소기업청장 및 중앙행정기관장은 원자재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중소기업자의 정보 및 공공기관의 구매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5장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 및 판로거점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중소기업 국외판로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의 생산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자의 물류현대화사업 지원과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을 지정·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5장의 2는 2011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소모성자재 구입 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 우선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6장은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장부·서류 및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별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7장은 각 규정조항의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자에 대한 양벌규정 및 과태료 등과 같은 벌칙사항을 담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존립기반 확보와 동시에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통하여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인 경영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최근 개정 및 신설된 소모성자재 및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소모성자재관련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업영역분쟁에 대한 갈등 축소 및 상생협력관계 강화, 공공기관의 공익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011년 말에는 서울시가 최초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되어 있는 타 법률 및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 신설 및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가. 입법 배경과 취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조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국가중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조달체계의 구축·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달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총 12조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제1조는 법의 목적, 제2조는 용어 정의, 제3조는 조달사업의 범위, 제3조의2는 조달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조달교육, 제4조는 파생상품거래, 제5조는 계약의 특례, 제5조의2는 계약체결 요청, 제5조의3은 대금지급, 제6조는 수수료, 제6의2는 연체료, 제7조는 시설관리 등의 위탁, 제8조는 전자조달의 이용, 제9조는 조달절차, 제9조의2는 우수조달물품지정, 제10조는 포상금 지급, 제11조는 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제12조는 민관공동 비축사업 등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조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법의 목적을 담고 있으며,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제3조는 조달청장이 시행하는 조달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및 납품업무 종사자의 조달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조달청장이 필요 시 파생상품의 거래뿐만 아니라 파생상품거래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제5조는 조달청장이 필요 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의2는 수요기관장이 요건기준에 부합할 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고, 제5조의3은 체결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장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6조는 조달청장이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에서 수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결정 및 징수 절차와 수수료 감면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의2는 제6조의 수수료에 따른 연체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타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8조는 조달청장이 조달사업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장은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공사계약 체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는 조달사업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의2는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를 지정 및 고시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제10조는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수행 공무원의 뇌물수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증거자료의 제출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와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는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을 구매원가 및 물자수급과 가격동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12조는 조달청장이 비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공동 비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지원 및 제재조치, 비축 사업의 참여대상, 방법 및 기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공기관의 수요물자 구매와 시설공사 등의 계약 및 조달에 있어서 조달사업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와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조달사업을 통한 물품조달은 공공기관의 행정활동을 보조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공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공익실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지원기관 현황

1. 중앙 부처

가. 기획재정부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전략적인 자원 배분과 예산 활용의 성과를 평가한다.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과 총괄적인 조정을 하며,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를 총괄한다. 기타 외국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대외협력 및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활성화, 자금, 인력, 수출, 판로확대 등 중소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자금 및 인력지원, 기술혁신과 지방중소기업 육성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 소모성자재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시정 및 신설을 요구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사업영역 조정역할 및 소모성자재 관련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강화와 소모성자재 납품업 실태조사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표 3-2] 중소기업청 지원정책 현황

주요 지원정책 방향
중소기업의 자금안정화 및 인력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창업 및 창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원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대·중소기업간의 협력 및 사업영역 조정과 공공시장의 중소기업 참여확대 등의 동반성장과 FTA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중소기업의 역량 및 경쟁력 강화와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다. 지식경제부

국내 산업, 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정보통신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우정사업(우편·예금·보험) 등 산업정책을 통합조정하고 관장하고 있는 정부부처로서, 실물경제 활성화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3-3] 지식경제부 지원정책 현황

주요 지원정책 방향
수출의 지속적 증대와 교역의 확대균형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외국과의 산업·통상협력 증진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대응, 대체에너지, 에너지안전 및 국내외 자원개발 정책의 수립·시행

석유, 가스, 전력, 원자력, 석탄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확보와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통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전자상거래의 확산 및 산업의 정보화 촉진 등 미래지향적 산업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산업의 효율적 배치와 지역경제·지역산업정책 및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기술개발·이전 및 사업화, 산업표준화, 디자인산업의 육성 등 산업기술 정책의 수립·시행

부품·소재,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산업 등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의 수립·시행

반도체, 정보통신, 바이오, 신소재산업 등 신성장산업의 발굴·육성

라. 조달청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정부 보유 물품 관리,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정부 조달전문기관으로서 제도와 조달전문교육과정 운영, 국가경제정책 지원, 주요 공사시설물에 대한 감리와 공사관리, 해외조달시장 개척으로 중소기업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3-4] 조달청 지원정책 현황

주요 지원정책 방향
중소기업 및 지방업체 등의 공공조달 납품·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조달사업의 조기집행 및 조달가격과 정부자산관리의 강화를 통하여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탄력적인 원자재 비축 및 방출과 원자재 위기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조달참여자간의 건전한 거래촉진,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조달 시장에 공정한 경쟁문화 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와 전국 6대 광역시 및 9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내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영안정화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각 분야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기관에서 필요한 소모성자재를 대규모 자재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구매하여 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과 사업영역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모성자재 납품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규모 업체의 육성과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각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는 관련법률 개정 및 다양한 정책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최초로 소모성자재 납품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위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하였으나 현재 계류 중에 있다.

[표 3-5] 서울특별시 조례안 핵심사항

주요 지원정책 방향
시장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4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안 제6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유통 및 판매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서울특별시와 산하기관 등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 우선구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8조)

3. 주요 지원기관

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가 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자금, 컨설팅, 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3-6] 주요 지원사업

주요 지원정책 방향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우수 중소기업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을 창출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전시 판매장을 설치·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협업화를 통한 경영개선으로 공동기술개발 및 원자재공동구매를 추진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연구개발, 제조, 디자인,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간에 협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거나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생산, 판매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
수출실적이 부족하거나 담보력이 취약하여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 및 수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 위주로 수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사업전환자금 연계지원을 통해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
생산시설의 가동 및 유지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자금,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여 단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

구매가이드 제시 및 그 밖의 종합적인 서비스 등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중소기업유통센터 내의 MRO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본 백서를 구축하기 위한 소모성 자재 납품업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중소소모성자재 납품업체 지원을 위한 마케팅 활동 및 공동MRO 물 구축을 통해 중소납품업체의 실질적 판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1) 마케팅 지원

마케팅 지원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은 첫째, 온라인(홈페이지)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 정보제공등 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둘째, 효과적인 홍보를 통한 중소납품업체의 참여도 확대, 셋째,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자문위원 운영을 통한 자생력 육성, 넷째, 중소납품업체 취약분야 보강교육을 통한 경영 및 영업력 강화, 다섯째, 상담서비스를 통한 정보제공 및 애로사항 접수·해결을 들 수 있다.

가) 홈페이지 개설

사업의 목적은 홍보, 정보 및 온라인 상담, 지원센터의 소개 등 중소납품업자 및 구매기관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사업의 범위는 첫째, 사업 목적에 맞는 홈페이지 디자인 및 메뉴 구성, 둘째, 사업부문별 정보제공 및 이용이 용이한 홈페이지 구축, 셋째, 안정적인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관리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업목적 및 센터 이미지에 부합한 디자인, 메뉴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원센터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참신하고, 고급스러운 화면을 구성하고,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분류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홈페이지를 구성, 기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홈페이지 연계기능 강화 등이 있다.

홈페이지 메뉴는 지원센터 소개(설립목적 및 소개, 협력기관, 찾아오는 길 등), 지원내용(홍보, 온라인 상담, 자문요청 및 전문가 지원 등), MRO자료실(MRO실태조사, 최근소식, 정책 및 법규 등), 소통 & 안내(알림광장, 참여광장 등), 회원관리(관리자 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웹표준 등) 등이 있다.

기대효과로는 중소MRO 납품업체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따른 사용자 편의성 증대와 국내 MRO 업계 관련자료의 Data Base화로 체계적 실태관리, 국내 유일의 MRO관련 종합정보 제공처로서 역할 수행 등이 있다.

나) 중소납품업 홍보지원

지원센터의 기능 및 사업내용을 홍보하여 많은 중소납품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홍보물 제작·배포 및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업내용을 홍보하며, 실태조사, 성공사례, 구매기관 정보 등 지원효과 홍보를 통하여 관련기관, 중소납품업체 및 단체(조합, 협회 등)의 활용기회를 제공한다.

세부 홍보계획은 중소소모성자재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신문 및 전문잡지, 브로셔,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연 1회 이상 홍보업체 모집 및 선정을 진행하며, 그 밖의 홍보물의 경우

필요시에 제작하였으며, 주요 기관(소모성자재 관련)에 배포하거나 센터내 비치 하며, 우수지원사례 등 실제 지원사례 홍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 지원 성과를 제고하고 있다.

다) 컨설팅 사업 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열악하여 대기업 MRO업체들과의 경쟁을 위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전문위원의 상담 등 전문 컨설팅 제공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 중소기업들에게 최적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및 그 외 소모성자재 납품업 관련 조합, 단체 등 소모성자재와 관계된 업체 전체를 지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컨설팅 접수 및 지원방법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컨설팅 요구를 접수하고 있으며, 지원 방법으로는 자문기구 운영 및 전문 컨설팅기관 의뢰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컨설팅 사업은 연중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 및 전문 컨설팅기관 의뢰도 필요시마다 진행하고 있다.

라) 자문위원 Pool 구성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Pool을 구성하여 업체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마) MRO 교육

전문화된 교육 커리큘럼 기획 및 실질적 교육효과를 위하여 전문강사 Pool을 활용한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고, 입찰방법, 물류 운영, 온라인 시스템 활용 등 MRO관련 교육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운영능력을 강화하였다.

바) 상담업무

온라인(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을 통한 중소기업업체 상담을 통하여 개별 중소기업업체들의 애로사항 접수, 컨설팅 자문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상담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애로상담, 기타문의 및 정보제공 등이다. 전화, E-mail, 홈페이지 내 Q&A게시판 활용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애로사항을 상담하며, 직접상담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업체를 위한 직접방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 공동MRO물 구축

공동MRO물 구축의 중점 추진방향은 대기업 수준의 공동MRO물 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업체의 열악한 구매 인프라 제공으로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공동MRO물 구축 방법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MRO시스템을 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하여 신규구축 대비 투자비용이 저렴한 고도화 작업을 통하여 중소기업 공동MRO물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업체 및 구매기관의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가) 공동MRO물 구축 및 운영

공동MRO물 구축·운영은 중소기업 및 구매기관(민간, 공공)의 이용 편의를 위한 대기업MRO 수준의 인프라(시스템, 인적자원, 물류, 상품 등록 등) 제공으로, 사업범위는 구매대행 및 판로연계 지원 등 판로개척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다.

[표 3-7] 시스템 고도화

구분	세부내용	비고
사용환경	◦ 대기업MRO시스템 수준	
운영인력	◦ 유지보수 인력 2명소요(아웃소싱)	구매사 확장시 인력투입
구축기간	◦ 3개월	'12년 5월~7월

또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유지보수 전문 아웃소싱 인력을 보유하고 신규 구매사 인터페이스 구성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

나) 품목 표준화

품목분류를 대, 중, 소로 구분하고 상품별 카테고리를 구성하며, 개별 상품별 표준코드 부여를 통한 관리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주 사업의 내용은 시스템 구축 전 전문인력 투입을 통한 기본 품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시행하고, 이후, 추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인력으로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동MRO물 시스템에 대한 기대효과는 대기업 수준의 시스템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효율성 강화 및 편의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구매연계를 통한 실질적 판로지원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대기업 수준의 체계적인 인프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 4 장

주요 지원정책 현황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청 및 조달청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주로 기존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이용한 간접지원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1. 직접 지원정책 및 제도

가. 소모성자재 납품업 실태조사 실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기업 MRO업체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년마다 국내 소모성자재 납품업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모성자재 납품업에 대한 지원 가이드를 마련하여 중소납품업체 지원정책수립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마케팅 지원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마케팅, 물류 등의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업체의 자생력 강화 및 경쟁력 확보 기회를 제공하고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 중소기업 공동MRO물 운영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내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공동 MRO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에 균등한 납품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 수준의 구매 시스템을 통하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업체 간에 상품거래의 편의성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인적자원, 물류, 상품등록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판로확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2. 간접 지원정책 및 제도

가. 공공조달계약제도

국가 등이 원활한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국가의 경제질서와 공익실현을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공공조달의 행정체계는 공공부문의 집중조달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분산조달제도로 구분되며, 공공조달은 조달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일반조달과 국방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군수조달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일반조달은 조달청을 반드시 이용해야하는 당연기관과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임의기관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물자 및 시설공사에 대한 조달은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구매가 유리하거나 긴급물자 및 용역 또는 비밀리에 조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 조달을 허용하고 있다.

공공조달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제한경쟁),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하게 하며(지명경쟁), 수의경쟁을 할 수도 있다.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방법으로는 최저가 입찰금액 중에서 과도한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입찰가격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 낙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제도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연대보증인제도도 도입되어 있다.

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재화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대기업과의 경쟁은 피하게 하되 중소기업 간에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여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구매제도는 국가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수주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최저가 낙찰제 및 하도급에 대한 폐해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공공구매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 3-8] 공공구매제도 내용

지원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물품구매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 계획 및 실적 평가 및 공표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액수의 계약 등에 참여
계약이행 능력심사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제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일정한 납품가격 이상을 보장
적격조합 확인제도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제도에 참여하는 조합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수주 활동 지원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	공공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수주활동 지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의무화·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에 포함하고자 하는 조합 또는 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지정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제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 참가자격이 등록된 자	품목별로 나라장내에 계약 품목을 등재, 판매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선급금을 제외하고 80%까지 대출 가능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공공구매에 대한 정보획득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공공 입찰정보, 공공구매 제도 안내 및 신청 등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고 공공구매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
성능인증 제도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성능인증
성능보험 제도	기술개발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성능보험을 통해 문제발생시 피해보상

1)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한 제도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총 구매액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은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에 대하여 공공기관별 구매계획과 실적을 매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2)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한 직접생산 능력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직접생산이 확인된 기업에 한하여 조달시장에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후에 하청 생산한 제품, 수입제품 및 대기업제품 등이 납품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직접생산 확인 건수는 2010년에 92,666건, 2011년에 50,720건이 있다. 방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계약이며,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및 1,000만원 이상의 특정단체 등과의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수의계약 대상자는 특정단지·특별지원지역 입주공장, 국가유공자 복지공장, 특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인, 국가유공자상이단체, 장애인 복지시설·단체 등으로 한정한다. 신청·접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제시된 경우만 제출하면 된다.

- 사업자등록증명(3개월 이내 발급분)
-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 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 (가입자명 명기)
- 기능사, 기사 보유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
- 생산설비 증빙서류 : 필수장비의 경우 구입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 납품실적 증빙서류 : 납품실적(민급 또는 관급) 증빙자료
- 전기 사용실적 증빙서류 : 전기료 납부 영수증
- 생산정보 증빙 서류(생산공장이 필수인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은 소유에 대한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와 임대에 대한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납입증명(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임대한 기업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납입증명(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건축물관리대장(용도가 제조업소 또는 공장일 것)을 제출하면 된다.

[그림 3-3] 직접생산 확인제도 처리 절차



자료: 2012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3) 계약이행 능력심사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뢰도 등을 평가하여 최저가 낙찰을 배제하고 일정한 납품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시장선점을 위한 과당경쟁 및 덤핑입찰로

인한 과도한 가격하락을 막아 적정가격 수준에서 최종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가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고,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조합에 대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한다.

제도의 내용은 최저가로 응찰한 중소기업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심사기준은 납품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 등으로 평가한다.

- 10억원 미만 : 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 30점 비율로 평가
- 10억원 이상 : 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 신인도 +3~-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고시 금액(2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신용등급평가는 면제한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평가를 만점(3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70점), 신인도(+3~-2점), 결격사유(-30점)와 합산하여 평가

제출 서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이행능력심사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기타 제출서류 각 1부이다. 유의사항으로는 신인도 평가 등 심사관련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입찰공고일 이후 제출된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4)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 지원 요건

해당 조합 조합원의 1/2 이상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일 것이며,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이며,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허가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구매 업무 관련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할 것이며, 해당 조합원사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여야 한다.

나) 유의사항 및 지원내용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지원내용은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조합은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소속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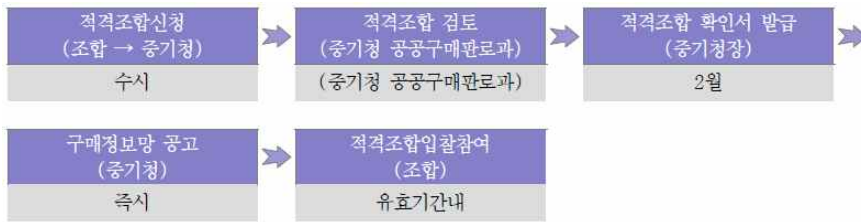
다) 과거와 달라진 내용

적격조합이 해당제품의 경쟁시장에서 2개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였다. 단, 아스콘·레미콘은 제외하였다. 해당조합

조합원사의 2/3 이상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기업일 것을 1/2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신청·접수는 신청서 작성 후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주요 확인 내용은 직접생산확인 조합원 비율, 조합의 시장점유율 등이 있다.

[그림 3-4] 적격조합 확인제도 처리 절차



자료: 2012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5) 중소기업자간 경쟁의무화제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 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을 통해서만 구매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쟁력을 가진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제한 없이 능력에 따라 경쟁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공시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가) 지원 대상

공공기관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으로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20억원 이상인 공사
 -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

나) 지원 내용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중소기업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 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한다.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하게 된다.

직접구매 제외 경우는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기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한다.

②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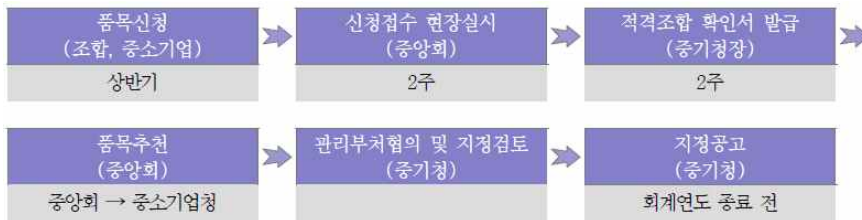
③ 그밖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이다.

다) 유의사항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등급, 직접생산확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미리 받아야한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조합이 신청하거나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가능하다. 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공지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으로 검색하여 서식 다운로드 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정추천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사본),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생산업체별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예상물량 관련 증빙서) 등이 있다.

[그림 3-5]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제도 처리 절차



자료: 2012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6)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시에 소요되는 자재 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관이

직접구매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기회 증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7)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미국의 GSA(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에서 실시하는 MAS(Multiple Award Schedule Program)제도, 영국의 Framework Agreement제도, 캐나다의 Standing offer제도의 장점을 취합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존의 최저가 낙찰자 선정방식으로는 구매품목 다양성의 문제와 품질저하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수요기관의 선택권도 보호해주는 기능도 필요했기 때문에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은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 일정한 기준에 만족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나라장터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8) 공공구매론제도

정부와 공공부문의 조달입찰에서 낙찰된 중소기업들이 납품에 소요되는 생산자금을 낙찰과 동시에 금융기관들로부터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림 3-6] 공공구매론 처리절차



자료: 2012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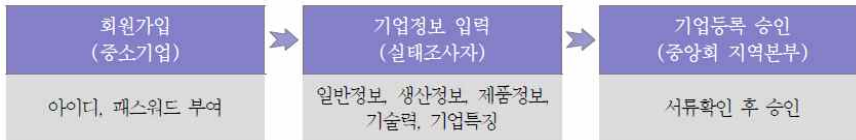
9)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운영제도

공공영역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여부확인, 이행능력 확인 및 제품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에게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여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공공구매기관 및 중소기업의 업무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공공구매계획 정보와 주요 공공기관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 안내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생산기업 현황정보를 제공하며, 성능인증, 신기술인증 등을 받은 기술개발제품 생산기업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중소기업 신용평가정보, 기업일반현황(생산, 인력, 기술 인증), 공공기관 입찰시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종합정보망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다.

회원가입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해당 기술력, 기업특징의 인증 자료 사본, 보유 면허증, 인가증 등 사본, 생산정보 증명 서류 등이 있다.

[그림 3-7]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운영제도 처리 절차



자료: 2012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10)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안전인증(GS), 우수조달제품 중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1) 성능인증(EPC)제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 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대상이 되도록 성능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2) 성능보험제도

중소기업이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안전인증(GS),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된 제품에 대해 성능보험에 가입하면 납품한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제도이다.

13) 우수제품제도

우수제품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 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14) 공공구매지원 관리자제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법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 지방중소기업청 및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담당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확대를 비롯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다.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업체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상호 경쟁력 확보 및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모성자재 시장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제7차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MRO실무위원회를 구성한 후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대기업의 신규영업 범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 질서유지 준수사항, 소모성자재 시장 보호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및 조치사항 등 4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3-9]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구분	내용	
대기업의 신규영업 범위 규정	·내부거래 비중 30%를 기준으로 사업범위를 구분	
	기준(내부거래비중)	MRO대기업 사업범위
	30%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계열사+매출규모 3,000억 이상 중견기업
	30% 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계열사+매출규모 1,500억 이상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된 업종을 영위하고 품질 및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1차 협력사 포함 -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이외 대기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MRO대기업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은 구매비중을 30% 이하로 하여 중소기업 생존권을 보장 ·신규 공급사 영입시 기존 중소기업 거래물량의 50% 이상을 보장 	
공정거래 질서유지 준수사항	·MRO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취득과 우월적 지위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이익율 또는 매출이익율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단가 일방적인 인하요구 금지, 일방적 거래단절 금지, 구두발주 및 계약 금지, MRO덤핑공세금지, MRO품목의 기술/지식 탈취금지 등 	
	·자발적 감시활동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소기업 간 횡포,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이드라인은 무효화	
MRO시장 보호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저가생산 PB상품을 가급적 유통시키지 않음	
	·대기업은 해외 MRO시장 개척에 역량을 집중	

	· 해외 진출 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인과 협력하여 진출
	· 동반성장 펀드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
	· 상호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노력
사후관리 및 조치사항	·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동으로 이행실태 점검, 결과 공표
	· 사회적 권고조치, 민원발생 시 자율조정 실시

2. 간접 지원정책 및 제도

가. 정책자금 지원

1) 용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만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된다. 업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한다.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은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2) 용자 및 대출한도

50억원까지(수도권은 45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잔액기준 한도 예외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하다. 대출한도는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45%p 차감 또는 0.05~0.35%p 가산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해중소기업은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가 분기별로 공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분기별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평가등급(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시의 평가등급) 및 담보 종류 등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신용위험 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서도 금리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3) 용자 방식 및 절차

중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로 대출하고 있다.

용자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용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용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www.sbc.or.kr) 또는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한다.
- ②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및 소공인 특화자금은 기업평가등급 산정 없이 별도기준으로 운영)한다.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만 활용하고,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 산정한다.
- ③ 용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여부 결정한다.
- ④ 자금대출 : 용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용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한다.
- ⑤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한다. 대출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실행한다.

4) 용자 제한 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단, 세금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분납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 허용)
-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
-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최우수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10억원 미만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 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재해 피해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⑧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⑩ 업력 5년 이상 기업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대출잔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등은 예외

5) 용자 시기

2012.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사업별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다만,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매월 1일 ~ 5일
-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매월 6일 ~ 10일

나. 신성장기반 자금

1) 용자 규모 및 지원대상

8,550억원으로 2011년 지원현황은 신청기업 1,915개사 중 1,526개사 선정지원하여, 업체당 평균 6.5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제외하였고,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였다.

2) 용자 범위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및 공정설치, 안정성평가 및 유통·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등이 있다. 또한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과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등이 있다.

운전자금은 위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로 제한하였다. 혁신형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를 지원한다.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하다.

3) 융자조건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는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05%p 가산(기준금리)하고, 대출기간은 시설은 3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은 2년 거치 3년 상환하게 된다.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며,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이고, 협동화 승인기업은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이다.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이며,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은 40억원(운전자금 5억원)이다. 융자 방식은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 중에서 업체가 원하는 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

다. 소상공인지원자금

1) 융자규모 및 지원대상

융자규모는 4,250억원이며, 소상공인지원과 소공특화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되고 있다. 소상공인지원(3,800억원)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에 지원하고 있다. 우선지원자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이수 또는

자영업 컨설팅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정책목적자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 사업전환 창업자, 장애인기업, 물가안정모범업소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4. 신용보증 제도

가. 신용 보증

담보 부족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신용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1) 용자 대상

[표 3-10] 신용보증 기금종류 및 내용

구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공통사항	한도 30억원, 예외 70억원 보증료: 0.5~3.0% 보증비율 50~100%	한도 30억원, 예외 70억원 보증료: 0.5~3.0% 보증비율 50~100% (기술혁신기업 위주)	한도 8억원, 보증료 0.5~2.0% 보증비율 50~100%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
창업기업	창업기업보증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기술창업기업특례보증 창년창업특례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
시설투자 기업	시설자금보증	-	금융기관 협약보증
수출중소 기업	수출기업보증	-	일자리 창출기업 및 미래산업에 대한 특례보증

녹색성장 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보증	-	-
일반기업	기업일반자금보증	-	-
기술혁신형 기업		-	일자리 창출기업 및 미래산업에 대한 특례보증
소상공인 (10인미만)	기업일반자금보증	-	일반보증, 햇살론

자료: 2012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 신용보증기금 상품

① 창업기업보증

[표 3-11] 창업기업보증 지원제도

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Start-Up)	청년창업특례보증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하여 3년에 걸쳐 보증지원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청년 창업자의 상환부담 최소화를 위해 5년 이상 장기로 보증지원
보증비율 90~100%	보증비율 100%
기업당 5억원, 보증료 0.6~1.2%	기업당 5천만원 이내

자료: 2012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② 시설자금보증

사업용 공장, 고정적인 설비투자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으로 기업당 소요자금 범위 내(최고 100억원), 보증료 최고 0.2%p 할인하고 있다.

③ 수출기업보증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으로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기타 수출계약서 및 실적을 바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한도는 최고 70억원 한도, 보증료 0.1%p 할인하고 있다.

④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상 녹색인증기업 및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보증하고 있다. 녹색성장산업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이 있으며, 지원한도는 최고 70억원 한도, 보증료 0.2%p 할인하고 있다.

⑤ 기업일반자금보증

원재료의 구매, 생산, 판매활동 등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보증기간은 단기와 장기(3년 이상 장기분할해지보증)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분할해지보증과 단기 위주의 기업대출금을 장기(3년 이상)로 전환을 유도하고 기업의 상환능력에 따라 분할상환(보증해지)토록 하는 제도이다.

3) 기술보증기금 상품

①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으로서 아래 해당기업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단,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업력제한 없다.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산업, 그린에너지산업 영위기업
- (지식문화)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이공계 쉼터)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이공계 고등학교·대학(원) 졸업자로서 만45세 이하인 기업
- (40·50 창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 40~만 55세 이하인 기업
- (1인 창조기업)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지식·기술,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상시근로자 없이 영위하는 기업
- (첨단·뿌리산업)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및 뿌리산업 영위기업

②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보증비율 및 보증료 등을 우대하고 있다.

③ 청년창업 특례보증

창업후 3년 이내로 대표자가 만 20~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당 보증금액 2억원 이내에서 보증비율 및 보증료 등을 우대하고 있다.

④ 시설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으로, 보증비율 및 전결권 완화 등 우대하고 있다.

⑤ GREEN HI-TECH 특례보증

녹색관련 인증 보유기업 및 녹색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보증지원이며, 금융기관의 녹색예금과 연계된 녹색대출 및 기술개발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이 있고, 보증심사 완화 및 보증료 등 우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⑥ 기업일반자금보증(기술보증)

담보력이 미약한 기술중소기업의 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등을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증제도이다.

기술보증 대상기업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신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 있다. 주요 보증 상품으로는 (무역금융)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 등을 위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에 대하여 보증이 있고, (구매자금융)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 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구매자금융방식으로 전환, 납품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보증이 있으며, (전자상거래)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등이 있다.

⑦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상품 제작사가 선구매계약 또는 투자계약이 체결된 영화 등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보증 문화산업용 기술평가표를 적용하여 기술평가보증으로 지원보증료는 최고 0.3%p(성과보증료 약정기업) 감면하고 있다.

⑧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특허기술의 사업화 이전단계의 우수한 기술을 조기 발굴하여 사업화 촉진을 위한 보증(협약에 의해 특허청에서 기술평가료 지원)으로 대상기업은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이며, 지원한도는 기술가치 평가금액으로서 기업당 10억원 이내이다.

4) 지역신용보증재단 상품

① 일반보증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신용 1~6등급의 등록 사업자이며, 보증규모는 3.46조원으로 대출금액은 1인당 최대 8억원 이내 보증대출이 가능하다. 시행기간은 2012년 공급한도 소진시까지이며, 취급은행은 전 금융기관에서 가능하고, 신청접수는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가능하다.

② 햇살론

지원대상은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6백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영업자·(농림어업인 포함) 및 근로자로 신용 6~10등급자 중 연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청불가하며, 보증규모 10조원, 대출금액은 자금용도에 따라 최고 대출가능금액 차등적용하고 있다. 사업 운영자금(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최고 5천만원), 긴급생계자금(최고 1천만원), 대환대출(최고 3천만원) 등이 있고,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은 자영업자, 긴급생계자금은 근로자 대상 지원, 대환대출은 햇살론 지원대상자중 캐피탈이나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행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까지이며, 취급은행은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이 있고, 신청접수는 인근 취급은행에서 가능하다.

③ 희망대출사업(희망드림론)

지원대상은 6대 뿌리산업 및 농수축산 가공·유통업, 영리 사회적 기업이며, 보증규모는 1,400억원이고,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내 보증대출(시설자금은 1억원이내)이며, 시행기간은

한도 소진시까지이고,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고 있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하면 된다.

④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만39세 이하인 자로서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3년 이내인 기업이고, 보증규모는 1,600억원,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이내 보증대출(제조업은 최대 1억원이내), 시행기간은 한도 소진시 까지이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림 3-8] 보증절차



자료: 2012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보증신청시 제출서류는 총 8종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세신고서, 재무제표, 기업실태표, 납세증명서이며, 보증종류별 추가 서류는 각 보증기관에서 보증상담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받는 금액 산정은 (운전자금) 연간매출액의 1/3~1/4 범위 내,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할인어음보증 등은 연간매출액의 1/2범위 내, (시설자금) 당해 시설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보증신청시 유의할 점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보증제한 대상은 사치·향락업종 및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대상자(파산, 면책, 연체 등) 해당시 신청불가하고(햇살론의

경우, 1년 이상 신용회복 또는 개인 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 중인 자영업자는 신청가능, 대환대출은 제외), 보증기관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은 보증을 금지한다.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도 보증을 제한하며, 기타 보증기관 보증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도 보증을 제한한다.

신청·접수는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홈페이지(www.kodit.co.kr) 접속 후 메인 메뉴에서 사이버영업점 → 회원가입 → 보증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신청할 수 있고, 기술보증기금은 홈페이지(www.kibo.or.kr) 접속 후 메인 메뉴에서 사이버영업점 → 회원가입 → 보증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메뉴에서 보증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또는 방문) → 보증신청할 수 있다.

5. 재직자 직무교육 및 인력유입

가.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공급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지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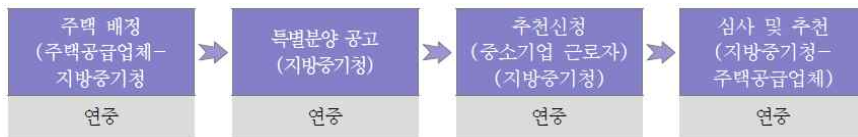
1,000호 내외로 주택공급 물량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분양주택 신청자는 근속기간, 동일직장 재직기간, 소기업여부,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여부(가점)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임대주택은 해당업종 여부, 근속기간 등을 심사하여 추천한다.

지원이 안 되는 기업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전 직장 근무경력 포함 5년 미만 근무자이며, 대표이사(개인기업 대표), 5년 이상 장기재직 근로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유의사항은 근무기간 산정시 전 직장경력을 포함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입증가능해야 하며, 분양주택의 경우 3년간 매매·증여·임대 등 불가(상속·저당 제외)하고,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보유사실 은닉, 서류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을 분양 또는 임대해주고 있으며, 신청·접수는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심사·평가는 기업 재직 근로자 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제조기반 업종(뿌리산업)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등은 우대평가 한다. 신청 서류 신청서, 서약서, 행정정보이용동의서, 재무제표상 대차대조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상 증명서(해당자) 각 1통이 있다.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지원사업→인력→중소기업재직자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9] 처리 절차



자료: 2012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해외 지원정책 현황

1. 미국의 중소납품업체 지원정책 현황

미국의 경우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소모성자재란 명칭이 사용된 별도의 지원정책은 개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수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에 속해 있고, 소모성자재 납품업체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빌어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지원정책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미국 소모성 행정용품 공급제도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행정 소모품의 공급과 관련된 정책으로 제도의 의의, 의무이용 여부, 품목, 계약사 선정 방식, 공급 방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 미국의 중소기업 정의

미국 연방정부는 자국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 (SBA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청장에게 중소기업법 또는 다른 법 시행 목적을 위한 중소기업의 정의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소기업법 제3조 1항에서 중소기업의 정의를, 제2항에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과 관련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미국의 중소기업비중과 역할

미국정부는 중소기업 범위를 상세하게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목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종업원 500명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집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Bureau of Census)과 SBA의 권익보호실(Advocacy)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미국에는 비고용기업(firms without employees) 20,768,000여개사와 고용기업 6,022,000여개사로 전체 26,790,000여개의 민간기업이 있다. 이 중 종업원 1인 이상 500인 미만 규모의 중소사업체수는 6,004,000여개사로 전체 고용기업의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총 27,241,000여개 사업체에서 60,223,000여명을 고용함으로써 전체 종업원의 50.2%를 고용하고 있다. 소규모기업(통계상 종업원 수 20명 미만)의 경우 537만개로서 전체 고용기업의 89.3%이며, 21,609천여 명을 고용함으로써 중소기업 고용의 35.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2] 미국 중소기업 범위 표준¹⁷⁾

산업 분류	산업별 규모 기준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제조업의 약 75%, 근로자 500명 미만(342개 산업) • B: The balance, 근로자 750명 (56) 또는 1,000명 미만 (58) • C: 산업의 소수, 근로자 1,500명 미만 (3)
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광산업 : 근로자 500명 미만 (Mining Services 제외)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축도급업체와 대형건설업체 : 매출액 33.5백만달러 미만 • 특수 건설 도급업체 : 매출액 14백만달러 미만 • 토지 구획 : 7백만달러 미만 • 준설 : 20백만달러 미만
도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연방 계약자 : 근로자 100명, 그리고 회사는 국내 중소기업체의 제품을 납품할 것, SBA의 비제조업자 규정에 명시될 것, 특정 제품군을 위한 SBA에 의해 면제되지 않을 것 • FAR의 매입 간소화 절차하에 이루어지는 조달과 구매액이 2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곳, 비제조업자는 모든 국내 제조업체의 상품 취급 가능 • 대출 및 기타 프로그램에 대해 : 모든 산업에 대해 근로자 100명 기준 적용
소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소매업 : 7 백만달러 • 일부 (식품점, 백화점, motor vehicle dealers, electrical appliance dealers) 기준 규모보다 높은 경우가 있지만 35.5 백만달러는 넘지 않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 7 백만달러 • 컴퓨터 프로그래밍, 데이터 처리와 시스템 디자인 : 25 백만 달러 • 엔지니어링과 건축 서비스 그리고 몇 다른 산업은 다른 규모 기준에 따름 • 모든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높은 연간 수입금 규모 기준은 35.5 백만달러 • R&D와 환경복원 서비스 : 서비스 산업 중 유일하게 직원의 수를 기준 근거로 삼음
기타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교통, 통신, 전기, 가스 그리고 위생 서비스 ; 금융, 보험과 부동산을 포함한 부서가 기타 산업에 속함 • 위 분야에서의 산업 구조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규모 기준의 공통적 형태는 없음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 20명 미만 • 중소기업 : 20~99명 • 중규모 : 100~499명

* 자료 :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Code, 2010)

17) 상기 산업 분류는 북미산업 분류시스템상의 산업분류 기준임

다.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제도 수립 방향

미국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므로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기 때문에 정부는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경제정책을 추진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정책에 있어서도 미국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 메카니즘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시장경제의 원칙 하에서 미국은 중소기업에 자유경쟁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자가 사업을 쉽게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나 폐지를 통해 인허가나 용자절차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감세 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사업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한, 시장경제의 원칙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은 한정적이며 주로 민간기관을 활용하거나 민간지원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의 간접지원방식에 의해 중소기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 중소기업 지원 행정 체제

미국에서 중소기업지원은 1953년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조성(aid), 지도(counsel), 지원(assist)하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protect)하며 자유 경쟁적 기업체제를 보존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중소기업법 이외에 1958년에 제정된 중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의해 추가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

중소기업청은 「고객지향적 서비스」와 「질 경영추구」라는 2가지 방침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지원, 지도 및 재난구조 등을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미션 하에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발굴 및 확대, 21세기를 선도하는 금융기관으로 중소기업청을 변모, 재난으로부터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조, 새로운 고용 기회 창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역할강화, 그리고 미국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마. 미국 소모성 행정용품 공급 제도

1) 소모성 행정용품 공급 제도 의의 및 관련 법률

GSA(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www.GSA.gov)의 행정용품 공급사업은 Global Supply 프로그램으로 불리우며, 과거 Stock program, Customer Supply Center, Wholesale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Defense Logistics Agency)에서도 저장품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관련한 근거 법률 및 내용은 Federal Property Management Regulation(41 CFR Chapter 101, 저장품 선정, 가격책정, 공급 등에 관한 기본 규정)과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Part 8(Part 8에서 물자 및 서비스의 조달원 우선순위 규정)상에 규명되어 있다.

2) 의무이용 여부

의무이용 여부와 관련하여 연방조달규정(FAR)는 정부공급원 사용 우선순위를 규정하면서, GSA의 저장품(stock program)을 포함시키고 있다.

FAR 8.002 (a)(1)에 명시된 공공물자의 조달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① 기관의 재고
- ② 다른 기관의 불용품
- ③ 연방교도산업
- ④ 맹인 중증장애인 구매위원회의 구매명단 물품
- ⑤ 연방조달청, 방위사업청, 보훈부 및 군사재고통제시설 등의 저장품 사업(stock program)과 같은 도매공급원(wholesale supply source)
- ⑥ 의무적 연방공급스케줄(mandatory Federal Supply Schedule)
- ⑦ 임의적 연방공급스케줄(optional use Federal Supply Schedule)
- ⑧ 상업적 공급자(교육 및 비영리 기관을 포함)

그러나, 1988년 조달개혁 조치가 단행되면서 GSA의 저장품 사업은 강제이용이 아닌 임의 이용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현행 연방자산 관리규정은 각 기관에서 GSA 저장품보다 다른 공급원이 더 유용하다고 인식되는 경우, 개별품목의 총 구매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① 100불 미만 : 다른 공급원 이용 가능
- ② 100불 이상 5,000불 미만 : 다른 공급원 이용 가능. 단, 그러한 조치가 품질, 인도기간, 비용 측면에서 정부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서면의 사유(written justification)를 작성하여 계약서류에 첨부해야 함
- ③ 5,000불 이상 : GSA가 면제(waiver)를 승인하지 않은 한, GSA에 구매 요청해야 함

관점에 따라서 의무이용이 원칙이고 소액구매에 한해 자율구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GSA는 홈페이지나 발간물 등에서 강제이용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3) 공급품목 및 계약자 선정

연방기관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소모성 물품으로서 GSA에서 연방기관의 요청과 민간시장의 동향 파악 등을 통해 공급품목을 선정한다. 연방기관은 공급지원요청서식(Supply Support Request Forms)이나 GSA 담당직원을 접촉하여 공식적으로 신규품목을 추가 요청하며, 신규품목 추가 요청시 기 공급품목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향후 조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사양서를 포함해야 한다.

GSA Global Supply상의 모든 품목들은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 공급, 품질, 가격, 인도조건 및 기타 계약조건에 의거 최고가치(best value)를 제공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4) 공급방식

GSA에서 행정용품을 구매하여 창고에 저장(보관) 후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GSA의 공급시설을 통해 공급한다. 수요기관은 GSA에 주문을 하고 GSA가 공급자(vendor)가 되며, 저장품을 보관, 공급, 판매하는 시설로 다음이 있다.

- ① Distribution Center : 저장품을 보관, 공급하는 시설로 현재 동부(Burlington, NJ)와 서부(Sharpe, CA)에 2개의 공급센터 운영
- ② Supply Store(Walk-in Store) : 미국내 주요 군사기지에 위치하여 주요 행정용품(200~5천여품목)을 직접 판매
- ③ Base Supply Store : 국방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세계 전역의 주요 군사기지에 저장시설을 두고 인근 군부대에 신속하게 저장품 공급

5) 계약자 직접 공급(direct delivery)

계약자 직접 공급방식이란 수요기관에서 업체에 직접 주문하고, 업체는 수요기관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조달청의 과거 「카탈로그에 의한 직납방식」과 유사하다. 이 방식은 창고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판매가격에서 10% 할인된다. 가구비품, 청소용품, 포장용품 등 시장관행 상 직접 인도되거나 대량주문이 필요한 물자에 대해 적용되며 대량주문은 GSA가 설정한 품목별 최소 주문수량 이상이어야 하는데, 통상 300달러 이상이다.

MAS¹⁸⁾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MAS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계약 물품을 비교 평가하여 best value를 선정하는 등 Self-service라면, Global Supply는 모든 법령 요구사항을 준수한 full-service 성격이다.

6) 확장된 직접 공급(EDD, Expanded Direct Delivery)

GSA는 2004년부터 직접공급(direct delivery) 방식의 개념을 확장하여, 각 카테고리별로 단일의 공급자와 일괄구매협정(BPA, Blank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여 공급품목을 대폭 확대하였다. BPA는 정부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서비스를 간편하게 주문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MAS 계약자간 협의하여 개설한 계약을 의미한다. GSA Global Supply 부서에서 MAS 계약자와 BPA를 체결하면, 각 연방기관에서 Global Supply를 통해 이들 품목을 이용하게 된다. EDD를 통한 일괄공급 방식에서 수요기관 입장에서 보면 공급자(vendor)는 GSA이며, 온라인

18) MAS(Multiple Award Schedule) : 정부가 필요한 상용품 및 용역에 대하여 품질, 성능, 효용 면에서 유사한 물품들을 다수공급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고객)에게 공급하는 제도

쇼핑몰에도 BPA 계약자는 표기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BPA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재고번호(NSN)이나 부품번호(part number) 앞에 업체별 할당된 코드를 함께 사용한다.

[표 3-13] 2008년 EDD계약 현황

업체	분야	품목수
J&L Industry	공구류	100,000여 품목
Boise Cascade	사무용품	3,000여 품목
PC몰Gov	컴퓨터제품 및 부품	3,000여 품목

*자료 : GSA, MarkeTips : Volume 21, Number 3 (May/June 2008)

7) 판매 및 주문

판매가격에는 계약, 주문처리, 품질관리, 저장, 분배, 수송, 고객 서비스 및 간접비용 등 운영비용이 이윤(markup) 형태로 포함되며 2006년도 평균 markup 비율은 32.71% 수준이다. GSA는 물자 비용과 공급이용의 변화를 반영해 통상 1년에 2회 가격 조정을 하며, 개별품목단위로 수시로 가격조정을 하기도 한다. 보관비용이 없는 직접공급 방식에 의하는 경우 통상 판매가격에서 10% 할인되고, 긴급주문시에는 할증된다. (창고저장품 10%, 수출주문 6%) 주문은 GSA 온라인 쇼핑몰인 「GSA Advantage」가 주로 활용되며 기타 전화, 팩스, 우편에 의한 주문방식도 가능하다.

8) 공급 실적 및 품목

GSA를 통한 소모성 행정용품 공급실적은 2003년 962백만달러에서 2008년 1,224백만달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14] GSA 행정소모품 공급 실적 (2008년 6월 기준)

(단위: 백만달러)

회계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공급 실적	962	1,104	1,032	1,042	1,092	1,224

* 자료 : GSA 홈페이지 (www.GSA.gov)

2008년 기준 12만여 품목을 Global Supply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2003년도말 공급품목수는 1만2천여개 품목이었으나 2004년도 초에 신규로 10만여개 품목을 추가하였다.

[표 3-15] GSA 행정소모품 주요 공급 품목

분류	주요 품목
사무용품	컴퓨터 용품(저장장치, 수리도구, UPS, 부속품), 사무용기구(계산기, 전화, 문서 세단기 등), 토너 및 카트리지, 프레젠테이션 및 오디오/비디오, 가방, 필기류, 바인더, 양식, 종이제품, 우송 포장용품 등
가구 및 비품	책상, 의자, 캐비닛, 침구 및 목욕 용품, 냉난방 및 환풍 장비, 부엌 용품
가정용품 및 청소용품	종이제품(부엌 및 화장실용), 비누 및 세제, 청소용품, 폐기물처리 용품, 부엌, 휴게실 용품(그릇 등)
안전용품	소방 및 구조용품, 의약 및 응급 용품, 보호장비, 안전표지판 등
산업용품	페인트 및 부속 제품, 방부제, 방수제 등
공구류	차량정비용품, 작업&수공구(집게, 렌치, 편치, 바이스 등), 하드웨어(접착제, 배터리, 체인, 랜턴, 자물쇠 등), 절삭공구(다이스, 드릴), 배관용품, 측정공구, 전등공구, 원예 아웃도어 공구 등

* 자료 : GSA 홈페이지 (www.GSA.gov)

2.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일본의 경우도 미국처럼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소모성자재란 명칭이 사용된 별도의 지원정책은 개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의 공공조달 제도를 통해 일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소모성자재에 대한 입찰·계약, 법령, 시장규모 등을 유추할 수 있다.

가. 일본의 중소기업 정의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2조 1항에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¹⁹⁾ 여기에서는 「국가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그 범위를 시책의 기본이념을 실현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시책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자)을 기술로 정의하지 않고, 범위로 중소기업(자)을 정의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표 3-16] 일본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

산업	중소기업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소기업
	자본금	정규직의 수	정규직의 수
1. 제조	3억엔까지	300명까지	20명까지
2. 도매	1억엔까지	100명까지	5명까지
3. 서비스	5천엔까지	100명까지	5명까지
4. 소매	5천엔까지	50명까지	5명까지

* 자료 : 일본 중소기업청, 2010

19) 일본 「중소기업기본법」, 2009년 7월 15일(平成 21년 7월) 법률 개정 내용임.

나. 일본의 중소기업 비중 및 역할

일본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종업원 수 1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5,652천여 개로 전체의 9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41,984천여 명으로 7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⁰⁾ 이 중 소규모기업의 사업체수는 75.0%, 종업원은 2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비중은 막대하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255천여 업체로 전체 제조업체수의 9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출하액, 부가가치 등에서도 각각 70.2%, 47.9%, 53.5%를 차지하는 등 일본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제도 수립 방향

1999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의 기본방침으로 첫째, 경영혁신, 창업,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 도모. 둘째, 경영자원(설비, 기술, 지식 등의 확보, 거래의 적정화 등에 의한 경영기반 강화 도모. 셋째,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영안정 및 사업전환 등의 원활화 도모. 넷째, 자금공급 원활화 및 자기자본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각종 시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사업자, 법인의 종업원, 자본 규모의 실태를 근거한 중소기업의 범위도 아울러 개정되었으며, 중소기업에 관한 기본적 시책은 이른바 약자 구제적인 사회정책형 시책으로부터 자조노력을 지원하는 경쟁 촉진형 시책으로 이동되었다.

20) 중소기업중앙회(2009), “2009년도 해외 중소기업 통계”

라. 일본의 공공조달 제도

1) 일본의 공공조달 입찰·계약제도 개관

일본의 입찰계약제도는 1889년에 회계법이 제정되어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후 불량 부적격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1900년에 회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예외로서 지명경쟁입찰방식을 신설, 도입하였다.

1921년 일반경쟁입찰방식의 원칙을 완화하여 각성·각청의 대신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명경쟁 입찰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1947년에 회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입찰, 계약에 있어서는 개정된 내용이 거의 없었으며, 그 후 1961년 지명기준의 근거 규정을 삽입하였다.

1994년에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하여, 내외무차별의 원칙을 적용하였다.(외국기업의 해외 실적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기회 확대)

일본은 각 수요기관별로 자체 조달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 시행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로서,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조달 관행 시정요구를 끊임없이 받아 온 이유도 이러한 분산 조달제도 및 자국의 독특한 조달관행이 여타 국가들에게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2) 공공조달관계 법령체계

일본의 공공조달관계 법률 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17] 일본 정부조달 법률 체계

구 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제협약			WTO 정부조달협정	
입 법 부	회 계 법			지방자치법
내 각	예산, 결산 및 회계령	예산, 결산 및 회계령 입시특례	정부물품, 서비스의 조달절차에 관한 특례 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각 성 청	계약사무 처리규칙	각성청의 내부규정	정부물품, 서비스의 조달절차에 관한 특례 정령	각 지방자치 단체의 내부규정

3) 공공조달 규모 및 품목 (물품)

물품의 조달 총액은 8,443억엔이며 조달규모가 큰 품목으로서는 사무용기기 (39.1%) 및 자동데이터 처리기계(예: PC, 영사용스크린 등), 전기통신용기기 및 음성녹음재생장치(예: TV, Video, Radar, 비디오레코더, 녹음기 등), 과학용 또는 제어용기기(예: 쌍안경, 온도계, 전압계, 마이크로메타 등) 등 3종류로서 조달총액의 약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소모성자재에 속하는 물품들로 전년 대비 조달총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표 3-18] 일본 공공조달 품목별 조달액

(단위:억엔, 2008년 기준)

품 목 분 류	조달액(전년비)	비 중(%)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4.4 (+1.1)	0.1%
광물성 생산품	476.8 (+156.3)	5.6%
화학공업제품	102.0 (+40.2)	1.2%
의약품 및 의료용품	251.2 (-61.6)	3.0%
인조수지, 고무, 피혁 모피제품	11.5 (-3.0)	0.1%
목재 및 목재제품, 제지원료 등	131.6 (-62.9)	1.6%
가방 및 방직용 섬유제품	43.3 (+4.5)	0.5%
석재 및 시멘트류제품, 도자기류제품 등	2.4 (-4.3)	0.0%
철강재 및 그 제품	287.0(+128.6)	3.4%
비철금속 및 그 제품	42.6 (-12.8)	0.5%
동력발생용 기기	65.4 (-7.5)	0.8%
특정산업용 기기	76.4 (+13.2)	0.9%
일반산업용 기기	62.4 (-10.8)	0.7%
사무용기기 및 자동데이터 처리기계	3298.7(+632.7)	39.1%
전기통신용 기기 및 음성녹음재생장치	681.1 (+10.5)	8.1%
전기기기 및 그 주변기계	376.7(+195.6)	4.5%
도로주행용 차량	213.6(-144.4)	2.5%
철도용차량 및 그 부속장치	64.3 (+11.0)	0.8%
항공기 및 그 부속장치	59.9 (-16.4)	0.7%
선박 및 부유구조물	72.7 (-231.4)	0.9%
위생용품, 난방기구 및 조명장치	19.7 (-14.3)	0.2%
의료용 또는 수의용 기기	517.0 (+7.4)	6.1%
가구 등	58.4 (-26.7)	0.7%
과학용 또는 제어용 기기	779.0(+189.6)	9.2%
사진용기기, 광학용품 및 시계	53.6 (-5.7)	0.6%
기 타	691.3 (+95.8)	8.2%
합 계	8,443.0 (+913.2)	100.0%

* 자료 : 일본 정부조달 절차 및 접근전략, 주일본대사관 조달관, 2010

4) 공공조달시장 규모

일본의 공공조달시장규모는 연간 조달 총액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2008년도 물품에 관한 공공조달총액은 약 1조 3,648억엔으로 전년대비 약 2.8% 감소하였으며, 조달 건수로는 12,741건으로 전년대비 약 1.3% 감소하였다.

[표 3-19] 연도별 정부조달의 총액 및 총 조달 건수

(단위: 억엔)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정부조달총액 (전년대비증감율)	10,585 (+5.6)	9,130 (-13.7)	12,825 (+40.5)	14,037 (+9.5)	13,648 (-2.8)
정부조달총건수 (전년대비증감율)	13,418 (-14.0)	11,548 (-13.9)	12,196 (+5.6)	12,902 (+5.8)	12,741 (-1.3)

5) 중소기업 보호 등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조달제도

우리나라와 같이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 혹은 협동조합 연합회 또는 상공조합연합회의 보호 육성을 위해 이들과 직접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 및 회계령에 규정하고 있다²¹⁾.

6) 중소기업만의 경쟁입찰여부

중소기업만의 경쟁입찰은 없으며 등급(A,B,C)에 의거 경쟁참가자 자격 순위가 결정되며, 지명의 경우 중소기업 대부분이 C등급에 속하며, 중소기업이라고 점수를 더 주는 제도는 없다.

21) 일본조달규정 제99조 제18항 참조

[표 3-20] 일본 공공조달 물품·서비스별, 계약 형태별 조달 비율
(단위 : 상단-건, 하단-억엔)

구 분		합계	일반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물품	건수	8,481	7,363(86.8)	47(0.6)	1,071(12.6)
	금액	8,443	6,354(75.3)	182(2.1)	1,907(22.6)
서비스	건수	4,260	2,496(58.6)	37(0.9)	1,727(40.5)
	금액	5,205	2,307(44.3)	25(0.5)	2,873(55.2)
합계	건수	12,741	9,859(77.4)	84(0.6)	2,798(22.0)
	금액	13,648	8,661(63.5)	207(1.5)	4,780(35.0)

*주 : 상기 통계자료는 2008년 기준 수치임, ()는 비율(%)

3. 프랑스의 중소기업업체 지원정책 현황

프랑스의 경우도 미국처럼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소모성자재란 명칭이 사용된 별도의 지원정책은 개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공기관 소모성자재와 관련하여 구매에 적용되는 소모성자재 조달과 관련한 조항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어 이를 통해 지원정책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가. 프랑스의 중소기업 정의

프랑스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괄적인 정의를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대상 지원 조치와 관련된 법규에 따라 다양하게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EU의 권고에 따라 종업원 수 250명 미만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단, 제조업의 경우 500명 미만 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세분화 하여 종업원 20명 미만을 영세기업(TPE : très petite entreprises)이라 하기도 하지만 영세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경우와 같이 공식적인 정의가 없으며, 10명 미만의 기업을 영세기업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적으로 EU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각 회원국별로 중소기업 지원책이 취해지는 과정의 상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6년 EU가맹국의 중소기업 인가에 관한 새로운 원칙을 발표하였고, 이전의 정의를 전면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중기업, 소기업, 영세기업으로 구분하여 중기업은 종업원 수 250인 미만으로, 연간매출액 4,000만 유로 이하 혹은 자산총액 2,700만 유로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기업은 종업원 수 10인 이상

49인 이하로, 연간매출액 700만 유로 이하 혹은 자산총액 500만 유로 이하의 기업, 영세기업은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²²⁾

나. 프랑스의 중소기업 비중 및 역할

2005년 전체 기업체수는 261만 7,870개로서 전체 기업체 수의 99.81%가 종업원 250명 미만인 중소기업(PME :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이며, 전체 종업원의 42.9%(2003년 기준) 고용과 매출액, 부가가치 면에서 각각 44.9%, 52.7%(200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²³⁾

다. 프랑스의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제도 수립 방향

프랑스의 중소기업정책은 2차 세계대전 전 수공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시작되었으며, 내용의 대부분은 독점적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을 정비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산업은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주요 산업을 주도하였고, 파리를 중심으로 경제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²⁴⁾

2000년 이후 상행위심사위원회의 설립과 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되는 상행위의 명확화 등을 위한 「신경제조정법(2001)」, 기업설립 시 수속 간소화와 세제우대 조치를 통한 중소기업에

22)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2003), "Amending Recommendation 96/280/EC.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23) INSEE(2006), "Répartition des entreprises selon le nombre de salariés et l'activité."

24) 중소기업진흥공단(1998), "구미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 :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P. 133.

적합한 투자 촉진을 조성하는 「창업촉진법(2003)」, 기존 중소기업 및 신규 설립된 기업의 발전을 확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진흥법(2005)」을 제정하였다. 또한 니콜라스 사르코지 정권이 추진해 온 개혁의 연장선 아래 2008년 「경제현대화법」을 제정하여 모든 경제 주체들의 잠재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이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사업자, 혁신기업, 사업승계자 등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시책과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육성시책과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유통업체간 경쟁 촉진 시책, 국내외 투자확대를 위한 매력도 증진 및 금융제도 개선의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눈 뒤, 각각 31개의 세부 시책을 설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표 3-21] 프랑스 정부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no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1	혁신 중소기업 주식취득과 연구사업에 대한 감세 (Tax cut for shares innovative SMEs or for the financing or research programmes)	혁신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중소기업 혹은 공공연구소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투자의 25%와 65%에 대해 법인세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2	중소기업협약 (SMEs Pact)	공공, 민간에 관계없이 대기업이면 모두 협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 혁신 중소기업과 대기업 및 각종 기구의 관계를 특히 상업 계약이나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강화하는 프로그램
3	경쟁력 클러스터 (Competitiveness clusters)	과학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클러스터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4	혁신 중소기업의 국방 분야 공공조달 참여 촉진 (Facilitated access of innovative SMEs to public procurements in the field defence)	혁신 중소기업이 국방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쉽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5	기업가정신 육성 제도 (Entrepreneurship Houses)	대학과 고등교육기관(HEI :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육성하는 프로그램
6	동일인 리스크 투자 업체 (SUIR)	개별 투자자들에게 10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투자를 장려하는 프로그램
7	청년 혁신기업 프로젝트 지원 (SJEI)	청년 혁신업체를 지원해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고 납세 유예를 연장함으로써 초창기 생존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8	산업 및 상업 비즈니스 서비스 (SAIC)	대학과 HEI의 산업 및 상업 활동 및 가치화 작업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프로그램
9	청년 기업 공동투자 펀드 (Co-investment funds for young enterprises)	설립 7년 미만의 청년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전자, 생명공학, 나노 등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프로그램
10	기술 플랫폼 (PFT)	공공교육과 훈련기관의 혁신과 기술이전의 촉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no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11	청년기업 혁신 지원 프로그램 (Youth and Innovation)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15-24세 청년에게 6,000 유로의 한도 내에서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5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12	국립 기술연구센터 (CNRT)	공공연구소와 민간 연구센터를 통합해 기술연구 활동을 장려해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겸 기구
13	첨단기술개발 네트워크 (RDT)	중소기업의 혁신 촉진 활동을 수행하는 프랑스 각 지역 내 혁신 분야 활동 주체들(OSEO, DRIRE, DRIRE, 상공회의소, 군 당국 등)의 네트워크
14	교육 네트워크 (Educnet)	교육 체계 내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전국적 네트워크
15	기술연구혁신 네트워크 (RRIT)	공공과 민간 기술 연구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16	벤처캐피탈 진흥 펀드 (FPCR)	민간 자금을 동원하기 어려운 분야, 예를 들어 생명과학/ICT/전자/신재료/환경 등 부문에서 설립된 지 7년 미만의 프랑스와 유럽 혁신업체에 투자하는 민간 벤처캐피탈 프로그램
17	종자캐피탈 펀드 (Seed-capital funds, Fonds de Capital d'Amorçage)	신생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종자캐피탈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18	지역 인큐베이터 기관 (Regional incubators structures)	새로운 지역 인큐베이터 기관과 공공 연구기관 및 기업 사이 공동협력을 지원하는 프랑스 정부의 핵심 프로그램
19	전국 신기술 기반 업체 창출 대회 (National competition for creation of new technology-based firms)	일반 대중에 혁신을 전파하고 신기술 기반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20	혁신 담당 뮤추얼 펀드 (FCPI)	개별 투자자들에게 금융 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인들이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혁신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자본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스크 분담 펀드 프로그램
21	기업 응용연구 프로젝트 담당 박사과정 학생 채용 지원 - CIFRE 회의	민간기업의 학생 채용을 장려하고, 채용된 학생은 해당 기업에서 대학이나 공공 연구소의 감독 하에 응용 주제에 관한 자신의 박사학위 연구를 수행하도록 학생과 연구자 이동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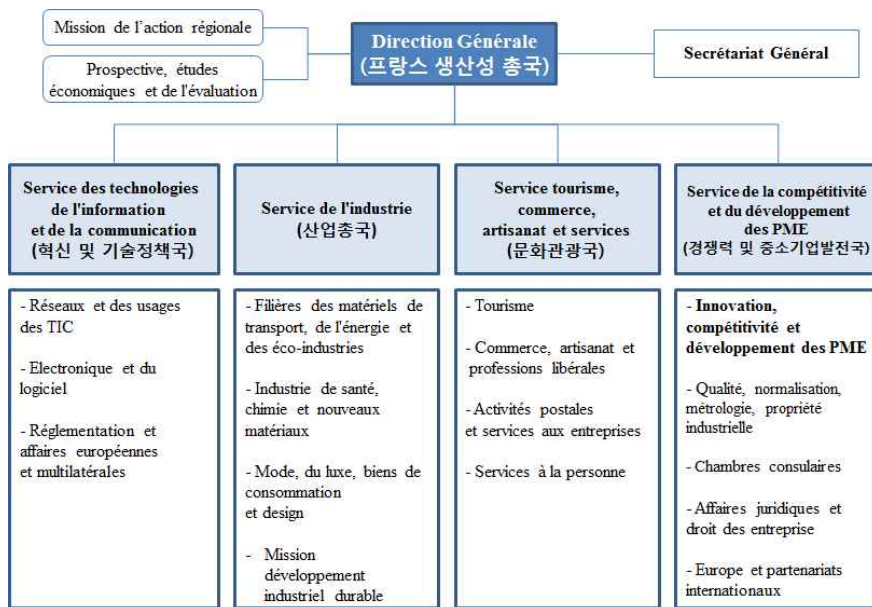
no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22	연구비 법인세 면제 (CIR)	기업들에게 법인세 면제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는 프로그램
23	혁신 채용 지원 (ARI)	연구개발 인력과 자원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대학원생에서부터 박사후 과정 학생에까지 필요 인재의 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4	혁신 프로젝트 지원 (Support to innovative projects, Aide au projet innovant)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상환되는 금리 0%의 대출을 혁신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프랑스 중소기업의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25	산업혁신 지원 프로그램 (Mobilising programmes for industrial innovation : PMII)	설립된 지 5년에서 15년 사이 고도로 혁신적이고 상업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민간·공공 연구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26	가젤 프로그램 (Gazelles Programme)	5개 중소기업 성장 프로그램(금융융자 성장 프로그램, 경쟁력 프로그램, 중소기업 신규시장 프로그램, 외부 성장 및 이전 프로그램, 가젤 프로그램) 중 하나로 2년에 걸쳐 2,000개의 고속성장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네트워킹과 자금조달을 통해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7	혁신 개발 계약 (CDI)	설립 3년이 지난 중소기업의 혁신 프로그램에 대해 만기 6년의 융자로, 무형투자에 대해 4만~40만 유로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8	까르노 연구소 프로그램 (Instituts/Label Carnot)	사회경제적 주체, 특히 민간 기업들과 활발한 연구 파트너십에 중사해온 기존 공공연구소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업체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29	참여적 창업 융자 (PPA)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7만5,000 유로에서 15만 유로의 자금을 융자하는 프로그램
30	혁신기술이전지역센터 (CRITT)	프랑스 기업의 혁신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기구이자 프로그램
31	기술자원센터 (CRT)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이라는 품질 보증을 부여해 기술이전 제도를 활용하도록 촉구하는 기관이자 프로그램

*자료 : 2012 PME 중소기업 지원정책 (La politique de soutien aux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본 자료는 해외현지실태조사시 프랑스 중소기업발전국에서 제공한 자료임.

라. 프랑스 중소기업 지원 행정 체제

프랑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행정 체제는 과거 기업경제개발성에서 중소기업 중 특히 수공업 분야 기업에 관한 정책결정을 주로 하였으며, 산하에 수공업 분야 금융 및 품질제고를 위한 자문을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있다. 또한 산업체신성 내 중소기업실을 두고 지역 간 중소기업 협력 및 중소기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결정을 수행하였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 총괄은 산업을 담당하는 경제재무산업부 소속의 지방산업·중소기업국에서 전담하고 있다.

[그림 3-10] 프랑스 중소기업 지원 행정기관 체계도



*자료 : 2012 PME 중소기업 지원정책 (La politique de soutien aux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본 자료는 해외현지실태조사시 프랑스 중소기업발전국에서 제공한 자료임

마. 프랑스 생산성 재건부 중소기업발전국 지원정책

프랑스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정책 실태조사를 위해 파리에 소재한 중소기업발전국을 방문하여 프랑스 중소기업 현황 및 중소기업지원정책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1) 프랑스 기업형태

- 2차대전 이후 대부분의 기업을 나라에서 흡수하여 공기업화함
- 90년대들어 조선, 철강, 직물 등 대부분의 공기업을 민영화 시킴
- 현재의 유통 및 물류시스템은 90년대 이후 자동차부속자재 공급 물류시스템을 기초로 직물, 철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현재의 모습을 형성

2) 유통과 관련한 기업형태 및 정부정책

-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시내보다는 외곽에 매장을 두고 영업
- 단, 근래 들어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 시내에 작은 매장을 개설함(까르푸 시티, 카지노 슈퍼 체인 등)
- 지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영세업체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틀을 마련하지만 구체적인 간섭은 하지 않음
- 시내 매장 개설시 자치단체 및 관련 위원회에서 관련 규정 및 조건을 까다롭게 정하여 설립시 철저한 심사를 거치지만, 개설 이후 구체적인 규제 및 제도의 실행은 실행하지 않음
- 현재 역시 중소기업체와 대형유통업체의 가격차이는 크지 않음

[그림 3-11] 프랑스 시내형 슈퍼마켓 체인 업체



3) 공공기관 소모성자재 관련

-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소모성자재를 구매할 경우 적용하는 조달관련 조항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음 (일종의 상거래 코드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를 적용함)
- 구매액수 및 제품 분야에 따라 세부적인 조항을 선정
- 단, 구매량 및 구체적인 구매 목적에 따른 분류는 없음
- 프랑스 정부차원에서 소모성자재 관련산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하지 않음
- 따라서 소모성자재의 공공조달 및 민간시장 규제를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는 아직까지는 제정되지 않음

4) 최근 중소기업 정책 이슈

-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유럽공동체, 국가, 지자체의 유기적이 구조속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진행
- 5년전부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제도가 도입됨
- 특히 녹색산업과 관련한 지원 정책 중심으로 확충

-
- 녹색제품과 관련한 제조, 사용, 재활용과 관련한 매뉴얼을 제정

5) 전자상거래 관련

- 프랑스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매우 급속 성장
- 단, 인터넷 등 인프라의 보급이 한국보다는 늦기 때문에 보급률 및 사용률은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
- 또한, 아직까지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부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

6) 프랑스 중소기업발전국 주요 정책

- 금융거래 이후 성공한 지원정책은 금융지원, 후견인제도, 부정적인 상거래 관행 해결 지원 정책 등이 있음
- 부정관행 해결지원제도 실행에 따라 올해까지 36가지의 잘못된 정부 관행을 시정 조치
- 프랑스 중소기업이 잘못된 관행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 PMES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내용의 시정을 건의하면 관련 담당자가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
(관련 사이트 : www.mediateur.industrie.gouv.fr)
-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불기간을 조정
 - 대기업의 대금지급 횡포를 막기위해 2008년 4월 3년 유예 기간을 두고 45일의 지불기간을 골자로하는 법안을 시행
 - 이전까지는 규정된 기간이 없어 많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게 지불해야할 금액을 자체적인 금융사업에 사용

바. 프랑스 소모성자재 유통현황

프랑스 소모성자재 유통현황 조사를 위해 대표 소모성자재 유통 업체인 Castorama 파리 지점을 방문하였으며, 매장 총괄 매니저인 S. Augustin Gueldry와의 인터뷰를 통해 프랑스 소모성자재와 관련한 세부적인 유통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1) Castorama 업체현황

- 소모성자재를 포함한 건설, 전기, 청소, 가구, 공구 등 소모성 자재를 취급
- 매장은 대규모로 운영하며 대부분 시외곽에 위치
 - 방문한 매장 역시 파리 시내에서 20Km외곽에 위치
- 시내에도 매장을 운영 중이나 대부분 소규모임

2) 프랑스 소모성자재 유통업체 현황

- 소모성자재만을 별도로 유통하는 형태의 업체는 없음
- 단 소모성자재를 포함한 대부분의 도소매 제품을 대형으로 유통하는 업체가 다수 존재
- 예, Le roy merlin, Bricorama, Castorama 이 대표적인 업체임

3) 프랑스 소모성자재 유통현황

- 유럽의 경우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건설 및 전기와 관련한 대부분의 자재 및 도구들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함(DIY제품 위주)

- 소모성자재를 소비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역시 대부분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는 형태를 취함
- Castorama의 경우 고객을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고객 중에는 공공기관 및 기업관계자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들의 경우는 대부분 기관 및 회사로 영수증을 발행
- 대량구매의 경우 업체에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만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아주 대량이 아니면 대부분 자체 차량을 이용하여 물품을 가져가고 있음

4) 구매 시스템 관련

-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 (<http://www.castorama.fr>)
- 사이트는 단순 물 형태이며 제품과 관련한 카다로그를 제공하며 온라인상에서 구매가 가능
- 기업 및 공공기관의 구매대행 형태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기업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가 사용 가능

[그림 3-12] Castorama 제품 카다로그



*자료 : Castorama 파리지점

[그림 3-13] 현지조사 사진



4. 독일의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정책 현황

가. 독일의 중소기업 정의

독일 또한 다른 EU 가맹국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정한 정의는 없다. 연방정부, 중소기업 담당관청인 연방경제기술부 및 연방 내 주 정부의 상당수는 중소기업의 다양성과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통일된 기준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중소기업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엄격하게 정의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분류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중소기업을 일반적으로 ‘Mittelstand’ 라는 단어로 통칭하고 있다. 미털슈탄트(Mittelstand)는 중소기업연구소(IfM) 등에서 주로 경제적인 의미와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과는 다른 의미로 중간층, 중산층 등의 의미로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측면은 물론 정치·사회적 측면의 의미도 포함된 용어이다.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중소기업 범위로는 종업원 500명 미만, 연간 매출액 5천만 유로 미만이며 이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이 해당기업의 지분을 25%이상 소유하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독일의 중소기업 비중 및 역할

독일의 중소기업은 2007년 기준으로 362만개(99.7%)가 있으며 종업원 수는 2,115만 명(70.5%)을 나타내고 있다. 매출액은 전체 대상 매출액의 37.5%, 총 부가가치 생산액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투자액 독일 내 총 투자액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면에서도 독일의 중소제조업 1개 업체 당 평균 75만 유로 수준의 수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독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종업원 수나 매출액 규모는 작지만 고용, 수출, 국제경쟁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에서 양적·질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며 독일 경제전반을 이끄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⁵⁾

다. 독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동향

2000년대 이후 독일은 유망한 기업들이 원활히 창업하도록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기업들의 성장저해요인 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실업해소에 주안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2005년 이후 독일연방정부는 「중소기업 이니셔티브(Mittlestand Initiative)」를 통해 독일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동 여건을 총체적으로

25) 김승일(2009), 대·중소기업 협력 실행 방안에 관한 연구(p. 93.), 중소기업연구원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중소기업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②관료주의 완화, ③창업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스타트업 캠페인 실시, ④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⑤직업교육의 현대화와 차세대 전문 노동자의 확보, ⑥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여건의 개선, ⑦기술혁신을 위한 벤처캐피탈 활성화, ⑧중소기업의 해외비즈니스 지원 강화로 연방 정부에 의해 시행 및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중소기업 관련 시책을 포함하고 있다.

라. 독일의 중소기업 지원 행정 체제

독일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조직은 연방경제기술부 내의 실단위로 존재하고 중소기업실은 다시 정책총괄국, 수공업 및 인력 교육국, 창업금융국 등 3개의 국으로 나뉜다. 금융지원 기능과 관련하여 2003년 8월에 국영 부흥은행과 조정은행을 통합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은행을 발족시킴으로써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 중이다.

독일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특징의 하나는 주 단위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지역별 정책이 발달된 것이며 연방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직업교육과 금융 등 통일적인 적용이 필요한 분야의 개괄적인 정책을 담당하고 기타 분야는 주 정부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있다.

마. 독일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제도

1) 중소기업 금융 및 정책자금 체계

독일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차원에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자금 지원은 주로 부흥금융그룹산하의 중소기업은행을 통하여 시행
 - 재정자금 지원은 용자와 투자로 나누어 지원
 - 보증제도는 주로 지역권역별로 운용되고 있으며, 운용주체는 경제단체인데 1953년 수공업조합중앙회가 수공업자들을 위해 보증은행을 설립한 것을 기점으로 다른 분야까지 확대. 독일의 지역은행들은 중소기업에게 5~20년의 장기 대출을 지원

독일 연방정부는 2006년 7월 19일 연방경제기술부가 작성 제출한 “중소기업을 위한 연방정부의 계획”을 승인·발표하였으며, 본 계획은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행정규제의 감축, 혁신역량의 강화, 기업교육의 개선, 차세대 숙련 기술자의 확보, 자금 조달 기회의 개선을 목표로 하며, 보충적으로 대회무역활동 지원, 벤처 캐피탈 활성화 및 창업촉진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중소기업 육성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상속세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핵심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건부 감면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기업을 계속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생산적으로 투입되는 기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10년의 기간 동안 과세 하되 세액을 매년 10%포인트씩 감면하고, 10년 후에는 완전 면제하도록 한다.

2) 기술지원 체계

독일은 전통적으로 뛰어난 기초연구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우수한 연구 하부구조를 기반으로 산학연 공동연구를 장려한다. 중소기업의 의뢰를 받아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기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대학 및 연구소가 기술을 개발하고 소요 상당 부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바. 베를린 상공업 기업가 협회 중소기업 지원 정책 (Verein Berliner Kaufleute und Industrieller)

독일정부는 철저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정부의 시장참여를 최소화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환경하에 기업 자체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협회들을 통한 로비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자가 속한 협회를 통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를 대상으로 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권익행사를 하게 된다. 독일의 협회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베를린 상공업 기업가 협회(VBKI)를 방문, 협회 총괄 사무총장인 Udo Marin과의 인터뷰를 통해 본 협회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관련 제도 현황을 조사하였다.

1) 협회개요

- 독일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보다는 성격이 비슷한 기업들이 속한 다양한 형태의 협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 다수의 협회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발적인 형태로 설립
- 협회는 주로 소속 기업들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제품·부품의 산업 기준 설정, 공동 구매 진행 등의 활동을 함
- VBKI의 경우 130년전 설립된 대표적인 협회임
- 협회에 속한 기업들의 가입 및 탈퇴는 자유로움

2) 협회 주요 활동

-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 회원기업이 새로운 영역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준비할 경우

협회 차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및 연계활동 지원함

- 공익사업 : 산학협 형태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기업이 필요한 고유사업도 병행함
- 이외에 협회/회원사 홍보/이벤트 사업, 멘토 프로그램, 수출 클럽 등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운영중임

3) 소모성자재 관련 제도

- 독일의 경우 역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유럽공동체에서 정한 조달 규정에 따라 일정수준이상의 구매액이 넘는 조달의 경우 유럽전체 공개입찰제도를 통해서 조달이 이루어짐
- 독일에는 정부조달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처는 존재하지 않으며, 연방정부 각 부처, 주정부 및 지자체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조달업무를 수행
- 각 조달기관은 입찰시 경제성과 함께 효율성을 입찰 기준으로 삼아, 공정한 경쟁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

4) 독일의 중소기업 Mittelstand

-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을 일반적으로 ‘Mittelstand’ 라는 단어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음
- 미털슈탄트(Mittelstand)는 중소기업연구소(IfM) 등에서 주로 경제적인 의미와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

- ‘Mittelstand’ 는 중간층, 중산층 등의 의미로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측면은 물론 ‘Mittelstand’ 의 정치·사회적 측면의 의미도 포함된 용어임
- 예를 들어 연매출 30~40억유로의 대형 유통업체들도 자신들은 Mittelstand라고 생각함
-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인 Benz, Siemens 등이 대기업에 속하지만 이들 역시 규모가 큰 기업이지 한국과 같은 대기업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함
- 독일 정부는 시장중심체도를 중시하여 대부분을 시장내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함
- 또한 한국의 중소기업청 형태의 중소기업만을 위한 정부기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정부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이 없음

사.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유통협회 (Bandelsverband Berlin - Brandenburg e.V) 중소기업 지원 정책 현황

독일의 협회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유통협회(HBB)를 방문하였으며 협회 베를린 지부 CEO인 Nils Busch-Petersen 과의 인터뷰를 통해 본 협회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관련 제도 현황을 조사하였다.

1) 협회현황

- 자율적으로 상인들이 모여 만든 형태의 협회
- 회원사는 약 2,000여개 회사로 대부분이 상인들임
- 회원사 중에는 대규모 기업도 존재함 (유럽내 최대 백화점 유통회사 역시 상기 협회 회원사임)

-
- 1870년에 설립되어 히틀러 정권때 잠시 해체되었으나 서독 시절에 다시 설립되어 90년대에 현재의 형태를 형성함
 - HBB는 독일 대부분의 주에 설립되어 운영중이며 이를 통합 관리하는 연방협회가 별도로 운영중임
 - 베를린 HBB는 베를린과 인근한 브란덴부르크 주에 속한 기업들을 관할함

2) 협회 주요 활동

- 주요활동으로는 회원사 권익을 위한 다양한 로비활동, 가입된 근로자를 위한 임금협상, 근무조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임
- 협회에 가입된 근로자들을 위해 협회차원에서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경우보다 보다 저렴하고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함 (법률, 건강, 상해 등)
- 또한 법률자문 및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함

3) 주요 성과

-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 일요일 영업 제도를 마련함
- 독일은 기독교 국가로 일요일은 모든 기관 및 업체가 영업을 할 수 없음
- 단, 상기 협회는 1년에 10번 일요일 영업을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였음
- 제도 시행후 일요일 1일 평균 50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달성

4) 중소기업 지원제도

- 대부분의 기업 및 협회들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를 꺼려함
- 지원을 받을 경우 협회 자체 로비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5) 소모성자재 조달 관련

- 분야별 업체를 연계하여 협회를 통한 공공구매 활동을 지원함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업체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음
- 판로개척 및 영업활동 등과 같이 세부적인 지원보다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큰 틀에서의 로비활동이 주된 활동임
- 세부적인 활동들은 대부분 시장형태 및 소비형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함
- 대부분의 독일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함
- 예를 들어 약 30여년전에는 약 30여개의 맥주회사가 운영 중이었으나 10년에는 통합 및 퇴출을 거쳐 2,3개 맥주회사만이 운영되었으며, 근래에는 수많은 하우스 맥주를 생산하는 업체가 생겨나 성업중임

6) 협회 제공 자료

- HBB 협회 소개자료
- HBB 정기 간행물 (경제잡지, 2012년 6월 발간분)
- 독일 공공입찰 규정집 (2011년 개정판, 200페이지 분량)
- 협회 회원사 제작 협회 기념품 (국립 도자기 납품업체)

[그림 3-14] HBB 협회 제공자료

HBB 협회 소개자료	HBB 정기 간행물	공공입찰 규정집
		

* 주 : 독일 공공입찰 규정집 세부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아. 독일의 공공조달

1) 독일의 중앙조달기관

독일에는 정부조달을 총괄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연방정부 각 부처, 주정부 및 지자체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독일의 공공조달 발주기관은 연방기관에서부터 지자체 병원까지 다양하다. 공공조달 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은 불명확하나, 보편적으로 구매예산의 출처가 어디인가와 공익목적 설립기관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연방부처, 주립대학, 연금공단, 시립병원, 연구소, 하수처리장 등 공공예산으로 구매행위를 하는 모든 기관은 공공조달기관이라 할 수 있다.

조달정책 및 통계를 총괄하는 연방기관의 부재로 정확한 기관수와 조달기관별 연간 구매규모 등은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나 조달 컨설팅사인 BAO Berlin GmbH사에 따르면 독일 조달관련 기관은 약 3,500개이며 총 조달규모는 독일 전체 GDP의 약 15% 정도로 추산된다.

2) 독일의 조달시장 규모

독일은 정부조달을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조달시장에 대한 통계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는다. 1995년 발표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연간 조달시장은 4,000억 마르크 규모로서 EU 전체시장의 약 1/3을 차지한다. EU 전체의 조달시장 규모는 EU 총 GDP의 15.4%인 약 1조 2,000억 마르크로서 EU 전체 시장의 약 1/3을 차지하며 연방통계청이 작성한 95년도 독일 조달시장 규모(총액 1,865.4억 마르크)는 아래와 같다.

[표 3-22] 독일 조달시장 규모 및 비중

구분	조달규모	비중
연방정부	387.6억 마르크	20.77%
주정부	422.2억 마르크	23.17%
시 및 지자체	1,045.6억 마르크	56.05%

*자료 :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실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9

여러 형태의 공기업으로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상수도, 에너지 및 교통관련 기업은 상기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들 기업의 95년도 총 입찰액은 1,800~2,000억 마르크로 추산된다.

3) 독일의 조달 관련 법규

독일의 조달관련법²⁶⁾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국내법으로는 물품조달법(VOL)과 건설조달법(VOB)이 있고, EU 차원에서는 EU 조달 지침이 있다. 하지만 EU 조달 지침은 현재 독일 국내법화

26) 독일정부는 2009년 국내 조달법의 개정안을 수립하여 공표

되고 있는 단계이며, EU 서비스 조달지침은 아직 국내법화 되지 않은 상태이다. 분야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조달 프로젝트는 EU 차원의 입찰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타 회원국 업체에 대해 차별대우 금지한다. 일반물품 및 서비스 구입은 20만 유로, 건설 공사는 5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EU 차원의 입찰이 시행된다.

제4부

소모성자재 산업 문제점

제1장 소모성자재 산업 문제 요약

제2장 소모성자재 산업에 내재된 문제

1. 대기업 사업 확장에 따른 문제
2. 소모성자재 산업 성장과정에 따른 문제

제3장 법률 및 지원정책 개선 요인

1. 판로지원법 개정 관련
2. 지원정책 개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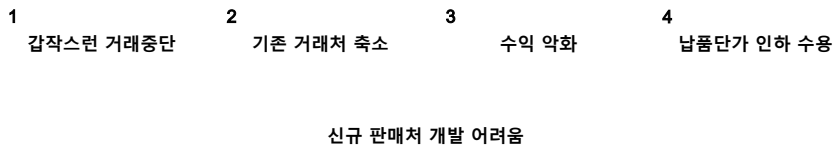
제 1 장

소모성자재 산업 문제 요약

소모성자재 산업의 주요 문제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피해와 소모성자재 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저하임

-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의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피해 사례는 「기존 거래사의 일방적인 거래중단 통보」, 「거래처 축소」, 「수익 악화」,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수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사업 확장에 따른 문제



-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전국 유통망을 구축한 일부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이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한 영세 중소기업 영역까지 침범하여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거래행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 물품 구매사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 요구 증대, 시스템을 통한 구매업무 효율화 추구 등 영세 납품업체가 지원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어 중소 납품업체의 납품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 중소납품업체의 경우 부족한 영업인력으로 판로개척이 쉽지 않고, 공공시장도 각종 절차의 복잡하고, 각종 요구조건으로 인한 진입장벽이 높아 납품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 2 장

소모성자재 산업에 내재된 문제

1. 대기업 사업 확장에 따른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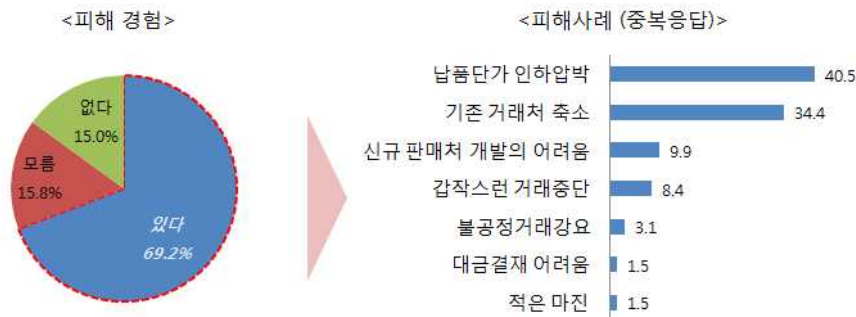
가. 중소납품업체

대기업 사업확장에 따라 약 70%의 중소납품업체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품단가 인하압박이 40.5%, 기존 거래처 축소 34.4%였다.

중소납품업체는 거래처도 많지 않고, 영업력도 부족하여 신규개척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거래처 축소가 사업수익 악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4-2] 구체적인 피해 경험 사례

(단위 : %, N = 130)



나.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 역시 중소기업업체와 비슷한 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는 기존 물품 구매사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요구와 다양한 제품 납품요구 등의 이유로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로 거래업체를 변경하거나, 변경을 전제로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압박을 시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3] 피해 경험

(단위 : %, N = 9)



다. 공공기관

1) 판로지원법 개정내용 인식 및 적용 미흡

개정된 판로지원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공공기관이 23%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적용 기관도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로지원법 인지 미흡 및 미적용 기관 비중이 높음에 따라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영향력이 공공기관 내에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공공기관의 구매인력에 큰 변동이 없어 자재구매대행업자의 잠재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민간 구매사

1) 자재구매대행업자의 선호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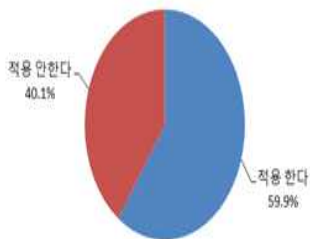
민간 구매사의 경우 구매 편리성과 비용절감 등의 사유로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판로지원법 개정을 인식하고 있는 구매사는 29%에 불과하여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입지와 영향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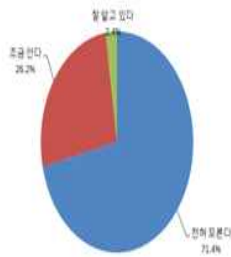
[그림 4-4] 개정된 판로지원법 인지 여부

(단위 : %)

<공공기관 개정된 판로지원법 적용 여부>



<민간업체 개정된 판로지원법 인지 여부>



2. 소모성자재 산업 성장과정에 따른 문제

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

국내 영세 소모성자재 시장의 급성장 배경에는 거대 자금을 보유한 대기업의 구매대행 시스템 개발 및 도입이라는 e-marketplace적 접근이 있었다. 이 시스템은 구매사와 납품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주고, 대량주문을 통한 단가인하로 구매사에게는 구매비용 인하라는 효과를, 납품업체에게는 판매물량 확대 및 판매처 확보라는 효과를 주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IT적 접근을 통해 유통시장의 교섭력을 확보한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는 자신들의 고객사인 대형 물품 구매사를 앞세워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중소 납품업체를 압박하였다.

민간 시장의 시장 점유율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민간 시장의 경우 시장의 약 40%를 자재구매대행업자가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90%이상을 대기업 3~4개사가 차지하고 있어 자재구매대행 시장이 대기업에 편향된 시장임을 알 수 있다.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는 대기업 이익을 최우선하게 되어 영세 납품업체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나. 가격 중심의 시장구조

소모성자재는 제품에 따라 다르나 규격이나 재질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어떠한 제조사의 제품을 구매 하여도 성능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구매사는 낮은 가격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중소납품업체들은 구매사의 단가 인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수익을 낮추거나 마진 없이 납품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중소납품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과거 구매사에 직접 납품하던 업체는 구매사의 단가 인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여도 최소한의 마진 확보가 가능하였으나 자재 구매대행업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존 마진을 자재구매대행업자와 공유하게 되어 중소 납품업체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그림 4-5] 납품단가 인하 요인 비교



다. 지역 업체/경제 활성화 기여도 미미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납품업체 선정 기준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납품단가이다. 따라서 납품업체가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이건 물류비를 포함하여 가장 낮은 가격에 납품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된 구매요청이 특정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기여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 단위의 유통이 가능한 대규모 납품업체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영세 납품업체의 경영악화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구매사의 구매 효율화 추구

공공기관 및 민간 구매사의 구매전담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공공기관은 구매업무만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부족하여 구매전문성을 갖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매업무 개선 및 효율화를 위해 자재구매대행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사가 자재구매대행업자를 이용하는 이유는 구매 효율화 즉, 이용 편리성 때문이다.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된 구매 시스템을 통해 각종 통계처리나, 거래 기록의 열람도 용이하고, 품목에 따른 판매업체를 건별로 찾지 않아 구매 시간 절약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체는 이러한 시스템적 편리성을 제공할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하여 편리성을 추구하는 구매사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 생존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의 경우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납품업체로 전략하는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6] 구매대행업체 선호 이유

(단위 : %)

<공공기관>		<민간업체>	
물품 주문의 편리성	80.6	편리하고 신속한 구매 효율성	66.7
구매비용 및 구매시간 절감	17.9		
각종 통계자료 처리의 편리성	1.5	비용 절감	33.3

마. 중소기업의 제한된 영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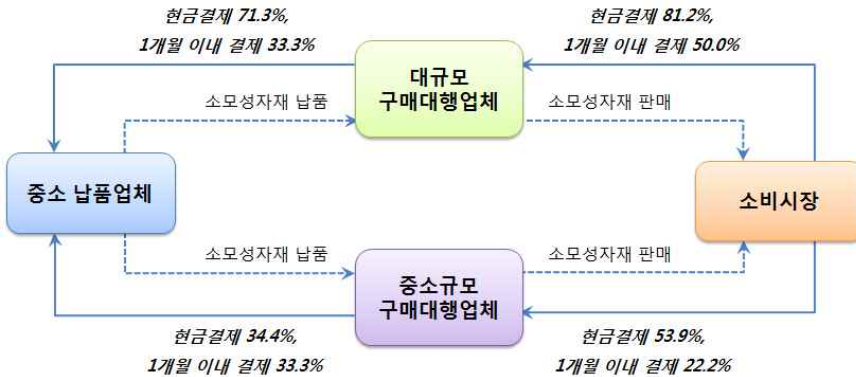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필요한 영업인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회사 운영에 필요한 매출처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등 사업 영위를 위한 자구책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영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중소기업의 평균 영업인력은 3명 이하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조사된 인력이 영업만을 전담하지 않아 실제 영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능력도 영업에만 집중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영업 전문가가 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특성상 영업 및 마케팅 교육 기회가 적어 영업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바. 결제 관행

소모성자재 납품시장에서는 중소기업에게 다소 불리한 조건으로 대금 결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결제방식이 중소기업의 자금운영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4-7] 대금 결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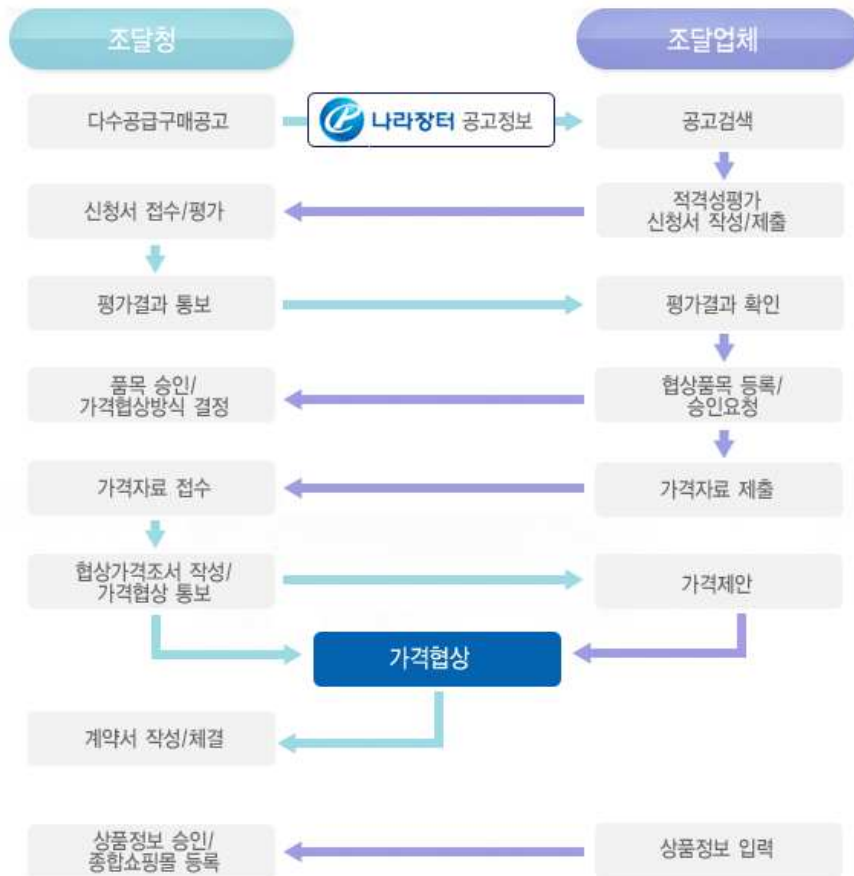
사. 공공기관 납품의 진입장벽

중소납품업체의 대표적인 공공기관 납품 방법으로는 조달청 나라장터가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정부에서 직접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예로, 판매 제품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MAS)등록²⁷⁾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그 비용 또한 적지 않고, 완료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된다. 다수공급자계약 등록이 완료된다 해도 조달청이 제시한 각종 기준·요건 등을 충족시켜야 하고,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및 소요 비용 등이 영세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저가 판매도 감수해야 할 애로사항이다.

27)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림 4-8]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및 물품 등록 절차



*자료: 에이스품질경영컨설팅,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에 관한 처리규정”

아. 소모성자재 산업 성장의 문제

원부자재와 달리 소모성자재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 불경기가 장기화 되거나, 매출 실적이 부진할 경우 가장 먼저 구매량을 줄이는 것이 소모성 자재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2013년 국내 성장률을 2% 초반으로 짐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소모성 자재 시장규모는 점차 감소될 것이며, 납품단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적합한 대응을 못하는 중소납품업체는 도산을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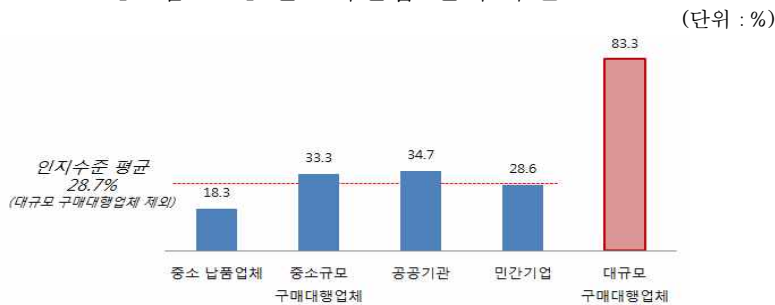
법률 및 지원정책 개선 요인

1. 판로지원법 개정 관련

가. 판로지원법 개정 인지도 낮음

2011년에 개정된 판로지원법에 대해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를 제외한 업체 대부분이 상세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로지원법 개정의 주요 목적이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정작 지원 대상들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업체들 역시 30%대의 인지 수준에 그쳤다. 반면,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상당수가 개정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 관련 법이 허용하는 수준에서의 자사 이익극대화를 위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9] 판로지원법 인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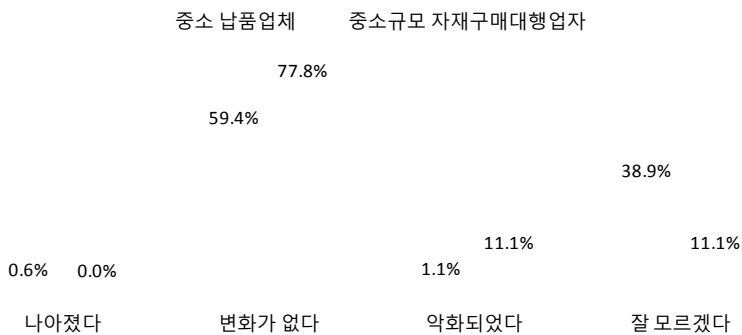
※ 인지수준 : 잘 알고 있다 + 조금 알고 있다 응답 비중

실태조사 결과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경우 83.3%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업체,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평균 28%대의 인지 수준을 나타내었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공공기관의 경우 34.7%만이 본 개정사항을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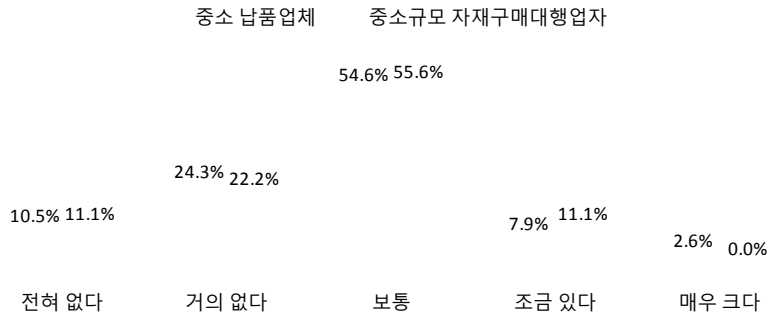
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판로지원법 개정 효과

조사시점에서 중소기업업체 및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이 느끼는 판로지원법 개정효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로지원법의 홍보가 원활하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기 때문이며, 또한 개정 이후 실행 기간이 짧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및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0]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영업환경 변화 (단위 : %)



[그림 4-11]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규제의 도움정도
(단위 : %)



실태조사 결과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영업 환경에 변화를 느낀 업체는 약 10% 수준이었으며, 잘 모르겠다 및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한편,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영업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이 11.1%로 나타나 관련법의 보완 및 추가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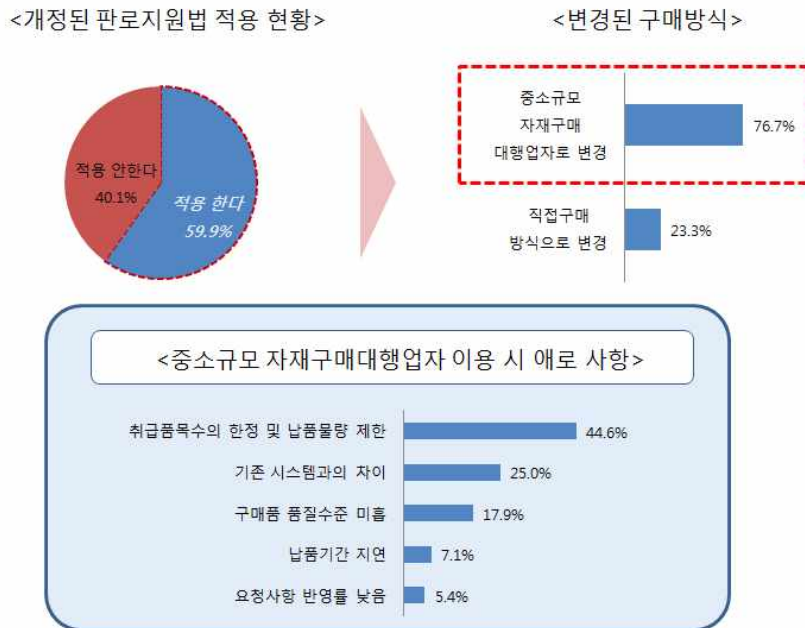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규제와 관련한 도움 정도 역시 응답을 보류한 의견(보통이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단, 조사시점에서 일부 업체들은 이미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규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효과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공공기관 변화 및 애로

과반수 이상의 공공기관이 개정된 판로지원법을 적용하여 기존의 구매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주로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에 의한 구매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와의 거래로 인해 다양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주로 취급품목수의 한정, 납품 물량의 제한, 기존 시스템과의 차이 등 중소기업 업체가 보유한 구매대행업 역량 및 인프라 수준이 공공기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공공기관 구매방식 변화 내역



2. 지원정책 개선 요인

가. 지원정책 홍보 강화 필요

중소납품업체와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정책은 판로지원법과 관련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업체들은 판로지원법 외에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 우대,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MRO가이드라인 설정, 대기업 MRO업체의 무분별한 영업 확장 저지 정책 등을 인지하고 있었다. 단,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이 인지하는 정책은 판로지원법에 편중되어 있으며,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등 기타 관련 정책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의 홍보 강화가 요구된다.

[그림 4-13] 지원정책 인지 현황

(단위 : %)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중소 납품업체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개정	29.6%	77.8%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 우대	11.1%	21.7%
MRO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0.0%	19.1%
동반성장위원회 MRO가이드라인 설정	0.0%	17.1%
대기업 MRO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확장 저지	11.1%	12.5%

나. 다양한 지원정책 요구

소모성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 각 분야를 대상으로 필요 지원정책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부당가격 인하에 대한 규제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의 경우 운영자금 지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았다. 또한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가 유발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그림 4-14] 주요 지원정책 요구 세부 항목

(단위 : %)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의 경영애로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 부당가격에 대한 규제, 공공기관 진입장벽 해소가 있었다. 공공기관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구매대행사를 통한 공공기관 납품 지원 등의 의견도 있었다.

가격 위주 납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제시한 방안으로는 자산건전성 우선고려, 지역연고 우선구매, 거래규모 및 업력 우선거려 등이 있었다.

중소규모 자재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경영애로 개선을 위해 운영자금 지원, 판로개척 지원, 시스템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자사 계열사 이외의 판매영업 금지,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 강화,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공공기관 중소기업 구매비중 확대, 공공 물류인프라 지원 등을 요구하였다.

민간 구매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확대 방안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 중소기업의 단가보장 제도, 소모성자재를 소비하는 유관기관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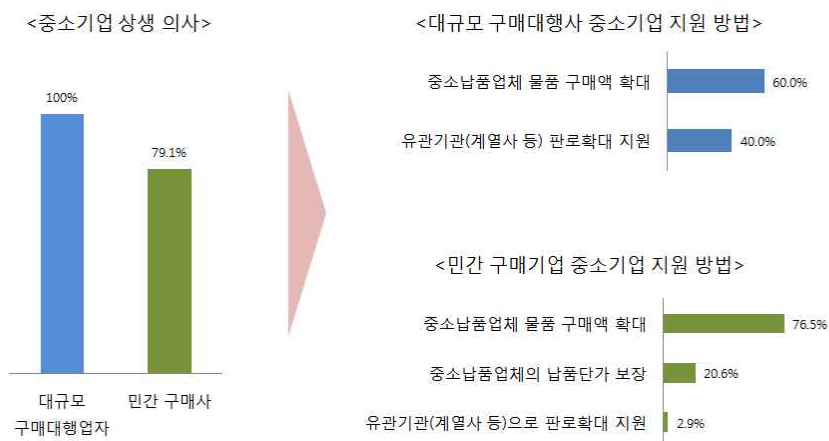
다. 효과적인 동반성장 방향 정립 필요

조사에 응한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전부 중소기업과의 상생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물품 구매액 확대 및 판로확대를 지원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민간 구매기업의 경우 79.1%가 상생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마찬가지로 물품 구매액 확대 및 판로확대를 지원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4-15] 동반성장 의사 및 중소기업 지원 방법

(단위 : %)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중소납품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는 납품 단가인하로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이 제시한 구매액 확대와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올바른 방향 정립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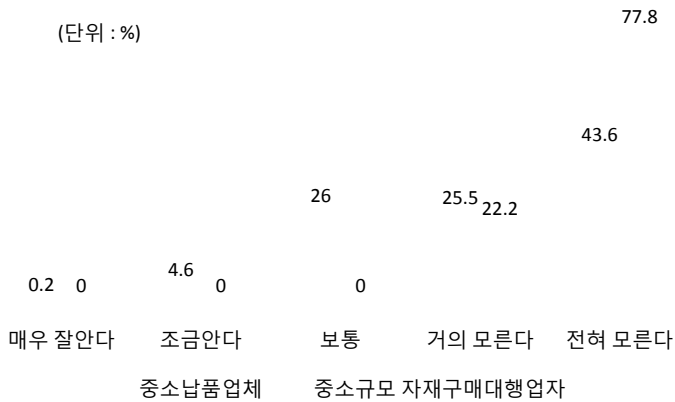
라. 낮은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인지도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주 지원대상인 중소납품업체와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다수가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설립 이후 운영 기간이 짧아 업체들이 인식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조사에 응한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경우 대부분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납품업체의 경우 30%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인지여부



마. 판로확대 및 자금지원 요구

중소납품업체와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는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판로확대와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납품업체는 판로확대 및 자금지원 외에도 경영교육 및 컨설팅, 중소기업 인종지원 등 요구가 다양한 반면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납품업체의 판로확대 및 자금지원 요청 비중은 71.2%,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는 59.2%로 나타났다.

[그림 4-17]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고 싶은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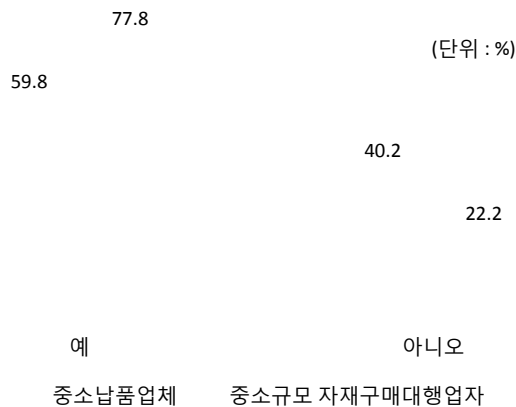
분야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	중소납품업체 (%)
모름	1.3	
경영컨설팅	1.6	
중소MRO업체인증지원	2.3	
경영교육	4.7	
없다	5.8	
물류센터 구축	6.1	11.1
홍보/마케팅 지원	7	18.6
자금지원		29.6 30.8
판로확대 지원		29.6 40.4

바. 공동MRO몰(가칭) 참여 의사 높음

중소납품업체와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MRO몰이 구축될 경우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납품업체는 60% 가량이 참여를 희망하였고,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는 78% 가량이 참여를 희망하였다. 중소기업의 참여희망 비중이 낮은 이유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자재구매대행업자의 불공정 사례들이 공동MRO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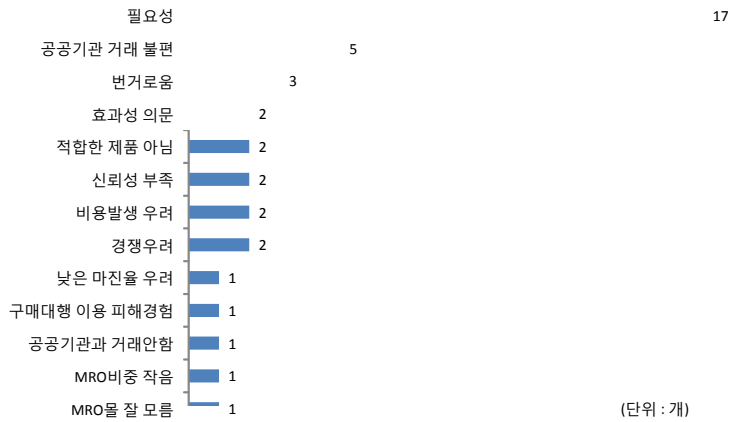
[그림 4-18] 공동MRO몰 참여 의사



사. 공동MRO몰(가칭) 이용 필요성이 낮음

응답업체 중 필요성 문제로 공동MRO몰 이용을 거부한 업체는 17개로 조사되었고, 비중으로는 약 43%를 차지하였다. 또한 공공기관과 거래에 대한 불신도 13%인 5건을 차지하였다.

[그림 4-19] 중소기업업체 공동MRO물 사용 거부 이유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경우 공동MRO물(가칭)의 비즈니스 모델이 자재구매대행업과 유사하여 경쟁관계에 놓일 것을 우려하여 이용을 거부하였다.

[그림 4-20]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 거부 이유

(단위 : %, N = 9)



소모성자재 발전과제와 전략

제1장 소모성자재 발전과제와 전략 요약

제2장 소모성자재 산업 발전과제

1. 실효성 있는 보호·육성 정책 마련
2. 발전과제와 전략방향

제3장 중소기업육성

1. 영업·마케팅 역량 지원
2. 판로개척 지원 확대
3. 수출 역량 강화지원

제4장 중소기업입찰참여 기회확대

1. 지역 연고 우선구매 추진
2. 쿼터제 시행
3.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제5장 소모성자재 산업 인프라 발전 전략

1.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발전 방안
2. 소모성자재 통합 구매·관리 시스템 운영
3. 소모성자재 공제조합 설립

제 1 장

소모성자재 발전과제와 전략 요약

1. 중소납품업체 육성
 - 영업·마케팅 역량 지원, 판로개척 지원, 수출역량 강화지원
2. 중소납품업체 입찰참여 기회확대
 - 지역연고 우선구매 추진, 쿼터제 시행,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3. 소모성자재 산업 인프라 발전 전략
 -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발전 방안, 소모성자재 통합·구매관리 시스템 운영, 공제조합 설립

- 소모성자재 산업과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의 자체 역량 개발지원과 단기적으로는 실제적인 판로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영업·마케팅 역량 지원을 위해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교육 커리큘럼 보완, 교육 횟수 증대 및 지역거점 현지 교육으로 전환 등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전달되기 어려운 심도 있는 지원을 위해 멘토링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소모성자재 산업 종사자의 질적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공동MRO몰의 물품 납품업체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소모성

자재납품업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 구매사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향후에는 민간 영역도 물품 구매사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수수료 체계도 인하 또는 감면 등 공공기관의 사업지원 성격에 맞게 변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을 통하여 중소기업업체의 실질적인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수출력 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박람회 참가지원 뿐만 아니라 소모성자재 관련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평균 3~4년에 걸쳐 전시회에 참가해야 바이어 개척의 효과가 있다는 수출기업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수출지원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수출이 용이하거나, 수출을 통해 많은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토탈(Total)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야한다. 현지시장 맞춤형 정보, 현지 바이어 특성에 맞는 협상전략 정보, 현지 시장에 맞는 상담 스킬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연고 우선구매 제도를 추진하여 대기업 대비 경쟁력 열위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지역거점 중소기업업체가 물품 공급, 즉 판로개척의 기회를 획득하여 수익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연고 우선구매와 더불어 쿼터제를 병행하여 특정 기업에게 일감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다수의 지역 업체에게 동일한 납품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 소모성자재 산업 인프라 발전을 위해서는 전세계 유일의 소모성자재 지원기관인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확대해야 한다.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는 소모성자재 산업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 산업정보 제공 등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하여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 납품업체를 지원해야 한다.
- 현재 국내 공공기관 구매관계자는 소모성자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소모성자재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분석 및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시 정확한 데이터 집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의 업종구분 및 국가 시스템을 구매 관점에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소모성자재 납품업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 투자 또는 운영자금의 부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로 각종 지원요건 미달에 따라 정부·협회 등에서 자금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제조합을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업체를 우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소모성자재 산업 발전과제

1. 실효성 있는 보호·육성 정책 마련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소모성자재의 구매·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소모성자재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들과의 상생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 및 중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국내 소모성자재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모성자재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중소 납품업체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내 소모성자재 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나 소모성자재 산업에 내재된 문제점을 정부나 학계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또한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소모성자재 산업에 대한 실제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다보니 소모성자재 산업에 대한 지원도 산업의 특성에 맞게 특화되기보다 기존 중소기업 지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매출 성장, 기업 경영능력 향상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가

중소기업의 자력갱생보다 정부에 의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 소모성자재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에게도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행태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기존의 보호·우대 정책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으로 전환하고, 교육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발전과제와 전략방향

소모성자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모성자재 산업의 특성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산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도출하여 지원정책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소모성자재 산업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관련 연구논문은 2005년을 전후로 작성된 것들이 대부분이며, 주로 대기업 중심의 전자상거래, 특히 e-플랫폼 발전과정에서 따른 시장규모의 성장에 대한 조사자료가 대부분이었다. 본 백서의 관심 대상인 중소 납품업체와 관련된 자료는 전무하였다.

현재까지 조사된 소모성자재 관련 연구 분야는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소모성자재 산업에 대한 필요 연구 분야는 매우 광범위할 것이다. 소모성자재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와 법률체계뿐만 아니라 산업을 발전·강화시킬 지원화 방안들이 그것일 것이다. 또한, 소모성자재 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우대하는 방식의 정책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소모성자재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육성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근거를 찾아내는 것도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소모성자재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된다는 식의 정책이 아니라 소모성자재 산업의 사회적·경제적 의미와 중요성을 반영하여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특화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림 5-1] 소모성자재 발전과제와 전략

전략 방향	실태조사 결과	과제 내용
1 중소납품업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지원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 가격 중심의 납품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가 경쟁 유발, 중소기업체 수익 저하 지속 • 마케팅·영업교육에 대한 니즈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마케팅 역량 지원 • 판로개척 지원 • 수출역량 강화 지원
2 입찰 참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있는 업체만 계속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연고 우선구매 추진 • 쿼터제 시행 •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3 인프라 발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RO종합지원센터 인지도 낮음 • 구매관리 시스템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관리, 기재·집계의 오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RO종합지원센터 발전 방안 수립 • 소모성자재 통합·구매 관리 시스템 운영 • 공제조합 설립운영

제 3 장

중소납품업체 육성

과거 소모성자재 관련 중소기업체는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인식되어져 왔다. 하지만 소모성자재의 산업구조 특성과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에 내재된 문제점이 일반 납품업체와는 상이함이 드러나면서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소모성자재 관련 중소기업체를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어떠한 형태로 개발 할지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본 조사를 통해 파악된 중소기업체의 요구를 종합해보면 중소기업체 육성을 위해 판로 확대를 위한 대안들이 도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중소납품업체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시 중요한 결정사항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판로를 열어주느냐, 판로를 열 수 있는 힘을 중소기업체 스스로가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이다. 즉, 직접 지원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체 보호·육성 제도를 마련하여 판매를 촉진시키거나, 영업·마케팅 교육, 멘토링, 박람회 참가 등 중소기업체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간접지원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체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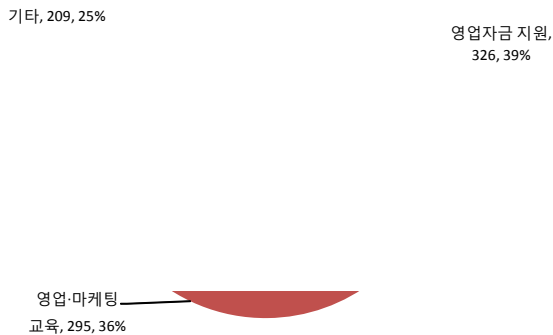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체 납품업체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적 판매망 확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자생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영업·마케팅 역량 지원

가. 배경 및 필요성

실태조사 결과에서 판로개척을 위해 중소 납품업체를 위한 영업·마케팅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6%(295개 업체 응답)를 차지하였다. 이는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영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39%, 326개 업체 응답)과 비슷한 결과이다.

[그림 5-2] 판로개척을 위한 필요지원 사항



과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필요정책 조사에서는 자금지원이 압도적인 차로 1순위로 응답되었다. 하지만 자금이 기업이 내재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중소기업들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위해 영업·마케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은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가 유일하다.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문화된 교육 커리큘럼 기획 및 실질적 교육효과 확보를 위하여 전문강사 Pool을 활용하여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보면, 교육은 기 확보된 전문강사를 통해 자체 교육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교육장을 활용하여 시범사업 수준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차수를 거듭하며 발전적 교육 커리큘럼을 확대하는 등 교육 수준 제고에 힘썼다.

2012년 5월 1차 교육 시 50명 모집에 90%인 44명(32개 업체)이 참석하였고, 2차 교육에서는 17개 업체에서 22명이 참석, 3차 교육에서는 27개 업체에서 32명이 참석, 4차 교육에서는 14개 업체에서 16명이 참석을 하였다.

[표 5-1] 교육 실적

차수	일정	참여 업체 수(개)	참여 인원(명)
1	5월 16~17일	32	44
2	10월 30일	17	22
3	11월 13일	27	32
4	12월 27일	14	16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교육 내용을 보면 1차와 나머지 차수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 교육 시에는 「MRO판매기회 분석」, 「B2B마케팅 영업전략 수립」, 「조달·계약 실무」, 「물류·재고 관리 기법」 등 소모성자재 산업 전반에 관한 판로확대

측면에서 폭넓은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대상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외에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 교육을 진행하였다.

[표 5-2]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기본 교육내용(1차)

교육 테마	교육 내용	목적 및 효과
MRO 판매기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MRO 프로세스와 프레임 - MRO 거래 제품 유형 파악 - 시장분석 및 인사이트 확보 방법론 - 영업 기회 분석과 상품적합도 판별 	MRO를 활용하여 판매를 증대하기 위해 시장 조사·판매기회 발견
B2B마케팅 영업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분석과 표적고객 선정 - 고객사 니즈와 구매 프로세스 분석 - 고객사 구매 의사결정자 분석과 관계 - 고객가치에 적합한 제품 개발과 개선 - 자사 제품의 차별성, 용도 강화 방법 	자사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고객사를 분석·선정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역량 강화
조달·계약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 절차 분석과 활용법 - 조달을 위한 원가분석 - 정부·민간 조달 사례연구 - 계약절차와 계약서 작성 방법 - 계약을 위한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조달 등록에서 입찰, 낙찰 후 계약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별 세부 절차와 방법 습득
물류·재고 관리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SCM 사례 - 물류·배송 최적화를 위한 방법론 - 재고삭감과 관리 기법 	고객에게 제품이 제공되는 과정을 최적화하고 재고를 적절히 유지하여 비용절감 실현

하지만 4차에서는 판매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한 교육은 없었으며, 주로 정부 조달에 관한 내용이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영업·마케팅 방법에 대한 교육 횟수가 더 늘어나야 한다. 현재 교육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5-3]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기본 교육내용(2~4차)

교육 테마	교육 내용
1. 지원센터·공동MRO물의 이해	- 지원센터 소개 - 공동 MRO물의 이해
2. 정부 조달제도	- 정부계약 관련 법령 - 계약의 분류 및 계약방법 결정전략
3.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계약 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 -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지정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 다수 공급자 계약제도 - 적정성 평가 및 사전심사 -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공고
4. 가격제도	- 추정가격 제도와 예정가격 제도 - 공사 원가계산서 사례
5. 계약 체결방법	- 수의계약 - 제한경쟁 계약 - 지명경쟁 계약 - 희망수량 경쟁입찰 - 2단계 경쟁 입찰 - 유사물품의 복수 경쟁입찰
6. 낙찰제도	- 낙찰자 결정 기본 - 최저가 낙찰금액 적정성 심사(공사) - 적격 심사제도
7. 용역계약	
8. 협상계약	
9. 조달청 시설공사 자격심사 기준 및 실습	

나. 추진 방안

1) 영업·마케팅 교육 내실화 및 홍보강화

- ① 영업·마케팅 교육 내실화 및 홍보강화
- ② 판로개척 지원확대

첫째,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연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한 영세 소모성자재 관계자의 상황을 고려하면 연 1회 참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 교육장소 또한 서울로 한정되어 있고, 첫날 교육도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어 지방에 거주하는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들의 참석유도가 쉽지 않다. 교육도 양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지방 참석자들의 애로가 적지 않다. 따라서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가 모여 있는 지방의 주요 대도시를 거점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참석률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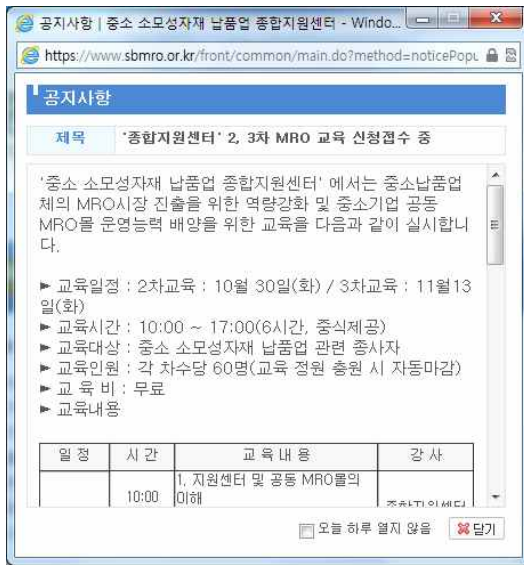
둘째, 교육 카테고리의 보완이다.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현재 교육 카테고리는 1차와 나머지 2~4차에 차이가 있다. 1차는 판매기회 분석, 영업 및 마케팅 전략, 물류 관리 기법, 그 외 기타 조달절차와 계약에 필요한 기본 지식 등 소모성자재 유통의 흐름에 필요한 교육이 잘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경영자의 관점에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모성자재 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진의 경영능력 향상 및 경영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해 실무적이고 전문

적인 경영기법을 현장사례 중심으로 추가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공 CEO 특장을 통해 경영의지 고취 및 경영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내실 있는 강의가 되기 위해 전문 강사뿐만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성공CEO를 초빙할 필요가 있다.

1차 교육이 MRO 시장에 대한 분석과 판매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2~4차는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중심으로 진행되어 교육의 질과, 양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을 받는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니즈조사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1차 교육을 수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필요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카테고리를 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해야 한다. 또한 1차 교육과 2~4차 교육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원하는 수강 시기를 놓칠 경우 차년도를 기약해야 하기 때문에 1차년도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동일한 교육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 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정보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획득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공동MRO몰 납품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교육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5-3]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교육홍보 팝업



인터넷 포털 사이트(Portal Site)를 통해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검색이 가능하나 개인이 올려놓은 1~2개 정도의 블로그(blog)만이 검색되고,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와 바로 연결된 정확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이 필요한 관계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찾아와 교육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향후 지방 교육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주요 일간지를 활용하여 광고를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소모성자재납품업체가 몰려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거리, 대로변 등 가시권이 확보된 곳에 현수막을 비치하는 것도 홍보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 내용 및 사례를 공유해야 한다. 교육 참석자뿐만 아니라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소모성자재 관계자도 해당 교육 내용을 공유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납품업체에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 센터를 홍보할 수도 있다. 더불어 특강 이후 강연별 자료를 취합하여 포럼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 센터 홈페이지에 강연 동영상 자료를 게재하여 공유토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5-4] 교육 추진 프로세스

계획수립	홍보 및 참가자모집	교육개최	교육내용 공유
지역별 교육계획 수립	교육사업 홍보 및 참가자 모집	모듈별 강의 및 만족도 조사, 교육 결과 보고	강연자료 배포 및 공유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가 교육 커리큘럼 및 사업운영 방안을 고도화 하기위해 참고할 수 있는 유사 정보로는 시장경영진흥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 정보화교육/디지털상인육성, 상인대학원 과정 등 4개로 구분되어 있다.

상인대학은 시장 내 학습모델로 삼을 수 있는 상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종합교육으로 「상인대학 선정시장」에 한해 시행하며, 기본과정(의식혁신, 고객만족 등), 심화과정(상품개발, 판매기법 등)으로 총 40시간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표 5-4] 상인대학 교육프로그램

구분	상인대학설치(시장)	상인대학참가(상인)
신청 자격	등록시장으로서 교육을 통한 돈 버는 상인이 되고자 하는 상인이 많은 시장이면 신청가능	교육을 받고자 하는 상인이면 누구나 가능
신청 방법	상인대학설치를 희망하는 시장은 사업공고에 따라 설치신청서를 진흥원으로 제출	교육생 모집 홍보시 상인교육 참가 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제출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국비를 지원하고 심의를 거친 상인대학 책임교수 및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기획 및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기본과정, 심화과정, 선택과정으로 구분되며, 각 과정별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된다.

[그림 5-5] 상인대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법

기본 과정	의식혁신, 고객만족, 경영기법, 판매촉진, 홍보전략 등 - 대상 : 희망상인 전원 - 최소 신청인원 : 50명 - 교육 시행기관 : 위탁교육기관
심화 과정	상품개발, 포장 및 진열기법, 조직관리, 선진지 견학 등 - 대상 : 기본과정 이수자 - 최소 신청인원 : 없음 - 교육 시행기관 : 위탁교육기관
선택 과목	세무특강, 건강관리, 리더십, 장인정신 등의 교육 - 각 상인대학 맞춤 과목 교육 지원 - 교육 시행기관 : 위탁교육기관

우대사항은 상인대학을 수료한 우수상인에 대해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상인대학원 입학, 선진국 시장탐방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5-6] 시장상인대학 졸업식 전경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홈페이지

맞춤형 교육은 시장의 규모·특성·업종을 고려한 교육으로 상인의 경쟁역량 제고에 필요한 유통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는 단기간 프로그램이다. 특강형 교육, 단기형 맞춤형 교육, 업종별 맞춤형 교육 등 수요자의 상황에 따른 교육으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식상인의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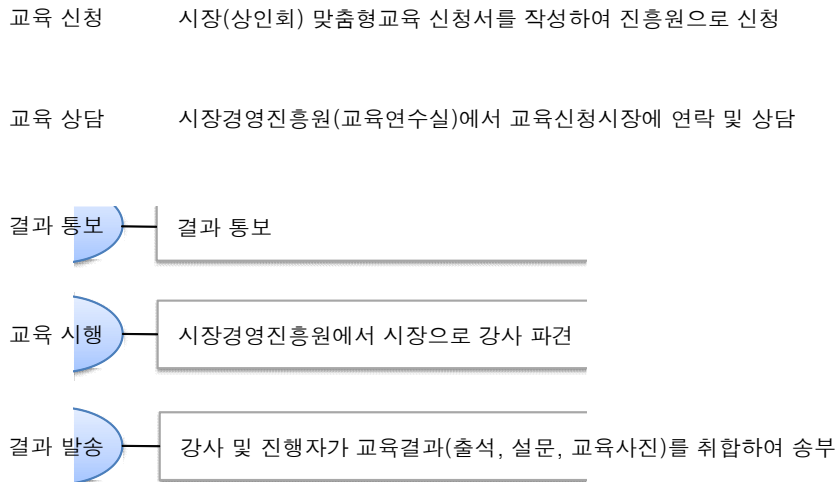
[표 5-5] 상인대학 교육프로그램

추천 교육신청대상	교육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 교육경험이 전혀 없는 시장 - 시설현대화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신청 중인 시장 	<p>교육내용은 시장과 상인이 필요한 내용이면 모두 지원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환경변화, 친절서비스, 시장정보사업, 시설현대화 유의사항, 상품디스플레이 등 - 시장과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실무중심의 교육지원

특강형 교육은 2시간 단기 특강, 의식개혁, 친절 서비스 등 교육입문과정으로 진행되며, 단기 위탁교육은 15시간 이내의 단기 교육, 의식혁신, 판매기법, 친절서비스 등에 관해 교육한다. 업종별 전문 교육은 15시간 이내 업종전문 교육, 음식, 한복, 상품진열 등

업종별 수요에 맞춘 전문교육으로 분야별 심층교육 희망상인에게 적합하다.

[그림 5-7] 교육신청 과정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홈페이지

정보화교육·디지털상인육성은 인터넷교육으로 정보화상인의 기반을 닦고 OA프로그램 활동교육으로 POP제작 등 점포경영을 선진화하는 한편, 오픈마켓 창업교육으로 온라인 1점포 영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표 5-6] 정보화교육/디지털상인육성교육 지원

지원대상 및 기준	교육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시장으로서 법에서 정한 상인조직이 있는 시장 - 최소교육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교육 20명 이상 * 디지털상인육성 10명 이상 -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용은 전액 국비 - 참가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을 받고자 하는 상인 전부 - 상인이 신청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생 모집 홍보시 상인교육 참가신청서를 교육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인회가 직접 위탁기관에 교육 시행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상인회)에서 위탁교육기관에게 교육시행을 요청하면 기관에서 방문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② 상인회가 진흥원으로 신청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원으로 교육을 신청하시면 시장 여건과 교육과정, 지역에 따라 위탁 기관연결을 통해 교육을 지원 ③ 상인회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상인회)에서는 교육참가자 확보, 교육장 확보 등의 협조 ④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정보화 기초과정(9시간): PC기본 활용, 인터넷정보검색 및 활용 등 - IT정보화 기초과정(12시간): OA프로그램활용을 통한 점포관리, POP제작, 매출입 대장활용 등 - 디지털상인육성(50시간): 오픈마켓 창업 교육으로 상품사진촬영, 편집, 온라인 마케팅 등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홈페이지

상인대학원 과정은 전통시장의 선진화를 앞장설 상인지도자를 육성하고, 상인대학 졸업 상인에게는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표 5-7] 상인대학원 세부내용

구분	내용
대상	상인대학 졸업생 - 사업시행은 과정당 40명이상 모집시 시행
과정	60~80시간(회당 3~4시간, 20회) 교육
내용	- 상인지도자 과정: 상인조직화, 시장경영, 새로운 마케팅기법 도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선도할 상인지도자 양성 - 청년기업가 과정: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대형점포로 성장해 나갈 청년 기업가 양성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홈페이지

또한 시장경영진흥원은 온라인 교육실을 운영하며 전통시장의 장단점과 지향점, 상인회장 리더십, 조직 육성계획, 상권활성화 사례, 타 전통시장의 운영특성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일정관계 상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에게도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멘토링(Mentoring) 지원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특정 대상의 스승 역할을 하여 지도와 조언으로 그 대상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 또는 그러한 체계를 말한다. 소모성자재 산업에서 멘토링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부여된 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소모성자재 업체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구하기 어려워 당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법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도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킬 좋은 제도이나 실제적인 경영개선, 매출증대 등의 효과를 단기간에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멘토링과 같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심층인터뷰 결과 창업 후 3년 미만 업체는 자금조달, 판로개척, 네트워크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성장단계²⁸⁾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멘토(Mentor) 등과의 연계를 통한 경영노하우, 경영기법 등을 전수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멘토링 사업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문융합지원체계(CFT : Cross Functional Team)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현장밀착 지원을 통해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의 경영 성과를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5-8] 멘토링 추진 프로세스

기본계획 수립	CFT 구성	멘토링 사업추진	멘토 포상
멘토링 사업 계획 수립	분야별 전문가 모집	멘토링 사업 추진 및 성과 평가	지역별, 분야별 우수 멘토 표창

멘토링을 위한 CFT 멘토는 재능기부 형태의 봉사개념으로 모집하고, 멘토의 연간 봉사활동을 평가하여 봉사실적에 따라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장이 표창하고, 향후 센터사업에 참가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멘토의 연간 봉사활동은 멘토 활동 건수, 업체 만족도, 업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CFT 멘토를 재능기부 개념으로 추진할 경우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Pool 구성이 가능하며, 분야별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과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8) 성장단계: 도입기 -> 성장기 -> 성숙기 -> 쇠퇴기

3) 코칭(Coaching) 지원

주요 목적은, 현장방문을 통한 1:1 맞춤형 교육 형태의 코칭사업 진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현재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자체 역량으로 모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코칭의 경우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칭이 필요한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 당 2~3회 정도 현장 방문 지도를 실시하고, 지역별 균형 지원을 위해 지방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코칭받는 횟수 또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코칭 사업은 분야별 전문가가 업체밀착형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러한 지원사업이 정착되면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및 효율적인 시장진입을 위한 노하우 제공이 가능하여 매출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2. 판로개척 지원 확대

가. 배경 및 필요성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 및 수립하였다.

[표 5-8]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정책	사업 목적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운영	전국적인 A/S망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제품의 A/S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판로확대, 자금·인력 등의 부족으로 자체 A/S망을 구축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A/S를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사업	상표개발 능력과 브랜드 전략 활용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공동상표 개발·홍보를 지원하여 마케팅 능력제고 및 판로개척 지원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여 방송 및 신문, 온라인 SNS 등의 매체에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제품 인지도 개선과 판로개척 지원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	중소기업 관련 조합 및 단체가 개최하는 구매상담회 지원과 우수 중기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대형 유통업체와의 상담회·판매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및 판로개척기회 제공
중소기업 마케팅 기반조성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CEO 및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에 대한 인식제고, 활용전략 실습 및 컨설팅, 판로 연계지원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현장중심의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중소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중소납품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및 자생력 확보 등 입체적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청기간 : 연중수시
중소기업제품	초기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 핵심 상권

판매전시관 운영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지원사업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채널을 활용, 판로가 취약한 중소기업 제품들의 판로 개척 지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판로 확대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사업	수출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정부의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 부문에 우선참여 또는 우대 지원(3년 졸업제)하여 수출 5,000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
수출금융 지원사업	담보부족 등으로 시중은행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자금을 신용위주로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23개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비예산사업)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대기업의 구매 방침 설명 및 납품 업체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신규 판로 개척 및 협력 기회 제공 신청기간 : 연5회, 사전 대기업 - 중소기업 매칭을 통해 참가업체 선정

자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중소기업 제품 비중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사용된 총 구매액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12.7%이다. 동 기간 동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16.3%이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하락률이 전체 구매액의 하락률보다 3.6%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기관의 전체 구매액도 감소하였지만 중소기업을 통해 구매하는 비중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5-9] 연도별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및 비중(공공기관)

(단위: 십억)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구매액	106,492	105,354	148,879	16,960	61,735
중소기업 합계	98,791	74,387	128,256	5,410	48,478
중소기업 제품	72,297	63,926	95,646	17,103	43,016
중소기업 물품	26,493	10,460	32,609	- 11,692 ²⁹⁾	5,461
중소기업 비중	92.8%	70.6%	86.1%	31.9%	78.5%

자료: SMPP 통계정보

공공기관의 소모성자재 구매실적 조사는 2012년에 처음 실시되어 이전 구매실적과의 시계열적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통한 소모성자재 구매량의 증감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비추어 볼 때 비슷하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 따라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우선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중소기업 판매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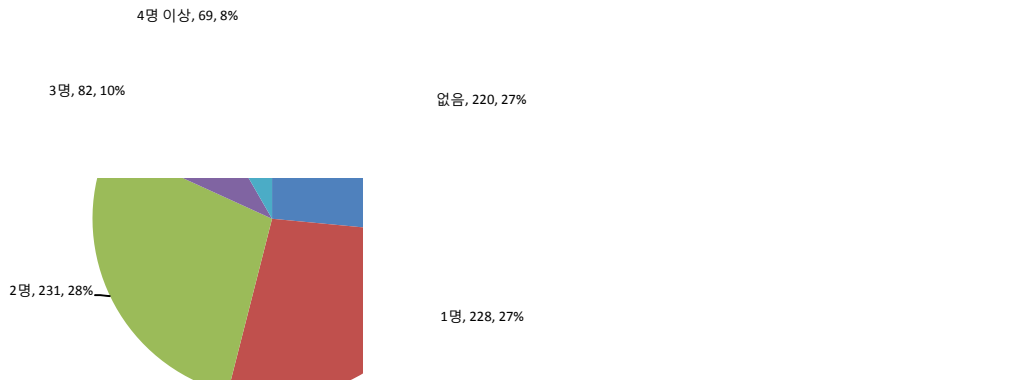
국내 중소소모성자재 납품업자의 영업현실을 보면 영업전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27%가 영업전담 인력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1명 이하 보유 업체가 전체의 54%에 달하였다. 영업 전담인력의 부족은 체계적인 고객 관리, 거래처별 판매목표관리, 신규개척 활동 등의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영업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주된 영업 활동 조차도 구매 담당자와의 수시 연락·미팅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82.4%에 달하였다. 자사만의 특별한 영업 노하우에

29) 조달청의 중소기업 물품 금액이 마이너스임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거나, 희소성이 있는 특별 상품을 취급하여 거래의 우위를 점하는 등 거래의 주도권을 확보할 만한 동인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9] 대표자 외 영업 전담인력 보유현황



정부가 여러 제도들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매출을 증대시키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 이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실제로 매출을 일으킬 영업인력의 부족, 즉 영업력의 부재에서 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나. 추진 방안

- 1) 물품 납품업체 수 확대
- 2) 수수료 인하 또는 감면
- 3) 대·중소 판로연계 사업 실시
- 4) 구매상담회 지원

2012년 말 기준 공동MRO몰의 구축이 완료되어 서울메트로,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범운영 되고 있다. 총 수주액은 39억원(납품 완료액은 17억원)이며, 주요 거래 품목은 베어링, 건축자재, 청소 잡자재 등이 있다. 공동MRO몰에 물품 납품업체로 등록된 업체 수는 총 285개이며 실제로 물품 구매사에 납품을 완료한 업체는 총 15개이다. 공동MRO몰의 구축목적에 맞도록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판매증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운영상에 보완해야 할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1) 물품 납품업체 수 확대

현재 물품 납품업체로 등록된 업체 수는 285개이다.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물품 납품업체 평균 보유 수 약 1만개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적은 편이다. 게다가 실제로 납품을 진행한 업체 수도 15개에 불과하여 중소기업 지원이란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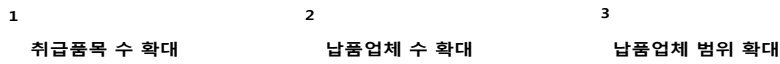
물품 납품업체 수가 적은 이유는 현재 공동MRO몰이 취급하는 품목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품 구매사 즉, 판로처가

적기 때문인데 현재 서울메트로, 인천공항공사가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기관에서 발주하는 품목이 베어링과 청소잡자재, 건축자재 등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소수의 업체만이 납품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공동MRO몰이 중소기업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제적인 매출 확대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물품 구매사를 추가로 확보하여 취급품목 수를 확대하고 실제적인 거래 업체 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거래가 가능한 공공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향후에는 공공 기관만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사를 제한하고 있는 운영 원칙을 변경하여 민간 기업까지도 물품 구매사가 될 수 있도록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림 5-10] 중소 납품업체 지원대상 확대



2) 수수료 인하 또는 감면

자재구매대행업은 거래 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수익 모델로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이며, 거래 물품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가 발생하고 업체마다 수수료 적용율이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공동MRO몰 또한 거래 수수료를 수익 모델로하여 사업을 운영

하고 있다. 공동MRO몰에서 책정한 수수료는 민간 자재구매대행업자가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보다 평균적으로 30~40% 낮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란 목적에 더 부합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 하거나 감면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수료 사업을 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 보유한 물품 구매사를 매개로 하여 물품 납품업체에 다소 불리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동일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3) 대·중소 판로연계 사업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판로연계 지원사업은 지원센터와 MOU체결 등을 통해 대기업의 사회공헌 이미지 제고효과 등을 유도하여 중소기업과 판로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MOU체결 등을 통해 판로연계가 가능해지면 우선 공동MRO몰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중 우수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Pool 담당 MD들의 정확한 실사를 거쳐 품목별/권역별 우수 납품업체 DB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지수를 제도화 하고, 포상(중소기업청장) 등을 통한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대효과로는 중소기업

업체의 대기업 납품기회 제공을 통한 판로확대 지원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도모이며, 공동MRO몰 등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구매인프라 활용을 통한 중소납품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중소납품업체의 납품기회 제공 등이 있다.

둘째, 구매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납품업체와 구매사 담당자간의 만남의 장을 확대·제공하여 중소납품업체가 대규모 자재구매 대행업자 등의 추가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바로 구매사에 상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소모성자재와 관련된 전시회 참가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납품업체 스스로가 판로개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품 구매처의 Needs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납품업체 발굴로 실질적 납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매상담회는 시범적으로 년 2회, 약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한다. 추진방법은 전시회 참가를 원하는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참가비는 소요비용의 최대 60%까지 지원하여 참가하는 업체의 책임감이나 관심도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구매상담회가 잘 정착되면 중소납품업체는 구매사의 Needs 파악이 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경쟁력 있는 제품의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3. 수출 역량 강화지원

가. 배경 및 필요성

2010년 국내 총 수출액은 2009년도 대비 28.3% 증가하였고, 총수출에서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3.0%로 2009년보다 0.7%p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호조세를 보였다. 특히, 총수출액 대비 중소기업 수출액 비율을 보면, 2007년 30.6%에서 2010년 33.0%로 중소기업 수출액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10] 중소기업 수출실적

(단위: 억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수출액 (A)	3,714.9	4,220.1	3,635.3	4,663.8
중소기업 수출액 (B)	1,135.5	1,305.2	1,173.1	1,539.4
B/A(%)	30.6	30.9	32.3	33.0

자료 : 중소기업청, 2011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사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한 결과, 수출 중소기업체수는 2007년 약 7만 2천개에서 2010년 약 8만개로 확대되었다.³⁰⁾

30) 중소기업청, 2011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표 5-11] 수출 중소기업체 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 중소기업체수	71,688	75,489	77,819	80,564

자료 : 중소기업청, 2011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그러나 중소기업과 달리 소모성자재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 활동은 매우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소모성자재 특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할 전문 인력의 부족에 있다. 소모성자재 산업이 자금과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직접 수출이 활성화된 상태는 아니다. 현재 진행된 해외 수출 사례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이전함에 따라 국산 제품을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에 따라 계열사내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가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며, 중소납품업체의 자구적 노력에 의한 수출실적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추진 방안

- 1) 해외 유명 박람회 참가지원 확대
- 2) 해외 전략지역 토탈 마케팅 지원

1) 해외 유명 박람회 참가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소모성자재의 수출을 위한 적절한 지원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선 소모성자재와 관련된 해외 유명 박람회에 국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지원이 단발적인 형태로 끝나는 경향이 있어 소모성자재 산업에 대한 수출지원 또한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 우려스럽다.

소모성자재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육성·발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통상 3~4년에 걸쳐 꾸준히 해당 전시회에 참가해야 바이어 개척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주력 수출기업들의 견해를 고려할 때 사업예산을 늘려 다양한 전시회 참가 기회를 마련하고, 한 번 선정된 업체는 최고 3년까지 지속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소모성자재 수출산업의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해외 전략지역 토탈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의 수출초기 애로사항을 보면 소모성자재 기업도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문제로 현지시장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견된다. 주요 애로사항은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 및 바이어 발굴 등의 현지화된 마케팅 활동의 부재이다. 따라서 현지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수출초기 소모성자재 수출에 적합한 타깃 국가의 선정과 시장조사,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지원까지 맞춤형 토탈 마케팅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확보된 예산, 운영 인력, 가용 시간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수출 지원 사업 초기에는 우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지원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점차 일반 납품업체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1단계로는 타깃 국가의 선정 및 진출전략 수립, 2단계는 현지 홍보를 위한 외국어 홍보 카달로그 제작, 3단계는 현지 바이어를 통한 고급정보의 획득, 4단계는 유력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수출 상담 이메일·계약서 통번역 지원을 통한 수출계약체결 등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초기 신규해외시장 거래선 확보 및 수출 역량 강화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1] 해외진출 지원 프로세스

타깃 국가선정	홍보	정보 획득	도달 지원
1차 대상 국가 선정	홍보 카달로그 제작	시장정보 획득	바이어 발굴, 상담, 계약서 작성 지원 등

타 기관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보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서울통상지원센터는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들의 바이어발굴에 도움을 주기위해 바이어 디렉토리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또한 무역상담, FTA/관세, 법률, 금융/회계 등에 관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은 우선 사전 예약제이고,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5-12] 서울통상지원센터 통상관련 상담분야 및 일정

상담분야	상담요일	상담시간	상담자
관세/무역일반	월, 화, 수, 목, 금	14:00 ~ 17:00	관세사
무역분쟁/계약	월	14:00 ~ 17:00	통상변호사
금융/세무/회계	수	14:00 ~ 17:00	세무사
무역실무	매일	09:00 ~ 18:00	통상지원센터 무역상담원

자료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홈페이지

중소납품업체 입찰참여 기회확대

1. 지역 연고 우선구매 추진

가. 배경 및 필요성

대기업 대비 경쟁력 열위로 인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위해 정부에서는 공공조달 등을 통해 매출확대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체 중에서도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한 소수의 납품업체가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어 다수의 공급자에게 납품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나라장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여성기업제품, 신기술·신제품 등을 우대하여 중소기업체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납품거래를 성사시키는 주요 요인이 가격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가격 우선이 아닌 다른 기준을 통해 다수의 공급자에게 균등한 입찰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기회 균등의 일환으로 지역연고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지역연고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업체의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시킨 성공사례를 건설관련 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주시의 경우 고유가와 건설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고충해결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건설자재 구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구건설설관리본부의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턴키공사에 공사용 자재를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해 설계에 반영된 109개 전 품목을 직접구매(관급)로 결정하여 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선 납품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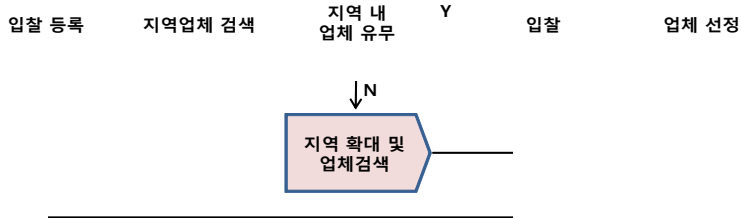
- 공주시의 2008년 2분기 지역생산 건설자재 구매실적이 82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 대구건설관리본부는 공사발주 단계에서부터 지역 중소기업체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 전체를 수의계약하여 지역 업체의 판로를 확대

하지만 지역연고 우선구매가 긍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 지역연고를 실시한 기관이 적고, 지역연고에 동참한 기관 대부분이 서울·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되어 지방 중소기업체들이 이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실제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역효과가 나타났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연고제(가칭) 추진 시 참고해야할 좋은 사례이다.

나.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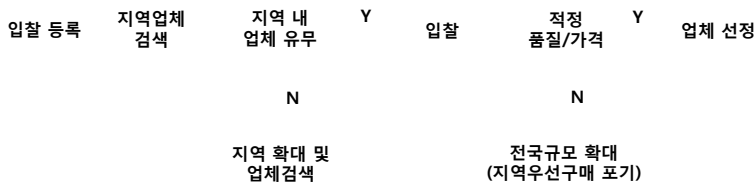
「지역연고 우선구매」란 특정 지역에서 발주된 입찰 건들에 대해 해당 지역에 소재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거점 업체에게 납품의 우선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 특정 지역에 구매입찰 건이 발생되면 공공기관에서는 지역 업체를 우선 검색하고, 적정 업체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한다. 만약 지역 내 적정 업체가 없을 경우 인근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적정업체를 선정한다.

[그림 5-12] 지역연고 우선구매 프로세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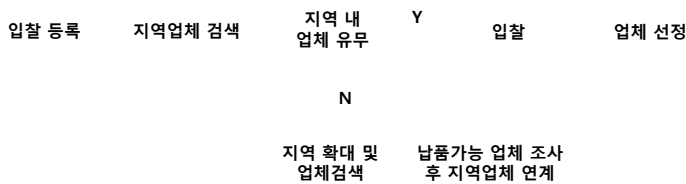
지역연고 우선구매가 제품품질, 배송능력 등 납품업체의 기본적인 납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역연고 우선구매는 전국망을 갖춘 우량 기업의 독점을 막고 입찰 공고를 낸 지역의 업체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지역 납품업체의 판로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이다. 따라서 지역연고 우선구매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납품업체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과 납품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공공기관은 품질과 가격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 원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지역 내 업체에 대한 적합유무를 판단하여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만약 인근지역에 내부규정을 충족시키는 적합업체가 없을 경우 지역연고 우선구매를 포기하고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림 5-13] 지역연고 우선구매 프로세스 2



지역 내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적정업체가 없을 경우 납품업체 선정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또다시 전국 규모의 유통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업체가 대부분의 일감을 독식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를 대비한 「타지역 업체 연계 제도(가칭)」가 필요하다. 「타지역 업체 연계 제도(가칭)」란 지역 내 적합 업체가 없을 경우 전국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납품가능한 업체를 선별하고, 이 업체가 다시 지역 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여 지역 업체가 납품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5-14] 지역연고 우선구매 프로세스 3



2. 쿼터제 시행

가. 배경 및 필요성

쿼터제는 지역연고 우선구매제도를 통해서도 발생될 수 있는 일감 집중현상을 막고, 다수의 지역 업체에게 동일한 납품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쿼터(Quarter)제는 특정 대상이나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하여 수입량이나, 수출량, 사용량 등에 할당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의 거래만을 승인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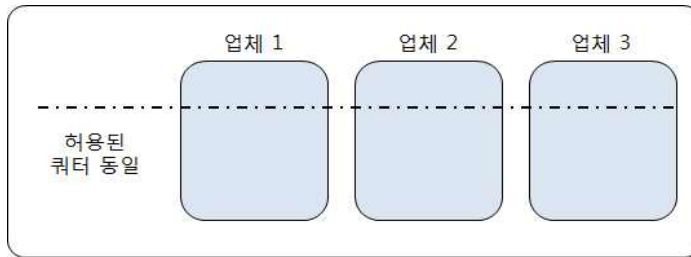
쿼터제는 앞서 설명한 지역연고 우선구매와 연계된 제도이다. 입찰 공고를 낸 기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의 특정 업체가 입찰 대부분을 독식한다면 다수의 중소 납품업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연고 우선구매 제도를 실시할 경우 쿼터제를 병행하여 특정 기업으로 거래물량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나. 추진 방안

일반적으로 쿼터제는 프랜차이즈 쿼터제, 재생에너지 쿼터제, 고졸 쿼터제, 수출·수입 쿼터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수의 쿼터제는 단순히 승인된 물량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관점에서만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중소 납품업자의 고른 균형·발전이 필요한 소모성자재산업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첫 번째 방식은 업체별로 동일한 쿼터를 주는 것이다. 운영방식은 2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첫째, 선정된 업체가 허용된 쿼터에 해당되는 물량을 다 납품할 때까지 한 업체와 거래하고, 쿼터가 차면 다른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다. 둘째, 납품건별로 납품업체를 달리하여 쿼터가 다 될 때까지 순환적 거래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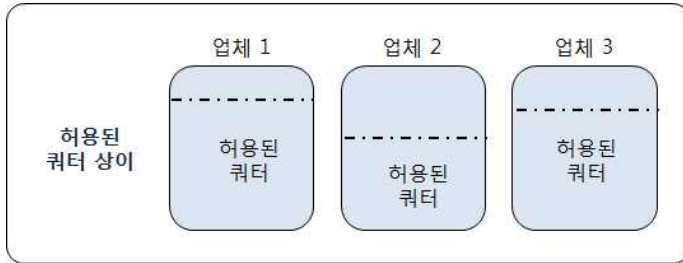
[그림 5-15] 쿼터제 운영 방식 1



- 방식 1 : 특정 업체에 허용된 쿼터가 다 될 때까지 해당업체와 거래하고, 쿼터가 다 되면 다른 업체와 거래
- 방식 2 : 건별로 업체를 달리하여 동시에 여러 업체와 거래하고, 허용된 쿼터를 초과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만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와 거래 계속

두 번째 방식은 업체별 납품능력 및 특성을 반영하여 쿼터를 달리하는 것이고, 운영방식은 첫 번째 방식과 동일하다.

[그림 5-16] 쿼터제 운영 방식 2



쿼터제를 운영할 경우 업체별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업체별 납품순서는 최대 납품 가능량, 유사품목 납품실적, 납품가격 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대 납품 가능량은 대량 발주 건에 대비한 기준이고, 유사품목 납품 실적은 제품 품귀현상 발생 시에 대비한 기준이다.

[그림 5-17] 업체 순위 평가 기준

최대 납품 가능량	50%	• 물량이 몰리거나 대량 발주 건에 미리 대비
유사품목 납품 실적	30%	• 제품 품귀현상 발생 시 대처 능력
납품 가격	20%	• 적정가격 제시 정도

납품 가격의 적용 비중이 가장 낮은 이유는 본 제도의 시행 목적 중 하나인 납품업체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쿼터제는 운영 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방식별 장점을 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조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가. 배경 및 필요성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한다. 불공정 거래행위의 예로는 사업자가 물건을 거래할 때 지역과 상대에 따라 다른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것, 자기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것,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상품을 매우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 등이 있다.

국내 소모성자재 시장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성장하였다. 따라서 납품업체는 신규거래 개발이나, 거래 계속을 위해 대기업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불공정 거래가 자행될 수 있다. 중소기업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불공정 거래 행위는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향응·접대요구 등이 있는데 주로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었다.

1)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대부분이 대기업과 같은 거대 구매사와 직·간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이러한 거래관행 사이에서 직접 거래를 시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기업 규모의 구매사와 거래하기 힘든 구조로 시장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대기업 규모의

구매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체는 대규모 자재구매 대행업자의 물품 납품업체로 전략하여 대규모 구매사에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규모 구매사와 직접 거래하던 중소기업체는 대규모 구매사가 자재구매대행업자와 거래를 시작한 이후로 자재구매대행업자의 단순 납품업체로 전략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중소기업체가 자재구매대행업자의 납품업체로 전략하게 되면 대규모 구매사와 직접거래 할 경우보다 마진이 낮아져 사업운영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2) 요구 거절이 어려운 납품업자에게 부당거래 강요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납품업체로 등록되면 거래성사의 주요 결정권이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사항을 쉽게 거부하기가 어렵다.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경우에 따른 부당한 거래강요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부 중소기업체에서는 무리한 단가 인하, 일방적 반품, 반송품 강제 보관, 추가발생비용 전가 등의 부당거래 경험을 하소연 하였다.

3)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최근 자체적인 내부규제 강화를 통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자발적인 또는 비자발적인 향응·접대는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향응·접대 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납품업체 선정이 시스템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납품업체 선정은 납품가격 뿐만 아니라 납품일 준수 정도, 정확한 물품 납품 정도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자재구매

대행업 담당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향응·접대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더욱 불미스러운 것은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내부 직원이 가족 또는 친인척의 명의로
 납품업체를 차려놓고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납품업체와 내부 직원의 철저한 보안 하에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나. 추진 방안

민간영역에 대한 제재는 공공기관과 달리 여론과 기업의 반발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게다가 불공정 거래 행위가
 공개되면 기업 이미지에 해가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한 불공정 거래행위 대부분이
 약자인 중소기업과 연결되어 있어 내부단속으로 적발 또한
 쉽지 않다. 지금과 같이 소모성자재 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강력한 반발을 유발할 수 있어 민간
 기업 스스로 자구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기업에서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자체 징벌을 강화하고 있다. K사의 경우 윤리경영 사이버감사팀을
 두어 자체적인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되면 피해를 본 납품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게 된다. 이후 K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함과
 동시에 접수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보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림 5-18] K사 불공정 거래 상담 및 제보 시스템

자료: K사 홈페이지

제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고한 업체의 정보 노출에 따라 향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이다. 따라서 K그룹에서는 이러한 불안감을 원천 차단하고 제보율을 높이기 위해 제보자 보호 원칙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제보자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제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제시증거 및 관련정보 등을 사전에 막는 것이다.

또한 연간 운영되는 필수 교육과정에 윤리경영 과목을 두어 전 직원의 필수 수강과목으로 선정하고,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여 기준 점수에 미달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림 5-19] K사 제보자 보호 원칙

자료: K사 홈페이지

L사의 경우에도 K사와 마찬가지로 납품업체가 부당 거래를 신고 할 수 있는 사이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림 5-20] L사 불공정 거래 상담 및 제보 시스템

자료: L사 홈페이지

정부에서 자재구매대행업과 같이 소모성자재 납품대행 지원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민간기업의 사전 예방 활동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소모성자재 산업 인프라 발전 전략

1.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발전 방안

가. 배경 및 필요성

소모성자재 납품업자 지원을 위한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베어링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2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2012년 1월부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는 실태조사, MRO교육 외에도 컨설팅, 상담 및 각종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연혁]

- 2012년 5월 '12년도 제1차 MRO 교육
- 2012년 3월 소모성자재 실태조사 착수
- 2012년 1월 종합지원센터 업무개시
- 2011년 12월 '12년도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준비
- 2011년 10월 MRO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2차 간담회 진행
- 2011년 7월 MRO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1차 간담회 진행

하지만 소모성자재 산업의 실제적이며,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모성자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앞서 소모성자재에 대해 정확한 범주를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소모성자재에 대한 개념은 최근 정립된 개념이며,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계속 확대·재해석 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책연구 및 관련산업 정보제공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는 전 세계 유일의 소모성자재 지원기관이기 때문이다. 국내외 산업 관계자에게 소모성자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원화된 창구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인식하고 있는 기관이나 중소기업체가 매우 적었다. 중소기업체와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려면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접속률을 제고하고 향후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지지층들을 미리 확보해야 할 것이다.

나. 추진 방안

1) 소모성자재 산업에 대한 정의 체계화

본 조사에서도 소모성자재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모성자재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였다. 기존 연구문헌과 소모성자재 산업의 성장을 이끈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들이 사용하는 분류체계를 조사·분석하여 17개 카테고리를 새롭게 도출하였고, 각 카테고리별 대표품목까지 정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소모성자재에 대한 범주를 명확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특정 분야,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소모성자재의 정의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태조사를 거듭할수록 소모성자재에 대한 정의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범주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2) 소모성자재 산업에 대한 정책연구 강화

소모성자재 관련업체를 위한 보호·육성 정책까지 마련하여 소모성자재 산업을 키우기 위해 담당기관까지 보유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소모성자재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 제정된 소모성자재 관련법은 산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 전, 즉 소모성자재 산업 실태조사가 이뤄지기 전의 상황을 기반으로 제정된 법이다. 수립된 정책은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이며, 중소납품업체를 단순히 지원 대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는 소모성자재 산업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뿐만 아니라 분석된 정보를 어떻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에 전달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소모성자재 산업 이슈를 주간 또는 월간 리포트 형식으로 발행하여 중요한 정보들이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내에 DB로 축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해당 리포트를 소모성자재 산업에 종사하는 각 업체에 배포하여 시장정보를 공유하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소모성자재 정보 지원 강화

공공기관 입찰현황 정보 분석 및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업체 입찰참여 및 수주력을 강화하고, MRO관련 정보 간행물 발행 및 홈페이지, 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한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중소기업업체의 시장현황 분석능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추진 방법으로는 전담인력 배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입찰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 입찰정보 시스템과 DB를 연계하는 사업도 계획하여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주로, 나라장터 입찰정보 분석(예상 낙찰가, 제안서 작성방향 등)과 그 외 입찰관련 사이트 검색, 자료수집 등을 통한 입찰 관련 정보 수집이 될 것이다. 정부의 구매입찰 정보를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입수함으로써 중소기업업체의 입찰참여가 활성화되고, 입찰분석 자료 제공을 통해 효율적 견적 산출 및 낙찰 성공률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4) 정부지원 정책 통합 정보제공 역할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마다 상이한 요구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지원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시기를 중소기업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각 기관별 사이트와 해당 정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숙지하지 않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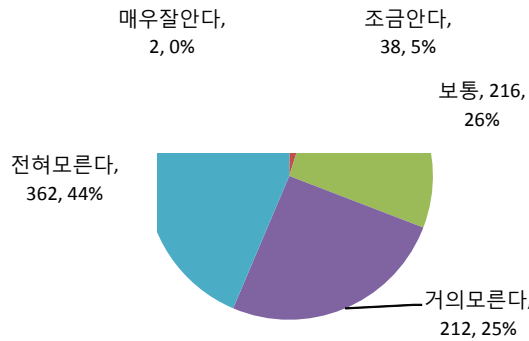
따라서 소모성자재 산업 지원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각 지원사업 유형별로 지원기관, 지원사업 담당자명, 전화번호, 지원기간, 구비서류, 절차 등이 있다. 특히 소모성자재 관련 정보는 타 지원사업에 비해 검색이 쉽지 않고,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모성자재 기업 지원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및 지원사업 홍보

실태조사 결과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인지하고 있는 업체는 약 5%정도(보통이라고 응답한 답변 제외 시)에 불과하였고, 인지하지 못하는 업체가 70%가량이나 되었다. 인지도가 낮은 이유로는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가 발족한지 1년이 채 안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가 국내 소모성자재 산업 대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자체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브로셔 제작으로 MRO관련 기관 및 업체(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사업 참여모집 및 일정, 지원사업 소개 등을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중소기업의 지원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점 추진 방향이 될 것이다. 브로셔 주요 내용은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주요지원사업 내용, 참여방법, 사업일정 등을 소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구매 기관 및 중소기업 대상 브로셔 배포를 통해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주요 지원사업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5-21]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인지도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모르는 업체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소모성자재 산업단지 인근 지역을 기점으로 현수막, 배너 등을 이용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6) 상담 서비스 강화

중소납품업체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규모 자재구매 대행업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납품업체 현장 기동서비스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현장방문 조사 및 애로상담을 통한 One-stop(원-스탑)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법률지원 및 자문위원 Pool구성 등을 통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개별 중소기업체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상담 요청 또는 내방 업체 외에도 현장방문 등의 밀착 상담형 지원사업 개발을 통해 맞춤형 애로상담의 지원이 필요하다. 상담사 지원시스템을 통한 상담 역량강화와 심도 있는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소모성자재 통합 구매·관리 시스템 운영

가. 배경 및 필요성

국가에서 재정관리를 위해 직접 개발한 시스템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e호조 시스템과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디브레인 시스템이 있다. e호조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 즉, 예산의 편성, 집행, 이에 대한 성과측정을 목적으로 구축된 국가 시스템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모성자재를 포함한 기관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디브레인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이름이며, e호조와 같이 예산편성, 집행, 회계결산, 성과관리 등 재정활동 전 과정이 수행되고, 그 결과 생성된 정보가 관리되는 국가기관용 재정정보 시스템이다. 주요 특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집행, 자금관리, 국유재산·물품관리, 채권·채무, 회계결산까지 모두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들은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된 것으로 구매와 관련된 기능이나 구매관리의 편리성 등이 강화된 시스템은 아니다. 구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구매실적을 집계하거나 관리를 위한 기능이 적어 이용이 불편하다. 예로 실태조사를 위해 요청한 소모성자재 구매실적이 시스템으로 일괄집계가 안되어 구매 담당자들이 관련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여 수기로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문제는 사람이 직접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SMPP에 등록된 2011년 구매실적과 실태조사 구매실적에 차이가 있는 일부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검증작업을 실시 한 결과 응답기관에서 단위를 잘못 기재하였다거나, 조사 범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오류를 범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또 다른 이유는 공공시장의 유통흐름에 대한 정보제공의 목적에 있다. 민간 시장의 경우 어떤 납품업체가 어떤 구매사에 어떤 물건을 얼마의 가격에 납품하였는가에 대한 정보파악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구매에 대한 내용이 기업 비밀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다르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모성자재에 대한 세부 납품정보를 공개하여 관련 업체들이 필요에 따라 해당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 추진 방안

첫째, 구매 담당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상위 기관으로부터 요구되는 각종 통계자료 집계 시 상당수의 작업이 수기로 기록된 데이터에 의존하게 되어 집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집계의 정확성도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 2년에 한 번씩,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5대의무구매품목 구매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집계할 때 마다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된 소모성자재 구매실적은 구매 담당자의 소모성자재에 대한 개념 부족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던 연유로 조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따라서 제품 등록 페이지에는 해당 제품이 5대 의무구매품목인지, 소모성자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색인어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5-22] 판매제품 등록 페이지(예)

판매제품 등록 페이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제조사	규격	색인어
사무용품 ▾	필기류 ▾	볼펜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중증장애인제품, 소모성자재

둘째, 공공기관 거래정보 공개이다. 이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다수의 중소 납품업체가 유통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불충분한 영업력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공공시장을 개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거래정보 공개를 통해 예측 가능한 기대효과는 소모성 자재 업체 간의 유통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기관에 납품하고 싶었으나 각종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납품이 어려웠던 업체가 기존 납품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납품이 가능해지고, 특정 제품의 판로를 찾던 제조사 또한 특정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납품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공개될 정보는 어떤 공공기관이 어떠한 품목을, 어느 유통업체를 통해, 얼마만큼, 얼마에 구매했는가 이다. 이 정보들의 공개 및 활용을 통해 중소납품업체들은 공공기관과의 거래에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5-23] 공공기관 구매현황 정보 검색(예)

구매현황

공공기관명

구매품목



구매업체	구매수량	구매단가
A유통	10박스(12EA)	1,000(EA)
B유통	30박스(12EA)	950(EA)
C유통	50개	950(EA)

매당 기관 구매현황 전체 보기



거래 업체 상세정보 보기



3. 소모성자재 공제조합 설립

가. 배경 및 필요성

소모성자재 관련업체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중소소모성자재 관련업체들의 경우 담보력이 취약하여 기존의 금융제도 하에서는 자금이나 보증이용 시 어려움이 많아 사업규모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모성자재 관련업체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모성자재 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시행하는 제도적인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나. 공제조합 설립 사례

1)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1988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어 각종 건설 보증과 자금의 융자, 어음할인, 공제상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임대·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전문 금융기관이며,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요사업 >

- 보증업무 :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이 각종 보증을 통해 그 의무 또는 채무의 이행을 부담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손해배상보증, 지급보증)
- 용자업무 : 조합원의 출자금과 조합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합원이 도급 받은 공사의 원만한 시공과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
(운영자금, 시공자금, 어음할인 등)
- 근재업무 : 조합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불의의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민법상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보다 5%~10% 저렴하며, 사고 발생시 조합에서 보상업무를 지원
- 신용평가업무 : 조합원 연대보증 없이 조합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 자기신용에 의하여 조합과의 보증/용자업무거래를 하는 제도로서 신용사회 정착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교육사업 : 우수 건설기능인력 양성, 건설분야 기술력 향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되어 교육 후 노동부로부터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임대사업 : 대규모 행사, 국제 회의, 각종 리셉션, 이벤트 등 장소 임대 지원

[그림 5-24]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 흐름도



자료 : 전문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2) 소방산업공제조합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여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2008년 12월 소방산업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마련(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소방산업공제조합 주요사업 >

- 조합원이 소방사업 또는 기타사업 등을 영위함에 필요한 각종 보증(계약보증 등 13종)
- 조합원의 사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조합원이 사업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실 및 사업 수행상 발생한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공제 사업
- 사업경영 및 신기술의 개선 관련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 소방산업관련 법인에의 출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방산업진흥에관한법령,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 기타 조합원에 대한 각종 교육, 연수등의 지원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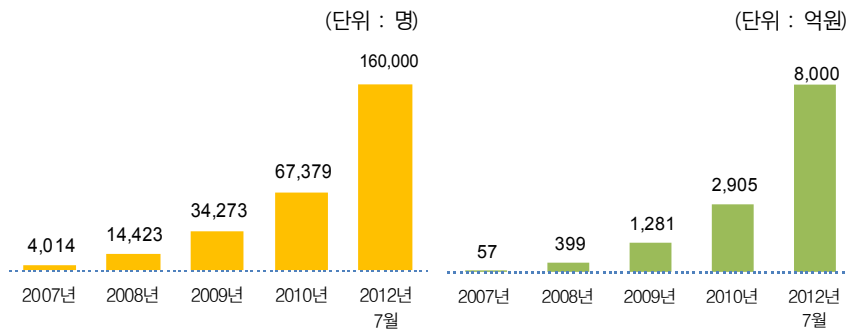
3) 노란우산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2006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2년 7월 25일 정보통신공제조합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를 보면 2007년 9월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그해 가입자 4,014명에서 2008년 1만4,423명, 2009년 3만4,273명, 2010년 6만7,379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12년 7월 20일 기준으로 공제가입자 수는 16만명, 공제부금액은 8,000억원을 돌파하며,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안정된 미래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되는 추세이다.

[그림 5-25]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추이 및 운용자산 현황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내일신문, 2011.8.24., 서울파이낸스, 2012..25

< 노란우산공제회 주요특징 >

- 법령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무료 상해보험 가입

다. 추진방안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국내외 공제조합 관련 사례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운영 유형, 공제상품개발, 적정사업 규모 등 공제조합 기능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제조합사업은 주무부서 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MRO공제조합(가칭)의 주요사업은 제품개발과 기술향상,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소모성자재 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등으로 한다.

공제조합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예탁금 또는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정부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제조합 회원 증대를 위해서는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제사업의 목적, 특징 등을 홍보하고 필요서류와 함께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MRO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은 영세한 국내 소모성자재 업체에 있어 자금 조달이 확대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별첨 자료

제1장. 동반성장위원회 조사결과(MRO가이드라인 이행여부)

1. 추진 목적
2. 추진 경과
3. 항목별 조사 결과
4. 향후 조치 계획

제2장. 관련 법률 소개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6. 서울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장. 독일 조달입찰법에 관한 규정

1. 경쟁입찰제한에 관한 법률(GWB)
2. 일반재(상품)의 위탁과 계약 규정

동반성장위원회 조사결과 (MRO가이드라인 이행여부 실태조사 결과)

1. 추진 목적

- ‘MRO실무위원회 구성·운영’ 후 MRO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는, MRO대기업이 중소기업체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여 갈등이 증폭되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MRO문제의 사회적 합의·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MRO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의결하였다.(11.7.7)

< MRO 가이드 라인 공표(11. 11. 4) >

- 대기업의 신규영업 범위 제한, 중소기업 생존권 확보방안, 공정거래 질서유지 준수
- 국내 MRO시장 보호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불공정행위 처리에 관한 사항 등

〈MRO가이드라인 대기업의 신규영업 범위 제한〉

기준(내부 거래비중)	MRO대기업 사업범위
30%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계열사+매출규모 3,000억 이상 중견기업
30%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계열사+매출규모 1,500억 이상 중견기업

- 제한된 업종을 영위하고 품질 및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1차 협력사 포함
-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이외 대기업 포함

- MRO가이드라인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매년 1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토록 하였다. (MRO가이드라인 제3장 1절 ③항에 의거 실시)

〈사후관리 이행 및 조치사항〉

1.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 ③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년 11월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 매년 12월에 보고한다.
- ④ 동반성장위원회는 보고된 이행실태 결과를 공표하고 필요 시 관련부처에 협조를 구한다.

2. 추진 경과

- MRO대기업 10개사* 및 MRO관련** 중소기업사를 대상으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 대상 >

- MRO대기업(10) : 서브원(LG), 엔투비(포스코), 힘스B&S(현대중공업), 웅진홀딩스(웅진), 포스텍MRO(STX), KeP(코오롱), KT커머스(KT), DK유엔씨(동국제강), 동양네트웍스(동양), 행복나래(SK)
- 관련 협단체(24) : 가구, 건설, 측측, 공구, 금속, 기계, 도로, 문구, 생활용품, 소방, SW, 수지, 안전, 약품, 연료, 영상, 위생, 의료, 자동제어, 전자, 철강, 컴퓨터, 포장, 화학

- 조사기간 : 2012. 11. 05 ~ 12. 5 (30일간)

-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총괄표

점검 내용	점검 세부내용	비고
사업 활동 및 범위	1. 대기업의 영업범위 준수여부 - 30%이상 : 매출 3,000억 이상 - 30%이하 : 매출 1,500억 이상 - 사회적기업 : 매출 1,500억 이상	대상: 대기업 서브원(LG) 외 영업범위를 모두 준수
	2. 제조사 직접구매(시중품) 비중 30%이하 유지	대상: 대기업 제조사 구분이 가능한 4개는 준수, 6개는 추가 조사 필요
	3. 신규공급사 영입 시 계약만료까지 50%보장	대상: 대기업 물량보장 잘 준수

	4. 중소기업인의 품질 및 서비스 제공노력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물품 A/S지원
공정거래 질서 유지	1. 공정거래 준수여부	대상: 대기업 대기업은 이행 노력, 중소기업 체감도는 미흡
	2. 중소기업 자발적 감시활동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인 간 감시체계가 없으나, 협단체 중심의 상호 공조체계는 있음
	3. 중소기업인간 불공정행위 여부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사 간 출혈 경쟁
동반 성장 노력	1. 국내 MRO시장의 보호 노력	대상: 대기업 해외부품 국산화 추진 글로벌MRO사 대응 노력
	2. PB 등 저가제품 유통 자제노력	대상: 대기업 추가조사 필요
	3. 해외진출 지원 및 동반진출 노력	대상: 대기업 대부분 해외진출 및 해외 동반진출 지원
	4. 자금지원 및 판로개척 노력	대상: 대기업 협력사 자금지원, 판로개척 등 추진
	5.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노력	대상: 대기업 엔투비 외 없음

- 서브원(LG)은 사업영역범위 제한을 위반하였으나, 그 외 사항은 준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12년 매출규모 2조 8470억으로 시장점유율 1위인 서브원은 MRO가이드라인 영업범위 제한에 대해 유일하게 위반
 - 내부거래 비중이 44.8%('12년)로 3,000억 이상 중견기업까지 영업범위가 제한되나, 이를 위반하고, 3,000억 이하 중견 및 중소기업과 약 110억 규모가 거래 중

-
- 계약만료까지 50%물량보장, 국내 MRO보호, 해외진출 지원, 자금 및 판로지원은 MRO대기업이 잘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기업은 공정거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의 거래관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은 미흡
 - 일방적 마진비율 책정, 물류비용 전가, 관계사 물류기업 이용 권유 등
 - * 대기업 대부분이 공정거래 및 윤리경영 방침 준수
 -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은 엔투비(포스코) 이외에 전무
 - 중소기업의 품질 및 서비스 제공노력은 잘 준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준수와 자발적 감시활동은 미흡
 - * 납품물품에 대한 A/S를 최종 고객사까지 지원 중
 - * 협단체 중심으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발적 감시활동을 위한 협의체는 미 구성

3. 항목별 조사 결과

- MRO대기업 영업범위는 서브원을 제외한 대부분 MRO사가 영업 범위 제한을 준수하고 있었다.
 - 서브원(LG)은 LG그룹 계열사의 1차 협력사와 거래 중으로 영업범위 제한을 위반
 - * 내부거래 비중이 44.8%('12년)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까지 영업범위가 제한되나,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과 여전히 거래 중인 것으로 조사
(거래물량 112억, 총 매출대비 0.4%)
 - 동양네트웍스는 골재 등 대부분 비 MRO품목으로 조사
 - * 내부거래 비중이 59.4%로 3,000억원 이하의 거래물량이 94억원으로 조사
 - 행복나래(SK), KT커머스(KT)는 거래만료시 까지만 거래 예정
 - * MRO가이드라인 발표('11.1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거래만료 시까지 유지토록 함
 - 엔투비(포스코)는 특수분야*로 1,500억원 이상 거래물량은 1차 협력사
 - * 영업범위 제한 예외사항으로 특수분야는 1차 협력사 (중소기업 포함)까지 거래가능
- 공공부문은 법개정으로 MRO대기업이 완전히 배제되었으나, 현재 공공부문에서 MRO공급 대체 시까지는 일부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 서브원(LG)과 아이마켓코리아(구 삼성)는 판로지원법 개정 ('11)이후 완전히 배제
 - 공공부문에서 물품의 원활히 공급할 수 있거나 가격 등 적격 대상 대체기업 부족

-
- 중소기업인의 품질 및 서비스 제공노력
 - 중소기업사가 납품한 물품은 최종 고객까지 A/S지원
 - 고객서비스 책임은 MRO대기업에 있으나, 중소기업에 무상 A/S를 요구

 - 공정거래 준수여부
 - 대기업별 공정거래 및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교육 및 단가 조정 실시 등 공정거래부문은 대부분 잘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납품단가 조정은 대부분 단가조정 필요 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
 - * 모든 발주는 기본적으로 전산시스템에서 이루어져 구두 발주가 불가
 - * 행복나래, 서브윈, KeP, 힘스B&S는 현금결제 및 결제기간을 단축
 - 그러나, 중소기업(공급사)이 MRO대기업의 공정거래 준수에 대한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거래관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 중소기업의 47.8%가 MRO대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하지 않는다고 응답. 2년 중소기업사 설문조사 결과(동반위) : 준수 4.3%, 보통 39.1%, 미 준수 47.8%
 - * '12년 중소기업사 현장간담회 결과(동반위), MRO대기업의 일방적 마진비율 책정, 최저이익을 확보불가, MRO사의 물류비용 전가, 관계사 물류기업 이용 권유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
-

-
-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시활동
 - 중소기업인간 공정거래 개선노력, 기술혁신 및 서비스품질개선 등 자발적 감시활동 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음
 - 다만 MRO관련 협·단체(베어링, 기계·공구, 문구 등)간 공조체제를 유지 중

 - 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개선
 - 중소기업인 간 저가납품 및 입찰, 경쟁사 가격정보 제공 등 여전히 불공정행위 사례가 많이 발생
 - 중소기업인 간 공정거래 개선 노력은 미흡한 수준

 - 국내 MRO시장의 보호노력
 - 6개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MRO기업*의 견제 및 국내 MRO시장의 보호노력을 잘 준수
 - * 그레인저(美), FAST(美), 오피스디포(美), Sonepar(프랑스), 모노타로(日), WESCO(英)
 - 웅진홀딩스는 수입제품을 국내 중소기업 제품으로 대체
 - 서브윈은 글로벌 MRO기업의 국내 진입장벽 강화를 위해 대규모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FTA에 대응)
 - Kep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KePmro팀을 해체하여 사업철수
 - 엔투비는 글로벌소싱보다는 국내 중소기업사를 통한 수급을 우선
 - 힘스B&S는 내부시장 보호를 위해 현대중공업 그룹 3사만 영업

〈MRO대기업의 국내 MRO시장보호 노력현황('12년 기준)〉

번호	구분	내수시장 보호노력
1	웅진홀딩스	· 국외 원산지 제품을 국내 중소제조 품목으로 대체소싱(예 : 단열제) · 중국 저가 LED조명램프 대체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제휴하여 판로지원
2	LG서브윈	· 내수시장 보호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PB상품을 유통하지 않음 · 글로벌 MRO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물류네트워크를 구축(FTA 대응)
3	코오롱KeP	· 중소기업으로 영업을 했던 KePmro팀을 해체하고 사업을 철수
4	엔투비	· 글로벌 소싱 요구가 높으나, 사업초기부터 국내 유통사를 중심으로 수급 · 수입 자재 중 국내 제작이 가능한 제품은 협력사와 협력하여 국산화 전환
5	포스텍MRO	· 유통단기 공급업체를 통한 제품정보를 수집·수용하고, 그 정보를 활용
6	힘스B&S	· 내수시장 보호를 위해 현대중공업 그룹3사만을 영업

■ PB 등 저가제품 유통 자제노력

- 대부분의 MRO대기업이 PB제품의 저가유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OEM방식으로 PB상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제보됨에 따라 추가조사 실시 필요
- * '12년 중소유통사 현장간담회 결과(동반위), 대기업브랜드를 활용한 PB상품 유통 제보

■ 해외진출 지원 및 동반진출 노력

- MRO대기업 7개사를 중심으로 해외 판로개척 및 해외동반진출 노력은 잘 준수

- * 서브윈이 해외진출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 전개 : 중국, 멕시코 등 6개국에 총 507개 국내 협력사의 해외진출을 추진
- * Kep는 인도에 국내 중소기업과 동반진출하여 판로개척을 추진
- * 엔투비는 포스코 패밀리사의 해외공장 소요자재를 국내 중소기업에서 구매하여 수출('11년 4.8억, '12년 40억 전망)
- * 포스텍MRO는 국내 공기구, 호스류 관련 협력사의 중국 법인설립을 지원
- * 행복나래, KT커머스, 힘스B&S는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

■ 자금지원 및 판로개척 노력

- 대부분의 MRO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 중이며, 4개 기업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잘 준수

- * 서브윈은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여 협력사 자금지원 (총 390억지원)
- * 행복나래는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판로개척에 노력
- * Kep는 건설현장에 필요한 MRO자재 납품을 알선
- * 엔투비는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매자금을 지원
- * KT커머스는 품질검사 비용지원과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노력

〈MRO대기업의 자금지원 및 판로개척 노력현황('12년기준)〉

번호	구분	내수시장 보호노력
1	행복나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피드몰에 사회적기업(SE)제품의 등록과 판로 지원을 진행 ·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안정화를 위해 현금 결제 및 선 결제 실시
2	서브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성장 펀드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지원(193개 대상 협력사 중 23개사가 총 390억원 사용('12. 9)
3	K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MRO라는 모델을 운영하면서 전국 80여개의 네트워크 협력사(중소상공 중심)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건설현장에 필요한 MR자재를 납품하도록 연결
4	엔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 계약서만으로 중소기업에 구매자금 대출 ('10년 356억, '11년 238억, '12년 9월 73억) · 중소기업중앙회 협력 유비노바 운영: 중소기업 구매자금 지원 및 통합구매 · 코업비즈 운영 : 중소기업 환리스크 해소 및 원가절감 지원
5	KT커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7월 네트워크론 우대금리 제공을 위해 kt capital과 협약을 체결 · '12. 8월부터 계측기 임대비용, 공인인증기관 시험비등 품질검사비 지원을 시행 · '11. 10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판로개척 지원 · '12. 9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찾아가는 구매상담회」를 동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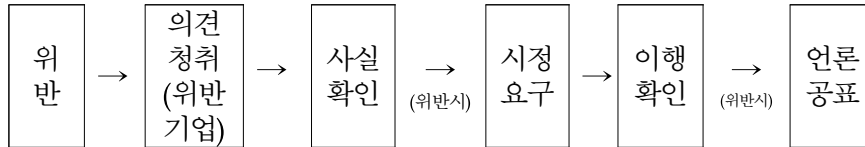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노력

- 엔투비를 제외한 나머지 MRO대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

* 엔투비는 지역공급사를 우선 활용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타 MRO대기업*은 지역별 협력사 간담회 실시 수준

4. 향후 조치 계획

- 위반 및 추가조사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절차 추진
 - (위반)영업범위 제한 준수를 위반한 서브원(LG)에 후속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절차 추진



- (추가조사) 제조사 직거래 현황 및 PB 등 저가제품 유통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 이행시 시정조치 절차 추진
- 가이드라인 준수가 미흡한 항목의 상호 노력사항 권고
 - (대기업) 중소기업사와의 거래관계 개선*과 PB 등 저가제품 유통 자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대한 적극적 노력 필요
 - * 일방적 마진비율 책정, 최저이익을 확보불가, 물류비용 전가, 관계사 물류기업 이용 권유 등이 개선사항으로 지적
 - (중소유통) 중소기업인 간 저가납품 및 저가수주 등 출혈경쟁으로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 공정거래 환경조성 노력과 자발적 감시체계 구성을 권고

관련 법률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모성 자재”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

-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제4조(구매 증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6.1>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1.3.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3.30.> [제목개정 2011.3.30]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격”이라 한다)은 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3.30>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조합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참여자격의 확인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1.3.30>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3.30>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가. 대기업(분할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유지 또는 공공조달시장의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분할 등을 하였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중소기업
2.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조사를 거부한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이 제1항 제1호나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경우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정 여부의 결정에 관하여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 2013.1.1]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 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1.3.30>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위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3.30>

1.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⑦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절차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3.30>

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문서 또는 전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2.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제9조 제2항에 따른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5. 제9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④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그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개정 2011.3.30>

1.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1년
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6개월
3.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4.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3개월 이내

⑥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방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필요한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⑧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3.30.>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②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신설 2009.12.30.>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9.12.30, 2011.3.30.> [제목개정 2009.12.30]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품의 성능 차별성 검증에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성능인증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제품의 생산 조건이나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⑦ 중소기업청장이나 시험연구원은 성능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⑧ 성능인증의 절차, 성능인증 기준, 시험연구원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능인증업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 제8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6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제15조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성능인증업체나 시험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문서로 내도록 할 수 있다.

④ 성능인증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 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 및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1.3.30>

1.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제15조 제3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4. 인증서의 분실·훼손 등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성능보험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구매 때문에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자(이하 “성능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연구원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9조에 따라 정부가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제19조(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제15조 제6항에 따라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으로부터 공장에 대한 심사 또는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절차,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3.30>

제20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결과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원가계산 결과를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구매 효율성의 제고 및 이행력 확보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발주계획 및 구매실적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제5조 제2항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⑥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제5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9.12.30>

제22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을 제조·수리·시공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인도(이하 이 조에서 “납품”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원사업자”라 한다)가 납품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3.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제23조(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 ①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요구한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품질보장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공공기관과의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중소기업청장이나 조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합이 조합원의 원자재 확보,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자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 중소기업자의 제품의 생산·제공능력 및 계약실적 등에 대한 정보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발주 및 입찰과 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 및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자체 보유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지원 계획의 수립·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계획 중 지원사업의 내용, 일정 등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연계생산지원사업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생산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관한 수주·발주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생산과 판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판매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상표를 도입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상표 개발 비용
2.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과 그 운영자금
3. 공동상표 제품의 품질 향상 및 디자인 개발
4.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판매와 수출
5.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 활동 강화에 필요한 사항

제29조(물류현대화사업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 및 원자재·부자재에 대한 유통시설을 조성, 설치 또는 개선하는 사업과 이에 딸린 사업 등 물류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현대화사업의 지원내용은 자금지원, 지도·연수 및 정보제공 등으로 한다.

제30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자 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2. 수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 수출이 유망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이 높은 품목 중 수출이 유망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6조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나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나 품목의 지정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공표)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동향을 분석·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세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6.1]

제5장의2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지원<신설 2011.7.25>

제31조의2(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의 장은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때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1조의3(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상담 및 그 밖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판매회사 내에 설치한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 제조업체 또는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하는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소모성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5]

제31조의4(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소모성 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소모성 자재 납품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6장 보칙

제3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사업 추진과 관련되어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사업추진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개정 2011.3.30>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중소기업자로 본다.<신설 2011.3.30>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8조 제2항,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③ 중소기업청장이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6.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2.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② 제15조 제5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 제3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9685호, 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중전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법에 따른다.

제4조(품질인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은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법률 제9581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⑥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⑦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⑧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8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의 기금 등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⑫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 제2항 제1호 및 제44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8조 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제5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으로 한다.

<18> 이터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3항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으로 한다.

<2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제우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15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2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로 한다.

<3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로 한다.

<32> 법률 제942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다.

<3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로 한다.

<3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로 한다.

<3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로 한다.

<3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로 한다.

<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894호, 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28호, 2010.4.5> (무역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504호, 2011.3.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951호, 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462호, 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② 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15, 2010.7.12, 2010.12.31, 2011.6.27>

1.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 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국토해양부의 장관

-
- 나. 국무총리실·법제처 및 국가보훈처의 장
 - 다.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검찰청·병무청·방위사업청·경찰청·소방방재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기상청·해양경찰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장
 - 라.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 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 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
 -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 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사.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內資)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의뢰한 계약과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되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2. 물품별·공사별·용역별 구매목표액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 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목표액
4.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6.27>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이 처음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전년도 공사의 구매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제품의 제품별 직접 구매실적

제5조의2(구매실적의 제출요구)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
2.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4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27]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에는 제4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해당 제품의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의 지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쟁제품을 따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의 지정 제의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외 사유와 제외 필요성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에 대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 가능성
2. 해당 제품 관련 중소기업자의 육성 필요성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공고된 경쟁제품은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 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추천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재공고 입찰을 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말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경쟁입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4.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제품의 납품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수급체를 말한다.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것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의 확인을 받은 기업일 것

⑤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공동 수주(受注)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법 제7조 제4항 후단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의 확인 등 경쟁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신청을 받아 5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또는 4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수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 추천을 하는 조합,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추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연간 계약한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간 추천한도, 추천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②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해당 조합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2개 이상의 조합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제품을 따로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1. 해당 조합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으로서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3.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있을 것
5. 그 밖에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기준 등 경쟁입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신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의 최저한도는 발주기관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6.27>

제9조의2(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① 법 제8조 제3항 제4호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이하 “적격조합”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속 조합원(이하 “소속 조합원”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소속 조합원이 하도급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적격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속 조합원을 포함시킨 사실이 적발된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법 제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6.27]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7.2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0.7.21, 2011.6.27>

-
1. 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④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 설비 및 장비
2. 최소 공장 면적
3. 최소 필요 인원
4. 필수 자격
5.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 법 제1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 가.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나.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 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대상 품목(규격을 포함한다),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등 우선구매조치를 한 내용을, 우선구매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6.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4조 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
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제14조(인증비용의 징수) ① 중소기업청장이나 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이 법 제15조 제7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심사원(審査員)의 인건비 및 출장비
2. 제품에 대한 검사를 위한 시험이나 성능 검사 등에 드는 비용
3. 제품의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이 명시된 인증규격서 작성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①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담보대상으로 한다.

②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는 담보대상제품의 가액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
2. 그 밖에 손해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③ 삭제 <2011.6.27>
[제목개정 2011.6.27.]

제16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시험연구원으로부터 성능인증에 필요한 제품 검사 또는 공장 심사를 받은 후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성능검사의 결과가 명시된 성능검사성적서 등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려면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과제와 내용
2. 사업 수행 책임자
3.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사업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⑥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에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에 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구매정보망을 활용하여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에 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신청은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원가계산에 든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원가계산 결과와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원가계산에 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가계산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구매 효율성 및 이행력 확보

제18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증대 계획의 적절성 검토
2.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검토
3.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조사
4.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조치의 이행 여부 조사
5.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쟁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
6. 그 밖에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상담 등 필요한 업무의 수행

②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지원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2.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또는 감사 업무 관련자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사람

③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 및 입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지정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물품의 제조나 수리의 경우: 3억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50억원

제20조(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25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자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2.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를 위한 정보
3. 계약 당시 중소기업자의 신용 상태 확인을 위한 정보
4. 제품 품질의 신뢰도 확인을 위한 정보
5.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의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정보
6. 공공기관의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7. 조합 추천 수의계약에 관한 정보
8. 성능인증 및 원가계산의 지원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가 구매정보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정보·자료를 검사하여 거짓인 정보나 자료(이하 “거짓정보”라 한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구매정보망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고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공개하고 그 정보를 구매정보망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해명이나 소명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제21조(판로 지원기관 등)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0.6.28>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유통센터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12.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22조(연계생산지원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실시한다.

1. 중소기업자의 수주·발주에 관한 거래 알선
2. 제1호의 거래 알선을 위한 관련 업체에 관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 개발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동상표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무도장(舞蹈場), 골프장, 스키장, 주점(酒店), 욕탕(浴湯) 또는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업종
2.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③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대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상표대표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그 상표대표자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공동상표지원신청서에 사업추진계획서와 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에 관한 규약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합
2. 공동상표 사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④ 중소기업청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동상표를 도입하여 이용하는 중소기업자(이하 이 항에서 “참여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2. 참여기업의 수가 5개 미만으로 된 경우
3.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운영하지 아니하는 참여기업을 제외하면 참여기업의 수가 5개 미만으로 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동상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참여기업이 불량한 공동상표 제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속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6. 상표대표자와 참여기업 간 또는 참여기업 상호간의 분쟁 등으로 공동상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공동상표의 개발·홍보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지원) ①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근 1년간의 수출액(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②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근 1년간의 수출액(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③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1.12.6>

1. 최근 3년간의 수출증가율
2. 수출시장규모
3. 최근 3년간의 시장점유율 및 그 확대 가능성
4. 경쟁국과의 기술·가격 비교우위
5. 중소기업 수출 비중

④ 삭제<2011.12.6>

⑤ 삭제<2011.12.6>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지정을 위한 신청 및 지정의 절차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12.6.>

제25조(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법 제31조 제2항에서 “관세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한국 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6장 보 칙

제26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제27조(권한의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개정 2011.6.27>

1.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확인
2.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보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5. 법 제25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구매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등록·수정 및 재생산과 정보의 제공
 - 나. 구매정보망에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의 공개 및 해당 중소기업자의 정보 삭제

② 중앙회장은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자의 정보를 삭제하려면 중소기업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연도별 구매정보망의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부칙 <대통령령 제21834호, 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23조 제1항 제1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26조 제1항 제6호 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로 한다.

③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으로 한다.

④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단서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22조 제1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0호를 삭제한다.

88.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22>부터 <3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28호, 2009.12.30>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⑪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62호, 2009.12.3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3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

<1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55>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20호, 2010.6.28>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22호, 201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가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3>부터 <13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82호, 2010.7.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10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0조 제3항 제2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라목 및 마목, 같은 항 제7호바목, 같은 항 제8호라목·바목 및 사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제26조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라목, 같은 항 제7호 바목, 같은 항 제8호 라목·바목 및 사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98호, 201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88호, 2011.6.27>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48호, 2011.1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 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12.29]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전문개정 2009.12.29]

제3조의2(조달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조달교육) 조달청장은 조달청,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업무나 납품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조달교육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제4조(파생상품거래)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가격 변동이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29]

제5조(계약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0.5.17>

② 조달청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10.5.17>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신설 2010.5.17>

④ 제2항에 따른 표준제품의 범위와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5.17>[전문개정 2009.12.29]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 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중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09.12.29>]

제5조의3(대금 지급) ①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금액의 회수 절차와 납입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7] [제5조의2에서 이동 <2009.12.29>]

제6조(수수료)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징수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조의2(연체료) 조달청장은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대지급을 한 금액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사업 중 일부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이나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조달물자 외의 물자를 수탁(受託)하여 그 시설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할 때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방식으로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할 때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방식으로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 2012.9.2] 제8조

제9조(조달절차 등)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시설공사의 계약 등 조달사업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 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②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등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 등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 절차, 지정 기간, 그 밖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사람은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1조(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①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은 구매원가(물품대금, 물류관리비 등 관리에 직접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해당 물자의 수급 및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②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이 구매원가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12조(민관 공동 비축사업) ① 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비축물자의 특성, 물량, 비축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사용료를 환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부칙 <법률 제4697호, 1994.1.5>

①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률의 폐지) 조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조달사업은 이 법에 의한 조달사업으로,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조달기금은 조달특별회계의 고유자본으로 보며, 조달기금의 채권·채무는 조달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부칙 <법률 제7394호, 2005.3.2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723호, 2005.12.14>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14호, 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830호, 2009.12.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90호, 2010.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賃借)와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3조(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1.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3.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

[전문개정 2010.3.26]

제4조(수요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으로서 수요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5조(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遲滯償金)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6조(장내파생상품거래) 조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7조(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0.8.17>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 요구나 대금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조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0.8.17>

[전문개정 2010.3.26]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②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 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의 순서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 상대자로 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수공급자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8조(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를 구매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0.8.17>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9조(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물류관리 및 공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0.8.17>

-
1.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역별·품질별 가격의 차이 또는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구매 및 공급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특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자와 물류관리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물류관리 및 공급할 때 대량 물자를 분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량을 제한하여 일반 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0.8.17>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9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구매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으로서 조달청장이 제품별로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이하 이 조에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통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표준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표준제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 등 법률에 따라 규격 및 품질 기준이 정해진 제품일 것
2. 기업 간 기술 또는 품질의 차별성이 적은 제품일 것
3.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 가능한 제품일 것
4.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이 아닐 것

-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고시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④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표준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된 경우
- 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공동수급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1인 이상 포함할 것
 2.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의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일 것
-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춘 조합이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은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⑦ 조달청장은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 확보와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4.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
-

⑧ 조달청장은 제7항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제품의 지정, 공동수급체의 구성, 계약 상대자의 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8.17]

[중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0.8.17>]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나. 다수공급자계약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3. 국가기관의 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것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②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
5. 시공·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 공사 중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확정 후 2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관리, 공사원가 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물자 및 공사 관련 계약의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10.8.17>]

제9조의4(대지급의 대상)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납품대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3.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4.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5.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
-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조달청장이 민간 납품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국고금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9조의3에서 이동 <2010.8.17>]

제10조(수수료의 결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요물자나 공사의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11조 삭제 <2010.3.26>

제12조(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이하 이 조에서 “선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 또는 공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때 선급 의사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3.26>

② 삭제 <2009.8.25>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 또는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3.26>

1. 수요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다른 검사를 완료한 수요물자에 대한 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대지급하였거나 대지급할 대금

2.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선급 대금
3.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대금 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개정 2010.3.26>

1. 대지급 대금 및 그에 따른 수수료: 5일
2. 선급 대금: 14일
3. 제1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수수료: 15일

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3.26>

⑥ 법 제6조의2에 따른 연체료는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26>

제13조(시설관리의 위탁)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2. 그 밖에 조달청장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0.3.26]

제13조의2(조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품질관리 지도, 생산시설 및 품질 점검
2. 납품검사 및 납품 물품의 사후관리
3. 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제14조 삭제 <2010.3.26>

제15조 삭제 <2010.3.26>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업가의 사전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업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업가의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6조(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조달청장은 국외로부터 도입하는 조달물자에 본선사고(本船事故)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7조(전자조달의 이용) ① 삭제<2010.3.26>

② 삭제<2010.3.26>

③ 삭제<2010.3.26>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과 민간업체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술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3.26>

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0.3.26>

⑥ 조달청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전자조달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3.26>

⑦ 조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3.26>

1.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2. 경쟁입찰의 참가자격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3.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4. 계약 이행 능력의 심사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6. 계약 및 계약 이행,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7. 계약 실적 및 계약 이행 실적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수의계약, 계약 내용의 변경, 대금의 지급 및 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사무를 수행할 때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⑧ 조달청장은 제7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서면, 팩스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3.26>

[전문개정 2004.12.31]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0.8.17>

1.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일 것
2.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 재활용 물품 등일 것

3. 삭제<2010.8.17>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 이행 내용, 향후 수요 예측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8조의2(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 또는 같은 규정에 따라 등록·인증된 기술 및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으로 구성될 것
 2. 공동상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중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을 생산하는 자가 조달청장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표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된 공동상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⑥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간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 이행 내용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조달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8조의3(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취소)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 또는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3.26]

제1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등(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수사기관 또는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조사 업무 관련 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뇌물수수행위를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을 것
2. 수사기관 또는 부패행위의 감사·조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가 자기의 직무이거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가 아닐 것
3. 뇌물을 수수한 당사자가 아닐 것

② 포상금 지급금액은 뇌물수수액의 5배의 범위에서 뇌물수수액의 규모, 조달 사업에 미치는 영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개정 2010.8.17>

③ 포상금은 신고자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포상금의 신청절차, 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0조(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
1. 국내외의 원자재 공급 또는 생산 업체
 2. 국내외의 원자재 수요 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

②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비축사업신청서에 비축품목, 비축기간 및 비축물량 등을 적은 비축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조달청장은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을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이하 “민간비축사업자”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비축사업자의 승인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3.26]

제21조(민관 공동 비축협약 등) ① 제20조제3항에 따라 민간비축사업자로 승인 받은 자는 조달청장과 비축사업의 범위·방법,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 대상 물량 및 매각 가격·조건 등을 포함하는 민관 공동 비축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민간비축사업자는 제1항의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 따라 구매한 비축물자를 보관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비축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조달청장은 민간비축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구매 및 판매 등을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제22조(비축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선 매각 대상 물량이 전체 비축물량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비축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것
3. 비축기간 중 평균 비축물량이 국내 비축물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비축계획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일 것

② 조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축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고, 비축시설의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비율은 우선 매각 대상 물량, 비축기간, 비축물량, 비축물자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3.26]

제23조(우선 매각의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조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비축사업자에게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민간비축사업자는 해당 비축물자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서 정한 가격 및 조건으로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을 요청받은 민간비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감면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환수
2. 민간비축사업자의 승인취소
3. 승인취소 후 6개월 동안 민관 공동 비축사업 참여 제한

[본조신설 2010.3.26]

부칙 <대통령령 제14435호, 1994.12.23>

-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조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31호, 1998.7.9>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는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부터 적용한다.
- ③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공사금액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5조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11호, 2000.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89호, 2002.7.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의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34호, 2004.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물자대금 납입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입고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③ (공무원가 사전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무원가 사전검토가 요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자체발주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규모에 따른 시기 이후에는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200억원 미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 : 2005년 1월 1일
2. 500억원 미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 : 2007년 1월 1일
3.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 : 2008년 1월 1일
4.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대상공사 : 2010년 1월 1일

부칙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6.30>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의장법” 을 “「디자인보호법」” 으로, “등록의장” 을
“등록디자인” 으로 한다.
<18> 내지 <2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37호, 2006.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
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2항·제4항, 제10조, 제17조제2항 중 “재정
경제부장관” 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제15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 을 각각 “기획재정부령” 으로 한다.
<56>부터 <6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선물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선물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한다.

<92>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48호, 200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93호, 2009.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입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00호, 2009.8.25>

이 영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34호, 2009.11.2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단서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87호, 2010.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입고지하는 대금 및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42호, 2010.8.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7>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8. “어음대체결제”란 위탁기업이 물품 등의 납품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 론 제도, 그 밖에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 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자료”란 물품 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10. “동반성장지수”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
11.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한다)이란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서비스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전문개정 2010.1.27]

제2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1.27>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3.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09.1.7>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1.27>

[제목개정 2010.1.27]

제5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6조 삭제 <2009.1.7>

제7조 삭제 <2009.1.7>

제3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개정 2010.1.27>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조사
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추진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성과 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 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수탁기업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지원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환경경영을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정보 등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보화와 관련한 대·중소기업 간의 협업화,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등 대·중소기업 간 정보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마케팅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한다)을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7]

제1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15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상생협력지수의 산정 방법 및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

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 우수기업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사 간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20조(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제4장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받으면 물품 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 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물품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3조(검사의 합리화) ①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 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4조(품질보장 등) ①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업은 제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적정한 가격 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개정 2010.12.7>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 수치인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신설 2010.12.7>

④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2.7>

⑤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전문개정 2010.1.27]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기술자료의 제호·종류·제작연월일
2. 기술자료의 개요
3. 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12.7]

제24조의5(수수료) ① 제24조의2에 따라 수치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임치기업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요율·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
4.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 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6.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7. 물품 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9.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10. 물품 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 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11.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14. 위탁기업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 등의 품질·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물품 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1.27]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위탁기업이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25조제1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 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별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별점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물품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의 입치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8조의2(교육명령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별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별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29조 삭제 <2010.1.27>

제30조 삭제 <2010.1.27>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심의회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 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2.7>

1. 대기업

2.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점포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 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3.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 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③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 등에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할 수 있되, 조정심의회 심의결과가 대기업 등의 사업이양인 경우에는 사업이양 권고만을 할 수 있다.<신설 2012.1.17>

⑥ 조정심의회는 제1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17>

⑦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2.1.17>

[전문개정 2010.1.27]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 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 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 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 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7]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1. 삭제<2010.1.27>
2. 제3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의 사업

제36조(대기업 사업을 이양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이양 받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창업자금의 지원
2. 협동화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우선 입주
3. 기술개발자금 등의 우선 지원

[전문개정 2010.1.27]

제37조(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에 이양하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때에는 그 대기업 등에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6장 보칙 <개정 2010.1.27>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39조(서류의 비치) 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및 비치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7>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삭제 <2010.1.27>
3.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

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그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0.1.27>

제7장 벌칙 <개정 2010.1.27>

제41조(벌칙) ①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0.12.7]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7>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7.5.17, 2010.1.27>

1.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3.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개정 2010.1.27>

③ 삭제 <2010.1.27>

④ 삭제 <2010.1.27>

⑤ 삭제 <2010.1.27.>

부칙 <법률 제7864호, 2006.3.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의 규정 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유효기간) 제29조, 제30조, 제35조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1조제2호·제3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제32조제1항중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으로 한다.

제5조(수탁기업체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협의회로 본다.

제6조(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관한 특례) 종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제20조에 의한 재단으로 본다.

제7조(분쟁조정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청을 한 분쟁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계류 중인 것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사업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명령 및 일시정지 권고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3653호 「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7조제2항, 법률 제4898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및 종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12조제2항”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법률 제8108호, 2006.12.2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으로 한다.

③ 내지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54호, 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4>까지 생략

<3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3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13호, 2008.3.2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9331호, 2009.1.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사업조정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명령은 이 법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명령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931호, 2010.1.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경영” 을 각각 “녹색경영” 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978호, 2010.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52호, 2010.4.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399호, 2010.12.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업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173호, 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반성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 도출한 적합 업종은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의 도출 및 공표된 것으로 본다.

6. 서울시 중소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모성 자재”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
2.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가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발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에 대한 자금·정보·인력 및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의 판매·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 기관, 시 산하 투자·출연·출자기관은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때 대규모 자재구매 대행업자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회보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조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일 조달입찰법에 관한 규정³¹⁾

1. 경쟁입찰제한에 관한 법률(GWB³²⁾)

가. 공공계약의 위탁 선정 기준

- 공공기관과 관련한 조달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단 강제규정은 아님
- 또한, 독일내 모든 공공계약은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계약을 실시해야 함
- 이는 모든 분야의 조달계약 기준상에 언제나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계약대상업체를 대기업 형태가 아닌 한 분야에 특성화된 중소기업을 채택하려는 의도가 강함

나. 입찰조달 개요

- 위임자 조건 : 지자체 또는 특별재산 관리단체, 공공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 기관, 협회
- 위탁자 조건 : 위임자에게 계약을 통해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 또는 대상

31) 본 자료는 2011년 12월 5일 개정된 독일내 조달과 관련한 국내법임. 현재 독일은 EU의 조달지침이 국내법화되고 있는 단계이며, 서비스 조달지침을 포함한 부분적인 분야의 조달지침은 아직 국내법화 되지 않음. 본 책에서는 독일 조달입찰법 중 소모성자재 납품과 관련한 조항만을 번역하여 수록하였음

32) GWB(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독일 경쟁입찰제한에 관한 법률

- 공공계약에 대한 정의 : 건설, 일반물품, 자유업, 기타 유틸리티 분야의 공공기관 대상 조달과 관련한 계약

※ EU 조달규정상의 공공계약 구분

- EU 공공조달시장 단일화(Single Market)와 경쟁성 제고를 위해 적용하는 단일 조달관련 법령을 운영
- 종전에는 물품, 공사, 용역, 각종 유틸리티(예 : 물, 에너지, 운송 등) 등 조달대상에 따라 별도의 조달지침으로 존재(4개의 조달대상별 지침)
 - * 이와는 별도로 2개의 조달구제절차에 관한 지침도 있음
- 그러나, '04.3.31일부로 조달대상별 별도의 조달지침(4개)중 물품·공사·용역 조달지침을 통합하여 2개로 단순화(공공분야와 유틸리티 분야로 양분)

[EU 조달방법 변경 내용]

중 전(4개)	변 경(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 Directive 93/36/EEC (The Public Supply Dir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 Directive 93/37/EEC (The Public Works Directive) 	Directive 2004/18/EC ⇒ * 물품·공사·용역 조달계약 통합지침(공공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 Directive 92/50/EEC (The Public Services Dir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틸리티 : Directive 93/38/EEC (The Utilities Works Directive) *물, 에너지, 운송, 통신(텔레콤) 분야	Directive 2004/17/EC ⇒ * 물, 에너지, 운송, 우편서비스 등 사업운영자의 조달절차 지침(유틸리티분야)
※ <<별도 조달구제에 관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공사·용역분야(The Public Remedies Directive) :Directive 89/665/EEC ■ 유틸리티분야(The Remedies Utilities Directive):Directive 92/13/EEC 	

- 적용범위 : 계약금액이 127조 항목에 의해 정해진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 (현재 독일은 연방정부차원에서 EU조달규정 127조 항목의 국제입찰 기준 금액에 맞춰서 독일내 조달 계약금액 기준을 결정하는 단계이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명시되지 않음)

※ EU 조달규정상의 국제입찰 기준 금액³³⁾

[국제입찰 대상 기준금액 (2006.1.31일부터 적용)]

구 분	물 품	용역	공사
중앙정부기관	£ 93,738 (€ 137,000)	£ 93,738 (€ 137,000)	£ 3,611,319 (€ 5,278,000)
	(SDR 130,000)	(SDR 130,000)	(SDR 5,000,000)
지방정부 및 기타기관	£ 144,371 (€ 211,000)	£ 144,371 (€ 211,000)	£ 3,611,319 (€ 5,278,000)
	(SDR 200,000)	(SDR 200,000)	(SDR 5,000,000)

* 주 : 국제입찰 기준금액은 2년마다 조정. SDR(특별인출권)로 표시된 것은 정부조달협정상 기준금액임, 1£(파운드) = 1.46€ (유로화) 기준

[유틸리티 계약의 국제입찰 기준금액(2006.1.31일부터 적용)]

구 분	물 품	용역	공사
유틸리티 사업	£ 288,741 (€ 422,000)	£ 288,741 (€ 422,000)	£ 3,611,319 (€ 5,278,000)

* 주 : 1£(파운드) = 1.46€ (유로화) 기준

33) EU 조달규정 Directive 2004/18/EC 127조 항목 중 발체

1) 조달(입찰) 방법

가) 공개경쟁, 제한경쟁 입찰, 수의계약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Open Procedure): 관심 있는 공급자나 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입찰공고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요건 및 규격의 물품으로 응찰 (제한 경쟁입찰과는 달리 사전에 입찰자격을 심사하지 않음)
- 제한경쟁입찰(Restricted Procedure): 입찰참가 희망자의 당해물품에 대한 과거납품실적, 회사의 재정상태 등의 증빙자료를 사전심사(pre-qualification)하여 자격있는 자를 선정후 이들에게 입찰초청서를 발송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아 최종 낙찰자를 선정
- 수의계약(Negotiated Procedure): 일반공고를 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계약대상자와 협상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공개·제한경쟁 방식이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에만 실시하며 협상대상자가 2개업체 이상일 경우에도 가능

나) 협상을 통한 경쟁입찰 (Competitive Dialogue)

- 협상을 통한 경쟁입찰³⁴⁾은 “계약당국이 자신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용 가능한 대안을 개발할 목적으로 (입찰)후보자와 대화를 시도하고, 이중 선택된 후보자가 입찰에 초청” 되는 입찰절차의 하나

34) Article 1. 11. (c) 'Competitive dialogue' is a procedure in which any economic operator may request to participate and whereby the contracting authority conducts a dialogue with the candidates admitted to that procedure, with the aim of developing one or more suitable alternatives capable of meeting its requirements, and on the basis of which the candidates chosen are invited to tender.'

[협상을 통한 경쟁입찰 방식 세부 내용]

■ 도입배경

“복잡한 계약”의 경우 구매기관이 사전에 기술적·법적 또는 재정적 측면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을 아는 데는 한계 → 따라서, 다양한 공급자들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솔루션을 찾아 가는 과정이 필요

※ EU 조달지침(Directive 2004/18/EEC 제1조 11호(c))상

복잡한 계약으로 간주되는 요건

- 자신의 필요 혹은 목적을 충족시키는 기술적 수단을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경우
- 프로젝트의 법적 또는 재정적 체계를 객관적으로 구체화할 수 없는 경우

■ 적용

EU 집행위원회는 계약이 복잡하고, 법적 재정적 구조가 공급자와 대화없이 확정될 수 없는 Private Public Partnerships(PPP)에 많이 이용될 것으로 전망

※ 공개경쟁, 제한경쟁 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협상절차 선택 전에 사용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경쟁과 협상의 중간 영역)

■ 절차 및 낙찰

입찰공고→입찰공고에 있는 낙찰기준을 적용, 대화상대를 줄여 나감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때까지 가능) → 대화종료 선언후 남아있는 대화참가자에게 입찰서 제출 요청→입찰서 평가(반드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을 낙찰기준으로 해야 함, 최저가격 낙찰기준 사용 불가)

※ 대화 참여자에게 일정한 지불(대가)을 할 수 있으며 금액은 사례별로 결정

다) 계약 낙찰기준

- EU 조달지침³⁵⁾에서는 계약낙찰기준으로 2가지를 제시

-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
(the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 : MEAT)
 - 당해 계약의 대상과 연계된 다양한 기준, 예를 들면 품질, 가격, 기술적 장점, 미적·기능적 특징, 환경적 특징, 운영비용, 효과성, 사후서비스(A/S)와 기술 지원, 인도일 및 인도기간 혹은 완성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선택

- 오직 최저가격 (only the lowest price)

-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은 특별히 가격이외의 고려요소가 없는 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MEAT)을 낙찰기준으로 선정
- 다양한 세부낙찰기준에 가중치를 두어 평가한 후 최종낙찰자를 선정

2) 최근 도입된 구매방법

가) 기본협약³⁶⁾ (Framework Agreement)

- 기본협약은 “하나 이상의 계약당국과 하나 이상의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향후의 계약을 규율하기 위한 (특히) 가격과 예상수량에 관한 협약” 을 의미

35) EU조달규정 Directive 2004/18/EC 제53조 중 발췌

36) EU조달규정 Directive 2004/18/EC 제1조 5항 및 제32조 중 발췌

※ 기본협약은 계약당국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약과 다르나, 후속적으로 계약을 수반하기 때문에 체결과정은 계약과 거의 유사(우리나라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과 유사)

○ 기본협약의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4년 초과 불가

[기본협약에 기초한 개별계약(Call-off)의 체결]

■ 기본협약이 하나의 공급자와 체결된 경우

- 이에 기초한 계약은 그 기본협약에서 정한 조건의 범위 내에서 낙찰
 - * 후속계약을 위해 계약당국은 기본협약의 공급자와 문서로서 협의를 하며, 필요시 입찰서 보완 요청 가능

■ 기본협약이 다수의 공급자(적어도 3개 이상 공급자)와 체결된 경우 후속계약은 다음 두 가지에 의해 낙찰

- i) 경쟁없이 기본협약에 규정된 조건을 적용
- ii) 기본협약에서 정한 조건을 적용하여 경쟁하거나, 필요시 추가 조건을 부가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음
 - * 협약 공급자를 상대로 한 일종의 소수 경쟁(mini-competition)이 가능

나) 전자입찰 구매시스템³⁷⁾ (Dynamic Purchasing System)

- 전자입찰 구매시스템³⁸⁾은 “구매당국이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일정한 유효기간을 가진 공급자의 입찰서(Indicative Tender³⁹⁾)를 완전하게 전자적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을 의미
 - DPS는 구매당국의 정한 조건(선택기준, 규격 등)을 충족시키는 모든 공급자에게 시스템 접근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전자적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의 일종
 - * 동 시스템에 따른 후속계약의 모든 절차는 오직 전자적 수단(solely electronic means)만을 사용
- 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자(상용물자) 구매에 활용
- 기본협약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4년을 초과하는 역동적 구매시스템은 불가
 -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공급자에게는 전자입찰에 소요되는 어떠한 비용도 부과할 수 없음

37) EU조달규정 Directive 2004/18/EC 제1조 및 제33조 중 발췌

38) Article 1. 6. A 'dynamic purchasing system' is a completely electronic process for making commonly used purchases, the characteristics of which, as generally available on the marke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ing authority, which is limited in duration and open throughout its validity to any economic operator which satisfied the selection criteria and has submitted an indicative tender that complies with the specification

39) Indicative tender은 계약당국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구매조건에 따라 공급자가 이에 부합하도록 준비하는 입찰서를 의미

[전자입찰 구매시스템 형성 및 낙찰과정]

- 일반경쟁절차의 모든 단계(계약낙찰까지)를 준수
 - 모든 관심있는 잠재적 공급자가 Indicative tender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간소화된 계약공고를 공표(공고는 15일이상)
 - * 구매시스템, 사용되는 전자장비와 기술적인 접속·사양 등 모든 정보와 동 시스템하에서 예상되는 구매의 특성을 규격명세서에 적시하고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규격명세서와 부가서류에 대한 무제한, 직접적, 완전한 접근을 제공해야 함
 - 계약당국은 어떤 공급자에게도 역동적 구매시스템의 전기간에 걸쳐 Indicative tender 제출과 시스템에 대한 진입 가능성을 허용
 - * 또한, Indicative tender 제출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입찰자들에게 가급적 빠른 기회에 역동적 구매시스템에 진입 또는 Indicative tender의 거절을 통보

- 역동적 구매시스템하에서의 개별계약(Call-off)은 간소화된 계약공고에 의해 경쟁절차를 적용
 - 입찰서 제출시한을 정하되, 시스템에 진입한 모든 공급자들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초청
 - 낙찰은 역동적 구매시스템 형성시의 계약공고에 규정된 낙찰기준에 따라 최고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계약을 낙찰

다) 전자경매⁴⁰⁾ (Electronic Auction)

- 전자경매란 “점차 낮아지는 새로운 가격의 제시나 최초 입찰의 전체요소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그중 어떤 입찰요소의 새로운 가치에 대하여 전자적 자동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순위 매김을 가능케 하는 반복적인 과정⁴¹⁾” 을 의미

40) EU조달규정 Directive 2004/18/EC 제1조 7항 및 제54조 중 발췌

41) Article 1. 7. An 'electronic auction' is a repetitive process involving an electronic device for the presentation of new prices, revised downwards, and/or new values concerning certain elements of tenders, which occurs after an initial full evaluation of

- 입찰자로 하여금 그들의 초기 입찰의 가격 등 특정 요소의 조정을 허용하고, 이로 인한 즉각적인 순위 변화를 보여주는 전자적 시스템
- 경매는 조달물품의 규격이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입찰·계약절차(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절차, 기본협약에 의한 소수 경쟁계약, 역동적 구매시스템에 의한 개별 계약 등)와 병행 사용이 가능
- 지적 활동과 연관된 서비스 계약(예:공사설계)이나 공사계약은 특성상 전자경매의 대상 불가

다. 감사(검토)절차

1) 감사(검토)기관

- 조달계약 감사를 위한 정부감독기관이 설립되어 있고 이외에 본 계약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됨

2) 조달(위탁)위원회의 절차

- 계약주체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달라짐(연방정부 / 주정부)
- 연방정부 계약에 따른 위원회는 공정거래위 내부에 설치됨
- 상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연합의 성격을 띠며 대기업의 시장내 부정적인 영향 또는 독과점, 부당 관행 등을 감시하여 조달계약의 투명성을 확보
- 또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기업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 주정부 계약에 따른 위원회는 주정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 받음
- 연방정부 계약이지만 주정부에 의해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주정부 위원회의 감독을 받음

the tenders, enabling them to be ranked using automatic evaluation methods

라. 공공계약위탁에 관한 규정

- 상한가치를 상회하는 조달계약과 관련한 세부 규정
 - 공사계약 4,845,000유로 이상일 경우
 - 일반자재 및 서비스 193,000유로 이상일 경우
- 독일 공공계약위탁 상한규정은 유럽연합이 정한 기준금액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냄

[독일 조달기준금액]

(단위 : 1£(파운드)= 1.46€(EURO)기준)

구 분		물품	용역	공사
EU 조달 기준 금액	중앙정부 기관	£ 93,738 (EURO 137,000)	£ 93,738 (EURO 137,000)	£ 3,611,319 (EURO 5,278,000)
		(SDR 130,000)	(SDR 130,000)	(SDR 5,000,000)
	지방정부 및 기타기관	£ 144,371 (EURO 211,000)	£ 144,371 (EURO 211,000)	£ 3,611,319 (EURO 5,278,000)
		(SDR 200,000)	(SDR 200,000)	(SDR 5,000,000)
독일 조달기준금액		EURO 193,000		EURO 4,845,000

* 주 : 국제입찰 기준금액은 2년마다 조정. SDR(특별인출권)로 표시된 것은 정부조달협정상의 기준금액임

2. 일반재(상품)의 위탁과 계약 규정 (VOL⁴²)

가. 일반재의 위탁 규정

- 적용범위 : 조달 및 서비스 분야(공사 미포함, VOF⁴³)에 속하지 않는 서비스업)
- 기본법 세부 기술 : 전문성, 재정건정성, 가격의 합리성, 차별 경쟁 지양(공정성) 등

1) 조달방식

가) 일반공개입찰

- EU일반공개입찰방식 중 공개입찰방법과 유사

나) 제한경쟁

- 특정기업만이 영위할 수 있는 분야(법에서 정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
- EU일반공개입찰방식 중 제한경쟁입찰방법과 유사

다) 지명경쟁

- 복수의 경쟁대상을 발주기관이 지명 (참가자들의 경쟁을 배제한 제한된 경쟁)
- EU일반공개입찰방식 중 협상입찰방법과 유사

42) VOL(Vergabe- und Vertragsordnung für Leistungen) : 일반재(상품)의 위탁과 계약 규정

43) VOF(Vergabeordnung für freiberufliche Leistungen) : 자유업 및 서비스업에 관한 규정

라) 수의계약

- 군수물자, 첨단기술제품
- 장애인기업물품
- 교도소 공급 물품
- 연방총리 및 주총리가 인정한 기업 물품
 - * 약 500유로 이하의 물품 구매의 경우(부가가치세 불포함) 예산법의 감독하에서 상기 명시된 절차 없이 직접구매가 가능

마) 기본협약

- 기본협약 및 전자입찰 구매시스템 조달방법은 이번 개정시 추가된 조달 방식임
- 하나 이상의 계약당국과 하나 이상의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향후의 계약을 규율하기 위한 협약,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4년 초과 불가
- EU 입찰방식 중 최근 추가로 도입된 기본협약 입찰방법 국내법화

바) 전자입찰 구매시스템

- 구매당국이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일정한 유효기간을 가진 공급자가 완전하게 전자적으로 모든 입찰절차를 처리하는 과정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4년 초과 불가
-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자(상용물자) 구매에 활용
- EU 입찰방식 중 최근 추가로 도입된 전자입찰 구매시스템 입찰 방법 국내법화

2) 낙찰자 선정

- 각 입찰업체의 입찰내용을 분석하여 가장 경쟁적인 업체를 선정
 - 단기적인 최저공급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낙찰되는 것이 아니라 구입부터 사용, 수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공급물품의 전 사업기간 동안의 비용분석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
 - 따라서 낙찰업체 선정시 고려하는 사항은 입찰가격외에 전체사업비용, 입찰업체의 재정, 과거실적, 사업평판, 적기공급능력, 제품의 표준화 충족도 등을 포함
- * 일반적인 낙찰기준은 Quality, Reliability, Delivery, Function, Expertise, Innovation, Awareness, Co-operation 등임

3) 효과중심의 낙찰자 선정기준 (Value for Money)

- 낙찰자 선정은 단순히 가격이 가장 낮은자(the lowest)보다는 조달물품의 생애주기(Whole Life Period)를 고려해 가장 경제적인 낙찰자를 선택(기본적으로 Value for Money 효과가 가장 큰 입찰자)
- ※ Value for Money는 “구매기관의 필요를 충족하는 품질과 계약기간 전후를 고려한 비용과의 최상의 결합”으로 정의. 통상적으로 계약기간 전후를 고려한 적절한 가격(right price/whole life cost), 적절한 품질(right quality), 적절한 물량(right quantity), 적절한 공급시기(right time), 적절한 장소(right place)를 포함

4) 제품선적 및 대금지불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통지받으면 L/C가 개설되고, 이때 부터 본격적인 선적준비를 하는데 통상 계약보증금을 요청
 - * 계약보증금(Performance Bond)은 회원국 및 발주기관에 따라 차이가 발생
- 계약조건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L/C등에 의해 대금을 지불

나. EU조달지침 적용 범위에서의 추가 보완사항

- 금번 개정에서 독일조달법에 반영되는 유로조달법, EU조달 지침은 단계적으로 국내법화되고 있는 단계임
- 입찰세부조건 추가(추가적인 환경기준 설정)
-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입찰기준(적절한 장소, 적절한 품질 등) 명확화
- 입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 그에 대한 규명과약을 위한 설명을 요구
- 기업이 국가의 보조를 받아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도 정확한 규명을 해야 함
- 입찰대상자가 정해진 경우 15일 이내에 공표해야 하며 적격대상의 결정기준과 더불어 부적격대상의 미달 이유도 함께 공개해야 함
- 자유업에 속하지 않는 서비스업체 구체화
- CE인증⁴⁴⁾ 이외에 EU국가에 속하는 다른 회원국의 인증 마크도 인정

44) CE Marking(유럽공동체마크) 제도란 EU가 역내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표준 규격 제도로 말미암아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 차원으로 조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진 EU 공동 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서의 CE마크를 상품이 나 포장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

다. 산업분류 기준

- 독일은 유럽의회 규정에 준하는 산업분류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1~16번까지가 일반재에 속하는 서비스업

[독일 산업분류기준 및 코드]

no	산업구분	CPC ⁴⁵⁾ 산업분류 코드
1	유지와 보수	6112,6112,886
2	우편을 제외한 화폐와 정보전달을 포함한 운수	712,7512,87304
3	우편을 제외한 화물과 승객을 위한 항공 운수	73
4	항공과 보통운수를 통한 우편	71235,7321
5	텔레커뮤니케이션	752
6	금융서비스업 a : 보험 b : 은행대출과 채권업	ex81,812,814
7	정보제공과 이와 관련된 업종	84
8	연구업	85
9	회계업	862
10	시장조사업	864
11	기업상담과 이와 관련된 업종	865,866
12	건축, 기술 상담과 기계, 첨단산업 도시설계, 학문과 기술에 관련된 상담업, 기술 연구와 분석 업종	867
13	광고업	871
14	건물관리업	874, 82201, bis82206
15	인쇄 및 출판분야	88442
16	상하수도업, 위생산업과 이와 유사업종	94
17	요식 및 숙박업	64
18	철도	711
19	선박	72
20	교통에 관련된 부차적 산업	74
21	법률상담	861
22	노동중개업	872
23	화폐운송을 제외한 경비업	873 (87304)
24	교육업	92
25	건강과 장의업 그리고 사회단체	93
26	요양, 문화 그리고 스포츠	96
27	기타 서비스업	

45)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 독일 연방정부 산업 분류

그림 목 차

[그림 1-1] 소모성자재 범위 발전 과정	7
[그림 1-2] 소모성자재 표본구성 프로세스	8
[그림 1-3] 최종 카테고리 선정 과정	9
[그림 1-4] 소모성자재 특징	10
[그림 1-5] 소모성자재 산업 발전과정	12
[그림 1-6] 개정 법률안 제안 경위	17
[그림 1-7] 개정 법률안 발의 과정	18
[그림 1-8] 모집단 구성 프로세스	26
[그림 1-9] 표본구성 프로세스	27
[그림 1-10] 모집단 특성 반영 예	27
[그림 2-1] 납품업 유통구조	62
[그림 2-2] 소모성자재 유통구조	63
[그림 2-3] 제한된 소모성자재 유통구조	64
[그림 2-4] 연도별 업체 현황	66
[그림 2-5] 연도별 종사자 현황	68
[그림 2-6] 공공기관 그룹핑(Grouping) 과정	73
[그림 2-7] 기관별 비중	74
[그림 2-8] 소모성자재 시장규모	76
[그림 2-9] 부문별 소모성자재 시장구분	77
[그림 2-10] 공공기관 시장규모 추정과정	77
[그림 2-11] 공공기관 시장규모	78
[그림 2-12] 민간시장 추정방법	79
[그림 2-13] 기업 규모별 시장규모 추정	84
[그림 2-14] 중소납품업체 조직형태	85
[그림 2-15] 중소납품업체 업체 유형	87

[그림 2-16] 제조업체(겸업 포함)의 인증 형태	89
[그림 2-17] 종사자 규모별 비중	91
[그림 2-18] 보유사업장 개수	92
[그림 2-19] 보유사업장 소유형태	93
[그림 2-20] 매출액 비교	94
[그림 2-21] 물품 판매처 유형별 현황	95
[그림 2-22] 평균 거래업체 수	96
[그림 2-23] 판매상품 조달방식 (중복 응답)	97
[그림 2-24] 물류창고 보유여부	98
[그림 2-25] 보유 물류 창고형태 (복수응답)	99
[그림 2-26] 자체 물류 창고 관리 인력	101
[그림 2-27] 물류 창고 미보유 이유	102
[그림 2-28] 정부가 중소기업 공동 물류 창고 설치 시 이용 여부 ..	103
[그림 2-29] 공동 물류창고 미사용 이유	104
[그림 2-30] 주문품 납품 시 배송 방법	106
[그림 2-31] 주요 배송 지역	107
[그림 2-32] 판매처 확보 방법	109
[그림 2-33] 대표자 외 영업전담 보유 인력	110
[그림 2-34] 판로개척을 위한 영업활동	111
[그림 2-35] 판로개척 확대에 가장 필요한 것	113
[그림 2-36] 판매대금 결제유형별 비중	115
[그림 2-37] 판매대금 결제비중	116
[그림 2-38] 판매대금 회수기간	117
[그림 2-39] 매입대금 결제방식 (복수응답)	118
[그림 2-40] 자재 구매 대행업 납품 시 애로사항	119
[그림 2-41] 조달청 이용 시 애로사항	121
[그림 2-42] 공공 기관 직접 납품 시 애로사항	122
[그림 2-43] 물품 납품업체 보유 현황	124
[그림 2-44] 물품 구매처 선정 기준(중복응답)	125
[그림 2-45] 물품 판매처 확보 방법	126
[그림 2-46] 대금 결제 방식	128

[그림 2-47] 대금 회수 기간	128
[그림 2-48] 물품 매입 시 애로사항	129
[그림 2-49] 사업운영 시 애로사항	130
[그림 2-50] 물품 구매처 선정기준 (중복 응답)	132
[그림 2-51] 물품 판매처 확보 방법	134
[그림 2-52] 매출 비중 및 마진	134
[그림 2-53] 납품 배송 방법	136
[그림 2-54] 대금 결제 방식	136
[그림 2-55] 대금 회수 기간	137
[그림 2-56] 물품 판매처와 거래 시 애로사항 (중복응답)	138
[그림 2-57] 공공기관과의 거래 현황	139
[그림 2-58]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대비 경쟁력 수준	139
[그림 2-59] 사업운영 시 애로요인	140
[그림 2-60] 소모성자재 구매액 구간별 기관 수	142
[그림 2-61] 구매유형별 이용비중 (중복 응답)	143
[그림 2-62] 자재구매대행업자 이용 시의 장점	144
[그림 2-63] 조달청 이용 시 장점	145
[그림 2-64] 직접 구매 시 장점	145
[그림 2-65] 구매 시 가장 편리한 방법	146
[그림 2-66] 구매업무 투입인력의 수	147
[그림 2-67] 구매업무 투입인력의 적정성	148
[그림 2-68] 관로지원법 개정 이후 구매인력 변동현황	149
[그림 2-69] 구매인력 충원계획	149
[그림 2-70] 시스템 구축 이유	150
[그림 2-71] 시스템 귀속여부	151
[그림 2-72] 외부 시스템 이용 사유	151
[그림 2-73] 소모성자재 구매 관련 애로사항	153
[그림 2-74] 자재구매대행업자 이용 시의 애로사항	154
[그림 2-75] 조달청 이용 시 애로사항	155
[그림 2-76] 직접 구매 시 애로사항	156
[그림 2-77] 민간 소모성자재 소비시장	157

[그림 2-78] 2011년도 구매실적 및 2012년도 구매목표	158
[그림 2-79] 소모성자재 제품유형별 구매 비중	159
[그림 2-80] 대기업 구매 이용 이유	160
[그림 2-81] 중소기업 구매 이용 이유	160
[그림 2-82]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선호 이유	161
[그림 2-83]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선호 이유	161
[그림 2-84] 자재구매대행업자 이용 시 장점	162
[그림 2-85] 직접구매의 선호 이유	162
[그림 2-86] 직접 구매 시 장점	163
[그림 2-87] 구매업무 투입인력 현황	163
[그림 2-88] 구매인력규모의 적절성	164
[그림 2-89] 자재구매대행업자 이용 시 애로사항	165
[그림 2-90] 직접 구매 시 애로사항	165
[그림 3-1]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 증가	172
[그림 3-2] 종합지원센터 역할	185
[그림 3-3] 직접생산 확인제도 처리 절차	198
[그림 3-4] 적격조합 확인제도 처리 절차	200
[그림 3-5]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제도 처리 절차	203
[그림 3-6] 공공구매론 처리절차	204
[그림 3-7]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운영제도 처리 절차	205
[그림 3-8] 보증절차	221
[그림 3-9] 처리 절차	224
[그림 3-10] 프랑스 중소기업 지원 행정기관 체계도	248
[그림 3-11] 프랑스 시내형 슈퍼마켓 체인 업체	250
[그림 3-12] 프랑스 현지실태조사 사진	252
[그림 3-13] Castorama 제품 카다로그	254
[그림 3-14] 현지조사 사진	255
[그림 3-15] HBB 협회 제공자료	264
[그림 4-1]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사업 확장에 따른 문제	270
[그림 4-2] 구체적인 피해 경험 사례	272
[그림 4-3] 피해 경험	273

[그림 4-4] 개정된 판로지원법 인지 여부	274
[그림 4-5] 납품단가 인하 요인 비교	276
[그림 4-6] 구매대행업체 선호 이유	277
[그림 4-7] 대금 결제 구조	279
[그림 4-8]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및 물품 등록 절차	280
[그림 4-9] 판로지원법 인지 수준	282
[그림 4-10]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영업환경 변화	283
[그림 4-11]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규제의 도움정도	284
[그림 4-12] 공공기관 구매방식 변화 내역	285
[그림 4-13] 지원정책 인지 현황	286
[그림 4-14] 주요 지원정책 요구 세부 항목	287
[그림 4-15] 동반성장 의사 및 중소기업 지원 방법	289
[그림 4-16]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인지여부	290
[그림 4-17]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고 싶은 분야	291
[그림 4-18] 공동MRO몰 참여 의사	292
[그림 4-19] 중소납품업체 공동MRO몰 사용 거부 이유	293
[그림 4-20]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거부 이유	293
[그림 5-1] 소모성자재 발전과제와 전략	301
[그림 5-2] 판로개척을 위한 필요지원 사항	303
[그림 5-3]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교육홍보 팝업	309
[그림 5-4] 교육 추진 프로세스	310
[그림 5-5] 상인대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법	311
[그림 5-6] 시장상인대학 졸업식 전경	312
[그림 5-7] 교육신청 과정	313
[그림 5-8] 멘토링 추진 프로세스	316
[그림 5-9] 대표자 외 영업 전담인력 보유현황	321
[그림 5-10] 중소 납품업체 지원대상 확대	323
[그림 5-11] 해외진출 지원 프로세스	329
[그림 5-12] 지역연고 우선구매 프로세스 1	333
[그림 5-13] 지역연고 우선구매 프로세스 2	333
[그림 5-14] 지역연고 우선구매 프로세스 3	334

[그림 5-15] 쿼터제 운영 방식 1	336
[그림 5-16] 쿼터제 운영 방식 2	337
[그림 5-17] 업체 순위 평가 기준	337
[그림 5-18] K사 불공정 거래 상담 및 제보 시스템	341
[그림 5-19] K사 불공정 거래 상담 및 제보 시스템	342
[그림 5-20] L사 불공정 거래 상담 및 제보 시스템	343
[그림 5-21]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인지도	349
[그림 5-22] 판매제품 등록 페이지(예)	351
[그림 5-23] 공공기관 구매현황 정보 검색(예)	352
[그림 5-24]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 흐름도	355
[그림 5-25]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추이 및 운용자산 현황	357

표 목 차

[표 1-1] 소모성자재 관련업체 정의	21
[표 1-2] 조사 대상 구분	22
[표 1-3] 제외 표본 산업	23
[표 1-4] 조사 대상별 조사 기간	27
[표 1-5] 조사 대상별 조사 방법	28
[표 1-6] 구매사(공공기관) 설문 구성 및 내용	28
[표 1-7] 구매사(민간업체) 설문 구성 및 내용	29
[표 1-8] 자재구매대행업자(대규모) 설문 구성 및 내용	30
[표 1-9] 자재구매대행업자(중소규모) 설문 구성 및 내용	31
[표 1-10] 납품업체 설문 구성 및 내용	32
[표 1-11] 실사 진행 절차	33
[표 1-12] MRO 취급품목군별 기업체 수	35
[표 1-13] 지역별 소모성자재 품목군의 기업체 수	36
[표 1-14] 1단계 표본할당 결과	37
[표 1-15] 최종 표본할당 결과	38
[표 1-16] 용어 정의	40
[표 1-17] 조사 대상별 설문 구성	41
[표 1-18] 조사대상별 표본추출	41
[표 1-19] 유형별 시장 규모 및 비중	42
[표 1-20] 조사 대상별 결제현황	45
[표 1-21] 주요 국가별 소모성자재 시장규모	49
[표 2-1] 소모성자재 관련업체 정의	64
[표 2-2] 연도별 업체 현황	65
[표 2-3] 연도별 종사자 현황	67
[표 2-4] 연도별 평균 종사자 수	68
[표 2-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조사대상	69

[표 2-6]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자	71
[표 2-7] 공공기관 유형별 구분	72
[표 2-8] 제외 표본 산업	75
[표 2-9] 구매대행업 소비 시장규모	80
[표 2-10] 직접구매 시장규모	81
[표 2-11] 직접구매 시장규모 언론보도 자료	81
[표 2-12] 표준산업분류 매칭	82
[표 2-13] 중소납품업체 조직형태	86
[표 2-14] 중소납품업체 업태 유형	88
[표 2-15] 제조업체(겸업 포함)의 인증 형태	90
[표 2-16] 종사자 규모별 비중	91
[표 2-17] 보유사업장 개수	92
[표 2-18] 보유사업장 소유형태	94
[표 2-19] 물품 판매처 유형별 현황	96
[표 2-20] 물류창고 보유여부	99
[표 2-21] 보유 물류 창고형태 (복수응답)	100
[표 2-22] 자체 물류 창고 관리 인력	101
[표 2-23] 물류 창고 미보유 이유	102
[표 2-24] 정부가 중소기업 공동 물류 창고 설치 시 이용 여부	103
[표 2-25] 공동 물류창고 미사용 이유	105
[표 2-26] 주문품 납품 시 배송 방법	106
[표 2-27] 주요 배송 지역	108
[표 2-28] 판매처 확보 방법	109
[표 2-29] 대표자 외 영업전담 보유 인력	110
[표 2-30] 판로개척을 위한 영업활동	112
[표 2-31] 판로개척 확대에 가장 필요한 것	114
[표 2-32] 판매대금 결제비중	117
[표 2-33] 판매대금 회수기간	118
[표 2-34] 자재 구매 대행업 납품 시 애로사항	120
[표 2-35] 조달청 이용 시 애로사항	121
[표 2-36] 공공 기관 직접 납품 시 애로사항	122

[표 2-37] 사업기간, 종업원수, 매출액	123
[표 2-38] 물품 납품업체 보유 현황	124
[표 2-39] 물류창고 보유 현황	126
[표 2-40] 물류창고 운영 현황	127
[표 2-41] 기업 일반 현황	131
[표 2-42] 물품 구매처 보유 현황	132
[표 2-43] 별도 시스템 구축 여부	133
[표 2-44] 물류창고 보유현황	135
[표 2-45] 공공기관 구매 현황	141
[표 2-46] 구매유형별 주 이용 사유	144
[표 3-1] 서울특별시 조례안 핵심사항	169
[표 3-2] 중소기업청 지원정책 현황	180
[표 3-3] 지식경제부 지원정책 현황	180
[표 3-4] 조달청 지원정책 현황	182
[표 3-5] 서울특별시 조례안 핵심사항	183
[표 3-6] 주요 지원사업	184
[표 3-7] 시스템 고도화	190
[표 3-8] 공공구매제도 내용	195
[표 3-9]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07
[표 3-10] 신용보증 기금종류 및 내용	215
[표 3-11] 창업기업보증 지원제도	216
[표 3-12] 미국 중소기업 범위 표준	227
[표 3-13] 2008년 EDD계약 현황	233
[표 3-14] GSA 행정소모품 공급 실적 (2008년 6월 기준)	234
[표 3-15] GSA 행정소모품 주요 공급 품목	234
[표 3-16] 일본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	235
[표 3-17] 일본 정부조달 법률 체계	238
[표 3-18] 일본 공공조달 품목별 조달액	239
[표 3-19] 연도별 정부조달의 총액 및 총 조달 건수	240
[표 3-20] 일본 공공조달 물품·서비스별, 계약 형태별 조달 비율	241
[표 3-21] 프랑스 정부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245

[표 3-22] 독일 조달시장 규모 및 비중	265
[표 5-1] 교육 실적	304
[표 5-2]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기본 교육내용(1차)	305
[표 5-3]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기본 교육내용(2~4차)	306
[표 5-4] 상인대학 교육프로그램	311
[표 5-5] 상인대학 교육프로그램	312
[표 5-6] 정보화교육/디지털상인육성교육 지원	314
[표 5-7] 상인대학원 세부내용	315
[표 5-8]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318
[표 5-9] 연도별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및 비중(공공기관)	320
[표 5-10] 중소기업 수출실적	326
[표 5-11] 수출 중소기업체 수 현황	327
[표 5-12] 서울통상지원센터 통상관련 상담분야 및 일정	330

설문지

1.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용 설문지
2.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용 설문지
3. 공공기관용(물품 구매사) 설문지
4. 민간기업용(물품 구매사) 설문지
5. 중소 납품업체용 설문지

(대규모 자재구매업용)

ID -

2012년 소모성자재 납품업 실태조사

조 사 목 적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4 에 따라 중소기업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기관의 담당자께서는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대상 기간 : 2011년 1월 1일 ~ 12월 31일
- 법률근거

제31조의4(실태조사)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납품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이용되고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은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 설문 응답자 : 해당 기관의 구매 담당자
- 조사 관련 문의 및 회신처- 맥스경영컨설팅(대행기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업 체 명		응답자 직위/성명	
업 태		업 종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소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유통센터내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소모성자재 실태조사, 마케팅지원, 공동MRO물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

* 공동MRO물 시스템 :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구매대행 시스템으로써, 상품 거래를 위한 MRO물 시스템, 인력, 물류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에 구매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공 및 중소납품업체 판로증대 촉진

□ 용어정의

- 소모성자재(MRO) : MRO는 Maintenance, Repair & Operation의 약자로서 설비 및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를 포함한 간접 자재를 통칭
-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
- 중소규모 자재구매대행업 :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을 제외한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사업
 - * 기업규모는 중소기업에 속하나, 대기업 계열사인 경우에는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으로 분류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

A. 기업 일반 현황

- A1. 귀사의 업력은 몇 년입니까? _____ 년
(*업력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을 시작하여 영위한 기간)
- A2. 귀사의 상시 종업원 수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 A3. 귀사의 2011년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_____ 백만원

B. 납품 관련

- B1. 귀사가 보유한 물품 구매처는 총 몇 개입니까?
_____개
- B2. 귀사가 보유한 물품 판매처는 총 몇 개입니까?
_____개
- B3. 귀사가 물품 구매처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복수 2가지 응답)
- | | |
|---------------------------------|------------------------------------|
| <input type="checkbox"/> 사업체 규모 | <input type="checkbox"/> 물류체계 보유여부 |
| <input type="checkbox"/> 제품 품질 | <input type="checkbox"/> 납기 준수 |
| <input type="checkbox"/> 납품 단가 |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
- B3-1. (B3)응답 결과와 같이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C. 운영 시스템 관련

C1. 귀사가 운영하는 MRO구매대행 시스템의 구축비용은

얼마입니까? 총 _____ 백만원

C1-1: H/W 비용 _____ 백만원

C1-2: S/W(시스템) 비용 _____ 백만원

C2. 귀사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 전문인력은 몇 명입니까?

_____명

D. 판매 / 물류 관련

D1. 물품 판매처는 주로 어떻게 확보하십니까?

① 자사 계열사를 통한 물품 판매처 확보

② 자체 영업조직을 통해

③ 공공입찰, 공개경쟁을 통해

④ 매출처의 구매의뢰를 통해

⑤ 물품 판매처의 구매의뢰를 통해

⑥ 기타 ()

D2. 매출 유형별 물품 판매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매출 유형		거래업체 수
공공기관		
민간기업	자사 계열사	
	일반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D3. 귀사의 2011년 유형별 매출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매출 유형		매출 비중(%)	마진
공공 기관			%
민간 기업	자사 계열사		%
	일반 대기업		%
	중소기업		%
합계			-

D4. 귀사가 취급하는 MRO 품목중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기록)

순위	MRO 품목군	매출비중
1		%
2		%
3		%
4		%
5		%

D5.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D6로 이동)

D5-1. 자체 물류창고 보유 현황은 어느 수준입니까?

- ① 물류창고 수 : _____ 개
 ② 물류창고 규모 : _____ m²
 ③ 물류창고 관리 인력 : _____ 명
 ④ 연간 유지 관리 비용 : _____ 백만원
 * 물류창고 보유수량 만큼 구분하여 기재

D5-2. 보유하고 계신 물류창고의 형태는 무엇입니까?→(기재 후 D7로 이동)

- ① 상가 내 창고 수준의 물류창고
 ② 중규모 이상의 별도 물류창고
 ③ 제3자 물류센터 임대 이용
 ④ 기타 (_____)

D6. 물류창고를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보유 자금의 문제
- ② 필요성의 문제(없어도 큰 지장 없음)
- ③ 부지의 문제(상가 인근에 적합한 부지 없음)
- ④ 기타 ()

D7. 주문품 납품 시 배송은 어떤 방법을 주로 활용합니까?

- ① 자사 보유 차량으로 직접배송
- ② 택배/정기화물 등 물류 전문회사 활용
- ③ 물품 구매처 직접 배송
- ④ 기타 ()

D8. 거래처의 대금 결제방식과 비중은 어떻습니까?

결제 방식		매출 비중
물품 판매처	현금 결제	%
	카드 결제	%
	어음 결제	%
	신용 결제(외상)	%
물품 구매처	현금 결제	%
	카드 결제	%
	어음 결제	%
	신용 결제(외상)	%

D8-1. 물품 판매처의 대금회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판매즉시 ② 1개월 이내
- ③ 2개월이내 ④ 3개월 이상

D8-2. 물품 구매처의 대금지급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구매즉시 ② 1개월 이내
- ③ 2개월이내 ④ 3개월 이상

E. 거래 애로

E1. 물품 매입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납기일 미준수 ② 주문과 다른제품 배송
- ③ 물품 구입처 부도 ④ 배송제품의 품질 수준
- ⑤ 기타 ()

E2. 귀사는 공공기관에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경험이 있다 → (E2-1로 이동)
- ② 납품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다 → (E2-2로 이동)
- ③ 공공기관에 납품할 생각이 없다 → (E3로 이동)

E2-1. 공공기관 납품과 관련한 애로는 무엇입니까?

→ (기재 완료 후 E3으로 이동)

- ① 까다로운 요구품질
- ② 지역이나 과거 실적에 대한 제한
- ③ 까다로운 입찰절차
- ④ 요구하는 인증/규격 충족 애로
- ⑤ 최저가 입찰에 따른 저마진
- ⑥ 입찰정보 부족
- ⑦ 기타 ()

E2-2. 공공기관에 납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요구품질을 맞추기 어려워서
- ② 지역이나 과거 실적에 대한 제한으로
- ③ 입찰자격을 획득하기 어려워서
- ④ 요구하는 인증/규격을 충족하지 못해서
- ⑤ 최저가 입찰에 따른 수익 미확보
- ⑥ 기타 ()

E3. 귀사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주된 애로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자금 조달
- ② 인력 충원
- ③ 시스템 개발 및 보완
- ④ 물류 인프라 구축
- ⑤ 판로 개척
- ⑥ 기타 ()

F. 중소기업 상생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1.7)>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들의 판로지원을 위한 관련법률(제2조 4호~6호,
제31조의 2~제31조의 5까지)이 신설·공표됨

F1. 개정된 판로지원법(정부의 중소기업업체 보호/활성화 정책)을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F2로 이동)
- ② 조금 안다
- ③ 잘 알고 있다

F1-1 귀사가 알고 계신 정부의 중소기업업체 보호 정책은 무엇입니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MRO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업체 우대
- 동반성장위원회 MRO가이드라인 설정
- 대기업 MRO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확장 저지
- 기타 ()

F2. 귀사는 MRO관련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하여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F2-1로 이동) ② 아니다 → (F2-2로 이동)

(중소규모 자재구매업용)

ID -

2012년 소모성자재 납품업 실태조사

조 사 목 적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4 에 따라 중소기업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기관의 담당자께서는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대상 기간 : 2011년 1월 1일 ~ 12월 31일
- 법률근거

제31조의4(실태조사)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납품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이용되고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은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 설문 응답자 : 해당 기관의 구매 담당자
- 조사 관련 문의 및 회신처- 맥스경영컨설팅(대행기관)



업 체 명		응답자 직위/성명	
업 태		업 종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소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유통센터내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소모성자재 실태조사, 마케팅지원, 공동MRO물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

* 공동MRO물 시스템 :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구매대행 시스템으로써, 상품 거래를 위한 MRO물 시스템, 인력, 물류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에 구매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공 및 중소납품업체 판로증대 촉진

□ 용어정의

○ 소모성자재(MRO) : MRO는 Maintenance, Repair & Operation의 약자로서 설비 및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를 포함한 간접자재를 통칭

○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

○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 :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을 제외한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사업

* 기업규모는 중소기업에 속하나, 대기업 계열사인 경우에는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으로 분류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

A. 기업 일반 현황

- A1. 귀사의 업력은 몇 년입니까? _____ 년
(*업력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을 시작하여 영위한 기간)
- A2. 귀사의 상시 종업원 수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 A3. 귀사의 2011년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_____백만원

B. 납품 관련

- B1. 귀사가 보유한 물품 구매처는 총 몇 개입니까?
_____개 업체
- B2. 귀사가 보유한 물품 판매처는 총 몇 개입니까? _____개 업체
- B3. 귀사가 물품 구매처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복수 2가지 응답)
- | | |
|---------------------------------|------------------------------------|
| <input type="checkbox"/> 사업체 규모 | <input type="checkbox"/> 물류체계 보유여부 |
| <input type="checkbox"/> 제품 품질 | <input type="checkbox"/> 납기 준수 |
| <input type="checkbox"/> 납품 단가 |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

B3-1. (B3)응답 결과와 같이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순위	품목군	매출비중
1		%
2		%
3		%
4		%
5		%

D5.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D6로 이동)

D5-1. 자체 물류창고 보유 현황은 어느 수준입니까?

- ① 물류창고 수 : _____ 개
 ② 물류창고 규모 : _____ m²
 ③ 물류창고 관리 인력 : _____ 명
 ④ 연간 유지 관리 비용 : _____ 백만원

D5-2. 보유하고 계신 물류창고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기재 후 D7으로 이동)

- ① 상가 내 창고 수준의 물류창고
 ② 중규모 이상의 별도 물류창고
 ③ 제3자 물류센터 임대 이용
 ④ 기타 (_____)

D6. 물류창고를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금 투자의 문제
 ② 필요성의 문제(없어도 큰 지장 없음)
 ③ 부지의 문제(상가 인근에 적합한 부지 없음)
 ④ 기타 (_____)

D7. 주문품 납품 시 배송은 어떤방법을 주로 활용합니까?

- ① 자사 보유 차량으로 직접배송
- ② 택배/정기화물 등 물류 전문회사 활용
- ③ 물품 구매처 직접 배송
- ④ 기타 ()

D8. 거래처의 대금 결제방식과 비중은 어떻습니까?

결제 방식		비중
물품 판매처	현금 결제	%
	카드 결제	%
	어음 결제	%
	신용 결제(외상)	%
	기타	%
물품 구매처	현금 결제	%
	카드 결제	%
	어음 결제	%
	신용 결제(외상)	%
	기타	%

D8-1. 판매 대금의 회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판매즉시 ② 1개월 이내
- ③ 2개월이내 ④ 3개월 이상

D8-2. 매입 대금의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매입즉시 ② 1개월 이내
- ③ 2개월이내 ④ 3개월 이상

E. 거래 애로

E1. 물품 판매처와 거래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각 칸에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납품단가 인하요구 ② 납품대금 지급지연
- ③ 무리한 납기 단축 ④ 납품품목 임의조정
- ⑤ 관련 서류 미교부 ⑥ 갑작스런 거래중단
- ⑦ 거래처 부도 ⑧ 향응, 접대 등 요구
- ⑨ 불합리한 물품 반품 ⑩ 기타 ()

E2. 물품 매입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납기일 미준수 ② 주문과 다른제품 배송
- ③ 물품 구입처 부도 ④ 배송제품의 품질 수준
- ⑤ 기타 ()

E3. 귀사는 공공기관에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경험이 있다 → (E3-1로 이동)
- ② 납품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다 → (E3-2로 이동)
- ③ 공공기관에 납품할 생각이 없다 → (E4로 이동)

E3-1. 공공기관 납품과 관련한 애로는 무엇입니까?

→ (기입 완료 후 E4로 이동)

- ① 까다로운 요구품질
- ② 지역이나 과거 실적에 대한 제한
- ③ 까다로운 입찰절차
- ④ 요구하는 인증/규격 충족 애로
- ⑤ 최저가 입찰에 따른 저마진
- ⑥ 입찰정보 부족
- ⑦ 기타 ()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강화
- ② 자사 계열사 이외의 판매영업 금지
- ③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물품비중 확대
- ④ 공공 물류 인프라 지원
- ⑤ 판로 개척 지원
- ⑥ 기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공공기관의 책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소모성자재 구매시 중소기업제품 납품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해야 함

F4. 상기 법률개정('11.7)이후 공공기관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귀사의 영업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① 나아졌다.
- ② 변화가 없다. → (G1로 이동)
- ③ 악화되었다.
- ③ 잘모르겠다. → (G1로 이동)

F4-1 변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

G. 정책 요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1.7)>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들의 판로지원을 위한 관련법률(제2조 4호~6호, 제31조의 2~제31조의 5까지)이 신설·공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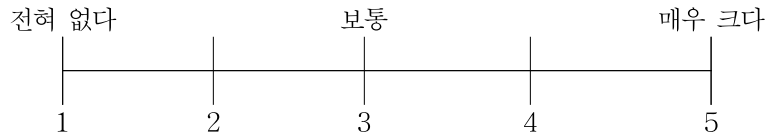
G1. 개정된 판로지원법(정부의 중소기업업체 보호/활성화 정책)을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G2로 이동)
- ② 조금 안다
- ③ 잘 알고 있다

G1-1 귀사가 알고 계신 정부의 중소기업보호 정책은 무엇입니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MRO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우대
- 동반성장위원회 MRO가이드라인 설정
- 대기업 MRO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확장 저지
-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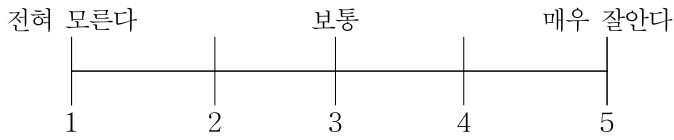
G1-2 대기업에 대한 MRO 규제가 귀사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G2. MRO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까?

- ① 운영자금 지원
- ② 인력 개발 지원
- ③ 시스템 개발 및 보완 지원
- ④ 공공 물류 인프라 지원
- ⑤ 판로 개척 지원
- ⑥ 기타 ()

G3. MRO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G4. MRO종합지원센터는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유통센터내 설치·운영중입니다. 귀사는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각 칸에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판로확대 지원 (공공기관 구매대행 등)
- ② 자금지원(상품 구매대금 등)
- ③ 거점 공동 물류센터 구축
- ④ 중소MRO업체 인증지원
- ⑤ 기업경영 교육 실시
- ⑥ 경영컨설팅 지원
- ⑦ 홍보/마케팅 지원
- ⑧ 기타 ()

<공동MRO물>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구매대행 시스템으로써, 상품 거래를 위한 MRO물 시스템, 인력, 물류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에 구매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공 및 중소납품업체 판로증대 촉진

G4. 공공기관등의 판로확대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내에 중소기업 공동MRO물이 있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예 → (H1로 이동)
- ② 아니오 → (G4-1로 이동)

G4-1. 사용을 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G4-2. (G4-1)의 이유가 해소된다면 중소기업 공동MRO 물을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H. 종합 의견

H1. 소모성자재 납품업과 관련하여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소모성자재 납품업 실태조사

조 사 목 적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4 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기관의 담당자께서는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대상 기간 : 2011년 1월 1일 ~ 12월 31일
- 법률근거

제31조의4(실태조사)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기관의 담당자께서는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이용되고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은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 설문 응답자 : 해당 기관의 구매 담당자
- 조사 관련 문의 및 회신처- 맥스경영컨설팅(대행기관)



기관명			
성명		소속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
이메일	@		

A. 구매관련

A1. '11년도 구매실적 및 '12년도 구매목표는 얼마입니까?

구분	'11년도		'12년도 구매목표액 (백만원)
	구매액(백만원)	업체수(개)	
총 구매액			
물품구매액			
소모성자재 구매액			

- * 총 구매액 : 귀 기관에서 구매와 관련하여 사용한 총 비용
- * 물품구매액 : 총 구매액중 순수 물품 구매(용역, 공사 등 제외)에 사용한 총 비용
- * 소모성자재 : 총 구매액 중 소모성자재와 관련된 구매액

A2. 구매방법별 구매액 또는 구매비중은 어떻습니까?

항목	구매액(백만원)	비중(%)
대규모 자체구매대행업체		
중소규모 자체구매대행업체		
조달청		
직접 구매		
합계		100%

A3. A2응답결과 중 구매비중이 가장 큰 방법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A4. 귀 기관에서 구매시 가장 편리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대규모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사 이용
- ② 중소규모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사 이용
- ③ 조달청 이용
- ④ 직접구매 이용

A4-1. 선택한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A5.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만 답변)
'11년도 소모성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주요거래업체 및 구매액은 어떻게 됩니까?

카테고리	주요 업체명	구매액(백만원)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실험기자재 및 시약류		
소형가전류		
청소·생활용품		
기타용품		

B. 운영인력 관련

B1. 귀 기관에서 구매업무에 투입된 인력은 몇 명입니까?
()명

*구매업무: 주문, 발주 등 구매와 관계된 업무 전체

B2. 효율적 구매업무 진행을 위한 현 구매인력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	다소 부족	적정	다소 충분	매우 충분
①	②	③	④	⑤

B2-1. 부족하다면 몇 명 정도가 적정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공공기관의 책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소모성자재 구매시 중소기업제품 납품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토록 개정됨 ('11.7 개정)

B3. 판로지원법 개정('11.7) 이후 귀 기관의 구매인력 변동 사항은 어떠합니까?
① 변동 없음
② 증가 → (B3-1로 이동)
③ 감소 → (B3-2로 이동)

D. 구매유형 특징 및 애로

D1. 소모성자재 품목구매와 관련하여 업무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소모성자재의 개념이해에 대한 어려움
- ② 관련법률에 따른 입찰절차의 복잡함
- ③ 대기업 이외의 납품수준을 충족하는 중소납품업체의 발굴이 어려움
- ④기타()

D2. 귀 기관은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사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① 이용하고 있다 → (D3로 이동)
- ② 이용하지 않고 있다 → (D5로 이동)

D3. (구매대행사 이용 시) 물품 구매시 장점은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3개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물품 주문의 편리성
- ② 구매비용 및 구매시간 절감
- ③ 검수/입고 업무의 편리성
- ④ 마감/정산 업무의 편리성
- ⑤ 각종 통계자료 처리의 편리성
- ⑥ 기타 ()

D4. (구매대행사 이용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3개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연간 계약에 의한 구매대행사 변경의 어려움
- ② 납품 기간 지연
- ③ 구매품 품질 수준 미흡
- ④ 대금지급 지연
- ⑤ 특정업체 지속 납품
- ⑥ 기타 ()

D5. 귀 기관은 조달청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 (D6로 이동)
- ② 그렇지 않다 → (D8로 이동)

D6. (조달청 이용 시) 물품 구매시 장점은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3개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이용이 편리
- ② 구매비용 및 구매시간 절감
- ③ 업체선정/계약의 편리성
- ④ 의무구매 품목 구매가 용이
- ⑤ 기타 ()

D7. (조달청 이용 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3개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건별 입찰등록 및 계약 등 구매관련 시간 소요
- ② 유찰/재입찰 납기지연
- ③ 각종 통계 작성의 어려움
- ④ 기타 ()

D8. 귀 기관은 직접 구매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 (D9로 이동)
- ② 그렇지 않다 → (E1로 이동)

D9. (직접구매시) 물품 구매시 장점은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3개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원하는 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음
- ② 지역 납품업체 중심으로 거래가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
- ③ 신속한 입고처리가 가능
- ④ 구매 절차 간소
- ⑤ 기타 ()

D10. (직접 구매 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3개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납품업체를 건별로 선정해야 함
- ② 납품업체의 신뢰도 측정이 어려움
- ③ 건별 대응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
- ④ 물류의 효율화 어려움(개별 택배 발송)
- ⑤ 감사 대상이 됨
- ⑥ 기타 ()

E. 판로지원법 개정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1.7)>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들의 판로지원을 위한 관련법률(제2조 4호~6호,
 제31조의 2~제31조의 5까지)이 신설·공표됨

- E1. 개정된 판로지원법(정부의 중소납품업체 보호/활성화 정책)을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 (E4로 이동)
 ② 조금 안다 → (E2로 이동)
 ③ 잘 알고 있다 → (E2로 이동)
- E2. 판로지원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현 업무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① 적용하고 있다 → (E2-1로 이동)
 ② 적용하고 있지 않다 → (E3 로 이동)
- E2-1. 판로지원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구매방식은 무엇입니까?
 ①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사로 변경 → (E3로 이동)
 ② 자체 구매 인력 활용 직접 구매 방식으로 변경 → (E4로 이동)
- E3.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사 이용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3개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 | | | |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① 취급품목수의 한정 및 납품물량 제한
 - ② 납품 기간 지연
 - ③ 구매품 품질 수준 미흡
 - ④ 요청사항 반영률 낮음
 - ⑤ 기존 시스템과의 차이에 의한 불편
 - ⑥ 기타 ()

<공동MRO물>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구매대행 시스템으로써, 상품 거래를 위한 MRO물 시스템, 인력, 물류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에 구매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공 및 중소기업업체 판로증대 촉진

- E4. 공공기관등의 판로확대를 위한 종합지원센터내에 중소기업 공동MRO물이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1 예 -> (F1로 이동) 2 아니오 -> (E4-1로 이동)

E4-1. 사용을 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E4-2. (E4-1)의 이유가 해소된다면 중소기업 공동MRO 물을 이용하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F. 정부지원 정책 도출

최근 대규모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사의 무리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중소기업업체의 소모성자재물품 구매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F1.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개발된다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1 신뢰성 높은 중소규모 구매대행사를 정부기관 또는 MRO종합 지원센터에서 인증 및 평가하여 공공기관에 소개
2 중소기업업체과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절차 완화
3 조달청 서비스 개선(대규모 구매대행사 기능 제공 등)
4기타 ()

G. 종합 의견

- G1.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와 관련하여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용)

ID		-					
----	--	---	--	--	--	--	--

2012년 소모성자재 납품업 실태조사

조 사 목 적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4 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기관의 담당자께서는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대상 기간 : 2011년 1월 1일 ~ 12월 31일
- 법률근거

제31조의4(실태조사)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이용되고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은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 설문 응답자 : 해당 기관의 구매 담당자
- 조사 관련 문의 및 회신처- 맥스경영컨설팅(대행기관)



업 체 명		응답자 직위/성명	
업 태		업 종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소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유통센터내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소모성자재 실태조사, 마케팅지원, 공동MRO물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

* 공동MRO물 시스템 :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구매대행 시스템으로써, 상품 거래를 위한 MRO 물 시스템, 인력, 물류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에 구매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공 및 중소기업 판로증대 촉진

□ 용어정의

○ 소모성자재(MRO) : MRO는 Maintenance, Repair & Operation의 약자로서 설비 및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를 포함한 간접자재를 통칭

○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

○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 :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을 제외한 소모성자재 구매대행 사업

* 기업규모는 중소기업에 속하나, 대기업 계열사인 경우에는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으로 분류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

A2-4. 자사 계열 MRO구매대행사를 이용한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A4로 이동)

- ① 회사 방침
- ② 구매단가가 낮아서
- ③ 거래방식 및 관리가 용이해서
- ④ 자사계열사를 이용하지 않음
- ⑤ 기타 ()

A3. 소모성자재 구입 유형별 구매액과 비중은 어떻습니까?

구입 유형	구매액(백만원)	비중(%)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		
합계		100%

A3-1. (A3)응답결과와 같이 구매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A4. 귀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대규모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사 이용
- ② 중소규모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사 이용
- ③ 직접구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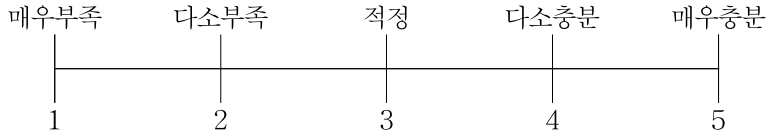
A5. 선택한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B. 운영인력 관련

B1. 귀사에서 구매 업무에 투입된 인력은 몇 명입니까?
()명

B2. 효율적 구매업무 진행을 위한 현 구매인력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2-1. 부족하다면 몇 명 정도가 적정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

C. 구매유형 특징 및 애로

C1. 귀사는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사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① 이용하고 있다 → (C2로 이동)
- ② 이용하지 않고 있다 → (C4로 이동)

C2. (구매대행사 이용 시) 물품 구매시 장점은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에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시스템을 이용한 구매가 가능
- ② 구매비용 및 구매시간 절감
- ③ 검수/입고 업무의 편리성
- ④ 마감/정산 업무의 편리성
- ⑤ 각종 통계자료 처리의 편리성
- ⑥ 기타 ()

C3. (구매대행사 이용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각 칸에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 (D1로 이동)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연간 계약에 의한 구매대행사 변경의 어려움
- ② 납품 기간 지연
- ③ 구매품 품질 수준 미흡
- ④ 대금지급 지연
- ⑤ 특정업체 지속 납품
- ⑥ 기타 ()

C4. (직접구매시) 물품 구매시 장점은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각 칸에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원하는 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음
- ② 지역 구매업체를 중심으로 거래가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
- ③ 신속한 입고처리가 가능
- ④ 기타 ()

C5. (직접 구매 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각 칸에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구매업체를 건별로 선정해야 함
- ② 구매업체의 신뢰도 측정이 어려움
- ③ 건별 대응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
- ④ 물류의 효율화 어려움(개별 택배 발송)
- ⑤ 감사 대상이 됨
- ⑥ 기타 ()

D. 중소기업 상생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1.7)>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들의 판로지원을 위한 관련법률(제2조 4호~6호,
제31조의 2~제31조의 5까지)이 신설·공표됨

D1. 개정된 판로지원법(정부의 중소납품업체 보호/활성화 정책)을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D2로 이동)
- ② 조금 안다
- ③ 잘 알고 있다

D1-1 귀사가 알고 계신 정부의 중소납품업체 보호 정책은 무엇인지 체크해 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MRO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납품업체 우대
- 동반성장위원회 MRO가이드라인 설정
- 대기업 MRO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확장 저지
- 기타 ()

D2. 귀사는 MRO관련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하여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D2-1로 이동) ② 아니다 → (D2-2로 이동)

D2-1 어떠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까?

- ① 중소납품업체 물품 구매액 확대
- ② 중소납품업체의 납품단가 보장
- ③ 유관기관(계열사 등)으로 판로확대 지원
- ④ 기타 ()

D2-2 지원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
- ② 취소/반품 등의 프로세스 불분명
- ③ 처리 능력의 문제
- ④ 그룹 계열사 우선구매 관행으로
- ⑤ 기타 ()

<공동MRO물>

중소납품업체 대상의 실질적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공동MRO물 시스템,
인력, 물류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구매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공을 위한 구매대행 지원사업

D3. 귀사는 중소납품업체의 상품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내에 중소기업 공동MRO 물이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 ① 예 → (E1로 이동) ② 아니오 → (D3-1로 이동)

D3-1. 사용을 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D3-2. (D3-1)의 이유가 해소된다면 중소기업 공동MRO 물을 이용하시겠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E. 종합 의견

E1. 소모성자재 납품업과 관련하여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용)

ID -

2012년 소모성자재 납품업 실태조사

조 사 목 적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4 에 따라 중소기업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기관의 담당자께서는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대상 기간 : 2011년 1월 1일 ~ 12월 31일
- 법률근거

제31조의4(실태조사)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납품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이용되고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은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 설문 응답자 : 해당 기관의 구매 담당자
- 조사 관련 문의 및 회신처- 맥스경영컨설팅(대행기관)



업 체 명		응답자 직위/성명	
업 태		업 종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소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유통센터내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소모성자재 실태조사, 마케팅지원, 공동MRO물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

* 공동MRO물 시스템 :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구매대행 시스템으로써, 상품 거래를 위한 MRO 물 시스템, 인력, 물류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에 구매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공 및 중소기업체 판로증대 촉진

□ 용어정의

- 소모성자재(MRO) : MRO는 Maintenance, Repair & Operation의 약자로서 설비 및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를 포함한 간접자재를 통칭
-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
- 중소기업 자재구매대행업 :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을 제외한 소모성자재 구매대행 사업
 - * 기업규모는 중소기업에 속하나, 대기업 계열사인 경우에는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으로 분류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

[응답자 선택 질문]

귀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 중 MRO 품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MRO품목군	품목 예시	해당 여부	MRO품목군	품목 예시	해당 여부
사무용품 /가구	필기구, 종이류, 의자, 사무가구, 캐비닛		건설자재	목재, 각종 마감재	
전산용품	컴퓨터, 프린터, 전산 소모품류		피복자재	작업복, 유니폼, 방진복, 대진복류	
소형가전	사무용 또는 생활, 주방 가전류		계측 및 실험기자재	광학기기, 실험용기, 테스터기류	
청소 /위생자재	세제, 빗자루, 걸레, 왁스류, 소독제류		운송/포장 /저장자재	컨베이어, 포장용기, 파레트, 외부마감재류	
공구류	드라이버, 망치, 렌치류		전기 /조명자재	전선, 램프, 스위치, 개폐기, 전지류	
배관 /설비자재	가스켓, 볼트, 너트, 파이프류		통신공사자재	통신단자, 통신케이블류	
모터 /펌프시설	모터, 펌프, 콤프레셔류		철강자재	범용강판, 파이프, 와이어류	
안전 /보호장구	장갑, 마스크, 안전화, 보안경류		외장마감재	페인트, 안료, 고무 수지류	

A. 기업 일반 현황

A1. 귀사의 업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유통 ② 유통+제조 ③ 기타 ()

A2. 귀사의 조직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기타 ()

A3. 귀사의 월평균 종사자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구분	계
합계 (1+2+3+4+5)	
① 사업주	
② 무급가족봉사자	
③ 상용종사자	
④ 임시·일용종사자	
⑤ 무급종사자	

A4. 귀사가 보유한 사업장 현황을 기술해 주십시오

구분	내용
사업장 개수	개
사업장 면적	평
사업장 소유 형태	자가 / 임대 / 무상

A5. 귀사의 2011년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 백만원

A6. 귀사의 매출 유형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구분	비중
공공기관	%
MRO 구매대행사	%
민간기업	%
일반소비자 판매	%

B. 구매 / 생산 관련

B1. 귀사의 취급상품 매입처 및 구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판매 상품 조달 방식		조달 비중
① 생산업자 (제조)		%
② 도매업자 (대리점 또는 총판)		%
③ 해외수입	직접 수입	%
	수입 에이전시	%
④ 직접생산 → A4로		%
⑤ 기타 ()		%
합계		100%

[B2~B4는 제조를 겸하는 업체만 답변]

B2. 귀사의 기업형태는 어떻습니까?

- ① 여성기업
- ② 사회적기업
- ③ 장애인기업
- ④ 친환경기업
- ⑤ 신기술/신제품(NEP, NET)
- ⑥ 해당사항 없음
- ⑦ 기타 ()

- * 여성기업: 여성이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함
-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회사
- * 장애인기업: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고, 상시 근로자 중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기업을 뜻함
- * 친환경기업: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업을 말함
- * 신제품/신기술 기업: NEP, NET 인증을 획득한 기업

B3. 제품의 원부자재(재료)는 주로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원부자재 조달방식	조달 비중
국내 생산업체에서 직접 구매	%
해외 생산업체에서 직접 수입	%
국내 생산품을 유통업체를 통해 구입	%
해외 생산품을 유통업체를 통해 구입	%
자체적으로 제조 활용	%
합계	100%

B4. 제품을 주로 어떻게 생산하십니까?

- ① 국내 공장에서 직접생산
- ② 해외 공장에서 직접생산
- ③ 국내 공장에서 OEM생산
- ④ 해외 공장에서 OEM 생산
- ⑤ 해당사항 없음
- ⑥ 기타 ()

C3. 판로개척을 위한 주된 영업활동은 무엇입니까?

- ① 구매 담당자와 수시 연락/미팅
- ② 홍보 전단지 및 사은품 발송
- ③ 온라인 홍보
- ④ 정부 주관 박람회 참석
- ⑤ 기타 ()

C4. 대표자 외 영업전담 보유 인력은 몇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⑤ 없음

C5. 판로개척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영업자금 지원
- ② 마케팅/영업력 증대 교육
- ③ 전산 인프라 개선
- ④ 물류 인프라 개선
- ⑤ 기타 ()

C6. 귀사의 판매대금 결제비중은 어떻습니까?

대금 회수 방법	결제 비중
현금 결제	%
카드 결제	%
어음 결제	%
신용 결제	%
기타	%
합계	100%

C6-1. 판매 대금회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납품즉시 ② 1개월 이내
- ③ 2개월이내 ④ 3개월 이상

C7. 귀사의 매입대금 결제방식은 어떻습니까?

- ① 매출대금 결제방식 그대로 적용
- ② 현금 직거래
- ③ 어음
- ④ 익월 현금
- ⑤ 기타 ()

C8.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C8-3로 이동)

C8-1. 자체 물류창고 보유 현황은 어느 수준입니까?

- ① 물류창고 수 : _____ 개
- ② 물류창고 규모 : _____ m²
- ③ 물류창고 관리 인력 : _____ 명
- ④ 연간 유지 관리 비용 : _____ 백만원

C8-2. 보유하고 계신 물류창고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상가 내 창고 수준의 물류창고
- ② 중규모 이상의 별도 물류창고
- ③ 제3자 물류센터 임대 이용
- ④ 기타 ()

C8-3. 물류창고를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투자 자금의 문제
- ② 필요성의 문제(없어도 큰 지장 없음)
- ③ 부지의 문제(상가 인근에 적합한 부지 없음)
- ④ 기타 ()

C9. 정부가 중소기업 공동 물류창고를 설치한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C10로 이동)

C9-1.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보관료가 비쌀 것 같다
- ② 공동 물류창고까지 거리가 멀어 이용이 불편할 것 같다
- ③ 공동 보관으로 도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 ④ 기타 ()

C10. 주문품 납품 시 배송은 어떤 방법을 주로 활용합니까?

- ① 자사 보유 차량으로 직접배송
- ② 택배/정기화물 등 물류 전문회사 활용
- ③ 거래처가 직접 해결
- ④ 기타 ()

C11. 배송은 주로 어느 지역에 하십니까?

- ① 전국
- ② 인근지역
- ③ 기타 ()

D. 거래 애로

D1. 판매가격 산정 시 원자재(판매상품) 가격 상승분 반영률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0% → (D2로 이동)
- ② 약 80% 정도 → (D2로 이동)
- ③ 약 50% 정도 → (D1-1로 이동)
- ④ 50% 미만 → (D1-1로 이동)
- ⑤ 미반영 → (D1-1로 이동)

D1-1. 원자재/판매상품 가격 상승분 반영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평가 인상 시 매출처의 납품 거절상황 발생우려
- ② 평가 인상 없이도 적정 마진 확보 가능
- ③ 기타 ()

D2. (자재구매대행업 납품 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 ② 항응/금품 요구
- ③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
- ④ 대금지급 지연
- ⑤ 갑작스런 거래 중단
- ⑥ 기타 ()

D3. (조달청 이용시)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 ① 입찰정보 입수 방법에 대한 노하우 없음
- ② 조달 요건 충족이 어려움
- ③ 구비 서류 준비 등 절차 복잡
- ④ 최저가 입찰에 따른 저마진
- ⑤ 지역이나 과거 실적에 대한 제한
- ⑥ 기타 ()

D4. (공공기관 직접납품 시)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 ① 조달 요건 충족이 어려움
- ② 구비 서류 준비 등 절차 복잡
- ③ 담당자 미팅/영업이 어려움
- ④ 기타 ()

D5. 귀사가 민간기업 대상으로 직납을 하고 있다면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 ①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 ② 납품품목 임의 조정
- ③ 관련서류 미교부

- ④ 거래처 부도
- ⑤ 갑작스런 거래 중단
- ⑥ 항응/접대 등 요구
- ⑦ 기타 ()

D6. 대규모자재구매대행업자 시장 확대에 따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 ① 구매사 직거래 비중 축소
- ② 마진 축소
- ③ 기존 거래처 납품 중단
- ④ 기타 ()

E.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사 사업확장 관련

E1.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사 사업확장에 따른 피해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E2로 이동)
- ② 아니오 → (E3로 이동)
- ③ 모름 → (E3로 이동)

E2. 구체적인 피해경험사례는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각 칸에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기존 거래처 축소
- ② 납품단가 인하 압박
- ③ 신규 판매처 개발의 어려움
- ④ 불공정 거래약관 강요
- ⑤ 갑작스런 거래 중단
- ⑥ 기타 ()

E3.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사의 사업확장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각 칸에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강화
- ② 자사 계열사 이외의 판매영업 금지
- ③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물품비중 확대
- ④ 공공 물류 인프라 지원
- ⑤ 판로 개척 지원
- ⑥ 기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공공기관의 책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소모성자재 구매시 중소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토록 개정됨('11.7 개정)

E4. 판로지원법 개정('11.7) 이후 공공기관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귀사의 영업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① 나아졌다.
- ② 변화가 없다. → (F1로 이동)
- ③ 악화되었다.
- ③ 잘모르겠다. → (F1로 이동)

E4-1 변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

F. 정책 요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1.7)>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들의 판로지원을 위한 관련법률(제2조 4호~6호, 제31조의 2~제31조의 5까지)이 신설·공표됨

E1. 개정된 판로지원법(정부의 중소기업업체 보호/활성화 정책)을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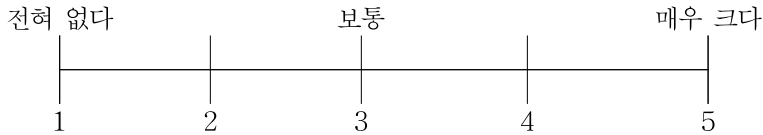
- ① 전혀 모른다 → (F2로 이동)
- ② 조금 안다 → (F1-1로 이동)
- ③ 잘 알고 있다 → (F1-1로 이동)

F1-1 귀사가 알고 계신 정부의 중소기업업체 보호 정책은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각 칸에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② MRO중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③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업체 우대
- ④ 동반성장위원회 MRO가이드라인 설정
- ⑤ 대기업 MRO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확장 저지
- ⑥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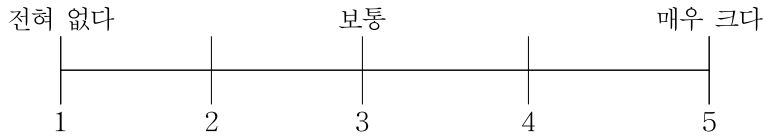
F1-2 대기업에 대한 MRO 규제가 귀사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F2. MRO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운영자금 지원
- ② 공공수요처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
- ③ 부당 가격인하에 대한 규제
- ④ 공공구매대행사를 통한 공공기관 납품 지원
- ⑤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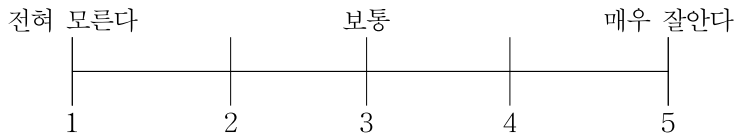
F3. 정부가 MRO 납품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 MRO몰을 지원한다면 그 필요성 또는 유용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4. 정부가 가격 중심의 과잉 경쟁구조를 막기 위해 새로운 MRO 납품기준을 만든다면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업체 자산 건전성
- ② 업력
- ③ 거래 규모 (매출액, 취급품목 등)
- ④ 지역연고 우선 구매
- ⑤ 기타 ()

F5. MRO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F6. MRO종합지원센터는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유통센터내 설치·운영중입니다. 귀사는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각 칸에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판로확대 지원 (공공기관 구매대행 등)
- ② 자금지원(상품 구매대금 등)
- ③ 거점 공동 물류센터 구축
- ④ 중소MRO업체 인증지원
- ⑤ 기업경영 교육 실시
- ⑥ 경영컨설팅 지원
- ⑦ 홍보/마케팅 지원
- ⑧ 기타 ()

<공동MRO몰>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구매대행 시스템으로써, 상품 거래를 위한 MRO몰 시스템, 인력, 물류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에 구매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공 및 중소기업 납품업체 판로증대 촉진

F7. 공공기관등의 판로확대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내에 중소기업 공동MRO몰이 있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예 → (G1로 이동) ② 아니오 → (F7-1로 이동)

F7-1. 사용을 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F7-2. (F7-1)의 이유가 해소된다면 중소기업 공동MRO 몰을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G. 종합 의견

G1.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관련하여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 소모성자재 산업현황 및 실태조사〉

발행일: 2012년 12월

발행처: 중소기업청

문의처: 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1544-0906)

수행기관: 맥스경영컨설팅(주)

인쇄: 한울

본 「2012 소모성자재 산업현황 및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중소기업청에 있습니다. 아울러 책의 내용에 대한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시에는 반드시 중소기업청
「2012 소모성자재 산업현황 및 실태조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